

언론중재

심을 다짐하는 촛불 기도를 하고 있다.

투사기

징역 10년

상명령신청을
재판부는 "윤서
주었음을 뿐

공범들과
다는 장
된다

한국지리정보
다들 다들
이리저리
이리저리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가미카제'
(神風) 특공대를 찬양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2일 보도했다.

한때에 대한 입장을
스쿠니 한때에
난을 받아야 하는
다. 전쟁 희생자에게 감사와 존

이혼

이혼을 신청한 이혼을
신청한 이혼을
신청한 이혼을
신청한 이혼을

"이혼은 가능하면 많이 나와도 좋다"



관련 부동산의 동기
관련 부동산의 동기
관련 부동산의 동기
관련 부동산의 동기

한때에 대한 입장을
스쿠니 한때에
난을 받아야 하는
다. 전쟁 희생자에게 감사와 존

특집

언론보도의 신뢰성과 전문성

- 한국 언론의 정정기사 보도현황 분석
- 언론의 취재원 사용관행과 신뢰도
- 전문기자제 도입 현황과 평가
- 재판관련 보도의 문제점과 전문성 제고 방안

기고

언론소송의 실무

언론중재

2001. 여름

차 례

특 집

언론보도의 신뢰성과 전문성

- 4 • 한국 언론의 정정기사 보도현황 분석 • 문종대
- 20 • 언론의 취재원 사용관행과 신뢰도 • 이동근
- 32 • 전문기자제 도입 현황과 평가 • 김덕모
- 45 • 재판관련 보도의 문제점과 전문성 제고 방안
• 이광범

기 고

- 61 • 언론소송의 실무 • 함석천

지방토론회

- 82 • 대구지방토론회
한국언론관과 윤리규제제도의 운용 • 박기성
- 87 • 강원지방토론회
언론에 의한 피해와 구제 • 이현섭

언론보도와 인격권

- 92 • 현행법 체포현장 보도와 초상권 침해 논란 • 차형근

위원칼럼

- 98 • 신문고시만 문제인가? • 이병섭

해외동향

- 100

자 료

- 106 • 언론중재신청사례
- 124 • 최근의 국내언론관계판결
- 136 • 외국의 언론관계판결
- 152 • 외국신문평의회사례
- 156 • 일본의 신문기자 행동 규범

언론과 법

- 160 • 언론소송과 판결

위원회소식

- 166

언론법제관련문헌

- 168

지상중개

- 170 • On-Line 중재상담실



계간/2001년 여름호 • 제21권 • 제2호/통권79호
 인쇄/2001년 6월 25일 • 발행/2001년 6월 30일
 등록/1981년10월14일 등록번호/바-692
 발행인/박 영 식 • 편집인/이 병 훈
 인쇄인/김 행 술
 발행/언론중재위원회 • 서울 중구 태평로1가25
 (프레스센터빌딩15층)
 전 화:732-6031~5, 732-6011~3, 725-0050,
 730-9498, 2001-7627
 FAX:730-9420, 730-5487, 732-7585
 www.pac.or.kr
 석자,편집/태성인쇄기획
 인쇄/정화인쇄주식회사

* 본지는 잡지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한다.
 * 이 책에 게재된 원고의 내용은 당위원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책은 방송위원회에서 조성한 방송발전기금으로 발간하였습니다.

한국 언론의 정정기사 보도현황 분석

I. 서론

우리 나라 신문 독자들이 신문매체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¹⁾ 만약 신문이 제공하는 정보와 지식이 정확하지 않다면 신문독자들은 신문을 이용할 이유가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신문기사의 정확성은 신문보도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뉴스의 객관성은 저널리즘이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다. 맥케일(Denis McQuail)은 뉴스 객관성을 새로운 사건이나 현상에 관한 정확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인지적 측면에서의 사실성 개념과 사건이나 현상에 관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편견을 배제해야 한다는 평가적 측면에서의 공정성 개념으로 양분하고 있다.²⁾ 이 중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실성의 한 구성요소인 정보의 정확성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정보자체가 정확하지 않다면 기사는 진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평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드니(Glandney)는 신문내용을 아홉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편집인과 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두 집단 모두 '지역보도의 강조' 다음 순으로 '정확성'을 2순위로 선정했다.³⁾

그리고 한국언론재단의 2000년 수용자 조사에서 한국의 독자들은 좋은 신문의 평가기준으로 정확한 보도를 하는 신문

문 중 대

동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 동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박사
- 현 동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저술: "환경보도의 공적 성격과 정의로운 언론행위", "고티에의 합의론적 언론자유", "언론자유 개념 정의 및 실현조건에 관한 연구", 『시정의 감옥: 정책과 언론보도』 등

- 1) 한국언론재단의 『수용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우리 나라 수용자들은 신문과 인터넷은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얻기 위해' 이용한다는 응답이 각각 51.2%, 68.3%인 반면에 TV, 라디오, 잡지는 '흥미/오락/휴식을 위해' 이용한다는 응답이 각각 40.9%, 46.4%, 34.8%로 나타났다. 특히 신문의 경우 '뉴스' (13.9%)를 얻기 위하여 이용한다는 항목까지 포함하면 65%가 정보와 지식을 얻기 위해 신문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언론연구원, 『수용자 의식조사』, 2000, p.74.)
- 2) 한국언론연구원, 『한국 신문 평가 시스템』, 1997, pp. 89-90, 재인용.
- 3) George Albert Gladney, "How Editors and Readers Rank and Rate the Importance of Eighteen Traditional Standards of Newspaper Excellence", *Journalism quarterly*, Vol.73, No.2., 1996, pp.323-324. 한국언론연구원(1997), 앞의 책, 재인용, pp.20-21.

뉴스보도의 정확성은 신문의 평가 기준뿐만 아니라
기자윤리에 대한 평가, 신문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

(44.3%), 주의 주장이 분명한 신문(14.0%), 다양한 정보를 다루는 신문(13.1%), 신속한 보도를 하는 신문(9.6%) 등의 순서로 응답율을 보였다.⁴⁾ 그외 다른 연구들도 신문의 평가기준으로 뉴스보도의 '정확성'을 매우 중요한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콘라도 핑크는 정확성은 책임있는 언론활동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전제하면서 독자는 주로 언론의 부주의한 보도와 부정확한 보도를 기준으로 그들의 윤리의식을 평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⁵⁾ 또한 우병동은 뉴스보도의 정확성은 언론에 대한 신뢰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⁶⁾

이와 같이 뉴스보도의 '정확성'은 신문의 평가기준 뿐만 아니라 기자의 윤리에 대한 평가, 그리고 신문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멀티미디어 시대에 있어서 다양하고도 막대한 정보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문에 대한 신뢰성은 가장 좋은 상품가치가 될 수 있다. 신문매체의 경쟁력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이 정확한 정보이고 아닌지, 그리고 어떤 정보가 가치 있는 정보인지, 그리고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뿐만 아니라 정보가치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아젠다를 정리 제시해 줄 수 있을 때 배가될 수 있다.

우리 나라 기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에 따르면 취재 및 보도와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응답자가 95.5%, 기사내용에 오보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정정보도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91.4%, 보도에 의해 피해자가 생겼을 경우 그 피해자의 반론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응답자가 89.3%로 나타났다.⁷⁾

기자들이 정확한 보도, 정정보도, 반론권 보장 등에 대한 동의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언론은 이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수용자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한국언론의 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신문보도에 대한 정확성과 공정성에 대한 평가에 회의적인 수용자들이 각각 22%로 나타났다.⁸⁾ 그리고 기자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높은 직업윤리의식을 갖고 있다고 평가한 수용자가 46.9%인 반면에 그렇지 않다고 평가한 수용자가 53.1%로 더 높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기자들이 다른 사람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한 수용자가 66.3%, 기자들이 사실을 꼭 확인하고 기사를 쓰지 않는다고 생각한 수용자가 73.1%로 나타나 기자윤리 및 기자들의 기사 정확성 노력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수용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⁹⁾

그리고 기자들도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

4) 한국언론재단, 앞의 책, 2000, p.112.

5) 콘라도 핑크, 한국언론연구원 편역, 『언론윤리』, 한국언론연구원, 1995, p.142.

6) 우병동, "뉴스보도의 정확성 연구", 『언론과 사회』 11호, 나남, p.34.

7) 한국언론연구원, 『언론인의 직업윤리』, 2000, pp.161-162.

8) 한국언론재단, 『수용자 의식조사』, 2000, p.93.

9) 앞의 책 p.110.

하고 보도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뉴스가치가 높은 기사거리를 마감시간 등의 제약으로 부득이 확인 없이 내보내야될 경우 미확인 보도임을 기사내용에 명시하는데에는 인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 나라 언론인들은 출처가 분명치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기사화 할 경우 미확인 보도임을 분명히 밝히기보다는 “소식통에 따르면”, “...라고 알려져” 등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⁰⁾

현실적으로 뉴스보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부정확한 정보가 생산될 가능성은 언제나 상존한다. 뉴스원이 기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 기자가 뉴스원로부터 정보를 전달받는 방법과 형태, 기자가 전달받은 정보를 확인하고 보충하는 과정, 그리고 편집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기자 개인의 전문성의 결여, 편향적 시각, 감정개입, 단순한 실수 등으로 부정확한 정보가 보도될 위험은 언제나 있다.

뉴스보도에서 정확성은 생명이기도 하지만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비용이 발생한다. 시간과 비용을 더 많이 투자하면 할수록 정확성은 높아지겠지만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급하고도 긴급한 뉴스를 전달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비용은 더 클 수 있다. 예를 들면 일기 예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가 내린 후 예보를 한다면 정확성은 높아지겠지만 이미 그것은 ‘예보’가 아니라 현재 상태를 전달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마감시간이 임박

해서 책임 있는 공직자가 방사성이 누출되었다는 발언을 한 경우 이 보도가 진실인지 아닌지 파악한 후에 보도한다는 것은 긴급성을 요하는 정보적 특성상 정확성만큼이나 신속한 보도가 더 필요하다.

부정확한 보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에 대해서 법원도 공공의 정보 업무라고 하는 공적 과업을 행하는 언론보도를 활성화 하기 하기 위해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정보로서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면책하고 있다. 이것은 언론활동상 불가피하게 부정확한 정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언론보도의 구조적 측면을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정확한 보도는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언론은 보도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는 즉시 정정보도를 내는 것이 의무이다. 불가피하게 오보를 낼 수밖에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즉시 정정보도를 냄으로써 그 부정확한 보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은 언론의 공적 의무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재 한국언론의 부정확한 뉴스를 보도한 후 정정보도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정정보도의 내용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부정확한 보도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정정보도 방식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0) 김정기·김학수의 연구에 따르면 출처가 분명치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기사화 할 경우 일반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기자들에게 설문한 결과 기사행간에서 미확인 내용을 적절히 밝힌다고 응답한 사람이 71.5%, 반면에 분명히 밝힌다고 응답한 사람은 18.1%인 것으로 나타났다.(김학수·김정기, “한국언론인의 취재보도 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의 병리』, 커뮤니케이션북스, 1999, p.55)

정정보도는 부정확한 보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언론의 공적 의무

II. 연구방법

보도의 정확성 여부에 대해서 기자와 뉴스원 사이에 견해나 입장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킬링거스트(Tillinghast)의 연구에 따르면 뉴스원들은 보도되는 스트레이트 기사들 중 40~60%가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부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중 1/3 가량은 객관적 사실들이고 나머지는 이해와 해석의 차이에 따른 주관적인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에 기자들은 뉴스원이 객관적인 사실적 오류라고 주장하는 것들 중에서도 절반 정도만 인정하고 주관적인 오류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지 5%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¹⁾

이해와 해석에 따른 주관적인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기자가 취재시 뉴스원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거나 자의적으로 사실을 선택한 경우, 또는 다양한 취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취재원의 취재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 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기자들은 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취재원으로부터 뉴스를 정확히 수집하고 보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보도 후에도 취재원의 주관적 해석이나 이해의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들의 의견을 실어주는 것이 언론의 신뢰성을 위해 바람직하다. 그런 면에서 '○○일보를

읽고' 등의 독자란을 두고 자사 신문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이나 의견을 실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한 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사실들에 대한 부정확한 보도를 중심으로 정정보도가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안해서 이해나 해석의 차이로 발생하는 오류는 분석에서 제외했다. 연구목적이 부정확한 뉴스를 보도한 후 언론사가 어떻게 정정보도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정정보도 기사들은 무엇이며, 왜 그런 오류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신문사의 정정보도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분석대상 신문은 전국일간지를 대상으로 했으며 자료 수집은 한국언론재단의 KINDS를 이용하여 '바로잡습니다', '정정' 색인을 이용하여 수집했다.¹²⁾ 분석시기는 2000년 10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했다.¹³⁾ 그리고 2000년 1월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 <미디어 오늘>에 보도된 오보관련 뉴스자료를 이용하여 오보가 발생하게 된 원인 등을 밝혀내는 부차적인 자료로서 활용했다.

KINDS를 이용하여 수집한 자료는 중앙일보 55건, 조선일보 43건, 한겨레 8건, 문화일보 4건, 경향신문 3건, 대한매일 1건, 동아일보 1건 등 총 115건이었다. 이들 신문간에 뉴스오류에 대한 정정보도 건수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이 분석에서는 알 수 없었으며 이에 대

11) Tillinghast, W.A., "Source control and evaluation of newspaper inaccuracy" *Newspaper Research Journal*, Vol.5, p.13(우병동, "뉴스보도의 정확성 연구", 『언론과 사회』11호, 1996, p.36 재인용)

12) 색인을 이용한 결과 후속보도를 통하여 정정기사를 쓴 경우는 포함되지 못했다.

13) 분석기간을 2000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잡은 것은 언론중재위원회의 2000년도 연차보고서를 활용하기 위해서 설정했다. 그러나 연구 진행과정상 연차보고서의 활용이 낮아져 굳이 분석대상 기간이 이 기간이어야 할 이유는 없었다. 그래서 분석기간을 2001년 4월까지 연장하려고 했으나 3개월간의 분석만으로도 연구목적은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어 그대로 진행했다.

한 분석은 차후 과제로 남겨 두었다.

〈표 1〉 분석대상 신문 및 신문별 정정보도 건수

	빈 도	백분율
조선일보	43	37.4
중앙일보	55	47.8
한겨레	8	7.0
문화일보	4	3.5
경향신문	3	2.6
대한매일	1	0.9
동아일보	1	0.9
합 계	115	100.0

분석유목은 정정보도 대상 기사를 중심으로 기사유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사 내용이 정치기사인지 경제기사인지 아니면 사회기사인지 등을 유목화했다. 그리고 정정보도기사 내용을 중심으로 정정보도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정보도 대상 기사에서 오류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정정보도 기사가 어떻게 작성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유목화해서 분석했다.

III.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오류 유형

정정보도 대상이 된 기사유형은 스트레이트 기사가 87건(76.3%)으로 가장 많았다. 그외 사진 설명이 9건(7.9%), 해설 기획기사가 7건

(6.1%), 의견기사가 5건(4.4%), 인물동정이 3건(2.6%), 기타가 2건(1.8%) 이었다.

기사의 주제는 경제기사가 37.4%로 가장 많았으며, 그외 사회기사 20%, 정치 기사 18%, 문화 기사 14.8% 등의 순으로 나타나 주로 경제, 사회, 정치, 문화기사에서 많은 오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⁴⁾

〈표 2〉 기사 주제별 정정보도 건수

	빈 도	백분율
정 치	21	18.3
경 제	43	37.4
사 회	23	20.0
문 화	17	14.8
과 학	1	0.9
스 포 츠	4	3.5
기 타	2	1.7
인물동정	4	3.5
합 계	115	100.0

기사의 정확성은 보도내용과 실제 사실간의 일치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사건의 내용뿐만 아니라 사건과 관련된 숫자, 사람이름 및 직책명, 장소 및 지역명, 날짜, 오타자, 용어 등의 부정확한 사용 등으로 인해서도 오류가 많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도 정정보도의 내용들이 무엇인

14) 김정기와 김학수가 1999년 취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취재원의 44.8%가 언론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공직자는 38.2%, 정치인은 75.9%, 기업은 60.4%의 응답자가 언론보도로 인해, 허위보도, 과장보도, 명예훼손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대답했다.(김정기, 김학수, 앞의 책 pp.79-80) 여기서도 역시 공직자 사건 관련기사들이 주로 사회면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경제, 정치, 사회분야의 취재원들이 정확하지 않은 보도로 인해 피해를 본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정정보도 대상이 된 기사유형은
스트레이트 기사, 사진설명, 해설기획
기사 순으로 많아

지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이 숫자, 사람명 및 직책, 장소 및 지역명, 오탈자, 날짜 및 시간 등 단순오류가 59%였다. 이런 오류들은 기자들이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그리고 취재원을 대상으로 간단한 확인만 했으면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리고 기자의 취재불충분이나 전문성의 부족으로 전문용어를 잘못 사용하여 사실을 왜곡하였거나, 사실 자체를 잘못 보도함으로써 오보가 발생한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가 41%였다.

〈표 3〉 정정보도 내용의 유형

	빈도	백분율
숫자오기	16	13.9
사람 및 직책 오기	15	13.0
용어오기	13	11.3
회사명,단체명,지역명,장소명 등의 오기	20	17.4
오탈자 오기	11	9.6
날짜 및 시간 오기	5	4.3
사실오류	34	29.6
기 타	1	0.9
합 계	115	100.0

숫자에 대한 오류는 '53억 2천만달러(약 6조원)'를 '5백 32억 달러(약 60조)'로 표현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오탈자는 '코웰시스넷'을 '코웰시스템'으로, '탁관철'을 '택관철'로 표기하거나 제작상 단순실수에 의해서 다른 기사의 내용이 한 줄 첨가된 경우¹⁵⁾

등이다. 날짜나 시간에 대한 오류는 많은 사람들에게 혼동을 자아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건이 있었다. 이 중에는 학회 등 회의 시간, 특차접수 마감일, 국영 유리공업의 무상배정 기준일 등 민감한 날짜와 시간에 대한 오류가 있었다.

회사명, 지역명, 단체명 등에 대한 오류는 잘못 보도된 경우 특정단체의 명예를 훼손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단체명이나 회사명 등의 이름이 바뀌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분석된 기간중 정정보도 기사 중에서 대한매일과 중앙일보의 2000년 11월 21일 8억 횡령 신협직원 자살관련 기사에서 두 신문 모두 '한경신협'을 '한림신협'으로 보도함으로써 '한림신협'의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사람이름 및 직책 오류 중에는 사람이름의 한자에 대한 오류가 다수 있었으며 '새박사 원병오 교수'를 '윤무부 교수'로 표기한 경우,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오류를 범한 경우 등이 있었다. 중앙일보 11월 21일자 43면 '오닐동생 그 형에 그 아우' 기사에서 저메인 오닐은 새킬 오닐의 친동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동생으로 착각한 경우와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의 '과괴되는 요셉의 무덤' 사진 설명에서 아브라함의 증손자이자 야곱의 아들인 구약성서상의 요셉을 성모마리아의 남편으로 설명한 경우가 비슷한 이름에 대한 착오 때문에 발생한 오류라 할 수 있다.

단어 하나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의미가 정반대로 변한 경우가 있는데 "샤넬 핸드백은

15) 조선일보 21일자 23면 기사에서 아무 의미없는 "를 국민들에게 숨김없이 공개해 왔다"라는 마지막 한 줄이 제작상 실수로 첨가되어 들어간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두 개의 C자가 교차하는 마크 한쪽 끝에 R자가 새겨져 있다”라는 보도를 “...한 쪽 끝에 R자가 새겨져 있지 않다”로 정정보도한 경우¹⁶⁾가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한자숙어를 잘못 사용하여 정반대의 의미가 된 경우가 있는데 ‘異名同人’을 同名異人’으로 표기한 경우¹⁷⁾가 이에 해당된다. 외신에 대한 번역 실수로 오보가 발생한 경우가 있는데 ‘고구마’를 ‘감자’로 잘못 번역하여 오보를 낸 경우¹⁸⁾가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결여로 발생한 오류로는 조선일보 2000년 11월 8일자 35면 기사 중 철인3종 경기를 완주한 82세 노인을 ‘미수를 넘긴’으로 표현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 경우 조선일보는 ‘바로잡습니다’에서 미수는 88세를 뜻한다고 친절하게 설명하면서 오류를 수정했다.

단순한 표기상의 오류나 용어의 잘못된 사용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 자체에 대해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오류는 인권 등 명예훼손요소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는 더 정확하고도 확실하게 다루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된다. 사실오

류는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실오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설명하고자 한다.

IV.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오류 발생 원인

기사에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우병동은 1)기자의 전문성 부족, 2)사실확인 소홀, 3)과장과 확대보도, 4)자의적인 정보선택과 해석, 5)의도와 감정의 개입으로 분류해서 분석하고 있다.¹⁹⁾ 반면에 한국언론연구원과 김정기의 연구논문에서는 1)기자의 실수, 2)기자의 고의적 날조, 3)취재원측의 실수, 4)취재원측의 고의에 의한 보도자료 제공, 5)매체간의 지나친 경쟁, 6)마감시간 압박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다.²⁰⁾

그리고 노광선은 오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1)기사작성과정에서의 오기, 2)확인소홀로 인한 오보, 3)일방의견 보도로 인한 오보, 4)전문성 결여로 인한 오보, 5)예단에 의한 오보, 6)상업주의로 인한 오보, 7)지나친 경쟁으로

16) 조선일보 2000. 11. 1. 7면. ‘바로잡습니다’

17) 중앙일보, 2000. 11. 6. 2면. ‘바로잡습니다’

18) 중앙일보 2000. 11. 9. 2면

19) 우병동, 앞의 논문, pp.55-57.

20) 한국언론연구원이 언론인 500명을 대상으로 오보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기자의 실수(전문성 결여)라고 응답한 사람이 50.8%, 매체간의 지나친 경쟁 20.4%, ‘취재원측의 고의에 의한 부정확한 정보제공’을 지적한 경우가 16.4%, 마감시간 압박 8.5%, 취재원측 실수 3.3%, 기자의 고의적 날조 0.6%로 나타났다.(한국언론연구원, 『언론인의 직업윤리』, 2000, pp.161-162.)

김정기·김학수의 연구에 따르면 기자들은 기자의 부주의 40.0%, 취재원측 실수 2.0%, 취재원측 고의 9.0%, 마감시간압박 7.0%, 언론사간 지나친 경쟁 28.8%, 기자의 전문성 결여 13.2%로 나타났다. 반면에 취재원을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 취재원들은 언론사간 속도경쟁 31.1%, 기자의 전문지식 결여 27.3%, 취재원측 실수 18.7%, 기자의 부주의 13.0%, 기타 5.2%, 잘못 3.7%로 나타났다.(김정기·김학수, “한국언론인의 취재보도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의 병리』, 1999, p.59, p.82.)

단순실수에 의한 기사작성 및 편집상의 오기,
취재원에 의한 오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인한 오보, 8) 지나친 외신 의존으로 인한 오보, 9) 편향적 시각에서 비롯된 오보, 10) 취재원의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오보, 11) 취재원의 고의적 정보조작으로 인한 오보, 12) 통신기사 확인의 어려움으로 인한 오보로 나누고 있다.²¹⁾

본 연구는 노광선의 오보원인에 대한 분류를 중심으로 하면서 그의 분류에서 빠진 '의도와 감정의 개입', '외신기사 번역 오류', '마감시간에 의한 오보', '인용 또는 인터뷰 내용의 부정확성' 등을 첨가하고 그의 분류 중 '취재원 실수'와 '취재원 고의'를 '취재원에 의한 오보' 항목으로 묶음으로써 15개 항목으로 정정보도 내용의 원인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기사 작성 및 편집상의 오기가 42건으로 36.8%, 확인소홀로 인한 오보가 36건으로 31.6%,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오보가 11건으로 9.6%, 인용 또는 인터뷰 인용의 부주의 8.8%, 취재원에 의한 오보가 4.4%, 일방의견 보도로 인한 오보가 3.5%, 예측 예단에 의한 오보가 3.5%, 외신기사 번역 오류가 2%로 나타났다. 반면에 상업주의로 인한 오보,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오보, 지나친 외신 의존으로 인한 오보, 의도와 감정개입에 의한 오보, 마감시간에 의한 오보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한 개도 없었다. 결론적으로 정정보도의 내용들은 주로 단순실수에 의한 기사작성 및 편집상의 오기와 취재원으로부터의 정보내용을 확인 없이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오보들에 대한 정정보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정정보도기사의 오류 발생원인

	빈도	백분율
기사작성 및 편집상 오기	42	36.8
확인소홀로 인한 오보	35	30.7
전문성 결여로 인한 오보	11	8.8
자료 및 인터뷰 인용 부주의	11	8.8
취재원에 의한 오보	5	4.4
일방의견보도로 인한 오보	4	3.5
예측 예단에 의한 오보	4	3.5
외신기사 번역 오류	2	1.8
상업주의로 인한 오보	0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오보	0	
지나친 외신 의존으로 인한 오보	0	
의도와 감정의 개입	0	
마감시간에 의한 오보	0	
통신기사에 의한 오보	0	
편향적 시각에서 비롯된 오보	0	
계	114	100.0

1) 기사작성 및 편집상 오기

일간지의 경우 기사작성 및 편집과정에서 기자나 편집자의 단순실수로 기사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어쩌면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마감시간과 뉴스의 속보적 성격상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러한 단순실수가 많으면 기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요즘처럼 기자가 온라인

21) 노광선, "무엇이 오보를 만드는가",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1995.

으로 기사를 송고하고 편집하는 시스템하에서, 그리고 지면의 증가로 문장 및 오타자를 부장이나 국장들이 체크할 수 없는 현 실정에서 오타자 문제는 전적으로 기자의 책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오타자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기자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줄일 수는 있다고 생각된다. 분석된 정정기사에서 기자나 편집자의 단순실수에 의해서 발생한 오류가 전체 정정기사의 36.8%였다. 날짜나 시간, 금액, 그리고 직책, 이름, 지명 등 고유명사 등은 한 번 더 체크하는 습관을 갖는다면 이런 오보는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전일보가 인쇄하는 과정에서 판갈이를 하면서 필름교체를 하지 않음으로써 2000년 11월 3일 2면과 그 전날 2일 2면이 똑같이 인쇄되어 나간 사건이 있었다.²²⁾ 이에 대해 대전일보는 독자에게 사과하는 사과문을 실었지만 독자들에게는 두고두고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확성과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신문사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2) 확인소홀로 인한 오보

정정보도기사 분석결과 확인소홀로 인한 정정보도가 36%를 차지했다. 보도자료나 인터뷰 과정에서 언급된 회사나 단체에 관한 사항은 다시 그들 회사나 단체에게 확인하는 작업이 있었다면 충분히 오보를 막을 수 있는 것들이었다. 특히 회사나 단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보도일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

았다. 예를 들면 한겨레 10월 2일 기사 중 '올들어 재단문제가 불거진 사립학교'란 기사에서 기사내용과 관계없는 공립학교인 인화여고가 언급된 보도, 그리고 조선일보 2000년 11월 4일 기사 중 한국디지털라인 사장 정현중 씨로부터 4억여 원의 금품을 받아 구속된 청와대 기능직 위생원 이운규 씨 관련 보도에서 그가 1997년 김용태 실장때부터 비서실장 공관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996년 김광일 실장때부터였다는 기사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에 확인 소홀로 인한 오보사건에는 한겨레가 "중국 베이징에 보존돼 있는 마오쩌둥 전 주석의 주검에서 DNA를 채취해 복제인간을 만드는 M부활작전이 중국과 일본 양국간에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다"는 일본 도쿄신문의 만우절 농담 기사를 인용보도함으로써 발생한 사건이 있었다.²³⁾ 자그마한 부주의가 오보를 낸 경우라 할 수 있다.

마감시간 등에 쫓기는 기자들로서는 보도자료나 취재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관련 있는 인물이나, 기관 및 단체에 사실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일 수 있다. 그러나 기자의 확인소홀로 인한 오보는 개인의 인권이나 관련기관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특히 부정적인 기사와 관련된 단체나 기관에 대한 확인취재는 보도의 정확성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권과 명예를 존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이다.

3) 전문성 결여로 인한 오보

현대사회가 전문영역으로 분화되고, 각각의

22) 미디어 오늘, 2000. 11. 6.(265호) 참고

23) 미디어 오늘, 2001. 4. 19.(288호 3면)

부정적인 기사와 관련된 단체나 기관에 대한
확인취재는 보도의 정확성과 타인의 인권 및
명예를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

영역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의 배타성이 증가되면서 언론인의 전문성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보도 대상 자체가 전문화되었기 때문에 언론인 스스로도 이에 상응하게 전문화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²⁴⁾

분석된 정정보도기사 중에서도 기자로서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잘못 알고 있음으로써 발생한 오보사건은 11건으로 8.8%였다. '미수'가 몇살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미사'와 '예배'에 대한 구분, '동기식'과 '비동기식'의 구분, 그리고 행정구역의 변화 등을 잘못 알고 있음으로써 발생한 오보들도 있었다.

한국언론연구원이 1998년 경제학자 3명에게 IMF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기사의 정확성을 평가하게 한 결과, 경제학자들은 분석대상 기사에서 표현상의 부주의 사례, 경제개념의 잘못된 사용, 환율과 같은 수치자료 계산의 오류 사례들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부실채권을 부실여신으로, 결합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로, 금융자유화를 금융자율화로 잘못 쓰거나 또는 "환율이 내려오는 만큼 수출이 증가되고 수출가격 상승으로 수출로 벌어들이는 달러는 많게 된다"고 보도함으로써 환율상승이 수출증대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정반대로 설명하는 경우 등 심각한 오류들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했다.²⁵⁾

4) 자료 및 인터뷰 인용 부주의
기자가 인터뷰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정확하

게 인용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인용함으로써 정정보도된 사례가 11건 있었다. '증권정보 사이트를 국제뉴스 중심으로 바꾸고 인원을 대폭 축소'키로 한 것을 '회사를 정리한 것'으로 보도하거나 '충북 진천군 등 3개 지자체가 용인민속촌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을 '진천군을 후보지로 선정' 등으로 잘못 인용보도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경우는 주로 인터뷰 대상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정정보도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인터뷰 대상자들이 인터뷰 내용이 문제가 됨으로써 인터뷰 내용을 수정해 달라고 부탁한 경우로 보이는 정정보도도 있었다. 예를 들면 박태준 전 총리 인터뷰 기사의 정정보도에서 "YS정권때 검찰이 조사장을 옥박질러"란 대목의 "검찰"을 "다른 사정기관"으로 바로잡는다는 정정보도²⁶⁾의 경우 이런 의심이 가는 정정보도라 할 수 있다.

기자는 인터뷰때 민감한 사안이나 중요한 사항은 확인 질문하거나 또는 그에 관련된 자료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다면 보충취재하여 확인하는 것이 인터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5) 취재원에 의한 오보

취재원의 실수나 취재원의 의도적인 정보조작으로 인해서도 오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분석대상 정정보도 중 5건에 불과했다. 증권거래소 분석과정의 실수로 인한 오류에

24) 한국언론연구원, 『한국 신문평가시스템』, 1997, p.91

25) 한국언론연구원, 『언론인 전문성 지수 연구』, 1998, pp.80-83

26) 중앙일보, 2000. 10. 24. 2면

대한 정정보도(조선일보 2000. 10. 6.), YMCA 측이 군자중학교를 안양중학교로 착오함으로써 일어난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중앙 2000. 11. 6.)등이 이에 해당된다.

취재원에 의한 대표적인 오보 사건으로는 한국일보 2000년 12월 21일자 기사 중 "6일 순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순천시가 1995년부터 생활보호비를 지급한 생활보호대상자 가운데 상당수가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6억~100억에 달하거나 월소득이 2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지만 6억~100억원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된 생보대상자 부양의무자의 실제 재산은 3,000만원이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감사 때 한 건 터뜨리기 위해 내용을 부풀리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사가 순천시 박용수 의원의 감사자료를 충분한 검토 없이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오보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 사건에서 더 문제인 것은 기사가 전체적으로 틀린 것이 없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된다는 기자의 인식이다. 취재원이 제공하는 보도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취재행위는 발표저널리즘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취재원에 의해 언론이 이용당할 수도 있다. 기자는 취재원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서도 확인하거나 보충취재하여 항상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6) 일방의견보도로 인한 오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상대방에 대한 취재

없이 이해당사자 한쪽만을 취재보도함으로써 오보가 발생한 경우는 분석된 정정보도 기사 중 4건이 있었다. 의사과업으로 수술 등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환자에 대한 보도에서 주치의에 대한 취재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오보,²⁷⁾ 유아가 운다며 제도용 캠퍼스에 달린 송곳으로 수십 차례 찌르는 등 학대한 혐의로 놀이방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는 보도에 대해 아이들이 병원 놀이를 하다가 난 상처라는 정정보도²⁸⁾ 등이 이에 해당된다.

후자의 경우 아마도 경찰조사를 토대로 하여 기사를 작성함으로써 피의자에게 확인 절차 없이 보도함으로써 발생한 오보라고 볼 수 있는데, 동아일보, 한국일보, 조선일보, KBS, MBC 모두 오보를 냈던 사안이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한국일보는 <캠퍼스로 원생 학대 놀이방 원장 무혐의> 등의 제목으로 후속보도로 기사화한 반면에 중앙일보는 <바로잡습니다>의 형식으로 보도했다.²⁹⁾

7) 예측, 예단에 의한 오보

기자의 추정이나 예측을 토대로 하여, 또는 몇 개의 사실들을 토대로 하여 작문성 기사를 작성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보는 기자가 기사에 대한 욕심을 조금만 버리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사안이다. 분석된 정정기사 중에서도 4건이 있었는데 '공룡센터 오늘 동생도 공룡'(중앙일보 11월 21일 기사)이라는 기사에서 저메인 오닐을 새길 오닐의 친동생으로 추측보도

27) 문화일보 2000년 10월 18일 정정보도

28) 중앙일보 2000년 11월 22일 정정보도

29) 언론중재위원회, 『2000년도 연차보고서』, 2000. pp.885-890.

취재원이 제공하는 보도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취재행위는 발표저널리즘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취재원에 의해 언론이 이용당할 수도 있어

한 기사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문화일보가 인기가수 B양의 비도 오 유출사건 관련보도에서(2000년 11월 19일) 'SBS 방송내용의 선정성을 기사화하면서 KBS 보도를 끼워넣기 한' 방식으로 보도하는 과정에서 오보가 발생한 사건이 있다. 즉 KBS가 선정적인 화면을 내보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인터넷 게시판에 KBS 보도에 항의하는 글이 게시되지 않았는데도, 문화일보가 시청률 지상주의에 사로잡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화면을 KBS가 내보냈으며 인터넷 게시판에 시청자들의 항의가 잇따랐다는 추측, 예단보도를 함으로써 오보가 되었다.

기자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있지만 사실을 추측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도 사실기사에는 사회적 긴급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능한한 하지 않아야 하며, 미래에 대한 예측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의견으로서 해설기사나 의견기사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외신기사 번역 오류

분석기사 중에는 외신 번역으로 인한 오류도 있었는데 '고구마'를 '감자'로 잘못 번역한 사진 설명기사(중앙일보 2000년 11월 8일)와 해외논단 영문 기사를 잘못 번역한 경우(조선일보 12월 28일 바로잡습니다.) 등 2건이 있었다. 특히 후자의 경우 '바로잡습니다' 기사의 양이 538자에 해당할 정도로 많은 기사량이었다. 차라리 틀린 부분을 정정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전문을 다시 게재해 주는 것이 좋았을 것 같은 느낌이었다. 오역부분과 정정부분을 제시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그 기사의 전체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외신기사 번역 중 문제가 되는 것은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과장 확대해석 함으로써 내용을 왜곡보도하는 경우다. 예를 들면 2001년 5월 뉴욕타임스 기사 <한국의 보수언론, 진보주의자들의 공격을 받다> 제하 기사를 인용 보도하는 과정에서 국정홍보처가 동아, 중앙, 조선에 반론문과 정정보도를 신청한 사건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는 오역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의도적이면서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발생한 오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외신기사의 인용보도에서 의도적으로 일면만을 인용보도하거나, 확대 과장 해석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특히 인터넷 시대에 있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신문독자 중 엘리트 독자들이 많은 것을 감안하면 외신에 대한 오역은 그들 독자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 있다.

9) 외신 및 통신기사에 의한 오보

통신기사가 잘못된 경우 대량 오보를 발생시킬 수 있다. 잘못된 통신기사의 인용에 있어서도 기사의 출처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자사기사처럼 재작성하여 오보가 발생한 경우 명예훼손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자 윤리에도 어긋난다. 분석기사 중에는 외신으로 인한 오보가 2건 있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고구마'를 '감자'로 오역한 기사와 야곱의 열한 번째 아들 요셉의 묘를 마리아 남편 요셉의 묘로 보도한 사건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10) 상업주의와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오보 분석대상 기사에서는 상업주의로 인한 오보

나 경쟁으로 인한 오보라고 판단될 수 있는 기사는 없었지만 최근 스포츠 신문들의 '최진실 8억 CF파문'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정확하면 다행이고 아니면 해프닝으로 보도하는, 즉 오보자체가 또한 뉴스가 되는 경우가 최진실 보도에 적용되었다.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보도로는 일은증권이 정확하지 않은 2000년 결산법인 분석자료를 기자들에게 제공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대형 오보를 낸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³⁰⁾ 증권사들의 분석 경쟁과 언론사의 보도경쟁이 만들어낸 이번 오보는 공식적인 결산자료가 2001년 4월 4일 공표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은증권이 2일 먼저 분석자료를 배포함으로써 발생한 사건이다. 문제는 사전에 상당한 부분에서 오류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보도했다는 데 있다. 정확성보다 속보경쟁이 우선된 보도였다고 볼 수 있다.

11) 지나친 외신 의존으로 인한 오보

지나친 외신 의존으로 인한 오보는 국내 뉴스원보다 외국뉴스원을 더 신뢰함으로써 발생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예를 들면 1998년 외교통상부 장관이 북한의 영변 대규모 지하공사가 핵관련 시설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이 핵관련 시설로 보도하자 "외국보도는 믿고 제나라 장관 말은 믿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린 사건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³¹⁾

12) 편향적 시각과 감정개입에 의한 오보

편향적 시각과 의도에 의해서 사실을 선택하고 해석함으로써 발생한 오보사건으로는 최근 동아일보의 미국 포브스지 벤처환경 관련 기사에 대한 보도가 전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세계에서 기업 창업에 가장 호의적인 나라 25개국 중 18위를 한 한국에 대해서 동아일보는 "한국은 세계에서 벤처기업을 창업하기 어려운 나라로 평가됐다"고 보도했다. 벤처기업 창업이 어려운 나라라는 평가는 원문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측면이 많다고 미디어 오늘은 보도하고 있다.³²⁾

이러한 편향적 시각은 예전에는 학생운동이나 민주화 운동에 대한 보도에서, 그리고 지금은 노동운동에 대해서 사실을 편향적으로 선택하고 해석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기자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킬려고 하는 윤리의식이 실종될 때, 또는 개인적 이해관계나 편견에 대한 자기 검증이 철저하지 못할 때 이런 오보는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감정개입으로 발생한 오보사건은 가장 반윤리적인 오보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에 대한 신뢰를 가장 떨어뜨리는 보도행태라 할 수 있다. 최근의 계도지 폐지를 주도하고 있는 오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대한 오산시출입기자들의 담합적인 보도에 관한 보복성 기사논란이 이에 해당된다.³³⁾

13) 마감시간에 의한 오보

30) 미디어 오늘, 2001년 4월 12일(287호), 1면, "2000년 기업결산 실적 대형오보, 일은증권 자료 146개사 틀려, 경향 동아서경 조선 오류 알고도 보도강행" 기사 참고

31) 미디어 오늘, 1998년 9월 23일(163호), "무책임 추측보도 '전말' 보도 참고

32) 미디어 오늘, 2001년 5월 24일, "동아 미 포브스지 인용 벤처환경기사 왜곡 논란" 참고

33) 미디어 오늘, 2001년 5월 31일(294호), 1면 "오산시 출입기자 담합기사 의혹"

이제 신문은 속보성보다는 정확성과 심층성
그리고 뉴스가치의 판단과 의제 설정 기능에
더 중점을 두어야

마감시간에 의해서도 오보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마감시간에 의한 오보는 상업적인 경쟁과 속보경쟁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정확성을 더 중요한 가치로 볼 경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인터넷 등의 등장으로 신문은 이제 속보성보다는 정확성과 심층성, 그리고 뉴스가치의 판단과 의제 설정 기능 등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면 정확성을 속보성보다 더 우위에 두고 기사를 작성해야 할 필요가 증대하고 있다.

마감시간에 의한 오보사례는 2000년 11월 미국 대선보도가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CNN 등이 4시 20분쯤 부시 당선 소식을 전하자 각 신문사 편집국은 부시당선으로 조판작업을 거의 마쳤다. 이 무렵 대선당선자가 확실하지 않다는 외신이 전해졌다. 그 결과 대부분의 신문들은 가판에 오보를 내는 결과를 빚었으며 다만 조선일보만이 한 시간 가량 늦게 가판을 제작하면서까지 추이를 살핀 후 보도하는 신중성을 보였다.³⁴⁾

V. 결론 : 정정보도기사 유형과 바람직한 정정보도

지금까지의 분석에 의하면 스트레이트 기사에서 기사오류나 오보가 많이 나타났으며 숫자, 사람명, 직책, 장소 및 지역명, 오타자, 연월일 및 시간 등의 단순 오류와 취재불충분으로 인한 사실오류 및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 정정보도가 발생한 원인으로는 기사작성 및 편집상의 오기, 확인소홀로 인한 오보가 주를 이루었으며 그외 전문성 결여, 인용부주의, 취재원에 의한 오보 등이 그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런 정정보도들은 어떤 방식으로 작성되고 있는가를 분석해 본 결과 아래 여섯 가지 보도방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유형은 날짜+면+제목+오보내용+정정내용 형식의 보도로 분석기사 115건 중 103

〈표 5〉 정정보도 작성방식별 분포

	날 짜	면	제 목	오보내용	정정내용	오보원인	사 과	건 수
제1유형	○	○	○	○	○	×	×	103
제2유형	○	○	○	○	○	○	×	5
제3유형	○	○	○	×	○	×	×	2
제4유형	○	○	○	○	○	×	○	2
제5유형	○	×	○	○	○	×	×	2
제6유형	○	○	○	×	×	○	○	1

34) 미디어 오늘, 2000년 11월 16일, "미 대선 오보를 통해 본 한국언론 백태"

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형적인 방식은 "10월 5일자 33면 '세금우대 저축 중복 가입' 기사 중 '세금우대 혜택이 세대당 한 개 통장으로 제한' 부분을 '1인당 한 개 통장'으로 바로 잡습니다"(중앙일보, 2000년 10월 6일, 2면) 같은 방식이었다.

이 유형 중 좀 더 친절한 보도는 중앙일보 2000년 11월 1일 "10월 31일자 17면 동서문명의 다리 페르시아 기행 ... 첫째단 끝에서 다섯 번째 줄 중 페세르폴리스는 페르세폴리스의 잘못이므로 ... 바로잡습니다"라는 기사였다. 그리고 조선일보 2000년 11월 7일 " ... 퓨처 시스템과 사이버텍 실적표에서 퓨처 시스템의 '순이익'으로 표시된 것은 사이버텍의 매출액입니다. 사이버텍은 올 상반기에 55억원의 매출액에 9억원의 순이익을, 퓨처시스템은 76억 8000만원의 순이익을 올렸습니다"라고 보도함으로써 다시 한 번 더 매출액을 정확하게 보도하는 친절을 보였다.

독자의 의견도 곁들여 '바로잡습니다' 기사를 작성한 경우도 있었는데 중앙일보 2000년 12월 16일 "12월 15일자 23면 ... '강다무'는 '간다무'로 바로잡습니다. 또 '간다무' 대신 '건담'으로 써야 하지 않느냐는 독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외래어 표기법상 양쪽 다 쓸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이 애니메이션의 영어(Gundam) 발음을 우리말로 표현한 '건담'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라는 기사다. 이 기사는 독자의 의견을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자의 전문성이 잘 드러나는 기사로서 단순한 표기법상의 실수를 하나의 기사로 가치를 높인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 2000년 11월 29일 "사무라이 본드 상환자금을 결제한 기업은 '포철'이

아니라 다른 '대기업' 이기에 바로잡습니다" 기사와 박태준 총리 인터뷰 기사에서 '검찰'을 '다른 사정기관'으로(중앙일보, 2000년 10월 23일, 13면) 등의 정정보도는 오히려 더 혼란을 가중시키고 정확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다른 대기업 명이나 사정기관 이름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회피성 보도를 한 경우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날짜+면+제목+오보내용+오보가 발생한 이유+정정내용의 방식이다. 이 방식으로 작성한 기사가 5건 있었다. 예를 들면 "5일자 51면 '출자전환 기업 투자 14개사, 오히려 재무상태 악화' 제하 기사 중 증권거래소 분석과정의 실수로 틀린 부분이 일부 있어 바로잡습니다. 출자 전환 후 자본잠식으로 ... 바로잡습니다."로 보도한 조선일보 2000년 10월 6일자 42면 '바로잡습니다' 기사를 들 수 있다.

주로 취재원의 실수로 오보를 한 경우이거나 '제작 과정상의 착오' 등의 이유일 때 원인을 밝힌 것으로 나타나 기사자신의 실수나 취재 불충분 등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거의 밝히지 않았다.

세 번째 유형은 날짜+면+제목+정정내용만으로 보도된 유형으로 2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조선일보 "10월 30일자 15면 사진설명의 수능시험일을 11월 15일로 바로잡습니다"와 다른 하나는 중앙일보 11월 2일자 "한국외국어대는 어학특기자 수시모집 전형이 지난 달 11일 이미 완료됐음으로 바로잡습니다"라는 기사였다. 두 기사 모두 오보날짜를 제시하지 않고 정정 날짜만을 제시한 경우로 오히려 혼동을 피하기 위해 정정보도 날짜만 보도한 것으로 보여진다.

정정보도 내용은 오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당사자나 독자들에게 대한 사과와 어떤 이유로 오보가 발생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

네 번째 유형으로는 날짜+면+제목+오보내용+정정내용+사과방식으로 쓴 기사로서 기사 끝이나 중간에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라는 문장을 첨가시킨 것이 2건 있었다.

다섯 번째 유형으로는 날짜+제목+오보내용+정정내용 유형으로 첫 번째 유형에서 '면'이나 면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쓰지 않은 것으로 2건 있었다.

여섯 번째 유형으로는 날짜+면+제목+원인+사과의 유형으로 오보내용과 정정내용이 빠진 경우로 1건 있었다. 이 기사는 조선일보 2000년 11월 16일 16면 "15일자 33면에 실린 미 프로 풋볼 사진에 제작 과정상의 착오로 잘못된 설명이 들어갔습니다. 독자들에게 사과드립니다"라는 기사로 무엇이 오보이고 정확한 설명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정정보도의 내용에 따라 정정보도기사 작성 방식에는 차이가 날수는 있지만 가장 완벽한 유형은 날짜+면+제목+오보내용+오보원인+정정내용+사과의 방식으로 작성된 기사라고 생각한다. 오보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본 당사자나 독자들에게 사과를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이유로 오류나 오보가 발생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전문지식인으로서의 기자가 취할 태도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러한 기사는 오히려 신문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데 더 기여할 것이라 생각된다.

정정보도 기사 중 보도대상자의 해명요청에 의해서 실은 기사라는 것을 밝힌 기사가 115건 중 6건이 있었다. 이런 보도는 주로 경제관련 기사였는데 해명보도에 대한 사실확인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몇몇 정정보

도는 확인취재나 추가취재를 통하여 정정보도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정정보도 태도는 매우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든다. □

〈참 고 문 헌〉

- 김정기·김학수, "한국 언론인의 취재보도 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 언론의 병리』, 커뮤니케이션북스, 1999.
- 김창룡, 『보도의 진실, 진실의 오보』, 나남, 1994.
- 노광선, 『무엇이 오보를 만드는가』,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1995.
- Denis McQuail, 오진환 역, 『매스커뮤니케이션 이론』, 나남, 1990.
- 언론중재위원회 조사연구팀 편, 『2000년도 연차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2001.
- 정태철, "제목 소비자의 증가와 신문제목의 이해도", 『한국언론학보』 33호, 1995.
- 존 L헌팅, 유재천 편역, 『언론윤리의 원칙과 실제』, 을유문화사, 1992.
- 최경진, "미디어 저널리즘의 자기관련성 : 독일신문의 미디어 자기보도를 통한 사례연구", 『언론과 사회』 9권 1호, 2000.
- 필립 패터슨, 리월킨스 역음, 장하용 역, 『언론윤리 : 이론과 실제』, 동서학술서적, 2000.
- 콘라드 핑크, 한국언론연구원 편역, 『언론윤리』, 한국언론연구원, 1995.
- 한국언론연구원, 『한국신문 평가 시스템』, 1997.
- _____, 『언론인 전문성 지수 연구』, 1998.
- 한국언론재단, 『언론인 전문화 교육』, 1999.
- _____, 『언론인의 직업윤리』, 2000.
- _____, 『수용자 의식조사』, 2000.

특 집

언론보도의 신뢰성과 전문성

언론의 취재원 사용관행과 기사의 신뢰도

-조직취재원과 익명취재원
사용관행을 중심으로-

이 동 근

조선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졸,
미국 Indiana University-Bloomington, School
of Journalism 졸업 (MA)
- 미국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Department of Journalism 졸업 (Ph.D.)
- 싱가포르 국립 난양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 교수
- 현 조선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I. 서론

기자는 시인이나 소설가처럼 창작 활동을 통해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다. 뉴스는 대부분 다른 사람, 즉 사건과 연관이 있는 취재원으로 하여금 그것에 관해 말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뉴스는 현실세계에서 발생한 어떤 사건에 관한 것이라기 보다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 혹은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누군가에 의해 말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까지 나올 정도이다.¹⁾ 그만큼 뉴스에서 취재원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이다. 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어떤 취재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기사는 매우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 그러면 기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취재원을 선택하게 되는가? 원칙적으로 기자의 취재원 선택 기준은 사건의 본질과 취재원과의 관련성 여부이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기자의 가장 중요한 취재원 선택 기준이 사건의 본질과 취재원과의 관련성 여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경제력이나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취재원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다 더 자주 뉴스기사에 등장하거나²⁾ 개인 취재원보다는 조직 취재원이 더 선호된다.³⁾ 또는 사건의 본질보다는 취재원이 얼마나 권위적으로 보이는지 여부, 취재원의 접근 가능성 (availability 혹은 accessibility), 취재원이 외견상 얼마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이는 지 여부 등 기자는 취재원 선택에 있어서 기능적인 면에서의 편의성에 더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자의 이런 점을 감안하여 때로는 취재원은 특별한 방법을 고안하여 자신이 제공한 정보를 기자가 손쉽게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자가 자신을 취재원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 1) Sigal, Leon., "Who?: Sources make the news," In Robert Manoff & Michael Schudson (Eds.) Reading The News, New York : Pantheon, 1987.
- 2) Gans, Herbert, Deciding What's News: A Study of CBS Evening News, NBC Nightly News, Newsweek and Time, New York: Pantheon Books, 1979.
- 3) Paletz, D. L. & Entman, R. M., Media, Power, Politics, New York: Free Press, 1981.

기자의 취재원 선택 기준은 사건의 본질과 취재원과의 관련성 여부에어야

지난 1998년 미국에서 가장 큰 두 언론인 조직인 미국신문편집인협회(The American Society of Newspaper Editors : ASNE)와 방송뉴스편집인재단(Radio and television News Directors Foundation : RTNDF)에서 발표한 언론인의 신뢰도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뉴스미디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⁴⁾ 미국인들의 언론에 대한 회의적 시각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언론의 익명취재원에 의한 보도에 대한 거부감으로 나타나고 있다. ASNE 조사대상자의 4분의 3 이상이 익명 취재원을 사용해 작성한 기사에 대해 신뢰성을 의심하고 있으며, RTNDF의 전화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9%가 언론보도에서 취재원 공개로 인해 취재원에게 위해가 가해지는 상황일 경우에만 취재원이 공개되지 말아야 한다고 대답했다.

기자의 취재활동이란 한마디로 취재원을 통한 정보획득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기자의 취재 활동과정, 즉 기자와 취재원과의 만남의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점들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취재원 중에는 기자에게 정보 제공은 하지만 자신을 밝히기를 원치 않는 경우가 있다. 그들은 대중에게 무엇인가를 알리기 위해 익명을 조건으로 기자에게 정보를 줌으로써 어떤 만족 또는 혜택을 얻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 혹은 취재원의 이름이 밝혀지게 되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신체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심지어 살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는 기자에게 준

정보를 취재원 자신에게 처음 주었던 사람으로부터 신임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염려에서 익명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기자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익명의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를 사용한 기사의 옳고 그름, 그리고 사실 여부를 밝혀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자가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은 취재원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생겨나는 언론의 신뢰도 실추의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독자들은 기자들이 전달해 주는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본 글에서는 언론의 취재원 선택 관행 중에서 조직 취재원과 익명 취재원 사용 관행에 따른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조직 취재원

일반적으로 언론기관은 개인 취재원(individual sources)보다는 조직 취재원(organizational sources)을 더 선호하는데 이는 취재원의 공신력 때문이다. 기자의 취재원 선택에 있어서 단지 취재원의 공신력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되고 원칙적으로는 취재원과 사건의 본질과의 관련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 취재원 선택기준이 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자에게는 취재원의 공신력이 취재원 선택의 매우 중요한 기준의 하나이다. 그리고 기자는 다른 기준들의 포기라는 대가를 치르고서 공신력이라는 취재원 선택의 기준을 택한다. 조

4) 정민, "TV든 신문이든 뉴스미디어에 회의적," 『신문과 방송』 338호(2월호), pp. 144~146, 1999.

직들은 매일 많은 양의 정보를 방출하는데 이 정보가 언론기관의 기본적인 필요, 즉 정규적으로 방출되는 신뢰할 만한 정보에 대한 필요를 잘 충족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이런 조직들은 정보를 수집하고 손질하고 배포하는 전문가들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기자의 입장에서도 조직에는 늘 상근 직원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취재원보다는 정보를 얻기가 훨씬 용이하다. 조직은 자신의 정보를 기자가 별도의 손질 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만드는 반면, 개인 취재원은 기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⁵⁾

그런데 언론이 개인보다 조직 취재원을 더 선호하는데 따르는 문제점은 그들이 기자들의 취재활동을 의도적으로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조직 취재원은 언론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기자의 시간을 독점함으로써 취재원과 상이한 관점을 지닌 경쟁적인 입장에 있는 취재원을 접할 기회를 기자로부터 박탈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조직 취재원이 마감시간 직전에 정보를 공개하면 기자로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정보를 기사화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이다.

언론이 개인보다는 조직 취재원을 선호하고 그 중에서도 정부기관과 같은 공적인 취재원(official sources)을 더 선호하는 것은 언론이 대외적으로 객관적인 뉴스기관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언론은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편향보도에 대한 비판이나 뉴스기사로 인한 명예훼손 등과 같은 골치 아픈 일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가능하면 '정확한' 정보를 다루기를 원한다. 그런데 기자가 정확성이나 객관성이라는 차원에서 불확실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게 되는데 정부기관과 같은 공신력이 있는 조직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는 실제로야 어땠든 일단 믿을만하고 일반인들도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언론기관으로서는 매력적인 정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기자가 정부관리나 경찰과 같은 공적인 취재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우선 인터뷰하기 쉽고, 공식적인 취재원이 개인 취재원보다는 더 중요한 것을 말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한다.⁶⁾ 한 조사에 의하면 언론인들은 공적 취재원이 말한 것이라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⁷⁾ 기자는 공적 취재원에 속한 인사와 인터뷰함으로써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특정개인에 집중할 수 있으며, 사실여부를 재차, 삼차 확인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기자들도 있다고 한다.⁸⁾

한편 이러한 공적인 취재원은 로비 활동이나 보도자료 등의 홍보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온갖 노력을 다한다. 또한 공적 취재원은 언론기관에 매일 매일

5) Seo, S. K., Source-press relationship: Major characteristics of sources which influence selection of sources in news coverage. Paper presented to the Newspaper Division, Association for Education in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AEJMC), Portland, OR., 1988.

6) Paletz, D. L. & Entman, R. M., Media, Power, Politics, New York: Free Press., 1981.

7) Gandy, O. H., Beyond agenda setting: Information subsidies and public policy, Norwood, NJ: Ablex, 1982.

8) Hackett, R. A., "A hierarchy of access: Aspects of source bias on Canadian TV news," Journalism Quarterly, 62: pp. 256-265, 277., 1985.

언론이 선호하는 조직 취재원은
기자들의 취재활동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어

뉴스거리를 공급하는 것 이외에도 자신들이 섭외한 특수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 언론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왜냐하면 힘있는 조직 취재원에 대항할 수 있는 개인 취재원은 특수분야의 전문가들인데 그들이 조직 취재원의 입장과 상치되는 발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 취재원으로서 이런 현상을 사전에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기자들은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은 일반 개인 취재원의 의견보다 기사화될 소지가 많다. 그러므로 이런 전문가 개인 취재원으로 하여금 조직 취재원의 견해에 반하는 발언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조직 취재원은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매월 일정액의 자문비를 지급한다든지 하여 어떤 식으로든 조직 취재원과 공적으로 인연을 맺도록 하여 힘있는 조직 취재원을 비판하지 못하도록 한다. 언론기관들은 결과적으로 이런 '어용' 전문가들을 자주 뉴스에 등장시켜 그들로 하여금 현 기득권 세력의 입장을 재확인시킨다.

물론 이런 대언론 홍보활동이 공적인 조직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고 다양한 규모의 이익집단들도 자신들의 주장이 언론에 반영되도록 홍보활동을 벌이지만 재정이 더 풍부하고 정가에 인맥이 넓고 조직력이 막강한 이익집단들이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집단들보다 훨씬 더 언론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또한 그런 조직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기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 조직에 출입하는 기자들에

게 기자실을 마련해 주고 전화나 기타 취재와 기사작성에 필요한 시설들을 갖추어 놓으며 연설문의 원고를 미리 기자들에게 제공한다는지, 기자회견을 의도적으로 마감시간 직전에 끝나게 한다든지, 기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언어와 기자들의 뉴스가치 기준에 맞추어 보도 자료를 작성한다든지⁹⁾ 하여 기자들이 힘 안 들이고도 그 조직에 관한 기사를 작성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III. 익명 취재원

언론이 익명 취재원을 사용하여 문제에 봉착하는 대신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사례로는 1973년 초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들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지의 Robert Woodward와 Carl Bernstein은 워터게이트 빌딩 도청장치 발견에 관한 기사에서 Deep Throat라는 익명취재원을 사용하였으나 그 기사가 문제시되기는 커녕 오히려 언론이 현직 대통령의 부도덕성을 부각시켜 임기 전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업적을 이루었다. 그러나 동 신문은 그로부터 수 년 뒤 언론 윤리의 측면에서 치명타를 입는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 1981년 동 신문사 기자인 Janet Cooke이 8살짜리 마약중독자에 관한 기획기사로 풀리처상을 수상했다가 뒤늦게 그것이 조작된 기사라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풀리처상을 반납한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언론의 익명취재원 사용이라는 관행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

9) Lee, D. G., Press Coverage of Interest Groups: News Values as Determinants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Ph.D. Dissertation, 1993.

었다. 이 사건 이후 워싱턴포스트지는 익명취재원을 사용하는 기사가 보도되는 경우 적어도 한 명 이상의 감독편집인이 그 익명취재원의 신분을 알아야 한다는 내규를 정했다.

언론보도에서 익명 취재원과 관련한 쟁점은 대개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언론보도의 신뢰도 문제이다.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일직선상의 과정으로 본다면 커뮤니케이션이란 다른 아닌 취재원과 수용자와의 만남이며 이 만남을 주선, 즉 중개(to mediate)하는 것이 바로 미디어(media)이다. 그러므로 커뮤니케이션 효과의 증감에 작용하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취재원의 질이다. 다시 말해 취재원에 대한 수용자의 태도가 바로 메시지의 효과인 셈이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언론 보도에서 취재원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는 것이다.

익명 취재원의 사용은 언론보도에서 신뢰도라는 쟁점을 야기한다. 중요한 정보의 구체적인 출처를 수용자들에게 제시하지 않는 것 자체가 언론의 신뢰도를 손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정보의 출처를 밝히는 것(attribution)이야말로 저널리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기자는 모든 정보를 보도를 목적으로(on the record) 수집해야 한다. 수용자가 그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처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만약 부득이한 이유로 취재원의 신상을 공개하지 못하는 경우 가능한 한 그 사람에 대한 밝힐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그 취재원이 익명으로 그 정보를 제공한 동기를

를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왜 그 취재원이 신상을 공개할 수 없는지를 기사에서 밝혀 그 이유를 수용자들과 공유해야 한다. 만약 그 이유가 적절치 않거나 충분치 않다면 기자는 그런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를 기사에서 인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정보는 익명 취재원에 의한 조작의 우려가 있고 그런 기사는 수용자들에게 잘못 전달될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신상을 공개할 때는 매우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다가도 익명을 전제로는 부정확하고 악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취재원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즉 익명 취재원은 누군가를 해코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언론보도에서 익명 취재원의 사용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또 다른 쟁점은 언제나 취재원이 공개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피치 못하게 취재원을 밝힐 수 없는 경우, 단지 기사의 형식적 완전성 문제로 인해 사회적으로 중대한 일이 공론에 붙여지지 못하는 것보다는 익명 취재원을 통해서라도 그런 일들이 국민에게 알려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현실적으로 익명 취재원 사용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수용자로부터 신뢰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익명 취재원의 사용을 썩 내켜하지 않는 실정이다. 미국의 한 조사연구¹⁰⁾에 의하면 조사대상 언론인의 87%가 현실적으로 익명 취재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지만 역시 81%가 익명 취재원이 실명보다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답했다.

10) Culbertson, Hugh M., "Leaks -- A Dilemma for Editors As Well As Officials", Journalism Quarterly, 55 : pp.402~408, 1980.

중요한 정보의 구체적인 출처를 제시하지 않는 것은
언론의 신뢰도를 손상시킬 수 있다

익명 취재원의 사용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는 취재원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취재원 보호는 취재원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자에게 사전에 익명을 전제로 취재에 응하는 경우와,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기자 스스로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등 둘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기자는 언론 윤리적 측면에서 반드시 취재원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취재원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기자들은 이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기자들은 그런 식으로 얻은 정보를 기사화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를 미끼로 다른 취재원의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혹은 비공개 요청이 나온 상황이 지난 다음 원래의 취재원에게 되돌아가 이제는 그 정보를 사용해도 되겠느냐고 타진해 보는 것이다.

한편, 익명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기사는 법정에서 판사가 정확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언론사나 기자 개인이 소송에 대항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기자나 언론사의 익명 취재원 사용은 언론사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소지가 있다. 언론사나 기자 개인이 언론보도로 인해 법정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 판사는 언론사나 기자에게 취재원을 공개할 것을 요구할 것이고 이를 거부할 경우 언론사나 기자의 주장을 더 이상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자가 자신의 기사로 인해 명예훼손으로 제소되어 재판이 열렸을 때 아무리 그 기사가 정확하다고 해도 판사가 취재원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기자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취재원이 끝내 공개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기자의 이름으로 민감한 사실이 기사화되고 기자가 명예훼손 소송이 걸릴 경우에는 취재원에게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즉, 기자는 취재원에게 최악의 경우 법정에서는 그의 이름을 밝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미리 설명해야 할 것이다. 만일 취재원이 끝내 이를 수락하지 않아 이러한 노력도 효과가 없으면 기자와 편집자와 변호사가 모여 앉아 대책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즉, 이와 유사한 다른 재판 결과를 검토해 본다든지, 위험부담을 안고 취재원을 인용하지 않은 채 기사를 작성하였을 때의 가치와 문제가 되었을 때의 대가를 저울질해 보아야 할 것이다. 최종 판단은 그 기사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보도할 가치가 있는가, 최악의 경우 기자는 명예훼손과 같은 결과를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는가 등에 관한 판단이 될 것이다.

한편 범죄보도의 경우 실명보도로 인한 취재원의 피해 가능성은 다른 어떤 보도상황보다 심각하다. 아직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이 마치 취재원을 범인 취급하며 신원을 밝히는 경우 그 당사자와 가족의 정신적 물리적 타격은 심각하다. 그런데 범죄보도와 관련해서 기자가 윤리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은 당사자가 공인이나 혹은 일반인이냐의 차이에 있을 것이다. 요컨대 공인의 범죄는 절대로 익명으로 보도할 수 없다는 주장은 그 설득력을 잃는다. 공인은 그 사회적 신분으로 인해 그의 행태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심대하기 때문에 공인의 범법행위에 관한 정보는 국민이 알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언론이 공인의 범법행위를 익명 보도하는 것은 국민의 알 필요성 (need to know)을 채우기 위한 언론의 알 권

리(right to know)라는 책무에 충실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보기 때문이다. 즉 일반적인 범죄 보도의 익명보도주의를 권력형 범죄보도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공인의 범죄와 피의자나 피해자의 신분에 아무런 사회적 의미가 없는 일반 형사사건은 구별해야 할 것이다.¹¹⁾

그러나 국민들이 반드시 알 필요성이 있는 사회적으로 중차대한 사건이 아닌 경우에도 언론은 관행처럼 단지 국민의 호기심(want to know)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익명 취재원을 사용하여 보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일부 기자들은 익명 취재원의 사용이 오히려 그 기사를 극적이고 흥미롭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비록 이런 불순한 저의가 숨어있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자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취재원의 신분을 밝히면서도 얼마든지 같은 정도의 중요도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기자의 게으름이 익명 취재원 남발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심지어 기자들 중에는 취재원에게 익명을 조건으로 내걸어 취재에 응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심각한 경우는 기자가 사실과 다르게 꾸며낸 이야기나 자기 자신의 생각을 익명 취재원으로부터 나온 것인 양 속이는 경우이다.

기자들은 취재원과 일종의 계약을 맺는 조건으로 그들로부터 정보를 캐내게 된다. 일단 익명을 보장해 주기로 취재원에게 약속했다면 그 비밀을 지키는데 혼란이 오지 않도록 기자는 몇 가지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익명

의 취재원은 보통 “비공개(off the record),” “귀속 없이(without attribution),” “배경 설명만(for background only),” “심층 배경설명(on deep background)”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기자에게 비밀을 요구한다. 그런데 기자와 익명의 취재원 사이에 매우 자주 사용되지만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이 바로 “비공개(off the record)”이다. 이는 의역하면 보도금지로서 “엠바고(embargo)”와 마찬가지로 효과이다. 엠바고는 시한부 보도 금지로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취재원은 제공된 정보가 기자에 의해 기사화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첫째, 보충 취재용 엠바고는 뉴스가치가 매우 높은 발표기사이면서도 전문적이고 복잡한 문제를 다루고 있을 때 취재 기자들과 취재원의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시한부 보도 중지이며, 두 번째로 조건부 엠바고는 뉴스가치가 있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확실히 예견할 수 있으나 정확한 시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기사화 한다는 조건으로 보도자료를 미리 제공하는 형태이며, 세 번째는 공공 이익을 위한 엠바고로서 국가 이익과 관련된, 혹은 인명과 사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시한부로 보도 중지를 하는 경우이고, 마지막으로 관례적 엠바고는 외교 관례를 존중하여 재외 공관장의 인사이동에 관한 소식을 주재국 정부가 ‘아그레망’을 부여할 때까지 보도를 보류하는 경우이다.¹²⁾

그런데 종종 취재원들은 “비공개(off the record)”요구를 앞에서 설명한 엠바고와 같은

11) 한국언론연구원, 『범죄 익명보도』, 1998.
12) 강명구, 『한국 저널리즘 이론』, 서울: 나남출판사, 1994.

일부 기자들은 익명 취재원의 사용이
오히려 극적이고 흥미롭게 보일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귀속 없이(without attribution)” 즉 취재원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보를 공개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십여 명의 기자가 모인 공개석상에서 취재원이 “비공개로(off the record)” 해달라고 하는 경우는 취재원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기자로서의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경우 취재원의 본래 의도는 “배경 설명만(for background only)”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공무원이나 정부밖에 있는 취재원들이 기자들을 불러 어떤 공공의 문제나 적어도 뉴스 가치가 있는 주제들에 대해 설명을 해 주면서 설명자 자신은 직접 그 정보의 출처로 인용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뜻이다.

그런데 고위 공직자가 소위 배경설명(background briefing)을 위해 기자들을 소집하는 경우 파생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정보 흘리기(leaks)이다. 이런 정보는 기자가 정상적인 채널로는 얻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보를 흘리는 주체는 대개 그 정보에 관한 사안의 이해 당사자인 경우가 많다. 특히 정부 관료나 단체의 피고용인들 중 자신이 소속된 단체에 불만이 있는 경우 특정 정보를 언론에 의도적으로 흘리게 된다.

익명을 요구하는 취재원과 기자와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정보 흘리기는 비밀을 고집하는 취재원에게 기자가 이용당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공식적인 통로를 통하지 않고 나온 “흘리기(leak)”라는 식의 정보는 취재원이 이런 저런 이유로 한 사람 또는 소수의 기자들에게 은밀히 정보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정보 유출자는 자신의 정체를 감춘 채 어떤 정보를 흘림으로써 무엇인가 목적 달성을 하려는 사람

일 경우도 있다. 특히 비공개 (off the record) 방식을 통한 정보 흘리기는 일단 취재원의 보호가 약속되므로 오보나 비난성 발언인 경우에도 취재원 자신의 책임이 면제되면서도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취재원의 언론 플레이라고 할 수 있다.

기자는 취재원의 신원을 결코 밝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정보가 익명 취재원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인상도 주지 않는 조건으로 정보를 얻기도 한다. 이 경우 기자는 취재원으로부터 단지 어떤 사실을 확인만 받고자 하는 것이고 추가적인 정보는 다른 취재원을 통해 얻겠다는 약속이다. 바로 워터게이트 사건을 촉발시킨 워싱턴포스트지 기자들이 최초의 정보 제보자인 Deep Throat와 맺은 약속에서 유래된 “심층 배경 설명(on deep background)”이 이에 해당된다. 워싱턴포스트의 Woodward 기자와 Bernstein 기자는 익명 취재원에게 그의 신원이나 직위를 아무에게도 밝히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나아가 그 제보자를 절대로 인용하지도 않겠다고 심지어 익명의 취재원으로도 쓰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들 사이에 오간 이야기는 다른 곳에서 알아 낸 정보를 확인하는데에만 그치겠으며 그렇지 않으면 다른 취재원으로부터 다른 관점을 덧붙인 정보를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대부분의 기자들은 “일시 보도금지(embargo)”라는 취재원과의 약속을 지킨다. 처음 취재상황 이후 시간이 경과한 후 취재원에게 혹시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는 취재원의 신원을 밝히고 보도해도 되는지(on the record) 확인한 후 만약 그렇다면 취재원의 신원을 밝힌다. 혹은 첫머리 기사(lead)에서 익명취재원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보도한 후 본문에서 다른

취재원이 이 정보를 받아 부연 설명하는 식으로 기사를 전개한다.

IV. 주요 언론사의 익명 취재원 관련 규정

많은 언론관련 단체들이 익명 취재원의 사용에 관해 규정을 정해 놓고 있다. AP통신사 편집부장협회(Associated Press Managing Editors Association: APME)의 언론자유 위원회(Freedom of Information Committee)는 편집인들에게 익명 취재원을 사용할 때 다음과 같이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즉 기자가 익명 취재원을 통해 정보를 얻어온 경우 그 기자를 취재원에게 돌려보내 보도를 조건으로(on the record) 할 것을 다시 요구하도록 지시한다. 이는 취재원으로 하여금 익명을 전제로는 그 정보를 보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경고하는 셈이 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취재원이 기자에게 어떤 정보를 알려주었을 때는 그는 그 정보가 기사화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취재원이 계속해서 익명을 요구할 경우 기자는 취재원에게 보도에서는 익명을 약속하지만 만약 그 기사로 인해 소송에 연루되어 법정에서 취재원의 신분을 공개해야 하는 경우에는 익명을 약속할 수 없음을 인지시켜야 한다. 만약 취재원이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할 수 없이 기자, 변호사, 편집인 등이 모여 익명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의 보도로 인해 법정 소송에 휘말릴 소지는 없는지 여부 등 다각도로 문제의 심각

성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결국 이 단계에서의 마지막 결정기준은 이 기사가 위험을 무릅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기사의 보도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결과에 대해 기자나 언론사는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가 일 것이다.

APME는 가능한 한 어떤 경우라도 취재원의 신원은 공개되어야 하고 취재원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신문편집인협회(American Society of Newspaper Editors: ASNE)도 취재원에게 비밀을 지키기로 한 약속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만약 이런 비밀을 지켜야 할 명백하고 절박한 필요가 없다면 취재원의 신원은 밝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3대 네트워크 방송사의 하나인 NBC는 익명 취재원의 사용은 공중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중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기자들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가능하면 그런 정보조차 “보도를 조건으로(on the record)” 얻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NBC는 기자가 취재원의 신원을 밝히려는 외부의 요구에 응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순전히 기자 개인의 결정이며 신원 공개를 거절했을 경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벌금, 구속 등 법적인 결과들은 개인이 져야하지만 NBC는 그 기자 개인을 법적으로나 언론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취재원의 신원 공개가 취재원의 안전에 위협이 될 때를 제외하고는 취재원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단 취재원의 신원을 보호해 주기로 합의하면 절대로 외부에 알려지지

미국신문편집인협회는 비밀을 지켜야 할 명백하고 절박한 필요가 없다면 취재원의 신원을 밝혀야 한다고 규정

않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동 신문은 기자가 익명 취재원으로부터 얻게 되는 정보를 보도하기로 수락하기 전에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그 취재원으로부터 그 정보를 보도를 전제로(on the record) 얻고자 노력하려고 권고하고 만약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취재원을 통해서 그 정보를 얻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익명 취재원을 사용하는 경우 완전한 신분공개는 아닐지라도 취재원에 관한 가능한 많은 정보(예를 들면, 소속 단체, 소속 부서, 직위 등)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한편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지는 기자가 취재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이 독자들에게 베풀 수 있는 최선의 서비스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익명 취재원으로부터의 정보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한다. 만약 익명 취재원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그 정보의 뉴스로서의 가치가 익명 취재원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고도 남을 정도여야 하며 반드시 그 정보의 진실성 여부를 다른 방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고 권고한다. 특히 익명 취재원을 사용할 때는 인콰이어러지가 개인이나 단체를 공격하는데 이용당하지 않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루이빌타임스 & 쿠리어지는 원칙적으로 익명 취재원의 사용은 부당하다고 단언한다. 특히 동 신문은 익명 취재원의 사용이 언론의 신뢰도에 손상을 입힐 수 있음을 경계한다. 익명 취재원의 사용으로 인해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익명 취재원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격을 당하는 측은 아무런 방어책이 없는 셈이라고 말한다. 익명 취재원은 만약 자신의 신

원이 공개되었다면 하지 못했을 말들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동 신문은 결코 이런 행위를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있다. 기자의 입장에서는 익명 취재원을 사용하지 않으면 결코 보도할 수 없는 사안도 있겠지만 항상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즉 취재원의 신원은 밝힐 수 없을 지라도 왜 밝힐 수 없는지 그 이유를 기사에서 언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만약 그 이유가 불충분하다면 절대 그런 정보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부득이 익명 취재원을 사용하여 보도해야 하는 경우 그 정보의 진실성을 다른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기자는 항상 감독 편집인(advising editor)과 상의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그리고 기사에서 익명 취재원이 어떤 개인이나 단체를 공개하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경우 공격당하는 측에게 반격의 기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익명 취재원과 관련하여 일시보도중지인 “엠바고(embargo)”와 “비공개(off the record)”는 엄격한 기준에 근거해 수용해야 하며 이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통신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엠바고와 비공개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편집자·취재기자의 동의 없이 취재원이 일방적으로 정한 경우, 내용이 명백하거나 취재원의 엠바고나 비공개 요청 전 기자가 직접 입수한 공문서 및 자료 등인 경우, 일반인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요청되거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에 요청되는 경우, 기자가 직접 목격한 경우, 현저하게 국익과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엠바고나 비공개를 요청한 취재원 이외의 다른 취재원으로부터 정보를 확인한 경우 등은

엠바고나 비공개 요청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규정한다.

V. 맺 음 말

기자의 취재원 선택 기준은 접근 가능성이나 그 이외의 기능적인 면에서의 편의성이어서는 안되며 사건의 본질과의 관련성 여부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언론은 개인 취재원보다는 조직 취재원을 더 선호하고, 조직 중에서도 정치적 영향력이나 경제력이 막강한 조직을 선호하며, 아예 기자들을 이런 곳에 배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언론이 이러한 정부기관이나 대기업 등과 같은 사회의 기득권 세력이 제공하는 정보를 선호하면 선호할수록 언론의 보도는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고 편향보도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뉴스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이야기되느냐에 따라 그 본질이 크게 훼손될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기자가 취재원의 선택에 있어서 사건 자체와 취재원과의 연관성보다 비본질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특정 취재원에 편중될 때 언론의 공정성이나 신뢰도의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한편, 기자는 취재활동에서 취재원들로 하여금 그가 알고 있는 중요한 사실을 실명으로 공개하도록(on the record)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노력이 취재원으로 하여금 공개를 허락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그렇게 됨으로써 그 사안은 정확하게 독자에게 알려질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취재원이 정보만 제공하고 자신이 정보제공자라는

사실이 밝혀지기를 원치 않을 때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가능한 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어야 하며, 때로는 그가 어떤 동기나 목적에서 그 말을 했는지도 알려 주어야 독자들이 그 정보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만일 분명한 출처를 밝히기 어렵다면 기자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기자는 그 취재원이 익명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동기를 알아야 하고 그것을 독자들에게도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길만이 증가 일로에 있는 익명 취재원 사용이라고 하는 언론의 신뢰도를 대가로 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관행을 막는 길이다. 공공의 이익에 직결되는 중차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익명 취재원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나, 익명 취재원이 정당화 될 수 있는 기준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기자들은 보다 더 노력하여 이왕이면 모든 취재를 보도를 전제로(on the record) 해야 할 것이다. 익명 취재원의 사용으로 인해 신뢰도에 상처를 입는 것은 취재원이 아니라 언론기관인 것이다. 기자들은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체보자에 대한 비밀을 지켜주는 조건을 받아들여려는 경향이 있으나, 오늘날 언론계에서는 너무 쉽게 취재원의 비밀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으며, 또한 적절한 취재원을 찾지 않고 편하게 취재하는 안이한 기자들이 스스로 기사를 만들어서 비밀 취재원을 사칭하여 보도를 할 가능성도 있다. 수용자는 이러한 익명취재원이 제공한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보도 자체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언론은 신뢰성 회복을 위하여 모든 정보를 취재원으로부터 공개 조건으로 얻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

기자는 취재원으로부터 그가 알고 있는
중요한 사실을 실명으로 공개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참고문헌>

- 강명구, 『한국 저널리즘 이론』, 서울: 나남출판사, 1994.
- 연합뉴스, 『연합뉴스 윤리현장 : 공정한 보도와 업무수행에 관한 준칙』
- 이동근, “언론의 공정성에 관한 연구 : 취재원과 언론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0집 제2호(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p. 75~90, 1999.
- 이재경·김진미, “한국신문기사의 취재원 사용관행 연구”, 『한국언론학연구』제2호: pp.160~181, 2000.
- 정민, “TV든 신문이든 뉴스미디어에 회의적.” 『신문과 방송』338호(2월호): pp.144~146, 1999.
- 한국언론연구원, 『범죄 익명보도』, 1998.
- Culbertson, Hugh M., “Leaks - A Dilemma for Editors As Well As Officials.” *Journalism Quarterly*, 55: 402~408, 1980.
- Gandy, O. H., *Beyond agenda setting: Information subsidies and public policy*. Norwood, NJ: Ablex, 1982.
- Gans, Herbert., *Deciding What's News: A Study of CBS Evening News, NBC Nightly News, Newsweek and Time*. New York: Pantheon Books, 1979.
- Goodwin, H. Eugene, *Groping for Ethics in Journalism*. Iowa State University Press, 1986.
- Hackett, R. A., “A hierarchy of access: Aspects of source bias on Canadian TV news.” *Journalism Quarterly*, 62: 256-265, 277, 1985.
- Lee, D. G., *Press Coverage of Interest Groups: News Values as Determinants*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Ph.D. Dissertation, 1993.
- Paletz, D. L. & Entman, R. M., *Media, Power, Politics*. New York: Free Press, 1981.
- Seo, S. K., *Source-press relationship: Major characteristics of sources which influence selection of sources in news coverage*. Paper presented to the Newspaper Division, Association for Education in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AEJMC), Portland, OR, 1988.
- Sigal, Leon, “Who?: Sources make the news.” In Robert Manoff & Michael Schudson (Eds.) *Reading The News*. New York: Pantheon, 1987.

특 집

언론보도의 신뢰성과 전문성

전문기자제 도입 현황과 평가

I. 들어가는 말

언론개혁의 목소리가 드높다. 언론이 변하고 개혁되어야 한다는 문제제기는 어제, 오늘의 담론은 아니건만 언론개혁이라는 화두를 두고 언론계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와 언론 길들이기와 언론탄압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금 주로 이야기되고 있는 언론개혁의 담론은 불투명한 신문 경영, 불공정한 시장판매질서와 여론독과점 문제 등에 무게 중심이 주어지고 그런 점에서 언론개혁 논의가 세무조사나 신문고시, 신문소유의 문제 등 거대 담론화하는 경향이 있다.

언론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은 우리 언론이 이른바 제4부로서의 언론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 채 스스로 권력화하고 자사이기주의의 덩에 발목을 잡힌 가운데 독자의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최근 전개되고 있는 언론개혁 논의가 언론계의 내홍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우리나라 언론의 위상 정립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논의로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이러한 언론개혁 논의와 더불어 우리들이 진정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는 우리 언론이 어떻게 하면 전문성을 높이고 저널리즘 본연의 기능을 회복함으로써 상실해 버린 독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 받는 언론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라 생각된다.

하루 100만부 남짓을 발행하는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가 세계의 권위지로 인정받고 있는 반면 2배 이상의 발행 부수를 자랑하는 우리 나라의 신문들이 독자들의 신뢰를 상실하고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언론과 언론인이 독자의 신뢰를 상실한 가장 큰 원인은 전문성 부재에서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언론 또는 언론인의 전문성 부재가 과거 어느 때 보다도 크게 부각된 것은 우리 사회가 총체적으로 겪었던 IMF체제 이후의 일이다. 1차적으로 언

김 덕 모

호남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겸 동 대학원 석·박사
- 한국언론연구원 연구위원
- 미국 클리블랜드대학 객원연구위원
- 광주전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
- 광주MBC 시청자위원 역임
- 현 호남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우리 언론과 언론인이 독자의 신뢰를 상실한 가장 큰 원인은 전문성 부재

론에 요구되는 환경감시나 사실보도의 기능 그것을 근거로 한 미래 예측이나 사회적 위험에 대한 경고 기능에서 낙제점을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IMF 사태에 대한 언론 보도와 관련 극명하게 제기됐지만 우리 언론의 전문성 문제가 비단 IMF 사태 보도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그동안 우리 언론은 크고 작은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이를테면 남북문제가 생기면 남북문제 전문기자의 부재로, 군사문제와 관련해서는 군사문제 전문기자의 부재로, 환경문제는 환경문제 전문기자 부재로, 올림픽과 같은 대형 스포츠와 관련해서는 스포츠 전문기자의 부재로 사안이 터질 때마다 전문성이 없다는 질책을 따깝게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우리 언론보도의 신뢰성 위기는 90년대 접어들면서 격증하고 있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언론보도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극명하게 증명해 준다. 혹자는 우리 언론이 1987년 이후 정치상황의 변화에 따라 급격한 양적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빚어진 필연적인 결과로 치부해 버리지만 오늘날 우리 언론에 요구되는 중요한 명제가 전문성임을 감안하면 전문성 상실에 의한 언론의 신뢰도 저하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하겠다.

흔히 언론은 우리들이 세상을 내다보는 창문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말한다. 세상은 시시각각 변하고 전문화, 세분화 해 가는데 우리 언론만 뒷짐을 지고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 언론이 비취주는 세상은 굴절되고 오도된 모습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들이 세

상을 내다보는 창문의 역할을 수행하는 우리 언론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독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언론과 기자들의 전문성의 제고에 보다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 글에서는 우리 언론의 전문성 제고와 관련 1992년 중앙, 조선에 의해 도입되고 1994년 중앙일보에 의해 본격화된 전문기자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전문기자제 정착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보자 한다.

II. 전문기자제의 도입 필요성과 배경

우리 나라에서 전문기자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1968년 임방현의 '전문기자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글에서 임방현은 당시 우리나라 언론과 언론인들이 곁핍기 식의 사건보도에 치우친 나머지 깊이 있는 해설이나 적절한 가치평가를 하지 못하여 언론이 해야 할 사회지도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하고 있다.

임방현에 의하면 신문이나 기사는 사회발전의 방향을 선도적으로 파악하고 사회현실을 전향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지도기능을 발휘해야 하는데 당시 우리 언론은 우리 사회 현실을 개선하는데 이렇다할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생산적인 작용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전문기자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¹⁾

1) 임방현, "전문기자론", 『신문과 방송』, 1968년 겨울호, p.24.

즉 신문과 신문기자가 분업화, 전문화하는 현실을 따라 잡아야 하며 전문적인 식견을 가질 때에 비로소 책임 있는 보도와 책임 있는 비판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기에 전문기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의 요체이다.

임방현 외에도 차배근 교수가 1980년 '기자의 전문화 교육'이라는 글을 통해, 언론인의 전문화는 시대적 요청이며, 언론인에게 필요한 자질은 박학다식이 아니라 깊이 있는 전문 지식의 토대 위에 올바른 판단과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전문인의 자세임을 강조했다.

1983년 손광식 씨 역시 마스크업이 경쟁매체와 폭로주의 선정주의 등 저질화 경향으로 위기에 봉착했음을 지적하고, 마스크업을 다시 활력 있게 만들려면 고도로 지적 무장이 된 기자들이 등장해서 새로운 자극을 줘야 하며 이러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문기자제라는 것이다.²⁾

1980년대 중반 이후 언론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전문기자의 필요성과 언론인 전문화 교육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이처럼 1960년대 후반에 이미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전문기자제가 제도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 언론계에 도입된 것은 1992년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에 의해서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중앙일보는 의학, 물리학 전공의 전문기자 2명을 공채 했으며, 조선일보는 과학, 기술, 의학, 환경, 국제경제 등 4개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미래의 대기자 6명을 선발하였다.³⁾

이와 같은 전문기자제 도입에 대한 언론인들의 태도는 94년 4월 방송개발원이 방송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95%가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방송인의식조사, 1994) 또한 97년 한국언론연구원이 실시한 전국기자 직업의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96.3%의 기자들이 전문기자제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⁴⁾ 한편, 이러한 전문기자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1998년 KBS 보도국 기자 193명 중 157명인 81.3%가 찬성하였으며, 이듬해인 1999년 조사에서는 72명 가운데 64명, 88.8%가 찬성하여 전문기자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⁵⁾

우리 나라 언론계가 전문기자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으로는 여러 가지 원인을 꼽을 수 있다. 첫째, 우리 나라 언론환경의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1987년 6.29 선언 이후 많은 신생 언론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신문사간의 카르텔 체제가 해체되면서 증면 경쟁 등 신문사간의 경쟁이 무한경쟁으로 치달으면서 양적 팽창에 걸 맞는 질적 성장이 요청되었고 그러한 가운데서 언론의 전문화가 긴요한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오보 등 부정확한 보도에 의한 피해를 시정하기 위해 중재신청을 한 건수가 90년대 이후 폭증하고 있음도 당시 우리 나라 언론의 전문성에 문제가 있음을 반증한다.

둘째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

2) 이재경, "전문기자제 현실과 과제", 『전문기자』(서울: 한국언론연구원), 1994, pp.40-41.

3) 천원주, "전문기자제 대기자제 도입현황", 『신문과 방송』, 1994년 7월호, p.41.

4) 한국언론연구원, 『언론인의 책임과 윤리』, 1997.

5) 이준안, "방송사 대기자 현황과 전망", 『방송문화』, 2001년 3월호, p.19.

언론사간 심화되는 경쟁에서 뉴스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권위를 높이는 방안의 하나로 전문기자제도의 도입 필요성 제기

환경의 세분화, 전문화에 대응하는 노력의 측면에서 찾고자 하는 시도가 있다. 신문사나 방송사가 새롭게 부상하는 분야에 대한 보도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했다는 것이다. 중앙일보가 전문기자제를 도입할 당시 금창태 상무이사 겸 신문본부장은 <신문과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문기자제는 UR, GR, NAFTA, WTO 등 국제적인 문제와 환경문제 등 전문성을 요하는 사안에 대한 독자들의 전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며 그 도입배경을 전문성 확보에서 찾은 바 있다. 이것은 1992년 전문기자제를 도입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과학기술, 의학, 국제정세 등의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기자를 선발한 것으로도 짐작 가능하다.

셋째는 전문직으로서의 기자직이 갖는 속성과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자직이라는 직업 자체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또 제대로 기능하는 언론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독자적인 비전과 분석력 그리고 의견을 갖출 필요가 있고 경영으로부터의 압력에도 맞설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⁶⁾

한편, 방송계가 전문기자 대기자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내부반성과 일선기자들의 욕구에서 기인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첫째는 사회 전반이 세분화 전문화되고 있는데 반해 기자만 전문화 노력 없이 제너럴리스트에 머무르고 있다는 자성의 측면에서이다. 둘째는 출입처나 관급기사에 의존하고 심층적인 뉴스보다는 표피적인 현상만을 보도하는 데 안주하는 것

에 대한 반성의 측면이다. 셋째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데스크로 물러 앉아 오히려 전문성을 소진하는 것과 보직을 두고 벌어지는 내부갈등을 해결하는 차원에서의 전문기자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보다 바람직한 도입배경으로는 언론사간 심화되는 경쟁에서 뉴스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권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전문기자 대기자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전문기자 대기자 제도는 뉴스 프로그램의 차별화와 특화를 통한 뉴스개념의 변화를 가져오고 방송사 취재조직과 운영체계를 중앙집권적 행정 중심적인 체계에서 일 중심 조직체계로 변화시키고 국장급이나 부장급 전문기자가 현장에서 기자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⁷⁾

III. 전문기자 도입현황

1. 전문기자에 대한 개념규정

우리 나라 언론의 전문기자 도입현황을 살펴 보기에 앞서 우선 전문기자란 무엇인가? 그 개념을 규정해 볼 필요가 있다. 전문기자라는 개념은 전문직이 무엇인가의 개념과의 상호연계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문직(professionalism)이란 전문화(specialization)를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은 전문직으로서 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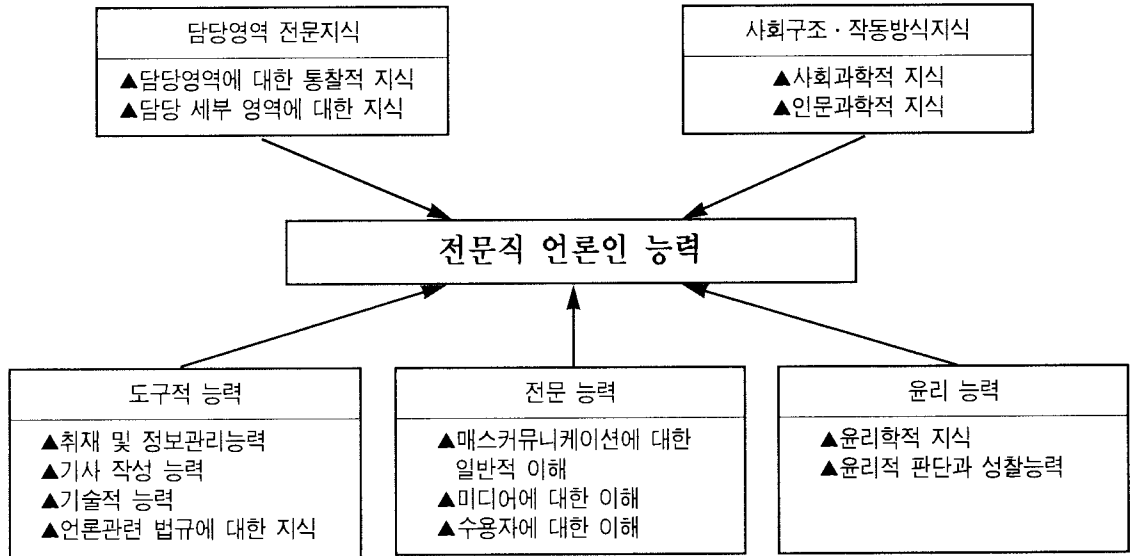
6) 이재경, 앞의 글, p.46.

7) 이준안, 앞의 글, p.18.

론적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능력을 일별하면 확연하게 드러난다. 김영옥은 전문적으로서 언론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능력으로 '담당분야 전문지식', '사회구조와 작동방식에 대한 지식', '도구적 능력', '전문능력', '윤리 능력'의 다섯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한다.⁸⁾ 물론 모든 언론인이 이에 제시된 모든 요소를 다 겸비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어쨌든 이와 같은 김영옥의 개념은 현실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규범적이고 이상적인

모델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언론인은 복합적인 사회 현상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적절하게 전달해야 하며, 세분화 전문화되고 있는 현대사회를 설명하기 위 해서는 일반상식을 뛰어 넘는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둘째, 우리 사회의 작동원리에 대한 사회과학적이고도 인문학적인 통찰력을 지녀야 하며, 셋째, 언론인으로서의 작업수행에 필요한 취재와 기사 쓰기 등의 실무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넷째, 자

〈그림 1〉 전문직으로서의 언론인의 능력



성격의 능력이 한 능력의 범주에 포함되거나 비슷한 성격의 능력이 다른 범주로 구분되는 등 다소 혼란스러운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김영옥, 1999년, p.36. 재인용

8) 김영옥, 『언론인 전문화 교육』(서울: 한국언론재단), 1999, p.35.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전문기자제는 언론이라는 전문직이 요구하는 한 요소로서의 전문성과 특화된 영역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

신의 활동영역인 매스커뮤니케이션 분야와 미디어 그리고 수용자에 대한 이해, 다섯째, 윤리학적 지식과 윤리적 판단과 성찰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언론직은 전문직의 범주에서 논의될 수 있으나 최근 우리 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문기자제는 이와 같은 포괄적인 개념에서보다는 언론직이라는 전문직이 요구하는 한 요소로서의 전문성, 예를 들어 취재, 기사 쓰기 등을 포함한 저널리스트적 전문지식과 동시에 특화된 자기의 보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

즉 현실적 관점에서 언론사에 종사하는 기자들은 모두 특정 사안을 취재해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또한 정치, 경제, 문화 등 세분화된 영역을 맡는다. 따라서 기자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자연과학, 문화, 기계공학, 교통과 건설, 행정과 사회복지, 환경 등 담당영역 및 인접영역에 대한 비교적 광범위한 통찰적 지식과 더불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영역 중 한 두 개 분야의 세부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소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 전문기자제 도입 현황

우리 나라 언론에서 전문기자 충원양식은 내부형과 외부형을 들 수 있다. 첫째, 내부형이란 일반기자로 채용되어 경력을 쌓은 기자 가운데 적임자를 찾아 전문기자로 발령을 내는 경우이다. 둘째 외부형이란 특정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을 외부에서 기자로 채용하여 일정기간의 훈련과정을 거치는 방식을

의미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전문기자 채용 방식은 대체로 외부의 전문가를 발탁하여 일정기간의 훈련을 거치는 외부형이 주조를 이룬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와 같이 기존의 신문사에서 전문기자 요원을 스카웃하는 채용방식이 또 하나의 대안으로 최근에 거론된 바 있다.

이처럼 외부의 전문인력을 전문기자로 채용하는 방식은 1992년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처음으로 전문기자를 채용할 때부터 채택된 방식이다. 외부의 특정분야 전문가를 기자로 채용하는 경우 정체성의 확립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즉 전문기자가 특정분야의 전문가인 가 아니면 기자인가 하는 물음이다. 왜냐하면 전문기자란 “자기 분야 전문가에게 인정받을 만한 전문지식을 활용해 그 분야의 관련 사안에 대해 정확하고 필요한 정보를 매체 특성에 맞게 보도하는 기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기자에게는 전문지식에 더하여 기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윤리 또는 자세를 가질 것이 요청된다 하겠다. 그러나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경우 오랜 훈련을 통해 취득 가능한 전문직으로서 기자직이 요구하는 품성과 소양을 갖추지 못한 문제점이 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서 채택된 외부 전문가 영입에 의한 전문기자 도입 실태와 현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992년 중앙일보는 의학과 물리학 전공자 1명을 선발해 전문기자로 채용했고, 조선일보는 국제경제분야 2명을 비롯해 과학과 기술, 의학, 환경분야 1명씩 모두 6명을 전문기자로 임용했다. 1993년에는 중앙일보가 국제분야 등에서 전문기

자 3명을 더 채용하였다.⁹⁾ 이러한 전문기자 선발이 갖는 의미에 대해 당시 조선일보는 사고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대기자는 전문성의 발휘에서 탄생할 것”이라며 “전문기자는 해당 분야의 취재, 보도를 10년이건 20년이건 계속해서 전담케 할 것”이라며 전문기자 발탁의 중요성과 전문기자제 운용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밝혔다.

전문기자 도입에 있어 또 한 번의 바람은 1994년 중앙일보에 의해서였다. 1992년 3명의 전문기자를 공채 했던 중앙일보는 1994년 6월 대기자 선발이라는 명칭으로 15명의 전문기자를 공채 했다. 국장급, 부장급, 평기자급, 계약직, 등의 형식으로 채용된 이들 전문기자들은 전문기자 수당, 연구개발비 등을 별도로 지급 받고 담당분야의 학술활동 및 연수기회의 부

〈표 1〉 1994년 전문기자 현황과 2000년 10월 현재 전문기자 현황

신문	숫자	분야(1994)	숫자	분야(2000)
경향신문			1(전문위원)	문화(1)
세계일보			4(전문위원)	문화(3), 국제(1)
조선일보	4	국제경제(2), 기술(1), 의학(1)	4	의학(1), 경제(1), 문화(1), 환경(1)
중앙일보	21	교육(1), 경제(2), 도시공학(1), 러시아(1), 여성(1), 군사(1), 외교(2), 의료(1), 뉴미디어(1), 음악(1), 환경(1), 교육(1), 철학(2), 정치(1), 바둑(1), 미술(1), 종교(1), 영화(1), 여론조사(1)	19	국제(1), 교통(1), 경제(1), 정치(1), 바둑(1), 여론조사(1), 외교(1), 의학(2), 음악(1), 환경(1), 식품의학(1), 뉴미디어(1), 교육(1), 부동산(1), 군사(1), 학술(1), 통일문제(1)
한국경제			4(전문위원)	경제(1), 국제경제(1), 경영(1), 벤처(1)
MBC			2	의학(1), 정보통신(1)
SBS			2	기상(1), 의학(1)
계	25		36	

출처 : 한국언론재단(2000), 『한국의 전문기자』, p.51. 재인용.

9) 이재경, 앞의 글, p.48.

우리 나라 언론사의 전문기자의 수는 기자 인력의
절반 이상이 전문기자라 칭해도 무방하다는
미국 언론 현실과 큰 차이를 보여

여와 자율적인 출퇴근 및 사회활동 등 파격적인 대우를 보장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려 485명이 응시한 당시의 공채에 장관급, 군장성, 정년퇴직 교수, 신문사 현직 중역, 대학교수, 평론가 등의 전문인력이 몰려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¹⁰⁾

오수정은 『한국의 전문기자- 실태와 과제』라는 연구를 통해 우리 나라에서 전문기자를 대대적으로 모집하기 시작한 1994년과 2000년 현재의 전문기자 현황을 비교하였다(표 1 참조). 이 조사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전문기자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4년 25명에서 6년이 지난 2000년 현재 36명으로 11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기자제를 채택한 언론사도 1999년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두 개 신문사에서 2000년 현재 경향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 MBC, SBS 등으로 중앙지 2개사, 경제지 1개사, 방송 2개사까지 전문기자제를 도입 7개사로 늘어난 큰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중앙일간지와 경제지, 방송3사의 편집보도국 총인원에 대비한 전문기자의 비율은 1992년 0.2%에서 2000년 현재 0.8%로 증가하기는 했지만 기자 100명당 1명도 안 되는 수였다고 평가했다.¹¹⁾

물론 전문기자의 타이틀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대내외적으로 전문기자로서 평가받을 만한 기자들이 없지 않겠지만 어쨌든 우리 나라 언론사의 전문기자 수는 기자인력의 절반 이상이 전문기자라는 칭함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미국의 우수 언론의 현실과는 너무나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 보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나라의 전문기자제 도입의 성과를 논하는 것은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은 아니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전문기자제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따지기에 앞서 왜 우리 나라의 언론 풍토에서는 전문기자제가 정착하기 어려운 지 그 조건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III. 전문기자 정착의 장애 요인

우리 나라에서 전문기자제가 정착하기 어려운 문제점으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인사관행의 폐쇄성을 들 수 있다. 개인의 능력보다는 연공서열이 강조되는 풍토 속에서 보직 없이 전문기자가 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전문성이 없거나 무능한 기자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전문기자제의 정착은 어려운 현실이다.

“일반 기자로 열심히 해서 20~30년 있으면 차장, 부장, 국장 이렇게 돼서 신문사에서 영향력 있게 오래 있을 수 있는데 전문기자로 지원하면 이런 길을 갈 수 없다. 더구나 독자도 인정을 안해 주고 자기 일에도 흥미가 없다면 문제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확실한 자리 매김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안되면 윗사람 눈치를 봐야 한다. 이런 불안감을 회사가 해소해 줘야 한다.”

10) 천원주, “전문기자제 대기자제 도입현황”, 『신문과 방송』, 1994년 7월호, pp.42-43.

11) 오수정, 『한국의 전문기자』(서울: 한국언론재단), 2000, p.52.

둘째, 출입처 제도의 문제이다. 아직도 대부분의 뉴스를 출입처에서 공급받고 있는 현실에서 출입처를 갖고 있지 않는 전문기자가 뉴스소스를 얻는데 큰 제약이 따른다는 점이다. 물론 전문기자는 고정 출입처 없이 문제의 사안에 따라 각 출입처를 찾아 갈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기자단에 의해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출입처 제도의 장벽에 막힐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출입처 제도와 관련 일반 기자가 전문기자로 성장하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잦은 출입처의 이동이 문제라는 것이다.

“전문기자제가 안 되는 이유는 관행적 시스템으로 출입처를 자주 바꾸고 부서를 자주 돌리는 시스템 때문이다.”

셋째, 선후배 관계가 엄격하고 동기의식이 각별한 기자사회의 배타성을 들 수 있다. 전문기자제를 도입할 당시 금창태 중앙일보 상무는 “기존 기자들의 견제는 전문기자제 정착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천원주가 전문기자 도입 5년을 평가한 글에서 인용한 한 전문기자도 이 점을 전문기자제 정착의 장애 요인으로 꼽고 있다.

“폐쇄적인 조직 속에서의 융화가 쉽지 않다. 특히 연령상 중고참이 될 경우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언론인이라는 게 상당히 배타적이다. 우리는 소외된 별똥부대라는 의식을 다 갖고 있다.”

“외부영입기자의 경우 정착이 어렵다. 기자사회가 회로애락을 같이 한 정적 구조로 형성되어 있어서, 돌연변이가 끼었을 때 긴 적응기간이 필요하다.”

넷째, 회사의 준비 부족과 성급한 기대가 전문기자제 정착의 장애 요인일 수 있다. 중앙일보를 제외한 여타 신문의 전문기자제가 유명 무실해 지고 있는 것과 관련 전문기자들은 회사가 전문기자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며 어떤 역할을 맡길 지에 대한 준비된 방침이 없을 것을 전문기자제 정착의 장애 요인으로 꼽았다.

“깊이 있는 기사를 기대하는 회사측 요구와 마감시간 사이에서 수없이 고민한다. 회사는 전문기자를 뽑아만 냈지, 어떤 규정과 체계를 가지고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게 만들 지에 대한 준비는 돼 있지 않다. 취재관행은 그대로인데 전문기자 개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니 전문기자의 능력이 온전히 발휘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다섯째, 외부에서 채용된 전문기자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일선기자의 시각도 전문기자제 정착의 심리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부서에서 5년 이상만 근무하면 누구 못지 않게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질 수 있다. 박사급 전문기자는 자신의 분야에서는 전문가인지 모르지만 뉴스를 독자의 구미에 맞게 요리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목소리들을 종합하여 우리 나라에서 전문기자제가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를 종합해 보면 경영측의 협량, 기자직 자체의 소시민화, 언론기관의 관료화에 의한 조직 논리의 득세, 한국특유의 직책중심의 인사문화, 편집국 내의 무원칙한 순환근무 관행, 수습기자 공채방식에서 유래하는 기수 이기주의의 폐해 등을 들 수 있다.¹²⁾

12) 이재경, 앞의 글, pp.46-47.

인사관행의 폐쇄성, 출입처 제도, 언론기관의 배타성 등이 전문기자제 정착을 어렵게 만들어

〈표 2〉 전문기자제 실시의 장애요인

문화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기관의 관료화에 의한 조직논리의 지배 • 한국특유의 직책중심 인사문화로 경험 많은 평기자 존재의 어려움 • 기자직의 샐러리맨화와 소시민화 • 수습기자 공채방식에서 오는 기수 이기주의
경영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자의 안목 부족 • 전문기자제 도입에 따른 인력비용 감당여지 부재 • 전문지보다 종합지를 지향하는 무개성주의 • 전문기자제 정착까지의 리더쉽 부재
취재관행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처 고정출입제의 배타성 • 편집국내의 무원칙한 순환근무관행 • 불철저한 기사쓰기 관행 • 개성있는 인재양성에 인색한 편집국 분위기

출처 : 이재경, "전문기자제 현실과 과제", 1994, p.47 재인용

IV. 전문기자제 정착 방안

흔히 저널리즘의 본령은 객관보도와 공정 보도라고 말해진다. 그러나 지금 우리 언론에 게 요청되는 것은 사실보도를 넘은 진실보도라 할 수 있다. 이재경 교수는 사실보도를 뛰어 넘는 진실보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언론이 사실을 보도하는 것으로 족했던 시대가지나고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 시대의 도래에 따라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 사안을 심층보도 할 수 있는 전문기자의 역할이 미국 언론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했다.

전문기자는 속보성을 중시하는 일반기자와

는 달리 하나의 사안에 대한 심층해설과 평가, 예측 및 전망 보도를 통해 지면의 깊이를 더해 주고 자신의 특장인 전문성을 발휘함으로써 독자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급격한 변화와 전문화 양상을 보이는 사회환경 변화 속에서 세계경제, 환경문제 등 보다 전문성을 요하는 사안에 대한 독자들의 전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입된 전문기자제의 정착 방안은 무엇인가? 1960년대 후반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여 1980년대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1992년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에 의해 도입되기 시작하여 7개의 언론사가 채택 운용하고 있는 한국의 전문기자제의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 어떤 방안과 대

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인가?

우선 전문기자가 갖는 장점에 대한 확실한 인식제고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전문기자의 육성이 지금 우리 언론이 안고 있는 개혁의 근본과제의 하나인 저널리즘 본령의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언론이 안고 있는 위기는 무엇보다도 언론과 언론인이 독자의 신뢰를 상실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2000년 한국언론재단이 전국의 신문독자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자의 자질에 대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이 이를 반증한다. 1998년에 비해 평가가 낮아진 부분은 '사실을 확인하고 난 후에 기사를 쓴다'는 부분과 '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항목이었다.¹³⁾

따라서 우리 언론이 독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차원에서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전문기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확고한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전문기자제가 사세과시용의 액세서리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 나라 언론계에 전문기자제가 활성화되고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

오수정은 전문기자제 개선방안과 관련 경영인의 역할, 인사·교육정책의 변화, 전문기자 양성방안의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¹⁴⁾

첫째, 언론사 사주는 전문기자제가 우리 언

론의 고품질화를 통해 독자의 신뢰를 이끌고 타 언론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 제도에 대한 비전에 구성원이 동참할 수 있도록 리더쉽을 발휘하고 이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일정 기간 배려와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하고 있다.

둘째, 전문기자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인사정책, 보상정책, 교육정책 등에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전문기자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잦은 인사이동을 탈피하고, 기자채용방식도 기수별로 수습기자로 뽑는 것을 탈피하여 상시채용과 경력기자 스카우트를 병행하는 채용방식의 변화를 도모하고, 전문기자 교육방식의 변화와 지면기여도에 따른 보상체계의 정립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전문기자 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즉, 아직까지 일반기자가 전문기자를 지원하는 것은 모험이라는 점을 감안, 일단 전문기자를 택한 내부의 일반기자에게는 그들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그 분야의 취재를 맡기고 재량권을 주고 지원을 해주어 모험이 확신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전문기자 문제는 일차적으로 기자직의 전문화라는 방향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즉 전문기자는 특정분야의 전문지식에 더하여 전문직으로서 기자직이 요구하는 기본적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는 명제는 여전히 소중한 교훈이라는 것이다.

이재경은 전문기자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13) 이종경, "제10회 미디어의 영향과 신뢰도 조사", 『신문과 방송』, 2000년 10월호, p.27.

14) 오수정, 앞의 책, pp. 114-128.

전문기자제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기자제가 언론의 신뢰 회복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유가 전제돼야

기자들과 경영진 그리고 언론지원기관 모두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제도적 측면, 취재측면, 교육측면에서의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¹⁵⁾

첫째, 제도적 측면의 개선 방향으로 ▶공채 중심의 단선적인 언론사 인사제도의 다층적인 개선, ▶신입사원 채용의 다양화, ▶전문기자를 위한 장기경력관리모델 제시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둘째, 취재측면에서 전문기자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현행출입처제도 운용의 개방화 ▶전문기자의 영역과 활동반경확보 ▶전문기자와 일반기자의 업무협조를 위한 장치마련 ▶기사유형의 다양화를 통한 새로운 글쓰기 방식 장려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셋째, 교육측면에서는 ▶국내, 해외 기자연수의 내실화 ▶특색 있는 중,장기 전문화 교육과정 개설을 그 대안으로 상정한 바 있다.

전문기자제의 착근과 정착을 위한 오수정과 이재경의 대안은 대단히 설득력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특히 전문기자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기자제가 우리 언론의 신뢰회복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V. 맺음말

최근 우리 언론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언론의 존재 가치를 확인시켜 줄 대상인

독자와 시청자로부터 신뢰감을 상실하고 외면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언론이 오늘 독자의 사랑을 잃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은 언론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데서 오는 당연한 귀결이다. 그 동안 우리들이 세상을 내다보는 창문의 역할을 해야 할 우리 언론은 진실된 세상을 보여 주기 위해 창문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은 게을리 한 채 창틀 키우기에만 몰두해 온 경향이 있었다. 이전투구의 무한 경쟁 속에 외형 부풀리기에만 집착한 채 질적 성장이라는 내실을 다지는 일에는 소홀히 해 왔다.

이제 한국언론의 위기의 현장에서 우리 언론은 깊은 자성과 성찰 속에 저널리즘의 본령을 회복하는 노력에 박차를 기울여야 한다. 객관보도와 공정정보를 넘어 진실 보도가 요구되는 지금 우리 언론은 이를 위한 전문성 제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세계 우수 언론이 급변하는 환경 변화와 세분화 전문화하는 세상의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 운영하는 전문기자제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우리 나라의 전문기자제가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차별화 전략과 회사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시도됐다는 지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기자제 시도 자체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제 걸음마 단계로 그 정착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지만 전문기자제의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 제기됐던 대안적 아이디어들을 교훈 삼고 지난 9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 나라에도 전문기자제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

15) 이재경, 앞의 글, pp.50-57.

그리하여 종가집의 해묵은 장맛이 머느리 음식 솜씨의 비결인 것처럼 독자의 신뢰받는 언론보도의 원천이 곧 10년이고 20년이고 특정분야에 관심을 갖고 전문성을 키운 전문 기자라는 평가를 받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 표현함으로 존재가치가 발현되는 우리 언론이 저널리즘 본령을 회복하여 독자의 신뢰와 사랑을 받음으로 더욱 빛나는 그런 언론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해 본다. □

〈참고문헌〉

- 김덕모, “미국의 전문기자”, 『신문과 방송』, 1994년 12월호.
- 김성우, “방송사 전문기자 발전방안”, 『방송문화』, 2001년 3월호.
- 김영옥, 『언론인 전문화 교육』, 한국언론재단, 1999.
- 서정우, 『언론인의 전문성 제고 방안』, 한국언론연구원, 1997.
- _____, 『언론인 전문성지수 연구』, 한국언론연구원, 1998.
- 오수정, 『한국의 전문기자』, 한국언론재단, 2000.
- 이재경, “전문기자제 현실과 과제”, 『전문기자』, 한국언론연구원, 1994.
- 이종경, “제10회 미디어의 영향과 신뢰도 조사”, 『신문과 방송』, 2000년 10월호.
- 이준안, “방송사 대기자 현황과 전망”, 『방송문화』, 2001년 3월호.
- 임방현, “전문기자론”, 『신문과 방송』, 1968년 겨울호.
- 천원주, “전문기자제 대기자제 도입현황”, 『신문과 방송』, 1994년 7월호.
- _____, “전문기자제 본격화 5년 평가와 과제”, 『신문과 방송』, 1999년 7월호.
- 홍인근, “이제는 각론의 시대, 전문기자·대기자를 요구한다”, 『신문과 방송』, 1995년 2월호.

특 집

언론보도의 신뢰성과 전문성

재판관련 보도의 문제점과 전문성 제고 방안

이 광 범

사법연수원 교수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
동 대학원 석사
- 서울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법 부장판사
- 현 사법연수원 교수(부장판사)
- 저술: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위법성
조각사유 및 그 입증방법", "불법행위
로서의 명예훼손과 그 구제방법: 대법
원판례의 성과와 과제를 중심으로"
등 다수

I. 언론과 사법

1995년에 “언론과 사법”이라는 주제로 열린 근대사법 백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최종영 대법원장이 한 연설 중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¹⁾

사법권은 구체적인 쟁송을 전제로 독립한 법관의 재판을 통하여 법을 선언함으로써 법질서의 유지와 법적 평화에 기여하는 헌법상의 권능입니다. 민주사회에 있어 법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만들어지나 일단 만들어진 법은 그 자체의 논리에 따라 적용되고 발전합니다. 사법권은 이러한 법적용을 책임지고 있으며 법의 적용이 불편부당한 법의 원리에 따라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법권은 다른 권력이나 여론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습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적 요소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헌법도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한편 언론은 일체의 국가 및 사회현상에 대한 보도·논평 등을 통하여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새로운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권능에 대한 통제기능을 담당합니다. 현대 민주사회에서 이처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언론은 입법·행정·사법에 이은 제4부로 불리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성패는 올바른 여론의 형성에 달려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므로 진정한 여론의 형성을 위해서 언론은 권력이나 금력 등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우리 헌법이 언론의 자유를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언론이 국가질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헌법상의 보호가 확보되어 있는 만큼 언론이 국가와 사회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 또한 막중합니다. 언론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평하고 신속하게 전달해야 함은 물론 국민의 언론매체에 대한 접근의 기회가 공평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언론보도를 통하여 개인의 사생활이나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도 기울여져야 합니다.

이러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언론의 자유가 교차하는 영역에서 여러 가지

1) 법원행정처, 『근대사법 백주년 기념 심포지엄 - 언론과 사법 - 결과보고서』, pp.6-7.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 분쟁의 해결책임은 또한 사법에 맡겨져 있습니다. 사법은 소송관계자의 인 권보호를 위하여 언론의 사법권 행사에 대한 접근을 일부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언론은 사실에 접근하여 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국가권력의 사법에 대한 견제 및 감시작용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언론과 사법이 이와 같이 충돌하는 영역도 있으나 양자 모두 진실을 규명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점에서 서로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인용이 다소 길어졌지만, 언론과 사법의 역할과 관계를 명료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요컨대 언론과 사법은 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언론과 사법은 이처럼 상호 견제와 감시작용을 하는 것만은 아니다. 사법의 도움 없는 언론, 언론의 도움 없는 사법은 어느 경우나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언론의 자유를 최종적으로 보장하여 주는 기관은 다름 아닌 사법부이고, 알렉산더 해밀튼(Alexander Hamilton)의 말대로 “칼도 돈지갑도 없는” 사법(법관)의 판단을 실효성있게 해주는 기관은 다름 아닌 언론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언론과 사법은 하나의 작은 구명보트에 같이 올라가 그 양 끝에 앉아있는 것과 같은 상태이고, 그리하여 삶든 죽든 간에 한 배를 타고 있는 언론인과 법관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구명보트의 양쪽 중 어느 쪽도 가라앉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법정에서의 질서”도 “편집실에서의 자유”도 모두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²⁾

이 글을 통하여 제기하고자 하는 재판관련 사항의 보도에 있어서 언론이 취하는 태도와 그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개선방향 등도 모두 이와 같은 언론과 사법의 역할에 비추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II. 재판보도의 문제점

1. 여론재판의 폐해

사회적으로 센세이셔널한 사건일수록 언론이 더욱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상업주의적 언론은 독자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을 수 없고, 때로는 언론이 대중적 구미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언론의 재판보도 역시 다수 독자의 의견에 영합하는 경향을 띠게 되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다시 대중의 집단적, 감상적 대응이 가세하며, 언론사간의 취재 및 보도경쟁에 따라 이러한 경향은 더욱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지만 우선 지적할 것은 이른바 “여론재판(trial by newspaper)”의 폐해이다.³⁾

언론에 의한 여론재판은 먼저 형사사건에 관한 보도에 있어서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에 앞서 사건의 내용을 재단하고 평가하

2) Fred W. Friendly, "Judges and Journalists : Whose End of the Boat Is Sinking?", Handbook for Judges, American Judicature Society, 1984, p.182.

3) 박용상, "사법과 언론 - 언론이 사법에 미치는 영향 -", 『근대사법 백주년 기념 심포지엄 - '언론과 사법' - 결과 보고서』, pp.99-100.

피고인의 유죄를 단정하여 비난하는
언론의 보도는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법칙을 무력화시켜

는 데 있다. 때로는 확정적으로 유죄임을 전제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에 주목하거나 극히 예외적이기는 하나 때로는 무죄로 단정하는 태도로 보도를 하기도 한다. 무죄로 단정하는 태도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사건의 보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피의자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 중인 상태에서부터 그가 진범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피의자는 정식재판을 받기도 전에 변명의 기회도 갖지 못한 채 유죄로 단정되어 사회적으로 악인으로 낙인이 찍히는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언론의 태도는 재판진행 중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태도는 헌법 제17조 제4항에서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한 무죄추정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임은 물론이다.⁴⁾

형사사건에 관한 이러한 언론보도의 태도는 사건과의 관련성 여부나 증거능력의 여하를 불문하고 잡다한 증거를 미리 제시하고 평가하며 혐의자에 대하여 유리하거나 혹은 불리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사실상 형사소송에 개입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것이 이른바 “언론에 의한 형사소송의 수행”이라고 일컬어지는 폐단이다. 피고인의 유죄를 단정하여 비난하는 언론의 보도는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법칙을 무력화시킨다. 원래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칙은 아무리 중요한 증거가치를 포함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법률상 증거로 허용될 수 없는 이른바 증거능력 없는 증거

는 법정에서의 입장조차 허용치 않음을 의미하나, 언론의 무차별적인 보도는 이러한 법칙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언론이 관련 증거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평가함으로써 모든 증거는 법정에서 제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무력하게 만들고, 이는 결국 피고인의 적법절차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게 된다.⁵⁾

원래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배심제재판의 제도를 취하고 있는 바, 사회과학자들은 오랫동안 배심원들이 사법적 판단을 내리기 전에 겪은 일들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해 왔다. 그 중 한 연구에 의하면, 언론보도란 그 자체가 배심원의 공정한 재판에 어떤 필요하고도 충분한 원인이 된다고 보다는 그러한 보도가 다른 요인이나 상황과 결부될 때 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관계에서 유의해야 할 요인으로서 범죄보도의 감정적 어조, 매체사용의 범위와 확산, 독자나 시청자의 깊이, 범죄 자체의 성격, 그 당시의 사회적 환경 등을 들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언론보도는 그것이 기존하는 사회의 스테레오타입에 영합할 때 가장 강력한 인상을 주며, 그러한 이유 때문에 언론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편견을 따르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지역사회의 편견을 자극하고 선동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언론의 보도가 지역사회인들의 여론을 자극하여 편견에 가득찬 여론으로 상승시켜 이것이 커다란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할 때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등이 그러한

4) 한위수, “법관이 본 사법관련보도의 문제점과 제언”, 『언론중재』14권 3호, 언론중재위원회, pp.18-19.

5) 박용상, 앞의 논문, pp.100-101.

지배적인 사회여론을 무시하고 공정하고 타당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는 것이다.⁶⁾

증거법칙에 문외한인 배심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전문직 직업법관에 의해 처리되는 우리의 경우 이러한 우려가 덜할지 모른다. 그러나 법관에게도 선입견이 형성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적대시되는 범죄자에 대하여는 이미 광범위하게 조성된 여론에 의한 단죄를 무시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함에는 힘겨운 결단을 요하게 될 뿐 아니라 혹시 쉬운 길을 가려는 법관이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여론에 추수하는 판결을 유도하게 될지 모른다. 그뿐 아니라 언론이 편견적 입장을 반복하여 전파하게 되면 공중은 그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들의 머리 속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상이 조성되며, 이것은 이른바 “편견적 여론”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에 의해 재판도 받기 전에 여론의 표적이 된 당사자나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 또는 긍정적 인상이 전파되면 그것은 법관에게 뿐 아니라 증인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법관은 이미 예단 없는 상태에서 증거를 조사할 수 없게 되고 증인도 선입견 없이 사건에 임할 수 없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언론의 이러한 영향아래 판사와 검사가 영향을 받게 되며 그에 굴복하게 될 우려가 생기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법관의 판단작용을 저해하게 될 뿐 아니라 재판을 받는 형사피고인이나 민사소송의 당사자로 하여금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성이 보장되는 법관에 의해 재판받

을 권리를 박탈하게 한다.⁷⁾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보도경향이 사법에 주는 좋지 못한 영향은 사법에 대한 신뢰의 저하 내지 불신이다. 편견적 보도가 법관의 중립성을 해칠지 모른다는 우려가 일반적으로 퍼지게 된다면 그것은 사법의 존재근거인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게 된다. 또 재판결과가 예단적 보도와 어긋나는 경우에는 법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된다. 오로지 변론과정에 나타난 것만을 가지고 재판해야 하는 법원이 그에 의해 판결한 결과가 이미 종전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다르게 나타나는 때에는 이미 예단에 의해 판단을 내린 시민들은 법원의 판단을 불신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⁸⁾

2. 피고인·피의자와 피해자·제3자의 법익침해

피의자·피고인이 그 범죄와 무관한 데도 그를 범인시 하는 보도를 한 경우 이는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범죄보도에 관한 명예훼손소송이 제기된 경우 언론사로서는 그 기사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진실임을 증명하거나, 그 기사가 진실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증명하여야만 면책된다. 그러나 잘못 보도한 혐의사실이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법률상의 책임은 지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기사로 말미암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명예가 손상되

6) 신평, “사법과정보도의 문제점과 그 영향”, 『언론중재』5권 1호, 언론중재위원회, p.30.

7) 박용상, 앞의 논문, pp.101-102.

8) 박용상, 앞의 논문, p.102.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사진을 허락없이 촬영하여 보도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어

는 것은 명백하므로 언론으로서는 이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마저 면제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⁹⁾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형사사건을 보도함에 있어 그들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보도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보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통상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당해 사인의 입장에 설 경우 공개를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생활상의 사실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프라이버시의 침해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생활상의 사실은 공공의 정당한 관심사가 되는 경우에만 그 공표가 면책된다. 한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사진을 허락없이 촬영하여 이를 기사와 함께 보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초상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¹⁰⁾ 한편 민사사건에서의 경우에는 사인간의 개인적인 재산 또는 가족관계상의 분쟁 등 대부분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이고 사실관계 그 자체는 공공의 정당한 관심사가 되기 어려우므로 사실관계를 보도함은 당사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많다.¹¹⁾

형사사건보도를 함에 있어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 기타 증인 등 제3자의 프라이버시 등의 권익도 보호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성폭력범죄와 같은 유형의 형사사건에 있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려지면 범죄 자체에 의한 피해보다 보도로 인한 피해가 훨씬 심각하고 치명적임을 유의하여 피해자나 그 가족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뿐

만 아니라 살인범죄 등의 보도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신원이 보도가 될 수는 있으나 피해자의 사생활관계가 불필요하게 보도됨으로써 언론보도에 의한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여서는 안될 것이다.¹²⁾

3. 보도기술상의 문제

우리 나라의 언론사가 재판관련 보도를 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야기하는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지적되고 있다.¹³⁾

첫째, 용어의 부정확을 들 수 있다. 형사상 범죄의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으나 아직 기소되지 아니한 자를 피의자, 기소된 자를 피고인이라고 부르는데 이를 구별하지 않는 경우가 흔히 있다. 어떤 피의자가 체포될 당시에 그를 "범인"이라고 단정적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다. 또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반대편으로서 원고에 의하여 제소당한 "피고"와 형사소송에서 검사에 의하여 기소된 "피고인"이라는 용어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둘째, 범죄보도가 지나치게 과다하는 점을 들 수 있다. 우리 나라 신문의 사회면 중 상당부분이 범죄기사로 채워지고, 이것을 중화시켜 줄 수 있는 그 범죄에 관한 객관적인 해설기사는 별로 없다.

셋째,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 들은 잘못된 보도가 많다. 언론사가 어느 일방 당사자의 말만

9) 한위수, 앞의 논문, p.20.
10) 위의 논문, p.20.
11) 위의 논문, p.24.
12) 위의 논문, p.21.
13) 신평, 앞의 논문, pp.27-30.

민고,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엄격한 구분으로 가해자가 되는 상대방 당사자를 질타하였으나 나중에 가서 그 보도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는 수가 흔히 있다. 근래 이른바 “반론권의 보장”이라는 점에서 반대 당사자의 주장을 게재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아지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이와 같이 일방적인 주장에 치우친 보도사례들이 적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넷째, 불필요한 사항의 보도를 들 수 있다. 범죄를 보도하면서 지나치게 그 범행의 수법이나 현장에 관하여 상세하게 보도하는 것은 여러모로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러한 선정적인 보도는 일반국민에게 범죄에 대한 히스테리나 공황을 조성하고, 범죄성향이 짙은 청소년을 나쁜 방향으로 유도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부당한 재판비판을 들 수 있다. 재판은 엄격한 절차에 따라 법을 적용하는 판단작용인 이상 국민의 다수 의사에 따르는 정치적 결정과는 다른 국가기능이고, 따라서 법관은 경우에 따라서는 압도적인 여론의 방향에 거슬러서 자기의 소신을 관철시킬 것이 요구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판의 특성을 무시한 채 국민여론의 힘을 빌어 재판의 결론을 함부로 비판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Ⅲ. 재판보도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 (영·미의 경우)

1. 영국의 법정모욕죄

영국에서 형사소송에 대한 보도는 법정모욕

의 법리의 적용에 있어서 매우 엄격하다. 이 부문에 있어서 영국은 명백히 언론의 자유에 대해 공정한 재판의 이익을 우선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1967년 법에 의해 영국에서는 치안 판사에게 제출된 증거의 상세한 내용을 그 소송이 종료하기까지 보도할 수 없다. 혐의자의 체포와 기소 이전에 혐의사실을 보도하는 것도 법정모욕으로 처벌된다. 영국의 언론은 피의자의 자백을 인용하기는커녕 자백이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보도할 수 없으며, 형사기록의 사전보도와 증거능력이 없는 자료를 보도할 수도 없다. 폭력행사자에 대하여 엄벌해야 한다고 사실을 게재한 신문의 작자를 처벌한 사례도 있었다. 그러므로 영국에서는 미국에 있어서와는 달리 체포 및 기소 이전에 특정인의 범죄사실을 스스로 취재 보도하는 이른바 탐색보도의 관행(investigative journalism)은 허용되지 않는다. 영국의 신문들이 재판에 대하여 보도할 수 있는 것은 사건이 종료된 후에야 비로소 가능할 뿐이다. 그러나 1981년 법정모욕법 개정에 의해 위와 같은 엄격한 처벌은 상당한 정도로 완화되었다. 종전의 법정모욕은 표현행위가 편견을 가져다 줄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편견의 개연성기준”은 1981년의 법개정으로 “보도가 해당 사건에서 정의의 수행이 중대하게 저해받거나 편견을 주게 될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하는 때”에만 인정되게 되었다.¹⁴⁾

한편, 수면제의 복용으로 인해 기형아를 출산한 피해자들이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1974년의 집단손해배상소송에 관하여 Sunday Times가 계속 중인 위 소송에서 제조회사의

14) 박용상, 앞의 논문, pp.106-107.

재판은 국민 다수의사에 따르는 정치적 결정과 다른 국가기능으로 재판의 특성을 무시한 채 여론의 힘을 빌려 재판의 결론을 비판하는 언론보도는 지양되어야

과실 등 몇 가지 쟁점에 관하여 이를 평가하는 기사를 게재한 것이 문제된 사건에서 영국의 최고법원인 상원은 그 보도가 재판을 앞두고 판결을 미리 판단하였다는 이유로 법정모욕이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었다. 영국에서 민사소송에서는 배심절차가 거의 행해지지 않음에도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근거에 관하여, 과실 여부에 관하여 공공이 미리 판단하게 된다는 점, 언론에 의한 캠페인이 행해지면 그것은 법원에 대하여 큰 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뿐 아니라 일반인으로 하여금 소송상의 법적 해결을 언론의 힘을 빌려 행하려는 경향이 생길 것이고, 다른 쪽의 소송당사자로서는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등의 논거가 제시되었다.¹⁵⁾

2. 미국의 자율규제

미국은 영국 보통법의 엄격한 전통을 이어 받았음에도 자유스런 미국의 풍토에서 연방 수정헌법 제1조의 강력한 언론보호조항에 힘입어, 그리고 사법절차상 행해진 진술이나 발언의 전파보도에 관하여 명예훼손의 불법행위 책임을 면책시키는 이른바 “공정보도의 특권” 이론에 의해 법조관계 기사의 보도에 있어서도 가장 자유를 구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언론에 의한 재판보도의 폐해가 광범위하게 인식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완강한 태도 때문에 미국에서 제정법으로 재판 및 법원에 대한 언론의 보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어려웠다. 그래서 미국의 법원과 법무부는

언론자체를 대상으로 제한 또는 처벌하는 방법을 단념하고, 그 대신 그 뉴스를 제공하는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이나 변호사에게 언론에의 진술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나가게 되었다.¹⁶⁾

이러한 움직임은 연방검찰총장이 발한 1965년의 Katzenbach guidelines으로 나타났고, 후에 1971년 법무장관 Mitchell에 의해 보완된 위 지침(Kazenbach-Mitchell guidelines)은 연방 소속의 법집행공무원에게 수사상의 정보 중 언론에 제공할 수 없는 사항을 정하였다. 그것이 적용되는 경우는 원래 형사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의 체포 또는 기소의 시점부터였으나, 1971년 보완 후에는 민사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되었으며 적용시점도 실제로 특정인이 수사의 대상이 된 시점 이후부터로 확대되었다. 이 지침은 다수의 주경찰과 지방경찰에서도 채택되고 있다.

위 지침이 정하는 정보제공 또는 누설이 금지되는 사항은 편견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종류의 다음과 같은 사항이다.¹⁷⁾

- 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성격에 관한 관측
- ② 피의자가 한 것으로 보이는 진술, 승인, 자백이나 알리바이 또는 피의자의 진술상의 오류나 진술거부 사실
- ③ 지문, 거짓말탐지기검사, 탄도검사 기타 과학수사검사 등의 수사과정 또는 피의자가 그러한 검사에 응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언급
- ④ 사건의 증거 또는 법적 사실적 주장에 관한 진술
- ⑤ 장래 증인이 될 자의 신원, 증언내용 또

15) 위의 논문, p.108.

16) 위의 논문, pp.109-110.

17) 이상돈, “재판전 보도의 문제점과 피해구제 방안”, 『언론중재』5권 1호, 언론중재위원회, pp.19-20 참조

는 신빙성에 관한 진술

⑥ 피고인의 유죄에 관한 의견 또는 피고인이 기소사실을 인정할 가능성 또는 보다 낮은 죄로 인정할 가능성에 대한 의견

법집행공무원은 그들의 구금하에 있는 피의자가 촬영되거나 녹화되도록 협조하여서는 안 될 뿐 아니라 그들의 사진이 법집행목적에 필요한 경우(예컨대 도망자의 수배) 이외에 이용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한다.

반면 정보제공이 허용되는 사항은 ① 피고인의 성명, 연령, 주소, 직업, 결혼여부 및 기타 유사한 배경정보 ② 고소, 고발 또는 기소와 같은 혐의의 요지 또는 문안 ③ 수사 및 체포의 관할기관과 수사의 기간 ④ 체포의 시간과 장소, 저항, 추적 및 무기의 사용 여부와 압수된 물건 등을 포함하여 체포당시의 주변 상황 등이다.

한편 민사소송에 관한 지침의 중요한 내용을 보면 민사소송과 관계된 직원은 법무부의 수사나 소송계속 중에 공적인 기록으로부터의 인용 또는 참조 이외에 법정 외의 진술로서 합리적인 사람이 공정한 재판에 간섭하게 될 합리적인 개연성이 있다면 공적인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전달되기를 기대하게 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진술하거나 그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¹⁸⁾

① 관련 발생요인과 거래에 관한 증거

② 당사자, 증인 또는 증인예상자의 성격, 신용, 전과

③ 검사 또는 테스트의 시행 및 그 결과 또는 당사자가 제출을 하지 못하였거나 거부한

사실

④ 법률이나 행정상 의무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 당사자의 주장이나 항변의 당부에 관한 의견

⑤ 사건의 공정한 심판을 저해할 합리적 개연성이 있는 기타 사항

한편 미국법조협회(ABA)가 공정한 재판의 확보를 위한 연구를 위해 위촉한 13인의 법관과 변호사로 구성된 리어든위원회(Reardon Committee)는 1966년 보고서를 내고 1968년에 이르러 그 제안내용의 대부분을 미국법조협회가 채용하게 되었다.

ABA가 1968년에 채용한 “공정한 재판과 언론의 자유에 관한 기준”을 보면 편견적인 정보를 뉴스원에서부터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판사와 담당 검사 및 변호사가 언급하여서는 안 될 사항을 위에서 본 Kazenbach-Mitchell guidelines와 대동소이하게 정하였다.¹⁹⁾

특히 법정모욕죄의 처벌권한은 상당히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하며 ① 배심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그 소송에 대한 배심이 선정 중임을 알면서도 (a) 공개적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을 사용하여 법원의 공적 기록에 있지 않은, 소송에 관한 피고인이나 쟁점에 관한 법정 외의 진술로서 그 자에 의해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고의적으로 의도되고 그러한 효과를 갖기 위해 심각히 위협적인 것을 전파하거나 (b) 그러한 진술이 공개적 커뮤니케이션의 여하한 수단으로든 전파되기를 의도하면서 그러한 진술을 한 자와 ② 소송의 종결 또는 소송외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ABA가 채용한 권

18) 박용상, 앞의 논문, pp.114-115.

19) 이상돈, 앞의 논문, pp.20-21 참조.

미국의 경우, 재판관련 보도의 제한 대신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이나
변호사의 언론에의 진술을 통제

고에 따라 비공개된 사법심문 중에 언급된 특정정보를 전파하지 않도록 하는 유효한 법원의 명령을 고의로 위반한 자 이외에 대해서는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리어든보고서가 발행된 후 언론계에서는 상당한 반발을 보였고, 그 결과 1981년에 이르러서는 완화된 내용의 권고안이 발표되었다. 1991년 개정²⁰⁾에 의하면 검사는 법정 외에서 “피고인에 대한 기소의 일반적 성격에 대해서”만 진술할 수 있을 뿐이고 변호사 역시 형사사건에서 실질적으로 편견을 줄 수 있는 말을 삼가야 한다.

재판보도에 관한 법적인, 강제적인 차원에서 규제 노력이 좌절하였음에도 위에서 본 미국법조협회의 노력은 상당수의 주에서 호응받게 되었다. 이미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미국의 27개 주에서는 법원, 변호사회, 언론 등 전문가집단간의 합의에 의한 가이드라인이 자율적인 설정 또는 협정의 형태로 ABA의 지침과 대동소이한 내용이 규정되게 되었다. 그 지침은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훌륭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²¹⁾

IV. 우리 나라 현행법의 현황

앞서 본 바와 같은 언론보도의 문제점 때문에 현행법상 언론에 대하여 직접 보도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

가사소송법 제10조에 의하면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에 있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성명·연령·직업·용모 등에 의하여 그 본인임을 추지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기타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72조). 가정법원에서 다루어지는 혼인 기타 가족관계에 관한 내용은 개인의 사적인 사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려는 것이 법의 취지인 것이다.

소년법 제68조는 “이 법에 의하여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 연령,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그 자가 당해 본인으로 추지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지 기타 출판물에 게재 또는 방송할 수 없다.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신문지에 있어서는 편집인과 발행인, 기타 출판물에 있어서는 저작자와 발행자, 방송에 있어서는 방송편집인과 방송인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비행소년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것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의하면, 약취·유인·강간·강도 등 특정강력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사건의 피해자나 그 사건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보도할 수 없다(제8조). 피해자의 프라이버시와 함께 보복범죄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20) 개정의 역사와 상세한 내용에 관하여는, The Reporter's Key : Rights of Fair Trial and Free Press, ABA, p.1 이하 참조.

21) 박용상, 앞의 논문, pp.116-118.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하면,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는 행위자, 피해자, 고소인·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제18조 제2항), 이에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 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장 또는 종사자 기타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제64조 제2항). 1999년에 제정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의하면, 특정강력범죄, 마약류범죄, 범죄단체구성원의 범죄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범죄 등의 범죄신고자 등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 또는 범죄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제8조), 이에 위반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제17조). 위 조항들은 그 소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이른바 '익명보도주의'를 채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소송절차가 공개적으로 심리되는 한 그 사안 자체의 보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 관계자의 신원공개만이 금지될 뿐이다.

그리고 현행 형사소송법 제47조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의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소송서류의 비공개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위 구성요건은 우선 수사담당자 등을 행위주체로 명시하고 있어 공무원 등의 직무상 범죄의 장에 규정되고 있으나, 기자도 공무원에 대하여 이를 사주하거나 공모한 때에는 위 조문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다(형법 제33조 참조). 이에 대해서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부득이하고 중대한 사안이거나 공개수사를 위해 긴박한 공공의 이해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사실공표가 허용될 수 있다고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²²⁾

한편 대법원은 1993. 7. 28. 법원의 홍보체제와 그 운영을 효율화, 체계화하여 언론매체로 하여금 법원에 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를 하게 함으로써 법원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원홍보업무에 관한 내규'(대법원내규 제198호)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위 예규는 공보사무를 정책보도, 재판보도, 일반보도로 구분하여 그 사무를 집중적으로 담당할 공보관을 두고 공보사무수행에 있어서 주의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재판에 관한 공보업무에 관하여 보면 "재판진행에 관한 보도는 재판장 또는 공보관이 이를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또는 각종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이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 한하여 행한다. 각급 법원 공보관이 재판진행에 관한 보도자료를

22) 박용상, 앞의 논문, pp.130-131.

판결 선고 후에 기자로부터 판결의 사실관계나
법적 관점 등에 대해 질문을 받는 경우,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오보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

제공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동예규 제7조). 각급 기관의 공보관이 ①법원의 보안업무에 관한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 ②법원의 위신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 ③사회질서를 혼란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보도에 관하여 자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공보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동예규 제8조).

법원의 업무와 관련된 기사가 언론매체에 보도된 경우 그것이 법원의 자료제공에 의한 것이 아니면 해당 공보관은 “언론매체에 보도된 관계 기사를 분류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관계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며, “보도와 관계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전항의 통지를 접수한 때로부터 2일 이내에 그 내용의 진위여부와 의견을 공보관에게 통지한다.” 위 통지를 받은 공보관은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며 “법원행정처 공보관은 재판이나 법원의 정책 또는 시책 등과 관련된 언론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 시정업무를 총괄, 지휘한다”(동예규 제9조). 종전에 진실과 다른 재판관계의 보도가 행해졌을 때 법원은 내부적으로만 확인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온 것이 통례였다. 그러나 해당 보도기관으로 하여금 오보를 시정할 기회를 갖게 하고 동일한 오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해당 데스크의 책임자에게 그 사정을 알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법원과 검사는 자기들이 담당하는 사건에 관해서는 불공정하다는 인상을 피하기 위하여 소송계속 중에는 언론매체에게 아무 의견도 제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판결 선고 후에 보도를 위하여 그 판결의 상세한 사실관계나 법적인 관점에 관하여 질문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오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²³⁾

V. 언론보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1. 법원의 대책

법원은 편견적인 보도의 자료가 제공되는 것을 막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편견적인 여론의 피고인 등 관계인에 대한 막강한 작용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미 공공에 편견적 여론이 조성된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법원이 취할 조치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²⁴⁾

① 관할 법원의 변경 : 사건이 발생한 지방의 지역감정에 의한 부당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그러한 영향을 덜 받는 지역의 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우선 법원이 고려할 수 있는 조치이다.

② 법관의 회피 : 사전보도에 의한 선입관을 가졌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에 임하기 어렵

23) 박용상, 앞의 논문, pp.133-134.

24) 박용상, 앞의 논문, pp.135-136.

다고 생각하는 법관은 스스로 해당 사건의 재판에서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심리의 연기 또는 중단 : 사건에 대한 보도와 공중의 소란이 가라앉을 때까지 재판을 지연시키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나, 여기에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해하고 재판시까지 피고인의 미결구금을 장기화한다는 흠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는 논란과정에서 편견적인 여론의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소송의 장기적인 중단이 요청될 수도 있다.

④ 소송절차의 엄격한 준수 : 피고인이 편견적인 여론에 의해 불리한 상황에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그의 증거신청권, 신문권, 변론권을 충실하게 해주는 조치가 요구된다. 특히 사전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편견적인 여론에 대처할 수 있는 변론능력을 위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방안도 권장된다.

⑤ 공공에 대한 주의환기 : 예컨대 법원은 공개법정에서 출석한 기자 등 공공에 대하여 편견적인 상황을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자제를 요청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2. 언론의 개선방안

우리 나라의 언론인들은 한국언론의 문제점으로 언론사간의 과당경쟁, 언론사 및 언론인들의 자사이기주의, 언론의 권력화, 편파보도, 선정적 보도, 언론인의 자질부족 등을 지적하

고 있으며, 특히 신문보도의 문제점으로는 편파보도, 자사이기주의, 예단·예측보도, 냄비언론, 중계보도, 선정주의, 본질호리기, 무책임한 보도, 이중적 보도, 본질 왜곡·호도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자의식 혹은 기자의 자세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것, 즉 한국언론의 힘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스스로 힘이 있다고 맹신하는 비뚤어진 엘리트 의식이 먼저 변해야 하고, 기자들의 고정관념 등을 빨리 버리고 세상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유연한 사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그와 함께 기사의 질 향상을 위해 언론사가 자체 심의기구를 만들어 그 위반여부를 철저히 심사함은 물론 독자불만처리부서를 상설해 독자들의 불만을 확인하고 정정보도나 반론의 기회를 주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²⁵⁾ 재판관련 보도에 있어서도 다를 것이 없다. 사법에 대한 취재와 보도에 있어서 언론의 자발적인 자율규제에 의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폐단의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언론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는 언론이 자율적으로 윤리규범을 정립하여 지켜주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자율규제를 위하여 우선 할 일은 재판관계의 취재와 보도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보다 상세한 내용의 윤리규범으로 설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채택한 신문윤리강령에 의하면, 언론인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하고, 진실을 바탕으로 공정

25) 한국언론2000년위원회, 『한국언론보고서』, pp.153-155.

재판관련 취재보도에 있어 지켜야 할 사항을
보다 상세하게 윤리규범으로 설정해야

하고 바르게 평론하며,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건전한 여론형성에 기여하고(제4조),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으며(제5조),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특히 독자에게 답변, 반론 및 의견개진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한다(제6조)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신문윤리강령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채택된 신문윤리실천요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조(취재준칙)

기자는 취재를 위해 개인 또는 단체를 접촉할 때 필요한 예의를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인 또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기자는 취재를 위해 개인을 위협하거나 괴롭혀서는 안된다.

① (신분 사칭·위장 및 문서 반출 금지) 기자는 신분을 위장하거나 사칭하여 취재해서는 안되며, 문서, 자료, 컴퓨터 등에 입력된 전자정보, 사진 기타 영상물을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없이 검색하거나 반출해서는 안된다. 다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와 다른 수단을 통해 취재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정당화될 수 있다.

② (재난 등 취재) 기자는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방해해서는 안되며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에 적절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③ (병원 등 취재) 기자는 병원, 요양원, 보건의 등을 취재할 때 신분을 밝혀야 하며 임원실을 포함한 비공개 지역을 허가 없이 들어가서는 안된다. 또한 기자는 허가 없이 환자를 상대로 취재하거나 촬영을 해서는 안되며 환자의 치료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④ (전화 취재) 기자는 전화로 취재할 때 먼저 신분을 밝혀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취재원이 취재 요청을 거절할 경우 거듭된 통화의 연속적인 반복으로 취재원을 괴롭혀서는 안된다.

⑤ (도청 및 비밀촬영 금지) 기자는 개인의 전화 도청이나 비밀 촬영 등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제3조(보도 준칙)

보도 기사(해설 기사 포함)는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기자는 사회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진실을 적극적으로 추적·보도해야 한다.

① (보도 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기자는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도기사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기자는 편견이나 이기적 동기로 보도 기사를 고르거나 작성해서는 안된다.

② (미확인 보도 명시원칙) 기자는 출처가 분명치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경우 그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③ (선택보도의 금지) 기자는 성범죄, 폭력 등 기타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음란하거나 잔인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되며 또한 저속하게 표현해서는 안된다.

④ (답변의 기회) 보도 기사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판적이거나 비방적 내용을 포함할 때에는 상대방에 해명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⑤ (보도 자료의 검증과 영리 이용 금지)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 발표와 보도 자료는 사실의 검증을 통해 확인보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영리적 목적으로 발표된 홍보자료를 경계해야 한다.

⑥ (피의사실의 검증보도)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피의사실은 진실여부를 확인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피고인 또는 피의자측에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조(사법 보도 준칙)

언론인은 사법 기관의 독립성을 부당하게 훼손하는 취재, 보도, 평론을 해서는 안된다.

① (재판에 대한 부당 영향 금지) 언론인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취재, 보도, 평론을 해서는 안 된다.

② (판결문 등의 사전 보도 금지) 언론인은 판결문, 결정문, 공소장 및 기타 사법 문서를 사전에 보도, 평론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취재원이 사법문서에 포함된 내용을 제공할 때는 예외로 한다.

제7조(범죄 보도와 인권 존중)

언론인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 형사 사건의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또한 범죄에 연루된 정신이상자와 박약자, 성범죄에 연루된 피해자 및 무관한 가족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특히 이들의 신원을 밝히는 데 신중해야 한다.

① (형사 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 존중) 언론인은 형사 사건의 피의자 및 피고인이 무죄로 추정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경칭을 사용하는 등 그의 명예와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현행범인 경우와 기소 후 피고인에 대한 경칭의 사용여부는 개별 언론사의 편집 정책에 따른다.

② (정신이상자의 익명 존중) 기자나 편집자는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정신이상자 또는 박약자로 밝혀질 경우 면책되는 점에 유의하여 신원을 밝히는 데 신중해야 한다.

③ (성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 기자나 편집자는 성범죄를 보도하는 경우 무관한 가족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④ (미성년 피의자 신원 보호) 기자나 편집자는 미성년(18세 이하)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사진 및 기타 신원 자료를 밝혀서는 안 된다.

⑤ (피의자 촬영 금지) 기자는 당사자의 동의없이 형사 사건의 피의자를 촬영하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 다만 현행범과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참고인 등의 촬영 금지) 기자는 당사자의 동의없이 피의자 아닌 참고인 및 증인을 촬영하거나 보도해

서는 안 된다. 다만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평론의 원칙)

평론은 진실을 근거로 의견을 공정하고 바르게 표명하되 균형과 절제를 잃지 말아야 하며 특히 고의적 편파와 왜곡을 경계해야 한다. 또한 평론은 정치적 입장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으며 논쟁적 문제에 대해 다양한 공중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여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논설의 정론성) 사실은 소속 언론인의 정론적 입장을 대변해야 하며 특히 언론사의 상업적 이익이나 특정 단체와 종파의 이권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

② (정치적 평론의 자유) 사실 등 평론은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특정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표명하는 등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다.

③ (반론의 기회) 사실 등 평론이 개인 또는 단체를 비판하는 경우 비판받은 당사자의 적절한 해명과 반론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

언론인은 개인과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보도 및 평론을 해서는 안 된다.

① (개인의 명예·신용 훼손 금지) 기자는 오보, 부정확한 보도, 왜곡 보도, 그리고 공익과 무관한 사실 보도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② (저속한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기자는 개인이나 단체를 저속하게 표현하여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③ (사자의 명예 존중) 보도와 평론은 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사생활 보호)

언론인은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평론해서는 안 된다.

사법관계 보도에 있어서도
전문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 대두

① (사생활 영역 침해 금지) 기사는 개인의 주거 등 사생활 영역에 허락 없이 침입해서는 안된다.

② (전자개인정보 무단 검색 등 금지) 기사는 컴퓨터 등 전자통신기에 입력된 개인정보를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검색하거나 출력해서는 안된다.

③ (사생활 등의 사진 촬영 및 보도 금지) 기사는 개인의 사생활, 사유물, 개인에 속한 기타 목적물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취재 보도해서는 안된다. 다만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공인의 사생활 보도) 언론인은 공인의 사생활을 보도·평론하는 때에도 절제를 잃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제13조(어린이 보호)

언론인은 어린이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유해 환경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

① (어린이 취재 보도) 기사는 부모나 기타 보호자의 승인 없이 어린이(13세 미만)를 대상으로 인터뷰나 촬영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기사는 학교장이나 유치원장 등 보호 책임자의 동의 없이 어린이를 접촉하거나 촬영을 해서는 안된다.

② (성범죄와 어린이 보호) 기자나 편집자는 어린이나 어린이의 가족이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그 어린이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된다.

③ (유괴 보도 제한 협조) 기자나 편집자는 어린이가 유괴된 경우 무사히 생환하는 데 모든 협조를 다해야 하며 특히 유괴된 어린이가 범인의 수중에 있는 때에는 가족이나 수사기관의 보도 제한 요청에 응해야 한다.

④ (유해 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언론인은 폭력, 음란, 악물 사용의 장면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여 어린이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도록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

일단 이와 같은 실천요강을 준수하는 것이야말로 언론이 최우선적으로 하여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실 이를 지키기만 하여도 앞서본 바와 같은 언론보도의 문제점은 거의 극복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각 언론사별로 보다 자세한 윤리강령을 만들고 이를 지켜나간다면 더욱 바람직한 일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로 양적 팽창과 질적 개선을 이루고 있는 한국의 언론이 이제는 사법관계 보도에 있어서도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점이다.

전문성 부족은 오래 전부터 한국언론의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며, 이러한 전문성 부족이 초래하는 병폐로 두 가지 점이 지적되고 있다. 하나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그 일이 지닌 의미가 무엇인지 통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충실한 배경지식을 가지고 취재에 나서고, 또 취재한 내용을 심사하는 행위 없이는 어떤 문제의 실상, 원인, 전망 등에 확신을 갖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전문성을 가진 취재원에게 바로 그 전문성 부족 때문에 농락당하기 쉽다는 점이다. 다양해진 취재원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다 전문화되어 가는 추세 속에서 이를 취재하는 기자는 전문성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취재원이 제공하는 보도자료를 확인, 검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포되어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도 감지하지 못해 기사를 취재원이 제공하는 내용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²⁶⁾ 그리하여 기자들의 전

26) 한국언론2000년위원회, 앞의 책, p.134.

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재교육이 거론되고 그 구체적 방법으로는, 첫째 해외연수와 병행해서 국내 대학에서 수학하는 것을 장려하고, 둘째 연수대상으로 선정되는 기자의 근무년한을 지금의 7~8년에서 4~5년으로 완화하고, 셋째 언론사별로 수시로 강좌를 열고, 넷째 언론재단들이 각종 특강을 자주 여는 것 등이 제시되고 있다.²⁷⁾ 한편 이러한 전문성 제고와 맞물려 있는 것들이겠지만 한국언론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편집의 차별화와 기자총원제도의 개선 등이 거론되고 있다.²⁸⁾ 언론의 몰개성화와 획일화를 지양하고 신문이나 방송의 뉴스와 논평이 개성을 갖기 위해서는 언론사가 편집정책을 천명하고 그것에 준거해 기사를 취재하고 작성하면 보도하고 논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의 기자총원제도인 수습기자 공채제도는 한마디로 시험선수를 뽑는 제도로서,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인적, 물적 낭비가 큰 제도이므로 소수의 수시채용과 개별채용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고 나아가 대기자, 전문기자도 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들은 언론보도의 일반과 관련된 것들이지만, 재판관련 보도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전문기자나 대기자를 확충하고, 법률관계의 전문포럼 등의 지면을 만들어 나

간다면 재판관련보도의 전문성 역시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법원과 언론의 공동노력

이상 재판관련 보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 내지는 개선방안을 법원과 언론의 입장에서 살펴보았다. 언론과 사법 각자의 이와 같은 노력도 중요하지만 언론과 사법간에 공통의 관심과 이해를 형성하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언론과 사법 사이에 비정기적인 모임으로 1995년에 개최된 근대사법백주년 기념 “언론과 사법” 심포지엄 같은 것들이 있기는 하였으나, 공식적인 논의의 장으로는 1994년부터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는 법조출입기자심포지엄이 거의 전부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이 법조출입기자심포지엄이라는 것은 법조출입경력이 비교적 얼마 되지 않은 소수의 기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법원과 언론간에 폭넓은 대화의 장으로는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적어도 법원과 언론간에 매년 정기적으로 대규모의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거기에서 재판관련보도의 문제점 등 언론과 사법간의 모든 쟁점을 거론하고, 그 결과 언론과 사법 쌍방이 모두 지킬 수 있는 자율적인 새로운 준칙같은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재판관련 보도 역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

27) 앞의 책, pp.157-161.

29) 앞의 책, p.156, 162-164.

언론소송의 실무

함 석 천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목 차

- I. 서론
- II. 언론 소송의 개관
 - 1. 소장 접수 단계
 - 2. 재판의 진행 단계
 - 3. 사건의 종결 단계
- III. 심리 절차에서 문제되는 사항들
 - 1. 관할
 - 2. 명예의 개념
 - 3. 당사자
 - 4. 사실 인정과 심리 절차의 진행 단계
- IV. 위법성 조각 사유
 - 1. 총론
 - 2. 입증 책임
 - 3. 요건의 분설
 - 4. 기타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하여
- V. 사건의 종결
 - 1. 판결
 - 2. 기타 방법에 의한 사건 종결
- VI. 결론

이 논문은 언론재판 담당부인 서울지법 민사25부 판사로 근무했던 필자가 2000년 9월 <전문법과 전문분야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언론관련 소송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들을 모두 망라하여 정리하였다.

언론소송과 관련 재판부의 심리기준을 엿볼 수 있으며, 언론인을 비롯 관련 전문가에게 주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되어 3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주

I. 서론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에 바탕을 둔 명예의 보호. 이들은 모두 헌법이 보호하는 중요한 기본권들로서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가치들이다.

표현·언론의 자유는 자기의 사상을 제한 없이 세상에 드러내고 그에 기초하여 다른 사

람들과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면서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사회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느끼게 하고 각자의 인격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바탕이 되고, 또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최근 들어 개인들은 그들의 개성을 중시하고 각자의 사생활의 비밀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언론 매체는 통신 기술과 장비의 발달로 거대화, 광역화되어 가면서 잘못된 언론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은 그 형태가 다양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피해가 매우 빠르고 넓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어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인격 보호와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¹⁾

1) 근래 인터넷의 확산으로 신문 기사는 한글판만이 아닌 영어판으로도 작성되어 세계 각국에서 그 사이트를 통하여 기사를 열람할 수 있음을 상기해 본다면, 그 피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할 수 있음을 직감할 것이다. 또한 전통적인 정보 제공 매체인 신문, 잡지, 방송 등에 의한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정보의 디지털화,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사이버 공간의 급속한 확산으로 말미암아 생길 수 있는 새로운 침해 유형까지 아울러 고려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최근 각 매체별 특성과 그에 따른 침해 유형에 관한 논의가 국내외에서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과거에는 명예훼손에 대한 대응책은 주로 응징을 중시하는 형사 소송 절차에 초점이 놓여 있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명예가 훼손되었을 경우 복잡한 이해가 얽히는 경우가 많아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가 심화되어 가면서 가해자가 재력 있는 언론사 등의 기업인 경우가 많아지게 되면서 사회 구성원들은 형사법에 따른 응징보다는 실리적인 금전 배상이나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구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또한 화해나 조정을 통하여 자율적이고 유연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민사적인 해결 방법을 찾게 하는 중요한 동기가 되기도 하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언론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들은 형사 절차로 대응하기보다는 민사상 구제 수단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현재는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라고 할 때에는 민사상 구제 수단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지방법원은 1996. 3. 1.부터 언론 보도에 따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구하는 본안 사건을 전담으로 담당하는 언론 전담부를 두고 중요 언론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바,²⁾ 비록 그 역사가 길지는 않지만, 그 동안 언론 판례를 중심으로 언론 사건에 특유한 법 이론에 관하여 적지 않은 연구와 토론이 이루어져 왔다.

다음에서는 언론 사건의 실무를 담당하면서 문제되었던 사항들에 관하여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³⁾

II. 언론소송의 개관

1. 소장 접수 단계

원고와 피고는 사건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서로 대화를 통하여 타협점을 찾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 혹은 추후보도청구를 거치는 경우가 많다. 반론보도청구는 필요적으로 조정을 거쳐야 하나 정정보도청구는 위 조정 절차 없이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혹은 그와 함께 소로써 바로 주장할 수 있다. 한편, 반론보도청구 사건은 가처분 사건의 성격을 띠고 있고 관할에도 특이한 점이 있어 이를 본안으로 삼아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본안으로 문제되는 사건은 민법 제750조(불법 행위의 내용),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에 의하여 불법행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구하거나 그와 함께 혹은 그에 갈음하는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을 구하는 경우이다.

이상의 절차를 거치면서 소 제기 전 단계에서 당사자 사이에 타협점을 찾아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언론 보도로 명예나 기타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당해 보도를 한 언론사나 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정정보도청구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된다.

2. 재판의 진행 단계

소장이 접수되면 특별히 다른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 민사 소송 절차에

2) 언론 전담부의 설치 및 전담 사건 관할은 1996. 3. 1.자 '법관 사무 분담표' 중 보칙에 규정되어 있다.

3) 언론에 관한 그동안의 국내의 판례, 논문, 단행본 등 발표 자료를 모아 보니 그 양이 엄청났다. 이 글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언론 사건을 처음 대하는 법관들과 기타 언론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관계자들을 위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본문에서 인용하는 자료에 가중치를 두어 대법원 판례, 하급심 판례, 국내 논문의 순서로 인용하였고, 다만 국내 자료가 부족하거나 특히 참고할만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관하여서만 외국 자료를 인용하였다

따라 재판이 진행된다. 언론 사건의 주된 청구 원인은 피해자의 명예(때로는 다른 인격권)를 침해한 언론보도가 이루어졌다는 것, 그것이 취재 기자 등의 고의나 과실로 이루어졌다는 것, 언론보도가 위법이라는 것, 언론 보도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 언론 보도와 피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피고의 주된 항변은 보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진실이 아니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원고가 명예 이외에도 다른 인격권의 침해를 주장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정정보도 혹은 금지 청구를 해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피고 역시 위 항변에 그치지 않고 외국의 사례를 들어가며 다양한 주장을 해오는 경우가 많아 언론 사건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경향에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실 입증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언론보도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이 어떠한지는 이미 세상에 알려진 경우가 많아 심리 절차가 조기에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때로는 진실 여부, 혹은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에 관하여 복잡한 사실 인정 단계를 거치기도 하고, 때로는 당사자들이 합의나 조정 등을 바라며 소송을 지연시키려 하는 경우도 있다. 심리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법원의 권고에 의하여 혹은 자발적으로 다시 한번 자율적인 분쟁 해결의 기회를 가지게 된다.

실제 사건을 접하다 보면, 청구 원인의 판단에서는 피해자의 특정과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여부가,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에서는 보도의 진실성과 공공의 이익의 합치 여부, 특히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에 관한 요건의 심리가 가장 중요하게 부각된다.

3. 사건의 종결 단계

사건은 앞서 본대로 화해나 조정으로 종결되기도 하고, 판결로 종결되기도 한다. 화해나 조정의 장점은 역시 당사자들의 이해 관계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는 점과 때로는 판결의 주문으로 명할 수 없는 형태의 이행 사항(예를 들면, 사과 취지의 글 게재, 기자 회견을 가지기로 하는 등의 합의)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다.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그 인용 주문은 보통 금원 지급 부분(위자료, 재산상 손해)과 명예 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의 정정보도 그리고 정정보도에 대한 간접 강제 부분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밖에 금지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이 있을 수 있다.

이하 위와 같은 일반적인 언론 사건의 경과에 따라 실무상, 절차상 문제되었던 점을 중심으로 살핀다.

III. 심리 절차에서 문제되는 사항들

1. 관 할

1) 토지 관할의 문제

- 불법 행위의 특별 재판적

(1) 문제점

언론기관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문제되는 관할은 주로 불법 행위지의 특별 재판적이다(민사소송법 제16조 제1항). 특별 재판적은 대체로 원고의 소송 수행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사건과 증거에 근접(Sach-und Beweisn he)한 법원이 관할권을 갖게 한 것이 많고,⁴⁾ 불법 행

4) 이시윤, 『민사소송법(新訂3版)』, 박영사, 1998, p.99.

위지의 특별 재판적을 인정한 취지도 위와 같은 관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신속하고 경제적인 증거 조사로 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 특별 재판적은 불법 행위의 요건 사실 전부의 발생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요건 가운데 어느 한 가지 요건 사실의 발생지라도 관할이 인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이고, 가해 행위지와 손해 발생지가 다르면 그 각각에 재판적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위 이론을 언론 사건에 적용하면 신문 등 출판물의 경우에는 제작지는 물론이고 그 배포 지역(손해 발생지)에, 방송의 경우에도 방송이 미치는 모든 지역에 관할이 인정된다는 결론이다. 실제로 언론 명예훼손소송에서 신문의 가판대가 위치한 특정 지역에 재판적이 있거나, 방송의 전파 송출지인 남산 송출소에 재판적이 있다고 주장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신문, 잡지, 방송 등이 교포가 사는 전 세계로 배포되고, 인터넷을 통하여 그 보도 내용을 세계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위 전통 이론을 그대로 고집한다면 피고인 언론사는 예상하지 못한 지역에서 제기되는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엄청난 비용과 노력을 들여야 할 것

이다.⁵⁾ 이는 다른 불법 행위 소송에서 찾아보기 힘든 현상으로, 관할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지 않으면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면에서 문제가 된다.

(2) 외국 사례의 검토

언론 사건의 관할에 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한 곳은 미국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사이버 공간의 세계적인 확대로 관할에 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⁶⁾

언론 기관의 관할 문제에 관하여 주목할만한 사례로는, 같은 날 선고된 Keeton v. Hustler Magazine⁷⁾과 Calder v. Jones⁸⁾ 사례가 있었다.

우선 Keeton 사례는, 뉴욕주에 거주하는 원고 Keeton이 'Hustler Magazine'을 발행하는 회사(publisher, 오하이오주에서 설립되고 주요 영업지는 캘리포니아였음)를 상대로 뉴햄프셔주에서 소를 제기한 사건인데, 원고는 이미 같은 사안에 대하여 오하이오주에서 소를 제기했다가 그곳에서의 소 제기기간(the statute of limitations)⁹⁾이 지났다는 이유로 위 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전례도 있었다. 하지만 미연방 대법원은 뉴햄프셔주에 10,000~15,000부의 잡지를 배포하였다는 점을 중시하여 그 주의

5) 인터넷 신문 기사를 통하여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그 기사를 열람한 개인 컴퓨터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한국 신문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지나친 관할의 확대는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비단 국내 관할만을 염두에 둔 논의가 아님을 밝힌다.

6) 최근 사례 중 소송이 제기된 주의 대인 관할권(jurisdiction in personam)을 부인한 사례로는 Barrett v. The Catacombs Press, James R. Privitera, Alan Stang, Darlene Sherrell, and CDS Networks, Inc., Civil No.99-736(E.D. Pa.1999); Cybersell, Inc. v. Cybersell, Inc., et al., 130 F.3d 414(9th Cir. 1997) 등 참조. 위 사안의 피고(defendant)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활동하거나 영업했을 뿐 실제 활동 영역은 일정한 지역에 국한된 개인, 혹은 일반 회사인 경우였다. 그밖에 이 영역에 관하여 참조할 만한 글로는, 平野 晋, "사이버스페이스法とインターネット上の裁判管轄權(1)~(9)", 國際商事法務25卷8號807쪽~26卷12號 1309쪽; Allan R. Stein, "The Unexceptional Problem of Jurisdiction in Cyberspace", 32 Int'l Law, 1167(Winter 1998); Michael F. Dunne & Anna L. Musacchio, Jurisdiction over the Internet, 54 Bus Law, 385, 391-98(Nov. 1998) 등.

7) 65 U.S. 770 (1984).

8) 465 U.S. 783 (1984).

9) 보통은 '소멸 시효'로 번역하나, 실제법적 권리 변동보다는 소 제기를 할 수 없다는 측면이 강하여 '소 제기 기간'으로 번역한다.

‘관할 확대법(long-arm statute)’에 따라 위 법원에 관할권을 인정하였다.¹⁰⁾

한편, Calder 사건에서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여배우 Shirley Jones가 플로리다주에서 ‘The National Enquirer’를 발행하는 회사와 취재 기자, 편집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기사는 업무상 캘리포니아에 자주 왕래한 점이 인정되었으나, 편집인은 그렇지 않았는데도, 캘리포니아가 기사의 주무대였고 만일 문제가 있어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그 소송은 캘리포니아에서 제기될 것임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편집인에게도 관할이 미친다고 하면서, 다만 단순히 회사에 고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관할을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하였다.¹¹⁾

한편, 독일에서는 신문 등 출판물의 제작지와 배포지가 다르면 두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각각 관할권이 있다는 사례가 있었다.¹²⁾

(3) 이상 문제를 제기하고 외국의 사안을 검토해 보았으나, 실무를 담당하는 법관으로서 느낄 수 있었던 점은 언론기관에 의한 명예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반 관할의 원칙에 제한을 가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었다. 기술의 발달로 언론기관에 의한 명예훼손에 따른 피해가 확산될 지역 범위는 실로 예측하기 힘든데도, 관할에 관한 일반 원칙

에 따르면 그 손해 발생지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모두 관할을 인정해야 하고, 현재로서는 전통 이론에 따른 지나친 관할의 확대를 제한할 논의가 활발하지 않아 근거를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언론 사건이 인터넷 등으로 말미암아 국경이나 한계를 설정할 수 없이 지역적으로 확산되어 갈 때 관할의 문제를 넘어 재판권의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를 요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일응은 앞서 살펴본 미국의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들이 언론 기관이 피고인 명예훼손 사건의 관할의 지나친 확대를 막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¹³⁾

요컨대, 사건과 증거의 근접성, 적정한 증거 조사에 의한 사실 규명이라는 불법 행위지의 특별 재판적을 인정하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기사의 준비, 작성 단계에서 주로 특별 재판적을 인정할 근거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결과 발생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재산상 손해이건 정신적 손해이건)는 주로 원고가 활동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때 원고에 있어서의 주된 손해의 발생지라는 관점에서 이를 고려하는 정도로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건과 무관하게 단순히 원고가 지정하는 일정 지역의 가판대에서 신문이 판매되었다거나, 방송 전파가 송출된 곳이라거나, 방송이 도

10) 미 연방대법원은 나아가 뉴햄프셔주 법원들이 이른바 ‘single publication rule(한번의 보도로 초래된 같은 당사자, 같은 사안에 기인한 같은 피해에 대하여는 다른 관할권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내용)’을 적용하여 왔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뉴햄프셔주 법원은 관할권에 관한 충분한 관련을 가진다고 하였다.

11) 이상의 판결 내용의 요약은 T. Barton Carter · Marc A. Franklin · Jay B. Wright, 『The First Amendment and the Fourth Estate (The Law of Mass Media, 7th Ed.)』, The Foundation Press, Inc., 1997, 185~186쪽 참조.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국내 문헌으로는 표성수, 『언론과 명예훼손』, 육법사, 1997, pp.152-154 참조.

12) BGH NJW 77, 1590(이시윤, 위 책, p.99에서 재인용).

13) 물론 미국과 우리의 재판권 행사와 관할 배분 문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다. 특히 미국에서의 민사 관할의 문제는 주 정부와 연방 정부가 따로 있고, 그에 따라 재판 작용과 다루는 사건의 범위가 다른데서 오는 복잡한 법리가 혼재해 있다. 위 언론 사건에서도 long-arm statute의 원리나 관할 인정의 기본 원리로 작용하는 minimum contact의 이론 등이 기본적으로 적용되나, 언론 기관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사안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례들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달한 TV나 라디오가 있는 가정이 있는 지역이었다거나, 인터넷 통신을 할 수 있는 컴퓨터의 소재지였다는 등의 실제 명예훼손의 요건 사실과는 관련성이 희박한 재판적 소재지를 근거로 하는 소송은 받아들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2) 반론보도청구 사건의 관할과 관련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본안으로 정정보도청구가 아닌 반론보도청구를 해오는 경우가 있다. 사건의 이름은 정정보도라고 밝히고서도 별지 보도문의 명칭이나 형식은 반론보도청구인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반론보도청구권¹⁴⁾이란 정기간행물¹⁵⁾ 혹은 방송¹⁶⁾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그 사실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또는 방송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이에 관한 소송의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¹⁷⁾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의 관할과 일치하는 때에는

당사자들이 양 절차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반론보도청구의 신청과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은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¹⁸⁾ 이는 반론보도청구의 소는 신속한 반론권을 보호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따라 가처분 절차를 준용하지만 그 피보전 권리는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그 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에 관한 청구권이 아닌 '반론권'이라는 특유의 권리¹⁹⁾로 그 심판은 독특한 절차에 따라 실현되는 특수한 소송 절차이므로 이 반론보도청구의 심판 청구에 일반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²⁰⁾

따라서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에서 반론보도청구권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²¹⁾ 위와 같이 병합 청구를 해온 경우에는 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우선은 적절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정정보도의 취지로 제소한 것인지를 밝힌 후 정정보도의 취지라면 그에 맞게 보도문의 자구, 제목, 형식, 내용을 고치도록 권고해야 할 것이다.

14) 반론보도청구권은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이름으로 언론기본법(1980. 12. 31. 법률 제3349호)에 규정된 이래 위 법이 폐지되면서 1987. 11. 28.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법률 제3979호)과 방송법(법률 제3978호, 2000. 1. 12. 제정된 통합 방송법이 아닌 구 방송법을 말한다)이 각각 제정·공포되고, 뒤이어 1991. 12. 31. 제정된 종합유선방송법(법률 제4494호)에도 규정되었다가, 1996. 7. 1.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그 명칭을 실무와 현실에 맞게 '반론보도청구권'으로 바꾸고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법원에서는 '정정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1988. 3. 4. 대법원규칙 제1003호, 1996. 7. 1.부터는 '반론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으로 명칭이 바뀜)을 마련하여 상세한 절차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심판을 하여 왔다. 반론보도청구권(정정보도청구권)의 변천 과정에 관하여는 양경승, "반론보도청구권의 제 문제", 『사법논집』제28집(1997), p.123 이하 참조.

15)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19조.

16) 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제정된 방송법(2000. 3. 13.부터 시행) 제91조. 이 법률의 시행으로 그 이전까지 시행되던 구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 한국방송공사법, 유선방송관리법은 모두 폐지되었다(방송법 부칙 제2조).

17)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3항(방송법 제91조 제8항에서 준용).

18) '반론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제2조 제4항. 한편, 위 조항에 따르면 추후보도청구 역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

19)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4항은 보전 처분에 관한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규정(민사소송법 제697조)과 본안의 제소 명령(민사소송법 제705조)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방송법은 제91조 제8항에서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20) 박용상,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사법논집』제22집(1991), pp.58-59.

21) 이건웅, "언론에 의한 법익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 『재판자료』제77집 하권(헌법 문제와 재판)(1997. 6.), 법원도서관(1997), p.234.

2. 명예의 개념

1) 명예와 다른 유사 개념의 구별

학계에서는 명예,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등 개인의 인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권리를 포괄하는 '인격권'이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있고,²²⁾ 이로써 인격권 속에 포함되는 개개 권리가 가지는 공통성을 연구하고 있는바, 명예는 '인격권'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권리라 할 수 있다.²³⁾

판례는,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²⁴⁾"이고, '명예훼손'이란 "명예 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²⁵⁾"고 했다. 따라서 '명예'라고 할 때에는 외부적 명예만을 의미하고, 인격의 내재 가치로서의 '내부적 명예'나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가치 판단이라 할 수 있는 '명예 감정'은 포함되지 않는다.²⁶⁾ '명예'의 개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원칙적으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을 때에만 명예훼손이 성립한

- 22) 인격권의 개념은 근세 초기 인문주의 법학자인 Donellus에 의하여 통일적인 체계를 갖춘 이래 자연법 논의와 함께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눈부신 발전을 하였다. 독일에서는 학설이 본기본법 제1조(인간의 존엄의 불가침)와 제2조(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근거로 일반적 인격권이 실정법상 보호받는 권리라고 하면서 생명·신체·건강·자유에 대한 민법 제823조의 규정 가운데 기타 권리에 일반적 인격권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본 이후, 독일연방대법원(BGH) 역시 1954년도 판결(BGHZ 13,334)에서 일반적 인격권을 인정하기에 이르러 이를 인정하는 것은 확립된 판례가 되었고, 현재는 인격권 보호에 관한 임법 논의가 한창이라고 한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1970년 민법 개정으로 사생활에 관한 권리, 즉 프라이버시권을 규정하였으며, 이미 세계 제1차 대전 이전에 민법에서 인격권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던 스위스는 1983년 민법 개정으로 그 보호의 범위를 한층 넓혔다고 한다. 영미법계에서는 대륙법계에서 인정하는 인격권의 개별 권리들이 common law상의 개별 불법 행위 이론으로 보호되다가 19세기 말부터는 미국법을 중심으로 종래 명예훼손(defamation)에 관한 불법 행위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한 사생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프라이버시권의 이론을 발전시켜 왔다고 한다. 이상은 五十嵐 清, 『人格權論』, 一粒社 1989, pp.1-3, 116 이하 부분에서 발췌한 내용임. 한편, 우리 민법 제751조 제1항에 규정된 신체, 자유, 명예는 한정적 열거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예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밖에도 정조, 성명, 초상 등의 침해도 모두 불법 행위가 되고, 이들은 '인격권'으로 총칭될 수 있다는 견해로는 박윤직, 『채권각론(민법강의 IV) 再全訂版』, 박영사, 1990, p.655, 기타 참고 자료로는 최종길, "인격권의 사법상의 보호 - 독일의 학설 판례의 발전을 중심으로", 『저스티스』9권 1호 (1965) p.29 이하; 김상용,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방법의 비교 고찰 1, 2, 3", 『사법행정』322(1987. 10.), 324(1987. 12.), 326호(1988. 2.); 이건웅, "언론에 의한 인격권의 침해와 구제", 『재판자료』 제66집(1994), 법원행정처, p.313 이하 등 참조.
- 23)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공보 1988, 1392, 이하 공1988, 1392 형태로 약술한다],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공1998하, 2108] 등에서는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24)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1450 판결. 이는 일본의 이전 大審院의 정의와 유사하고(大判明治 39. 2. 19. 大審院民事判決錄12輯226쪽), 일본 최고재판소는 위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最高裁 昭和45.12.18.民集24卷13 215쪽 참조).
- 25)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38032 판결[공1997하, 3625];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40077 판결[공1999.11.15.(94), 2292];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5510 판결 등. 한편, 영미법계에서의 명예훼손(defamation)의 개념을 보자면, 이들 역시 "올바른 사고를 하는 사회 구성원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평가를 일반적으로 저하시키는 행위(to lower the plaintiff in the estimation of right-thinking members of society generally, Sim v. Stretch [1936] 2 All ER 1237, 1240 영국 법원의 견해임)"라는 정의에 따르고 있고, 다만 libel(문자와 같은 지속적인 매체에 의한 경우, 그러나 방송은 여기에 해당한다)과 slander(구두에 의한 명예훼손과 같이 일시적이고 전파력이 약한 경우)로 나누어 취급하고 있지만, 이 역시 그 중점은 libel에 놓여 있고 양자의 구별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Eric Barendt/Laurence Lustgarten/Kenneth Norrie/Hugh Stephenson, 『Libel and the Media The Chilling Effect』, Clarendon Press·Oxford 1997, 2-3쪽 참조.
- 26) 통설이기도 하다. 김중환 외, 『주석 채권각칙 IV』, 한국사법행정학회 1987, p.129; 한위수, "명예의 훼손과 민사상의 제 문제", 『사법논집』제24집(1993), 법원행정처, p.397; 이광범, "불법 행위로서의 명예훼손과 그 구제 방법-대법원 판례의 성과와 과제를 중심으로", 『재판자료』제77집(1997), 법원도서관, p.130 등.

다고 보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되 다만 언론의 보도로 명예가 침해될 경우에만 불법 행위의 책임을 인정하려는 이익 형량의 관점에서 유래된 것으로 지극히 타당한 결론이라 할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명예'와 '명예 감정', 그리고 '명예'와 '모욕'과의 구별이다.

판례 중에는 '명예 감정'이 침해되어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판시²⁷⁾가 보이기도 하나, 위 사안들을 검토해 보면 명예훼손에 대하여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고, 아울러 대법원은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 감정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²⁸⁾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명예 감정'의 침해와 '명예'의 침해는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그러면 언론 기관에 의하여 '명예 감정'이 침해되었을 때에는 불법 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가.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다. 그 근거는 서로 다르지만, 명예훼손과는 별개의 불법 행위로서 그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한다거나,²⁹⁾ 민법 제751조 제1항에서 말하는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불법 행위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는³⁰⁾ 견해가 있고, 하급심 판례 중에도 명예 감정이 침해되었을 때에는 불법 행위가 되는 것을 전제로 판시한 사례³¹⁾가 있어 명예 감정이 침해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불법 행위의 성립은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³²⁾

한편, 명예와 모욕의 구별에 관하여 보건대, 대법원은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 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써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다르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다같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 유형인 명예훼손과 모욕을 민사상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에서까지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견해가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³³⁾

실제 사건에서는 위 개념들의 구분 한계가 반드시 분명하지만은 않고, 위 개념들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따로 명예 감정의

27) 하급심 판결로는 서울민사지방법원 1983. 9. 30. 선고 83가합2249 판결(『국내언론관계판례집』제1집, p.195 이하), 대법원 판례로는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공1989, 1766]; 1993. 6. 8. 선고 93다3073, 3080 판결[공1993하, 2002] 등에서 명예 감정을 침해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원심이 사용한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28)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756 판결 [공1992, 3252]. 일본의 판례 역시 이와 같은 태도이다. 위 日本 最高裁判所 昭和45.12.18.判決: 東京地判 昭和61.7.12.(判例タイムズ622 149쪽) 등 참조.

29) 한위수, 위 글, p.400.

30) 이광범, 위 글, p.132.

31) 서울지방법원 1998. 8. 12. 선고 98가합15397 판결(『국내언론관계판결집』제6집, 언론중재위원회, p.237). 이 판결은 정치 만평에 대하여 풍자적 외피 또는 은유를 제거할 경우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고, 그밖에 명예 감정이나 인격권을 침해한 것도 아니라고 판시하여, 소극적으로 명예 감정의 침해가 명예훼손과는 다른 별도의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위 사건은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로 확정되었다.

32) 이에 대하여, 일본에는 명예 감정도 일종의 인격적 이익이기 때문에 일정 한도를 초과한 위법한 침해에 대하여는 적게나마 위자료 청구를 인용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고, 최근 일본의 하급심 판례 중에는 명예 감정의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인용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五十嵐 清, 위 책, p.14 이하 참조). 또한 명예 감정의 침해가 동시에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되는 경우에는 프라이버시의 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법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竹田 稔, 『名譽・プライバシー侵害に関する民事訴訟の研究』, 酒井書店 1983, p.2).

33) 이광범, 위 글, p.131 ; 한위수, 위 글, pp.410-411 참조.

침해나 모욕만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하지만 위 개념의 구분이 실무상 중요한 이유는 위자료 산정과 위법성 조각 사유의 판단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즉, '명예'가 훼손되었을 경우는 '모욕'이나 '명예 감정'이 침해되었을 경우보다도 위자료가 현저하게 높게 산정된다. 진실이건 허위이건 '사실'을 적시하고 이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거나 믿게 하여 그 사람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 평가가 손상을 입은 경우를 주관적으로 개인의 감정이 상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한 공익성과 진실, 혹은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라는 명예 훼손의 특유한 위법성 판단의 근거는 진실성 판단 여부가 전제되지 않는 모욕이나 명예 감정의 침해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³⁴⁾

2) 우리 판례에서 인정한 명예 이외의 독립한 인격권들

인격권에 포함되는 개별 권리들이 어떠한지는 견해에 따라, 그리고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앞서 설명한 명예 이외의 인격권 가운데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 판례에서 인정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1) 초상권

판례 중에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이러한 초상권을 인정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와 민법 제751조 제1항(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가 있었다.³⁵⁾

사례를 보면, ①TV에 대학 신입생 환영회 장면을 당초의 약속과 달리 부정적인 내용으로 방송한 경우,³⁶⁾ ②속칭 '오렌지 족'의 생활을 비판적으로 다룬 기사에서 원고들의 얼굴 사진을 승낙 없이 게재한 경우,³⁷⁾ ③여대생 시절 방북하여 유명해진 인물의 결혼식 장면을 전혀 관련이 없는 호화 웨딩드레스가 유행한다는 TV 뉴스의 배경 화면으로 방영한 경우,³⁸⁾ ④주간 잡지에 과소비, 배금주의 풍조 등 사회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문제들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너무 빨리 부자가 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그 중간에 “돈의 노예들 :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이라는 부제를 단 여대생 사진을 그들의 동의 없이 무단 수록한 경우,³⁹⁾ ⑤유명 연예인의 여동생이 사실은 딸일지 모른다는 허위의 사실을 기사로 작성하면서 그 사진을 함께 게재

34) 모욕의 경우에 같은 견해로는, 이광범, 위 글, p.131 중 주(註)6 참조.

35)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판결(하급심판결집1997-2, p.80.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1998. 1. 13. 선고 97나43156 판결로 항소 기각 확정됨).

36) 위 남부지원 97가합8022호 사건.

37)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10. 20. 선고 94가합36754 판결(『국내언론관계판례집』제3집, p.239 이하). 위 판결에서는 그밖에도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감을 느끼게 한 점도 불법 행위가 된다고 판시하였다.

38) 서울고등법원 1996. 6. 18. 선고 96나282 판결(『국내언론관계판결집』제5집, p.151. 한편, 이 사건의 제1심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5. 11. 24. 선고 95가합13495 판결에서는 초상권 침해는 명예훼손에 포함되어 따로 불법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39) 서울지방법원 1993. 7. 8. 선고 92가단57989 판결(하급심판결집 1993-2, p.206).

한 경우,⁴⁰⁾ ⑥연하 남자와의 교제 경험담을 내용으로 하는 기사에 이와 무관한 원고들의 사진을 무단 게재한 경우,⁴¹⁾ ⑦원고가 특정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일 목적으로 원고의 사진을 그 특정인과 나란히 게재한 경우⁴²⁾에 초상권 침해로 인정하였다.⁴³⁾

반면, 공적인 인물의 초상권 침해에 대하여, 우리 나라 국민들에게 많은 귀감이 될 수 있는 뛰어난 기업인으로서 이미 우리 사회의 공적 인물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 사람은 자신의 사진, 성명, 가족들의 생활상이 공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하고, 그 사람을 모델로 하여 쓰여진 평전의 표지 및 그 신문광고에 사진을 사용하거나 성명을 표기하는 것, 그 내용에 가족 관계를 기재하는 것은 위 평전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이 아닌 한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⁴⁴⁾가 있었다.⁴⁵⁾

(2) 성명권

성명권(Namensrecht)은 특히 일반적 인격권의 이론을 정립한 독일에서 민법 제12조가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독일의 실정법상 권

리이고,⁴⁶⁾ 우리도 이를 인격권의 하나로 보는 데 이론이 없다.

실무상 성명권은 명예훼손의 내용 속에 융해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아 독립하여 이 권리를 인정할 사례가 많지는 않다. 그러나 언론에서 이름을 잘못 인용하여 인격의 동일성을 해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었고, 유명 연예인과 섭외도 하지 않은 채 마치 출연할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 데 대하여 성명권의 침해를 인정할 사례⁴⁷⁾가 있었다.

(3) 음성권

최근 언론기관, 특히 방송 매체를 운영하는 당사자가 특정인과 전화로 인터뷰하거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다음 그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음성을 그대로 내보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말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즉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의 말을 비밀 녹음하거나, 이를 언론 매체에 공개하는 행위 등은 일응 위법성을 추정받게 된다.⁴⁸⁾

최근의 사례를 보면, ① 피고 언론사 소속 기자들이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평범한 시민에 불과한 원고의 촬영 거부

40) 서울지방법원 1997. 2. 26. 선고 96가합31227 판결(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1997. 9. 30. 선고 97나14240 판결.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5집, p.199 이하).

4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8. 2. 27. 선고 97가합15881 판결(1심), 서울고등법원 1998. 11. 3. 선고 98나18577 판결(항소심)(『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6집, p.102 이하).

42) 서울지방법원 1998. 7. 1. 선고 97가합88220 판결(『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6집, p.171 이하).

43) 반면, 초상권 침해가 명예훼손에 포함되어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했던 사안으로는, 서울고등법원 1990. 5. 4. 선고 89나36528 판결(『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2집, p.120 이하) 참조. 그밖에 사생활 침해와 초상권 침해가 동시에 문제된 사안은 사생활의 침해 부분에서 인용하였음.

44) 서울지법 1995. 9. 27.자 95가합3438 결정(하급심판결집 1995-2, p.184). 이 결정은 서적 제작·판매·반포 금지 가처분 사건이었다.

45) 초상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엄동섭, “언론보도와 초상권 침해”, 『민사판례연구』X(1999), 민사판례연구회, p.751 이하 참조.

46)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독일 등 외국의 판례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박용상, 『언론과 개인 법익 - 명예, 신용, 프라이버시 침해의 구제 제도』, 조선일보사 1997, p.82 이하 참조.

47) 서울지방법원 1996. 5. 16. 선고 판결(박용상, 위 책, p.86에서 재인용).

48) 박용상, 위 책, p.92.

의사 표시를 무시하고 원고를 아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충분히 원고를 알 수 있는 형태로 원고의 모습과 음성 및 행동을 촬영하여 방영한 것은 원고의 인격권(초상권과 음성권)을 침해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가 된다고 한 판례⁴⁹⁾가 있었고, ② 명예훼손과 함께 음성권의 침해를 주장한 사안에서, 명예훼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동의 없이 녹음한 전화 통화 테이프를 넘겨받아 음성 변조 처리 없이 방송하여 음성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만을 받아들인 판례⁵⁰⁾가 있었다.

(4) 사생활의 비밀

개인의 이혼 사유와 그 배경, 출생의 비밀 등에 관한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고 이러한 영역은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자유로 보호되어야 한다. 특히 세간에 널리 알려진 공인이라도 개인으로서 가지는 사생활(프라이버시)의 자유는 보장받아야 하고, 언론기관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보도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대법원은 “본인의 승낙을 받고 승낙의 범위 내에서 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본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승낙의 범위를 초과하여 승낙 당시의 예상과는 다른 목적이나 방법으로 이러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하였다.⁵¹⁾

하급심 판례 중에는 ①인터뷰한 적이 없는

데도 마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이혼 사유 등을 밝힌 것처럼 보도한 사안에서 명예훼손과 함께 사생활의 비밀 침해를 인정한 사례들이 있었고,⁵²⁾ ②유방 확대술에 관한 보도에서 피해자가 알아볼 수 없는 방법으로 보도할 것을 조건으로 촬영을 허락하였는데 피해자가 누구인지 주위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방송한 사안에서 “유방은 여성의 성적 부위의 하나로서 그 확대를 위한 성형 수술은 여성의 비밀 영역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인의 비밀 보존 의사가 있는 한 이를 가족, 친지, 친구 등으로부터도 비밀 사항으로써 보호받아야 함이 마땅하다”는 이유로 위자료의 지급을 명한 사례가 있었으며,⁵³⁾ ③신원을 철저히 숨길 것을 조건으로 인터뷰 촬영에 승낙하였는데도 인신 매매 조직원이라는 자막과 함께 그의 성(姓)을 인용하고, 얼굴의 일부분과 실제 목소리를 그대로 방영한 경우⁵⁴⁾에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다.

3. 당사자

언론 사건에서도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기타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구하는 자가 원고이고, 그 주장의 상대방이 피고가 된다. 특히 최근 통신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언론 매체가 생겨나면서 피고는 날로 다양해지고 그 범위가 넓어져 가고 있음을 느낀다.

49) 서울고등법원 1999. 10. 22. 선고 99나49001 판결.

50) 서울지방법원 1999. 7. 7. 선고 98가합51935 판결(『언론중재』, 1999년 겨울호, p.156).

51)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공1998하, 2377].

52)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12. 7. 선고 93가합25344 판결(『국내언론관계판례집』제3집, p.219); 서울지방법원 2000. 2. 2. 선고 99가합64112 판결(『언론중재』, 2000년 봄호, 136쪽).

53) 위 대법원 판결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1996. 2. 2. 선고 95나25819 판결(『국내언론관계판례집』제4집, p.242) 참조. 그밖에 초상권 침해가 주된 쟁점이었으나 사생활의 비밀의 침해까지 인정했던 사안으로는 앞서 초상권 부분에서 인용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판결 참조.

5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9. 4. 2. 선고 98가합16587 판결(『국내언론관계판례집』제7집, p.159).

다음에서는 실무상 논의가 있었던 당사자와 관련된 문제점에 관하여 원·피고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원고

(1) 법인 기타 단체들의 명예

대법원은 “법인의 목적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명예, 신용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 침해자에 대하여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고,⁵⁵⁾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법인의 경우 그 사회적 명예, 신용을 가리키는데 다름없는 것으로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하면서,⁵⁶⁾ 구체적으로는 “자연인, 법인 또는 소송상 당사자 능력이 있는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여,⁵⁷⁾ 법인 기타 단체나 재단 등의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⁵⁸⁾ 판례에서는 원고(법인)의 인격과 명예, 신용 등을 훼손⁵⁹⁾ 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2) 집단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법인이나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그 명예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자체 명예의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는 집단의 경우⁶⁰⁾에 어떠한 범위에서 명예훼손을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되고 있다. 이는 언론 기관이 명예훼손의 보도를 하면서 집단 명칭을 사용하거나 집단 중 특정 몇몇 사람만을 지칭하였을 경우 이것이 집단 구성원들 각각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지, 명예훼손이 된다 하더라도 그 범위는 어떠한지에 관한 문제로, 이른바 집단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문제로 논의되고 있다.

집단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러한 발언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 표시에 의한 비난은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는 이르지 않으므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말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발언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되어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⁶¹⁾ 판례 중에는 ‘서울시민

55) 대법원 1965. 11. 30. 선고 65다1707 판결 [민집 13(2) 249]. 이 사건은 일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사건이었다.

56)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1450 판결 [공1988,1020].

57)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공1986, 417]. 이 사건은 구 언론기본법상의 정정보도 명령(현행 반론보도청구)을 신청할 수 있는 자에 관한 판결이었다.

58) 주로 비법인 사단인 시민 운동 단체들의 명예를 인정하 사례로는 서울지방법원 1998. 8. 19. 선고 97가합93499 판결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6집, 229쪽) 참조.

59)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공1996상, 1486].

60) 예를 들면, 동창회 등의 단속 친목 모임, 모 대학 졸업생들, 어느 지역의 축구 선수들이라고 표현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61) 한위수, “집단 명예훼손 소송에 관한 연구”, 『언론중재』, 1998 여름호, pp.59-60(이하 이 글은 ‘위 글(언론중재)’로 표시하고, 사법논집에 실린 글은 ‘위 글(사법논집)’로 표시한다). 기타 박용상, 위 책, p.111; 표성수, 위 책, 1997, p.378 참조.

또는 경기도민'이라는 막연한 표시만으로는 그 중 누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인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⁶²⁾가 있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구성원 중 일부만을 지칭한 경우, 예를 들면 모 은행 모 지점 임직원이 모두 7명인데 그 중 A, B가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고 보도한 경우이다. 이 경우 7인 모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 하여 보도를 불허한다면 언론기관의 입장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는 결과가 되고, 반면 보도를 허용한다면 선의의 구성원들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그 이익 형량이 쉽지 않은 부분이다.

하급심 판례 중에는, ① 월간지에 “독점수기, 호스텔스 출신 서울대 여대생의 충격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전주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서울대학교 사회대 86학번 여학생’에 관한 기사가 게재된 데 대하여 위 대학 사회대 86학번 여학생 중 15명이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서울대학교 사회대 86학번 여학생은 49명에 불과하였고, 특히 그 중 2명은 전주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점에서, 피해자들(원고 15인)이 생활하는 범위 내의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 기사의 모델이 피해자들일 수 있다고 추지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한 사안이 있었

고,⁶³⁾ ② 전국적인조직을가진 군부대의 현역 장성이 병무비리와 관련되어 있다는 내용의 뉴스 방송에서 위 부대의 현역 장성이 모두 8명에 불과한데도 ‘모 부대 소속 현역 장성들’이라고 지적하고, 시작 부분에서 위 부대 소속 현역 장성들이 “대거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한데 이어 A, B, C라는 이니셜을 사용하여 위 부대 현역 장성 가운데 3-4명이 병무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한 사안에 관하여, 현역 장성들인 원고들이 소속된 집단의 소규모성, 직업과 직위를 특정하여 보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생활하는 범위 내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위 보도에서 지적한 병무 비리에 관련된 사람들이 원고들일 수 있다고 추지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진다는 이유로 위 보도로 원고들 개개인의 명예가 모두 훼손되었다고 인정한 사안이 있었다.⁶⁴⁾

이 문제에 대하여는 설사 구성원 중 일부만을 지칭한 경우에도 현실적으로는 구성원 전부가 의심을 받아 각 구성원 모두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집단 구성원의 숫자가 적고 지칭된 구성원과 다른 구성원을 구별할 아무런 단서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 구성원 전부에 대한 진실 등의 증명이 없는 한 그 발언에 대한 진실 등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서 다른 구성원에 대하여는 면책되지 않는

62) 대법원 1960. 11. 26. 선고 4293형상244 판결.

63) 서울지방법원 1996. 5. 14. 선고 94가합91515 (『언론중재』, 1996년 가을호, p.166). 이 판결에서는 전주 소재 고등학교 출신 원고들에게는 각 1,000만원을,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각 200만원을 인용해 주었다.

64) 서울지방법원 2000. 10. 18. 선고 99가합95970 판결(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가 진행 중임). 한편, 그밖에도 위 사건에서 문제된 보도 중에는 ‘현역 장성’이라고 언급하지 않고 ‘모 부대가 병무 비리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였다.’고 한 다른 방송 부분도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보도 역시 원고들에 대한 보도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위 부대 소속원으로서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위 보도가 원고들에 대한 보도라고 볼 수는 없고, 위 부대 조직의 전국적인 방대성, 소속 구성원이 병사, 하사관, 군무원, 장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그 수가 많은 점 등 위 부대의 단체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기사사 자체에 대한 명예훼손 사실의 보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그 개별 구성원인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까지 함께 저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⁶⁵⁾가 있는 바, 참고가 될 것이다.

(3) 명예훼손을 당한 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의 청구

(가) 문제의 제기

직접 명예훼손을 당한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기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혹은 죽은 사람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로 인하여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혹은 정정보도청구를 해오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어느 범위까지 법익 침해를 인정하여 그 청구를 받아들일지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나) 민법 규정과 판례의 태도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752조(생명 침해로 인한 위자료)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생명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에서 피해자와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는 이론의 여지가 없도록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제752조의 규정은 “예시적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생명 침해가 아닌 상해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는 손해배상에 관한 원칙 규정인 본법 제750조에 의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⁶⁶⁾ 임을 분명히 하였고, “민법 제752조에 규정된 친족 이외의 친족에 있어서도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입증은 함으로써 동법 제750조, 제7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⁶⁷⁾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생명 침해의 경우 피해자의 누나,⁶⁸⁾ 피해자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⁶⁹⁾에게 인정한 사례가 있었고, 체 및 신체의 자유 침해에 대하여 배우자,⁷⁰⁾ 직계 존속⁷¹⁾과 비속⁷²⁾에게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가 있었다.

그런데, ‘명예’의 침해에도 위와 같은 이론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우선 이를 부정하는 견해를 보면, 사람은 스스로의 행동에 의하여 판단을 받을 뿐 친구나 친척들의 행동에 따라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그것이 불가피하게 타인의 명예를 해한 것이 아닌 한(예컨대 “갑은 사생아

65) 한위수, 위 글(언론중재), p.65. 한편, 이 글에서는 이러한 경우, 아예 당해 구성원을 특정하여 다른 구성원이 오인받지 않게 하거나(왜냐하면 특정된 구성원에 대하여는 진실 등의 증거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면 ‘모 은행 모 지점의 한 직원’이라고 일반화하여 보도하여야 할 것이라는 견해도 표명하고 있다.

66) 대법원 1965. 5. 25. 65다292 판결. 이후 같은 취지의 판시로는 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다1942 판결 [공1978, 10608],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공1999상, 998] 등.

67) 대법원 1967. 9. 5. 선고 67다1307 판결 [집15(3) 민035].

68) 위 대법원 1967. 9. 5. 선고 판결. 한편, 친생자 아닌 사람은 가사 다른 사람의 호적에 친자로 등재되고 양육되어 온 것이라 하여도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직계 존비속 관계나 친족 관계가 없어 민법 제752조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례(대법원 1970. 5. 12. 선고 69다2136 판결 [집18(2) 민008])도 있다.

69) 위 대법원 1978. 1. 17. 선고 사건.

70) 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다267 판결 [집18(1) 민242].

71) 대법원 1967. 12. 26. 선고 67다2460 판결 [집15(3) 민438] 이 사안은 동일 호적에 있으며 함께 생활하고 있는 외조부에 대한 사례였다. 기타 위 대법원 1970. 3. 24. 선고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판결 등 참조.

72) 대법원 1967. 6. 27. 선고 66다1592 판결 [집15(2) 민108]. 딸에 대하여 인정한 사례.

이다.”라는 발언은 불가피하게 갑의 어머니가 혼인의 관계를 가졌다는 뜻이 되어 갑의 어머니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고,⁷³⁾ 하급심 중에도 위 견해와 같은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판결이 있다.⁷⁴⁾

반면, 대법원 판결의 실시 중에 “피해자인 원고는 물론 그의 가족 등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가할 우려가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을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산정 사유의 하나로 보고 있는 사례⁷⁵⁾가 있었고, 하급심 판결 중에도 유명 가수의 사망 사건과 관련, 혐의를 받은 원고가 범인으로 확정된 듯 오락 프로그램에서 수차례 방송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부모들에게 10,000,000원씩 배상을 명한 판결⁷⁶⁾과 고 육영수 여사의 저격범으로 잘못 보도된 사건에서 보도 대상자인 원고 외에 그 처와 자식들에게도 경험칙을 근거로 위자료를 인정할 판결⁷⁷⁾이 있었다.

(다) 이론상 위 부정설이 타당한 면이 없지

아니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우리 법 규정과 그 해석 방향, 그리고 실무 태도를 종합하여 볼 때 생명, 신체가 침해된 경우와 명예를 굳이 구분할 수는 없다고 본다. 다만, 민법에 규정이 있는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와 같이 사회적으로 보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험칙 등에 따라 그들의 청구를 인용해 줄 수 있겠으나, 그 밖의 친족들이나 스승과 제자, 친구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정의 문제로 돌아가 원고와 명예훼손을 당한 자 사이의 관계와 그러한 관계를 아는 사람의 범위는 어느 정도이며, 그 보도가 있을 때에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과 그 보도를 연관시키고, 언론 기관이 그에 대하여 고의, 과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충분히 주장, 입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⁷⁸⁾

(4) 사자(死者)의 경우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는 “공언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죄가 됨을 명시하고 있고, 또한 저작권법 제14조 제2항은 “저작자의 사망 후에

73) 한위수, 위 글(사법논집), pp.411-412. 이 글에서는 그밖에 상세하게 그 논리를 뒷받침하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들고 있는데, 참고 바람.

74) 서울민사지방법원 1984. 10. 15. 선고 83가단7668판결(『국내언론관계판례집』제1집, p.241 이하). 이 판결은 원고들이 그들의 어머니와 모 종교 단체 교주 사이의 관계를 적시한 책을 제작, 배포한 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 책자에서 그 어머니만이 언급된 이상 그 어머니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은 별론으로 하고, 명예라는 고도의 개인적인 속성에 비추어 보면 바로 원고들의 명예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고, 명예 감정의 침해 주장에 관하여는 상당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다.

75) 1999.1.26. 97다10215, 10222 [공1999상, 330].

76)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9. 3. 26. 선고 98가합9329 판결(『언론중재』1999 여름호, 통권 71호, pp.158-165).

77)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1. 5. 7. 선고 90가합10957 판결(『국내언론관계판례집』제2집 p.157 이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1991. 9. 25. 선고 91나27329 판결은 164쪽 이하).

78) 예를 들면, 누군가를 살인자라고 보도하면서 그 사람의 실명과 함께 사진, 그리고 과거의 경력 및 현재의 지위 등까지 상세하게 보도하였는데, 그 보도에 가족이나 기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운동 선수의 코치 등과 같은 경우)이 인터뷰를 거절했는데도 그들에게도 반론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명분 아래 그들의 심정까지 추측하여 보도하였다면, 그 신문을 읽는 독자로서는 그 직접의 보도 대상자뿐 아니라 가족 등에게도 교육상 혹은 다른 문제가 있어 보도 대상자가 극악한 범행에까지 이르게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불필요한 추측까지 불러일으키게 하여 가족 등의 명예까지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 하였더라면 그 저작 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형벌을 가하고(위 법 제99조 제2호), 저작자 사망 후에도 일정 기간 저작권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위 법 제36조 등), 민법에는 이에 관한 별다른 규정이 없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을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

학설을 보면, 위 형법과 저작권법 규정을 근거로 사람은 사망하였을지라도 그의 인격적 가치는 남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 가치로서의 사자의 명예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사자를 명예의 주체로 보아야 한다는 견

해⁷⁹⁾가 있고, 사자는 사람이 아니므로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다거나, 사자에 대해서는 사회에서의 존재와 활동의 전제가 되는 가치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유족의 명예 또는 유족이 사자에 대하여 가지는 존경의 감정이고 사자의 명예라고 볼 수 없다⁸⁰⁾는 견해가 있다.

판례를 보면,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자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평가를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여 사자의 명예를 그 보호 법익으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지만,⁸¹⁾ 민사 소송과 관련하여서는 이 문제를 직접 다룬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고, 하급심 판결 중에는 민사상 사자의 명예 주체성을 긍정하는 듯한 사례⁸²⁾가 있었다.⁸³⁾

79) 『민법주해(Ⅰ)』, 박영사, 1999, p.256(양삼승 집필 부분); 손동권, “언론보도와 사자의 명예훼손”, 『언론중재』12권 1호(42호), 언론중재위원회, pp.8-9; 김재형, “인격권 일반-언론 기타 표현 행위에 의한 인격권 침해를 중심으로-”, 『민사판례연구』X(1999), 민사판례연구회, p.659.

80) 지홍원, “인격권의 침해”, 『사법논집』제10집(1979. 12.), 법원도서관, p.226; 한위수, 위 논문, pp.401-402. 박용상, 위 책, p.108.

81)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1520 판결 [공1983, 1782].

82) 서울지방법원 1995. 6. 23. 선고 94가합9230 판결 (하급심판결집 1995-1, 323). 이 판결에서는 “모델 소설에 있어서 모델이 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그 소설의 출판 금지를 구할 수 있고, 그 모델이 된 사람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그 유족이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그 금지를 구할 수 있다. 인간은 적어도 사후(事後)에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시키는 왜곡으로부터 그의 생활상의 보호를 신뢰하고 그 기대 하에 살 수 있는 경우에만, 살아 있는 동안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83) 참고로 독일 연방대법원 판례는 “독일 기본법 제1조 제1항에 의한 인격권의 법률적인 보호는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반적인 가치 및 존경 청구권은 계속해서 존속하는 것이어서 특히 사망한 사람의 계속적인 인생상(Lebensbild)은 적어도 심히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부터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BGHZ 50, 136(139)). 일본의 경우를 보면, 東京高裁 昭和54.3.14, 高民集32卷1 33쪽(判例時報918호21쪽) 판결에서 이에 관하여 사자 본인의 명예 내지 인격권에 관해서는 누가 민사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실정법상 근거가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부정하였고,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원고들 자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고인에 대한 경애, 추모의 정도 일종의 인격적 법익으로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적어도 적시된 사실이 허위일 것을 요건으로 하여 원고 본인에 대한 직접적인 불법 행위의 성립이 가늠할 것이라고 한 사례가 있었다. 위 판결의 이론은 그 후의 판례에도 인용되고 있다고 한다. 이에 관하여는 竹田稔, 위 책, pp.97-98 참조.

한편, 영미법계에서는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문제보다는 절차 진행 후 원고가 사망하였을 때 그 절차의 수계 문제가 중심이 되어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관습법상 피고의 폭행, 비방 등으로 야기된 원고의 인격 침해는 그가 사망함으로써 중단된다는 오래된 원칙이 적용되어 소송의 수계가 인정되지 않았고, 더욱이 명예에 관하여는 그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편이었으나, 미국에서 1975년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이 위와 같은 관습법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이래(Moyer v. Phillips) 미국에서는 개별 주를 중심으로 명예훼손 소송의 수계를 인정하는 주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수계 인정과 헌법 수정 1조와의 관계 등 자세한 내용은 염규호, “불법 행위로서의 명예훼손의 수계”, 『언론중재』10권 4호(통권 37호, 1990. 11.), p.44 이하 참조.)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성립 가능성은 주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가 있을 때 그 불법 행위에 관하여 어떻게 이론 구성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근거는 달리하나 어느 설이건 사자의 명예가 훼손되었을 경우 일정한 요건을 전제로 그 가족 등에 대한 불법 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에는 견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 의견으로는, 논리적으로 볼 때 사자의 명예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우선 사자의 명예를 인정하는 듯한 실정법 규정을 보면, 형법이 규정하는 사자의 명예훼손은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상 마련한 정책적인 규정이라고 보여지고 그 요건 역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고 있고, 또한 저작권법 역시 저작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맞도록 사자의 명예나 저작 인격권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일 뿐 저작권법이 정하는 보호 기간이 지나면 그로써 사자의 권리나 명예도 소멸한다고 보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위 규정을 근거로 민법상으로도 사자의 명예를 인정할 근거가 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또한 사자의 명예가 사실로서 인정될 수는 있겠으나, 법적으로 사자의 명예 주체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결국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보도에 대하여 가족 등에게 청구권을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반 불법 행위 이론에 따라 사실 인정의 문제로 돌아가 원고가 고인과 어떠한 관계가 있었고, 그러한 관계를 아는 사람의 범위는 어느 정도이며, 고인에 대한 보도가 있었을 때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과 그 보도를 연관시키고, 언론 기관이 그에 대하여 고의, 과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충분한 주장, 입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책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결국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로 원고 자신의 명예나 기타 다른 인격권이 침해되었음을 충분히 입증할 때에 청구가 인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⁸⁴⁾

2) 피고

(1) 언론 기관의 의미와 보도에 책임이 있는 자들

(가)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을 통상 '언론사건'이라 부르고 이 때 피고는 주로 '언론기관'이 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언론 매체에 대한 기존의 규제 제도는 인쇄 매체, 방송 매체, 통신 매체 각각에 대하여 다른 규제 원리와 규제 방식을 적용하여 온 '3분할 커뮤니케이션 제도'에 기초해 있고,⁸⁵⁾ 이러한 기존 관념에 따라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 법률',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으로 언론 매체를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기관'이라는 개념은 법적인 개념도 아니고 가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정의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다만 우리가 흔히 '언론기관'이라고 할 때에는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신뢰를 쌓아 정기적·계속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출판물, 방송, 전자통신 등 그 전과 범위가 광범위한 매체를 소유한 법인이나 이에 준하는 개인업체들을 떠올리게 될 뿐이다.

84) 이는 박용상, 위 책, p.108에서는 "민사상으로 보면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그 유족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불법 행위가 성립된다고 한다."고 하고 있는 바, 이 역시 같은 결론이라고 보인다.

85) 황성기, "방송·통신의 융합과 언론 매체 규제 제도의 개선 방향", 『법과 사회』 1999년 하반기(16, 17권 합본호), p.347 참조.

대법원은 신문 매체의 범죄 사실 보도에 관한 사건에서 이러한 '언론기관'의 특성에 관하여, "보도내용이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 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피의 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신문 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사후 정정보도나 반박 보도 등의 조치에 의한 피해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예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보통⁸⁶⁾"이라고 판시함으로써, '언론기관'과 그 보도의 특성이 어떠한지에 관하여 간명하게 표현해 보이기도 하였다.⁸⁷⁾

실무상으로는 주요 정기간행물⁸⁸⁾을 발행하는 법인체나 사업체, 방송 사업자⁸⁹⁾가 피고로 되었을 경우에 이를 보통 '언론사건'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아울러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전세계적인 전파력을 가지고 확

산되어 가고 있는 새로운 매체들의 운영자나 사업자들의 책임 문제에 관하여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왔다고 보며, 앞으로 사례가 축적되어 가면서 이에 관한 연구도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⁹⁰⁾

(나) 언론기관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다고 할 때, 그 책임이 언론 기관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일반인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주요 언론 기관은 그 조직이 방대하고 복잡하여 하나의 보도를 하기 위해서도 기획에서 최종 보도 단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게 되고 때에 따라서는 엄청난 장비까지 동원되는 경우도 있다.⁹¹⁾

실무를 보면 보통은 경제 능력이 충분한 매체 운영자인 법인을 주된 피고로 삼고 그밖에 취재 기자, 편집인, 정보 제공자 등을 피고로 하여 이들 사이의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물어오는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취재 기자 개인이나 정보 제공자만을 피고로 삼아 소를 제기해 오는 경우도 있다.

'언론기관'의 정의가 가변적이고 다양한 것

86)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 판결 [공1999상, 330].

87) 한편, 형법에 관한 사례로서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도1143 판결[공 1986, 729]에서도 "형법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중벌하는 취지는 사실 적시의 방법으로서의 출판물 등의 이용은 그 성질상 다수인이 전문할 수 있고 장기간 보존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더 크다는데에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88) 현행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하 정기간행물이라 함)에서는 "정기간행물이라 함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통신·잡지·기타 간행물을 말한다.(제2조 제1호)"고 하면서, 일반 일간 신문(제2호), 특수 일간 신문(제3호), 외국어 일간 신문(제4호), 일반 주간 신문(제5호), 특수 주간 신문(제6호), 통신(제7호, 전과법에 의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통신사와 통신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함을 목적으로 행하는 송수신 또는 발행하는 간행물), 잡지(제8호), 기타 간행물(제9호, 제2호 내지 제8호 외의 간행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행물)로 세분하고 있다.

89) 현행 방송법상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 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시청자)에게 전기 통신 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지상파 방송, 종합 유선 방송, 위성 방송으로 구분되고(제2조 제1호), '방송 사업자'라 함은 지상파 방송 사업자, 종합 유선 방송 사업자, 위성 방송 사업자,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3호).

90)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는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이에 관한 국내문헌으로는 황성기, "전자 미디어와 명예훼손법", 언론중재, 2000년 봄호, p.21 이하; 岡村久道 외 1, "인터넷-네트의法律實務", 『新日本法規』, 1999; 註 7에서 인용한 각 문헌 등 참조.

91) 이와 같은 보도의 생성한 실무에 관하여 참고할만한 문헌으로는 윤재홍, 『TV 뉴스 - 취재에서 보도까지』, 커뮤니케이션북스 1998.

과 케를 같이 하여, 보도에 관여한 자들의 책임을 언론 매체와 사안별로 획일화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취재를 시작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보도 회의 - 역할 분담 - 취재 - 보도내용의 작성 - 편집 - 방송·발행·판매로 보도 단계를 나누어 각 단계마다 책임이 있는 자들을 가려낸 후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하 차례로 살핀다.

(2) 매체 운영자인 법인 등

매체를 운영하는 주체는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그 발행, 배포(때에 따라서는 판매까지)를 담당하는 자, 방송의 경우에는 방송국을 운영하는 방송 사업자, 기타 언론 매체는 그 매체별 특성에 따라 법인 혹은 사업체 대표가 될 수 있고, 이들이 출판물 등의 발행인으로서, 방송 담당자로서, 보도에 책임이 있는 자들의 사용자로서 각자 언론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책임을 지게 된다.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비교적 규모가 큰 일간신문이나 주간 신문, 월간지 등은 그 신문을 발행하는 법인이나, 규모가 작은 월간지는 그 발행 및 편집 책임을 맡고 있는 사업체 대표가, 방송의 경우에는 방송국을 운영하는 방송 사업자(법인)가 매체의 운영 책임자로서 피고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3) 취재 기자 및 편집인

보도의 실질적인 내용은 보통은 취재 기자가 작성하게 된다. 따라서 1차로는 사건을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⁹²⁾ 편집인 또한 기사나 방송의 취사 선택, 제목 선정 등의 책임자로서 언론사나 기자들과 함께 공동 책임을 지게 되

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언론기관의 규모가 방대해지면서 소속된 기자들이 늘어나고 역할도 부서별로 매우 다양해지면서 한 사건이나 주제에 관하여 데스크라 불리는 일정 부서 내 책임자의 지휘 아래 기자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그에 따라 각 기자들이 취재한 결과를 종합하여 편집을 거친 후 보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⁹³⁾ 이러한 보도 과정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보도 책임은 기자들보다는 오히려 기자들을 지휘, 감독한 데스크라 불리는 각 부서 내 책임자나 기사를 취사 선택하고 제목을 붙이는 편집인에게 있다고 볼 경우가 늘고 있다. 예를 들면, 특정 사건에 대한 연재 기사를 작성하거나 대대적인 보도를 하는 경우, 언론사는 사회부 책임자를 통하여 그 소속 기자에게는 그 사건의 내용과 향후 처리 방향 및 문제된 인물의 경력과 가족 관계 등을, 정치부 책임자를 통하여 그 소속 기자에게는 국회 조사권 발동 여부 등을 취재하도록 역할 분담을 시키고 각자에게 해당 부분의 기사를 작성하게 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보도 제작은 주로 데스크라 불리는 부서 내 책임자 등의 지휘와 책임 아래 이루어지게 되고 개별 기자들은 위 지시에 따라 맡은 부분에 관한 취재를 담당할 뿐이다. 기자들은 취재한 내용을 소속 언론사 해당 부서에 보내게 되고 부서 내 데스크는 이를 검토한 후 편집부에 보내고 이어 편집부에서는 기사를 취사 선택하고 내용을 보정하고 적절한 제목을 붙여 보도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서 기자들의 독립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 보도로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었을 경우 각자의 담당 부분만을 취재한 기자에게 보도에 따른 전체적인 책임을 묻는

92) 표성수, 위 책, p.396 참조.

93) 주요 언론사에 대체로 공통된 보도 관계 부서는 정치부, 사회부, 경제부, 문화부, 체육부, 지방취재부(전국부), 편집부, 교열부가 있고, 그밖에 독자나 기고문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다고 한다.

것은 곤란하다. 결국 기자들이 언론사의 지시에 따라 역할에 따른 해당 기사만을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언론사와 취재를 총괄 지휘한 책임자와 편집인은 보도의 전체 책임을, 기자들에게는 각자 작성한 기사 부분에 관하여서만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원칙으로는 기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것이나, 사안별로 기자의 책임이 어느 정도까지 인정될지는 정확한 사실 인정과 함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문제라 하겠다.⁹⁴⁾

(4) 제보자 등에 대한 책임 성립 여부

(가) 보도에서 정보 제공자 혹은 취재원이라 불리는 자들은 매우 다양하다. 보통의 경우 언론사 등의 편집, 편성권과 관련하여 제보자의 보도에 대한 책임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보도될 것을 예상하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⁹⁵⁾ 대법원 역시 취재원인 정보 제공자와 취재 기자 및 발행, 편집인의 공동 책임을 인정한 경우가 있었고,⁹⁶⁾ 하급심 판례 중에는 유명 가수가 원고의 남편과 동거한다는 취지의 인터뷰에 응하여 이것이 월간지에 자세히 보도된 사안에서, 위 유명 가수에 대하여는 “월간지에 게재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기사의 정보를 제공하여 이 사건 기사가 게

재되게 한 자”로서 발행 회사 및 취재 기자와 함께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다.⁹⁷⁾

위와 같은 일반론 외에 그동안 취재원의 책임이 문제되었던 경우를 본다.

(나) 우선 국가기관으로 경찰과 검찰 등 수사 기관이 피의 사실을 공표하여 문제되었던 경우,⁹⁸⁾ 국세청⁹⁹⁾과 한국소비자보호원¹⁰⁰⁾의 행정상 공표가 명예훼손이 되었던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에는 비록 언론사가 위 발표나 공표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국가 기관의 광범한 사실 조사 권한, 그 발표나 공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언론사가 내용을 변경, 추가하거나 기타 필요한 취재를 다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국가 기관의 단독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 언론사가 독자의 투고, 수기, 대담의 형식을 빌어 보도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제보자만이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이나, 독자, 시청자에 대한 전달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언론사에 있고 편집권이 보장되어 있는 만큼 언론사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¹⁰¹⁾ 판례 중에는 월간지에 악덕 변호사라고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수기 형태로 실었던 사안에서 책임을 인정한 것이 있다.¹⁰²⁾

(라) 한편, 독자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사회

94) 한편, 피고가 된 편집인의 책임이 부정되었던 사안으로는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12. 7. 선고 93가합25344 판결 (『국내언론관계판례집』제3집, p.219) 참조.

95) 표성수, 위 책, p.397 참조.

96)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38032 판결 [공1997하, 3625].

97)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11. 9. 선고 90가합15032 판결 (『국내언론관계판례집』제2집, p.141 이하).

98) 대법원 1996. 5. 28. 선고 94다33828 판결 [공1996하, 1973]; 대법원 1996. 8. 20. 선고 94다29928 판결 [공1996하, 2776];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공1998하, 2108];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 판결 [공1999상, 330].

99)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18389 판결 [공1994, 194].

100)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다57689 판결 [공1998하, 1712].

101) 표성수, 위 책, p.398.

102)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공1988, 1392].

저명 인사의 기고문 중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기고가의 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그 글을 게재하거나 방송한 언론사의 책임을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판례 중에는 방송사(피고)가 저명한 교수(원고)의 이론을 방영하면서 이를 편집하여 그 이론의 의미가 달리 알려질 우려가 있었던 사안에서 방송법에서 정한 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의 저작 인격권은 침해되었다고 보아 피고 방송사에 대하여 사과 방송을 할 것을 명한 사례가 있었다.¹⁰³⁾

일응 독자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기고가의 경우에는 그 글에 대하여 언론사가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가하지 않고 그대로 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차로는 기고가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언론사에게 명예훼손이 되는 내용을 미리 차단하거나 수정을 요구하여 고칠 수 있었던 점이 인정되거나, 기고가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소속 기자와 마찬가지로 언론사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글을 게재해 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언론사 역시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¹⁰⁴⁾

한 가지 부언할 것은 자유 기고가,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개개 사건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사건을 취재하여 이를 언론사에 보도 결과를 넘기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취재에서 보도 자료를 넘기기까지 언론사와 협의하는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스스로 취재한 것이 그대로 보도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기자와 다를 바가 전혀 없기 따라서 언론사와 함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¹⁰⁵⁾

(5) 기타 보도 관여자

기타 관여자로서 문제되었던 것은 뉴스 진행자, 방송 구성 작가 등이었다. 이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취하된 것이 대부분이고, 이들의 책임을 인정했던 사례도 찾아볼 수 없다.

적어도 보도의 내용 작성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자들이 주로 책임의 주체가 되는 것이므로, 보도 내용을 단순히 전달하는 자에게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구성 작가 등의 경우에는 그 임무와 관련하여 보도 내용 제작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는지를 밝힌 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본다. □

103) 서울고등법원 1994. 9. 27. 선고 92나35846 판결(『국내언론관계판례집』제2집, p.270 이하).

104) 독립적인 지위였으나 기자 역할까지 수행한 바 있는 기사 기고자와 언론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로는 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1. 5. 7. 선고 90가합10957 판결 참조.

105) 이러한 형태의 자유 기고가에게 책임을 인정한 사례로는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12. 7. 선고 93가합25344 판결(『국내언론관계판례집』제3집, p.219) 참조.

한국 언론관과 윤리규제제도의 운용

박 기 성

경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위원회는 언론중재제도의 합목적적인 운용과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대구와 순천에서 지역 언론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의 인사를 초청하여 지방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5월 11일에는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박기성 위원(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주제발표와 김복규 위원(계명대 행정학과 교수)의 시화로 토론이 있었고, 8월 15일에는 순천 베어스타운호텔에서 이희삼 위원(순천지방 부장판사)의 주제발표와 지규현(전 MBC 심무) 위원의 시화로 토론이 진행됐다. 다음은 주제발표논문과 토론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주

언론관이라 함은 언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체계이며 실제로 형성되는 언론 현상에 대한 이해와 가치 판단의 지속 상태이다. 언론관은 사회가 언론의 자유를 실현하는 가장 지표가 되는 보편적 가치관이며 철학적 정향이기도 하다. 언론관을 통하여 사회와 구성원이 향유하는 자유와 언론 제도가 규정하는 특성을 읽을 수 있다. 언론관은 정태적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부단히 변환한다.

한국 언론은 대중매체 중심의 표현 현상뿐 아니라 공중의 자유 표현(free expression)이나 언문 언론(free speech)을 포함한 포괄적인 영역이 되어야 함에 틀림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축소 인식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제도화가 진행되어 특정 매체를 중심으로 언론이 논의되고 편착된 형국으로 되고 있다. 대중매체의 현상을 중심으로 언론을 설정하는 시각은 지나치게 언문 언론을 등한시 해 버린 경향이 있고 이러한 발상은 한국의 언론 규제 제도의 정립에도 문제가 된다.

구어 중심의 언문 언론을 기반으로 하고 그러한 철학적 토대 위에 대중매체 또는 인터넷 공론까지 언론의 영역으로 설정함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가장 원형이 되며 개인이 향유하는 freedom of speech와 mass media의 상호 관계에 대한 원만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서 기인한다. 급변하는 시대에 따른 매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미흡한 점도 원인이 된다.

이를 다시 정립해보면 언론의 구성은 제1단계 언어 문자의 공적 표현, 제2단계 대중매체의 표현, 제3단계 새로운 디지털 기술에 의한 통신 중심의 공적 표현 등으로 복합적 구성이 이루어진다.

언문 언론과 대중언론 및 새로운 사이버 언론이 상호 유기적 관계를 이루고 올바른 사회적 위상 설정과 아울러 윤리적 규제 장치가 탄력성을 가질 때 바람직한 언론 문화의 형성이 기대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 문화와 언론의 관계를 생태 구성적

관점에 착안하여 기존 언론의 전통을 복원하고 새로운 언론 가능성을 수용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규제 제도와 언론중재위원회의 미래를 모색해보는데 접근의 방향을 설정한 것이다.

첫째는 언론의 영역 설정의 재시도에 의한 서양 지향적 환상에서 벗어나 한국적 주체성을 살린 언론관의 설정이 필요하다. 언어 문자 중심의 언론 언론의 전통을 복구가 필요하다.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 = 언론의 등식의 기존 언론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양한 매체의 개발은 모든 매체가 언론의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님을 입증해주고 있다. 예컨대 모든 방송이 언론일 수는 없다. 물리적 매체 현상 중심의 언론 규정이 아니라 그 매체가 수행하는 표현 기능에 맞추어 언론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대중매체 중심의 언론 규정은 언론통폐합의 잔재로 판단된다.

둘째는 서구적 근대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 철학에 대한 재검토와 우리 사회가 누려온 동양적 전통의 재발견으로 인간과 사회의 상호 관계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언론 규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사회적인 것이 모두 공동의 선이 될 수는 없다. 기존 대중매체 중심의 언론이 사회적 정의를 표방하는 활동을 목표로 제도화하고 이에 따른 윤리적 규제 장치가 마련되어 왔으나 상당한 부분 굴절되고 인간에게 끼친 피해도 심각하다. 서양적 사회 철학의 이상이 결국 한국 사회에서는 개인에게까지 원만한 실천으로 완성되지 못한 소치이다. 대중매체가 조장하는 집단 이기심이 언론의 정의를 굴절시키고 경제적, 정치적, 이념적, 자기 이해 편향적 발상이 결국은 인간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 윤리적 규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는 언론의 위치는 인간과 사회의 상호 관계에서 규정되는 사회철학을 배경으로 제도적 정착이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 100년간의

우리 언론 제도는 사회성이 지나치게 강조되었다. 사회성이 근대화 이전에는 그만큼 취약했다는 의미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성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인간의 개별성이다. 미래의 언론은 이 양자를 균형 있게 조화시킬 수 있는 사회 철학을 배경으로 정립되어 가야 한다.

넷째는 한국 언론이 가지는 표현성과 산업성의 두 가지 축으로 한 체질 개선과 더불어 규제 제도 확립이 필요하다. 표현성은 편성 편집 등 의사를 표현하는 활동이며 산업성은 경영 경제적 활동이다. 한국은 대중매체의 표현성인 언론 기능을 강조한 나머지 산업성의 규제는 아주 낙후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중매체 사업자는 자체내부의 조직과 협회의 공동 활동으로 규제체제를 개선하여 자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표현성의 규제가 정부로부터 독립된 공공 규제 장치가 되어야 한다면 산업성은 정부의 산업 정책과 일치하는 사업 규제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앞으로의 대중매체는 언론과 산업의 특성을 동시에 수용한 제도적 정착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언론중재위원회는 대중매체의 표현 활동이 유발하는 피해에 대한 개인의 "구제"라는 입장에서 긍정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미래의 매체 문화 구도 개편과 인간의 사회적 표현 활동 다양화에 따른 "언론 자유"의 새로운 해석과 위상 설정이 필요하다. 그 대안으로 필자는 매체 중재원을 앞의 다원적 분산 규제 모델에서 제안한 바 있다. "사실 보도", "사실적 주장"이라는 규정이 내재하는 의미가 매체와 장르에 따라 가지는 의미를 "표현" 차원에서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다수의 보호 차원과 공익의 차원에서 중재 기능의 확대 연구와 제도화도 바람직하며 매체윤리중재원(가칭)과 기능 조정도 검토해볼 과제이다. □

토론

사회 김복규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신문이나 방송내용도 소비자입장에서
상품으로 보는 관점이 중요

사회자 : 주제논문을 발표한 박성기 위원께 감사드립니다. 참석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발표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옥 (한국소비자연맹 대구경북지회장) : 주제발표자께서 주장한 다원적 분산규제 모델로서 소비자감시기구 마련 이전에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비자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비자가 구매행위를 결정하기 이전에 상품에 대한 정보를 신문, 방송 등 매체를 통해 입수하게 되는데, 진위여부를 거르지 않은 언론의 정보제공에 의한 구매행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 소비자감시기구의 역할이 어떠한지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영희 (대구 여성회 건강한 방송만들기 시민

모임 간사) : 저희 단체에서는 소비자 감시형태로서 방송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문고시제도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데 언론규제로서 신문고시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발표자 : 소비자 감시기구에 대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소비자 감시기구가 필요한 것은 두 가지로 첫째는 신문, 방송이 보내는 내용을 하나의 상품으로 파악하여 이에 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현재 채널이 매우 다양화되고 있고, 인터넷신문 등 대중매체 질서가 매우 복잡한 상태입니다. 이에 미국, 영국 등에서는 이미 신문이나 방송내용도 그 자체를 상품으로 규정해서 소비자감시기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한 부분은 광고에 대한 언론사 사내의 자체규제 문제입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신문·방송에서 내보내는 내용 자체를 소비자입장에서 상품으로 보는 관점이 중요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 감시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신문고시 문제는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대두되게 된 책임이 상당부분 언론사에게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를 언론규제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라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다만 외국의 경우 자율규제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에 비추어, 행정부가 언론사에 대해 규제하기 보다는 자체적인 규제, 협회의 규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의 자율 규제가 자리잡지 못하고 난립해 있는 실정이므로 분산된 효율적 규제가 바람직

이용욱 (대구향교 총무국장) : 예전에 중앙 모 일간신문사를 상대로 중재신청을 한 결과 반론 보도를 얻어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게재되었던 문제내용을 재차 거론하면서 명예훼손이 반복되었으며, 같은 활자로 같은 지면에 반론보도를 게재하기로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지면에 매우 작은 크기로 보도가 되어 완벽한 반박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현재 대구지역의 중재신청현황과 피해구제정도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사무총장 : 대구중재부에서 현재까지 처리한 사건은 193건으로 그 중 합의 55건, 중재불성립결정 38건, 취하 93건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취하된 사건 중에 45%정도가 피해구제 보도가 나간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중재위원회의 처리결과 약 60%는 반론보도 등 피해구제보도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는 매년 연차보고서를 통해 외부로 공표되고 있으며 연말에는 이러한 결과를 언론사에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박영석 (대구문화방송 사회팀장) : 주제발표에 의하면 다원적 분산규제 모델이라는 형태로 새로운 의미의 규제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인 것 같은데 신문, 방송을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현재의 규제도 이미 과하다고 봅니다. 현재의 규제가 충분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부족하다는 것인지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발표자 : 규제는 단계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미디어의 자율규제 체제가 자리잡지 못하고 질서없이 난립해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질서와 체계를 갖춘 분산된 효율적 규제가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홍석봉 (대구경북기자협회장, 매일신문 주간부장) : 최근 오마이뉴스 등 사이버언론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데 이러한 사이버기사들은 익명이 보장되는 기사작성 때문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된 경우가 있는지 알고 싶고, 또한 디지털 부문에 대한 자율규제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발표자 : 인터넷은 매우 가능성이 높은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익명성 때문에 무질서가 조장되는 부분도 많은 실정입니다. 디지털 중심의 인터넷은 확산력이 매우 크므로, 속히 제도화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마 기존 규제관행이 제대로 제도화되었다면 좀 더 손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정일태 (대구KBS 취재부장) : 언론사의 독립은 인사, 경영상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KBS는 국회, 감사원 감사뿐 아니라 국정원 감사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영방송으로서 독립성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특히 언론사에 대해서는 공익기능을 인정해서 외부보다는 내부적 자율성, 또는 시청자·독자들의 감시, 감독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이상탁 (대구지방경찰청 공보담당관) : 업무상 사건기사를 접하다 보면 범죄사건보도의 경우 피의자를 지칭하는 그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 됩니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측면과 피의사실공표라는 위법행위 양자가 충돌하는 경우라고 보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정한영 (변호사, 중재위원) : 실명을 표기하여

보도한 경우나 그렇지 않은 경우나 모두 명예훼손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후사정을 종합해서 비교적 소수라도 주변의 사람들이 특정인임을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은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범위 정도의 차이에 따라 민사책임, 형사책임의 차이의 크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보도의 경우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측면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많은 인격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역기능이 문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재자 책임인가 운영자 책임인가, 그리고 그 파급성, 규제방법 등 인터넷 고유의 특성이 있는 이상 이는 빠른 시일내에 입법적,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터넷 언론으로 인한 피해구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박노광 (한국소비자연맹 대구경북지부 정책실장) : 기존 언론매체들은 일정한 교육과 훈련을 거친 기자들에 의해 기사가 작성되고 있는 것으로 하는데 현재 아주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인터넷 보도의 경우 윤리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기사가 작성되는 경우가 비밀비재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보도로 인한 악영향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발표자 : 인터넷보도의 경우 훈련이 안된 기자들에 대한 부분은 사회교육이 필요할 것이라 봅니다. 하지만 현재 공식적인 기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연맹 같은 곳에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인터넷은 초기단계인 만큼 계속된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유병갑 (변호사, 전 중재위원) : 현재 언론개혁이 큰 이슈가 되고 있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언론이 갖는 정부비판기능을 축소시켜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런 두가

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 이런 연장선상에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재제도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언론사는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잘 수용하고 있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사회자 : 이 문제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을 끝으로 오늘의 토론회를 마치고 다양하고 진지한 의견을 내주시길 각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 인터넷 뉴스에 의한 침해와 구제는 현행법에는 그 구제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4-5년 전부터 여러 가지 위원회 업무영역의 개선점, 실무상 시정할 문제를 연구, 검토해서 언론피해구제법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법안에는 인터넷 뉴스, 전광판 뉴스 등 새로운 매체에 의한 침해가능성과 구제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법화된다면 위에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한 구제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언론중재절차를 통해 피해구제보도가 이루어진 실질적 피해구제율이 통계상 60%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1999년도에 실시한 언론중재제도 이용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약 85%가 만족감을 표시했고, 놀라운 것은 피신청인인 언론사의 만족도는 이보다 높은 90%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직권 중재결정제도의 도입 이후 중재결정한 사례는 전체 신청건수의 2%에 불과하며, 현행법상 중재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아무런 효력이 없는 입법상 미비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초안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이의신청하는 경우 소송으로 자동제기한 것으로 보는 개선점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진지하고 알찬 토론에 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언론에 의한 피해와 구제

이 헌 섭

춘천지법 부장판사

인간이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형성' 하는데 있어서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불가결한 요소이고, 한편 국민의 자발적 의사의 자유로운 표현과 결집이 '민주적 국가질서형성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오늘날 민주적 헌법국가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매우 당연한 것으로 간주된다.

언론의 자유도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무제한의 절대적 권리는 아니다. 언론의 자유는 국가적 법익(민주적 기본질서와 같은 헌정질서 등), 사회적 이익(음란·왜설의 금지, 청소년 보호 등)의 관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음은 물론이고, 개인의 권리(명예, 프라이버시권 등)와의 관계에서도 그 제한이 불가피하다.

오늘날 언론의 자유와 대립되는 의미로서 개인의 권리는 헌법에 명시된 명예, 프라이버시권 외에도 인격권이란 포괄적 개념 아래 성명권, 초상권, 음성권 등 다양한 권리가 주장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 권리의 외연이 확장되어 갈 추세이다. 결국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 사이에 적절한 조화점을 찾아야 하는데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 사이에 충돌을 해결하고 이익을 조정하는 것은 구체적 사안에서 법원이 할 일이지만,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은 언론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개인의 기본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정할 수밖에 없다.

언론에 의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에 의하여 '피해자의 특정'이 되어야 한다.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판단기준은, 기사(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방송보도)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방송보도)의 전체적인 흐름,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방송보도)가 독자(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언론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해행위는 위법하여 그로 인한 책임을 진다 할 것이나, 피해자의 승낙과 같이 일정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으면 면책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에서 자주 등장하는 특별한 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명예

훼손죄로)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한 형법 제 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사유이다. 이는 언론이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더라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여도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보도하는 것까지 보호해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언론기관이 진다. 즉 언론기관은 방송·보도로 인한 행위로 면책을 받기 위하여서는 방송·보도된 사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하다는 입증을 해야하고, 진실이 아닌 허위로 밝혀진 경우에는 충분한 조사를 하여 진실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언론에 의한 피해의 구제로는 민사적인 것 외에도 형사적인 것(명예훼손죄, 주거침입죄, 신용훼손죄 등 형사상 범죄로 처벌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있으나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구제라 하기보다는 제재라 함이 타당하다. 민사적인 구제로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민법 제764조에 의한 원상회복청구권,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하 ‘정간물법’이라 한다) 및 방송법에 의한 반론보도·추후보도청구권, 법규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학설·판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금지청구권 등이 있다. 손해배상청구권, 원상회복청구권, 반론보도·추후보도청구권은 모두 사후적 구제수단이나, 금지청구권만은 사전적 구제수단에 적합하므로 법원에 본안을 청구하기에 앞서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다. 반론보도·추후보도청구는 필요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쳐야 하고, 법원에 대한 청구는 본안이 아니라 가처분에 유사한 신청사건에 준하여 처리된다.

언론피해에 의한 손해배상은 대부분 위자료의 지급일 것이나, 피해자 경영의 사업의 영업부진 또는 파산, 광고모델계약의 취소로 인한 모델료 상당의 수입상실 등처럼 언론에 의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재산상 손해는 손해액의 산정이 어렵고, 침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려워 실무에서 인정된 예가 그리 많지 않다.

위자료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자연인이면 성별, 연령, 지위 등이 문제되지 않는다.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에 대하여서도 유족이 사자에 대하여 가지는 존경의 감정을 훼손한 경우라면 위자료의 청구권이 인정될 것이다. 법인도 단체의 명칭을 전유할 권리나 명예, 신용 등에 대한 사회적 평판을 지니고 있으므로 언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연히 위자료청구권을 취득한다.

위자료의 액수는 여러 나라에 따라 일정치 않다. 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의 개념이 발달하여 위자료의 액수가 1980년부터 1995년까지 평균적으로 220만 달러에 이르는 등 고액에 달한다 하나, 독일의 경우는 평균 1만 마르크(약 500만원) 정도가 보통이고(최저 2,500, 최고 5만 마르크), 일본의 경우도 1990년 이후 평균이 150만엔에 불과하여 그리 많지 않다고 한다. 우리 법원에서는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보통 1,000만원 이하의 위자료를 인정해왔으나, 최근 위자료의 액수가 점차 늘어 근래에는 1억원 이상의 배상을 명한 사례도 여러 있다.

민법 제764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는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방법은 금전배상이 원칙이지만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여 금전배상만으로는 피해자의 구제가

불충분하므로 이러한 결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절한 원상회복처분을 명하도록 한 것이다.

언론피해의 구제로서 종래 대표적으로 이용되어왔던 것이 '사죄광고'였으나 헌법재판소(1991. 4. 1. 선고 89헌마160 결정)가 사죄광고는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결정한 뒤로는 '명예훼손의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사죄한다'는 내용의 사죄광고는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

'정정보도'는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킨 보도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었음을 알리고 그 부분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를 같은 보도매체 혹은 다른 언론매체를 통하여 일반에 알림으로써 명예회복을 기대하는 처분을 말한다. 헌법재판소가 위 사죄광고에 대한 위헌결정에서 사죄광고를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원문 기사의 취소광고, 가해자의 명예훼손죄 유죄판결문의 게재, 가해자의 비용으로 그가 패소한 민사 손해배상판결문의 게재 등을 들었으나, 실무에서는 정정보도의 원상회복방법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명예 기타 인격권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 비록 명시적 법규정은 없으나 침해행위의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금지청구권은 ①침해가 아직 실현되지 않았으나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하는 사전억제의 수단으로서 방해예방청구권과 ②침해가 일부 실현되었으나 재발·계속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하는 방해정지(중지)·배제(제거)청구권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런 금지청구권은 통상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형태로 행사될 수 있으나 피해발생 또는 확대의 사전예방이라는 청구권의 성격상 오히려 가처분절차에 의함이 일반적이다.

반론보도청구권이란 정기간행물 혹은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그 사실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내에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또는 방송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정간물법 제16조 내지 제19조, 방송법 제91조).

반론보도청구권은 법이 규정한 형식적 요건만 충족되면 행사할 수 있다. 즉,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서는 언론보도와 개별적 연관성을 가지는 자가 일정한 기간 안에 반론보도 의무자에게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요청함으로써 족하고 당해 언론사는 원문 보도의 진위 여부나 청구자의 구체적인 손해 여부에 관계없이 이에 응하여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반론보도청구권은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행사할 수 있다.

반론보도청구권의 대상은 단지 '사실적 주장'에 국한되고 의견표현이나 가치판단에 대하여는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평이나 논설 등 가치평가나 의견표시를 하는 주장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전제 혹은 예시 등을 위한 사실적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실적 주장은 반론보도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광고는 광고주와의 광고계약에 의하여 광고주의 개인적인 의사표시를 그대로 게재하여 주는 광고주의 주장이지 언론의 사실적인 주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반론보도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적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 기사의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정간물법 제16조 제6항, 방송법 제91조 제6항). 또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

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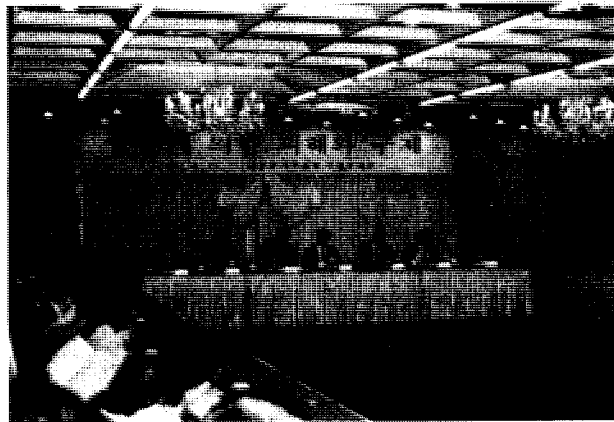
사회지규현

전 춘천 MBC 상무

사회자 : 상충되는 개인의 인격권과 국민의 알 권리를 어떻게 조화롭게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고 진지한 토론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정후 (강원대학교 법학부 교수) : 주제 발표

자께서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와 구제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주셔서 미묘한 문제를 이해하는데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일상에서 부딪히는 개인의 명예권과 국민의 알 권리, 양자간에 어느 이익이 더



큰 것인가의 이익형량의 문제는 실제에서는 비교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사적인 이익과 보도기관의 공적인 이익을 동일한 차원에서 비교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이중적이고 복합적인 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무상 구체적인 방안의 마련이 가능한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발표자 : 개인의 자유도 신장하고 아울러 언론의 자유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문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공중의 알 권리라는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충돌한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어느 한 쪽이 희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양자가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피해의 유무를 판단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그 기준을 적립해 나가고 또 기준에 대해서 사회가 공감을 한다면 피해자와 언론 양자가 충돌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 우리가 생각합니

다. 따라서 그 기준을 적립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방명균 (강원도민일보 편집국장) : 언론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의 가능성에 대해서 도외시한 채 보도하고 있지는 않다고 자부합니다. 다만 사생활이나 명예라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도 소중하다는 인식을 전제로 보도를 하게 됩니다. 최근 경향은 급속도로 개인의 명예, 사생활이 소중하게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론종사자로서는 국민의 알 권리 측면이 좀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으므로 분쟁발생시 법률적인 판단을 내리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좀 더 신중한 결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동진 (강원일보 편집부국장) : 최근 언론환경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언론사들도 명예훼손이 발생할 여지를 줄이기 위해 보도대상자에 대한 이니셜표기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영자 씨 사례의 경우 언론이 이영자 씨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하는 지 아니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하는 지 갈등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발표자 : 언론의 자유가 최근에는 언론사가 향유하는 권리로 인식되고 있는데 전통적인 언론의 자유는 의사표현의 자유로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과연 이영자 씨가 언론에 공개되기에 앞서 성형외과 의사가 의사표현의 자유, 수용자의 알 권리라는 측면에서 대국민을 향해 이영자 씨의 개인적인 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는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이영자 씨가 만약 취재, 보도과정에 동의했다면 보도하는 과정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취재과정에 응했을 뿐 보도되기를 원하지 않은 경우에 보도가 되었다면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최임춘 (장애인협회 도지회장) : 현재 소외계층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생각해 볼 때 언론의 힘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최근의 이영자 씨 사건과 정신지체여성이 성폭력을 당한 사건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 언론기관은 어떠한 사안에 대해 보도를 할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언론의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경희 (한림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중재위원) : 언론현장에 계신 언론인들이 보도 이전에 사

실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년전 뉴스분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뉴스의 경우 헤드라인을 작성할 때 지나치게 선정적인 경향이 많은 것 같고 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독일, 일본, 영국 등 공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에서는 뉴스의 헤드라인 부분이 굉장히 공정하고 확인된 부분만 보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뉴미디어 측면에서 인터넷 신문 등이 발달하면서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에서는 잘못된 정보가 한 번 터지면 엄청난 속도로 전달되므로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 좀 더 신중하게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박건주 (전 춘천시장) : 이영자 씨 관련사건과 북한상선의 우리 영해 침범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무엇이 진실인지 알기 어려운 것이 현재 보도의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언론기관의 역할이자 책임이라고 보고 보다 진실한 보도를 해주길 바랍니다.

사회자 : 어느 언론학자는 언론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했습니다. 그 꽃을 피우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국민들, 이 양자간의 조화를 위한 방안모색이 오늘 토론회의 핵심이었다고 봅니다.

위원장 : 장시간 동안 진지하게 발표해주시고 토론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발표자께서 '언론에 의한 피해와 구제'라는 주제로 관련된 최근의 판례를 총망라하여 일목요연하게 발표해 주시고, 독일이론 등도 소개해 주셔서 매우 알찬 내용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다시 한번 발표자께 감사드리고 또한 여러 각계의 의견을 유도해서 토론을 이끌어 주신 사회자께도 감사드립니다. □

현행범 체포현장 보도와 초상권 침해 논란

차 형 근
변 호 사

초상권은 성명권, 음성권, 명예권 등과 함께 인격권의 하나로써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지칭한다.

초상권은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 작성거절권),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 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영리권)를 포함한다.

초상의 형태는 사진은 물론 소묘, 캐리커처 등 특정 인물임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위와

같이 초상권을 특정인의 동의 없이 촬영, 공표되지 않을 권리로 이해할 때 우리는 혼란을 느낀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면 야구장이나 농구장에서 특정인이 경기를 관람하는 모습의 장면이 있는데 이때도 동의를 필요한 것인가?

자동차속도감시장치에 의하여 과속으로 단속되는 경우에 증거물로서 운전자의 초상이 제시되는데 이 경우에도 동의를 필요한 것인가?

경찰관은 시위현장에서 시위에 참석한 사람들을 촬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초상권 침해가 아닌가?

유명인사 또는 범죄인이 구속 수감되는 장면을 촬영

하는 경우는 어떠한가? 특히 현행범을 체포하는 현장을 촬영하는 경우 어떠한가?

특정잡지사의 인터뷰에는 응하였지만 사진의 사용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는데도 사진을 기사 내용 중에 게재한다면 초상권 침해의 문제가 생기는가?

위와 같은 경우에 모두 다 동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매체는 그림없는 기사를 작성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여 언론기관이 무제한으로 특정인의 초상을 사용할 수 있다면 초상권에 대한 논의는 있으나 마나이다.

결국 초상권 문제의 핵심

은 언론기관이 어떠한 경우에 동의 없이도 특정인의 초상을 사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이에 대하여는 우선 유용한 기준을 설정하여 볼 수 있다.

첫째는 초상권의 대상인 특정인이 공인인가, 사인인가이다.

둘째는 사용되는 초상이 공적 영역의 기사와 관련된 것인가 아니면 사적 영역의 기사와 관련된 것인가이다.

이 두 기준에 따라 우리는 네 가지 범주를 만들 수 있는데 일응 공적 영역의 기사로써 공인의 초상에 대하여는 동의가 없어도 초상권의 침해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적고 반대로 사적 영역의 기사로써 사인의 초상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초상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기에 앞서 초상 권리의 문제를 간단히 언급한다.

모델인 A가 생활백과사전에 게재되는 것으로 알고 촬영한 한복차림으로 세배하는

사진을 사진작가가 은행의 신년홍보물로 게재하였을 때, 전속기간이 지난 모델의 광고를 기간 후에도 사용하였을 때, 계약범위를 넘어선 사진으로 누드집을 만들었을 때 등이 초상영리권으로 거론되었던 문제들이다.

사적 영역의 기사에 사인의 초상을 사용할 경우 초상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커

앞서 작성거절권, 공표거절권으로서의 초상권의 문제와는 달리 침해 여부의 판단이 어렵지 않고 다만 손해배상액의 산정만이 주로 문제가 된다.

먼저 초상권 침해와 관련된 우리 나라 판례를 살펴보기로 하자.

한국방송공사는 9시 뉴스에 결혼식때 신부의 호화웨

딩드레스가 문제된다는 보도를 하면서 자료화면으로 통일운동가인 임수경 씨의 결혼식 장면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임수경 씨는 본인이 호화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한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다하여 한국방송공사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1, 2심 모두 한국방송공사의 책임을 인정하였는데 특히 고등법원은 초상권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원고가 자신의 결혼식에서 피고를 포함한 언론기관이 결혼식을 취재하면서 원고의 모습을 촬영할 당시 이를 제지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바 없어 촬영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그 묵시적 동의는 결혼식 장면의 촬영에 대한 동의와 언론기관이 그 결혼식 보도와 관련하여 촬영된 사진 또는 화면을 공표하는 데 대한 동의만을 포함하는 것이고, 촬영한 사진 또는 화면을 향후 어떠한 목적에 사용하든 상관없이 일체의 공표에 대하여 동의한다거나 그 공표와

관련한 자신의 초상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피고가 원고의 결혼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수백만원짜리 웨딩드레스를 고발하는 보도에서 원고의 결혼식 장면을 배경 화면으로 사용하여 시청자들에게 마치 원고가 수백만원짜리 웨딩드레스를 입고 호화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위 화면을 공표하는 것은 원고의 모습을 촬영할 당시 원고로서는 예상치 못한 것으로서 그러한 공표행위에 대하여 원고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공표행위와 관련한 자신의 초상권을 포기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또한, 세안의 관심을 끄는 공적인 인물의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는 자신의 초상이 상업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 그 스스로 자신의 초상이 언론에 의해 공표되는 것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나, 세안의 관심을 끄는 공적인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하여 더욱이 당사자의 명예

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초상이 공표되는 것까지 감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원고인 임수경 씨의 아버지가 정정보도후 손해배상책임을 거론하지 않기로 한 약속이 유효한가 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측의 담당자가 원고 아버지를 찾아가 사정을 하게된 경위와 아버지가 그 담당자에 대하여 동감의 표시를 하게된 경위 및 원고가 성년에 이르러 결혼까지 한 사정 등을 참작하면 원고의 아버지가 이 사건 불법행위와 관련한 피고와의 협상에서 원고를 대리한 대리권이 있었던 것인지가 의심스럽다”고 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하였다.

문화방송은 모 대학교 성악과 학회장에게 과거의 사발식이나 신고식 등 좋지 못한 인식이 남아있는 신입생 환영회의 모습이 아닌 신세대의 생기발랄하고 재미있고 단합된 모습의 신입생 환영회를 취재하는 데 협조를 구

하여 승낙을 받았으나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정적인 내용은 방송하지 않겠다는 당초의 약속에 반하여 ‘공포의 통과의례’라는 제목으로 신입생들의 음주장면, 현란한 나이트클럽 무대장면, 술에 취한 학생들이 길바닥에 쓰러지거나 여관으로 업혀 가는 장면 등을 보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TV 등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사생활이나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본인인 예상이나 다른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고 판시하여 손해배상을 명하였다.

뉴스위크지는 이화여대생들이 졸업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정장을 입고 학교에 등교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너무 빨리 부자가 되다”라는 기사 중에 위 사진을 게재하면서 “돈의 노예들 -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이라는 설명을 붙였다. 얼굴 식별이 가능하였던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더불어 피고측 항변에 대하여 “초상권은 그 자신의 용모, 자태가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고 또 널리 공표됨으로써 야기되는 정신적 고통 등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공표된 초상이 반드시 은거에의 침입에 의하여 획득될 것을 요한다고 보기 어렵고(다만 은거에의 침입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초상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획득한 초상이 상업적으로 이용된 경우에 한정하여 초상권침해를 인정하는 것은 초상권의 보호범위를 지나치게 축소시켜 부당하며 다만 초상의 획득 및 공표가 공익적인 사항에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오로지 공익을 위한 점이 인정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뿐”이라고 판시하였다.

월간 레이디경향은 자유기고자에게 연하남자와 교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부탁하였다. 자유기고

가는 인터뷰 기사를 작성하면서 인터뷰 기사에 응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사진을 함께 게재하였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하였으므로 초상권침해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피고는 자유기고자와 언론사는

초상의 획득 및 공표가 공익적인 사항에 관계된 것이고 오로지 공익을 위한 점이 인정되는 경우 위법성이 없어

도급관계임을 전제로, ㉠ 자유기고자에 대한 도급은 고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 ㉡ 자유기고자에 의하여 작성된 기사의 진위여부 또는 제공된 사진의 동일성 여부 등을 잡지사가 기사나 사진의 주인공에게 직접 확인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상당히 곤란하다는 점, ㉢ 여성월간지업체가 근래 들어 이 사건과 유

사한 사건 등으로 많은 분쟁에 시달리고 있어 잡지사가 분쟁예방을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 ㉣ 자유기고자가 제공한 사진이 허위의 사진이라는 것은 통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등에 비추어 피고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기사와 같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기사에 관하여 취재원이 실명으로 인터뷰에 응하고 자신의 사진을 삽입할 것까지 동의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여성잡지를 발간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피고회사로서는 피고 자유기고가 이 ○○로부터 이 사건 기사와 이 사건 사진을 제공받을 때에 그 취재원을 상대로 진실로 인터뷰를 한 것인지, 그의 사진을 사용하는데 관하여 동의를 얻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기사를 게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회사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피고회사로서는 이 사건 초

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청소년들을 주 독자층으로 하는 월간지 주니어는 “압구정동 문화와 실체를 벗긴다”라는 제목으로 신세대 젊은이들의 향락적 과소비문화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취재한 기사를 게재하면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원고 3명이 함께 거리를 걸어가는데 같은 또래의 젊은 남자가 말을 붙이는 듯이 보이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게재하였다.

원고들의 동의 없이 사진이 촬영되고 게재되었으므로 초상권 침해는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다만 특징인으로서 식별이 가능하냐가 문제되었다. 판례는 “원고 전○○, 같은 김○○은 그들의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 보면 금방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얼굴윤곽이 뚜렷하게 사진에 나타나 있고, 원고 김○○도 선글라스를 썼지만 체격, 얼굴모양, 의상 등으로 보아 조금만 자세히 보면 같은 원고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이므로 특징에 문제가 없다

고 판시하였다.

문화방송은 <PD수첩>에서 유방확대 수술의 부작용과 관련하여 피해자인 원고의 인터뷰를 방영하였다. 원고는 종전에도 문화방송의 뉴스데스크 시간에 육성방영을 한 사실이 있는데 <PD수첩>에서는 초상까지 방영한 것이다. 1심 판결과 달리 2심 판결은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였는데 논거는 다음과 같다.

“피고 정○○ PD로서는 원고를 취재방송함에 있어 가명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화면처리 방법으로 원고의 영상을 모자이크 무늬로 가리거나 뒷모습을 촬영하여 방영하고 원고의 음성도 변조하여 방송함으로써 원고의 신분노출을 막았어야 하고 또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모습을 비록 그림자처리 하였으나 그 그림자에 원고의 눈, 코, 입 모양과 머리모양이 섬세하게 나타나도록 하고 원고의 음성은 전혀 변조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방송을 시청한 원고의 주위사람들이 쉽게 원고를 알아볼 수 있게 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

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및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았다.

위와 같은 종전의 초상권에 관한 판례 이외에 최근에 서울고등법원 2001. 1. 11. 선고 99나 66474호 판결은 종전에 당연시되던 현행법 체포 현장과 관련된 사진촬영을 제한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향후 언론의 보도행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된다.

“피고가 바이올린 불법과의 현행법으로 경찰이 원고를 체포하기 위해 연습실에 들어갈 당시 원고로부터 아무런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카메라기자들과 함께 연습실에 들어가 원고에게 자신이 기자라는 신분을 밝히지 아니한 채 취재를 하였으며 연습실 내부를 무단으로 촬영한 사실”과 관련하여 언론사측은 “이 사건 취재는 사생활의 영리적 이용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취재장소가 현행법 체포장소였으며, 취재대상인 원고는 대학교 교수로서 사회지도층 인사의 신분이었던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인의 통념상 언론

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수인될 수 있는 수준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재판부는 원고의 연습실과 같은 개인의 사적인 장소는 비록 취재 당시 원고가 현행법으로 체포되고 있는 때라고 하더라도 체포와 관련되어 적법절차를 갖춘 사람이외에는 관계자의 동의 없이는 출입이 금지되고 그 곳에서의 취재도 원칙적으로 불법이므로 원고의 사생활과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았다.

위 판례에 대하여 모두에서 보았던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보자.

먼저 원고를 공인으로 볼 수 있는가? 공인에 대하여 뚜렷한 개념 정의가 없는 현실 하에서는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음대교수는 공인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두 번째로 위 보도는 공적 영역에 대한 보도인가? 고등법원 판례는 연습실은 사적 영역의 장소로 보았지만 원고 개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연습생에게도 개방되었을 것이므로 완전히 사적인 장소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위 판례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의문의 제기가 있을 수 있다. 참고로 유사한 경우의 일본판례를 보자.

○ 동경지방법재판소 소화 62년 2월 27일 판결은 사립대학교 치과교수의 매매춘과 관련된 주간지 기사 중에 치과의사의 얼굴사진을 사용한 것이

최근 현행법 체포 현장과 관련된 촬영 장면의 방영을 제한하는 판결 나와

초상권 침해로 문제된 사안인데 사진의 공표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사진의 공표가 사실을 정확히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최소한도의 경우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 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 神戸지방법원 姫路지원 소화 58년 3월 14일 판결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판례와 사

안은 유사한데 결론은 상이하다.

경찰은 원고가 무면허의료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압수수색하는 것을 기자에게 사전에 발표한 후 강제 수사를 실시하였다. 당시 피의자인 원고집에 기자가 무단으로 들어가 동인이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촬영 방송하였다.

재판소는 “기자들이 범죄혐의를 사회에 보도할 목적을 가지고 원고의 처소에 들어갔지만 그곳은 주거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주택은 아니고 제3자의 왕래도 당연히 예정하는 부분을 포함한 건물인 점, 기자들은 약 15분간 건물 중 대기실 및 진료실에 머물면서 영장집행개시 직전 상황을 촬영한 것으로 원고가 기자의 행동에 고통을 호소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기자들의 사진촬영은 그 목적, 방법 및 행태가 온당하다고 여겨지며 특히 원고가 촬영거부를 충분히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한 것에 비추어 초상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신문고시만 문제인가?

이 병 섭

경남중재위원·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

한국언론계의 2001년 봄은 무척이나 혼란한 계절이었다. 정치권력과 일부 언론이 서로의 힘을 다투는 그런 양상으로 비춰졌는데, '시장의 공정성'과 '언론 재갈물리기'를 둘러싼 논란은 여름으로 넘어가면서 잠시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함께 국민의 표현자유와 알 권리를 위해 특권적 자유를 누리고 있는 언론의 힘은 여론의 지지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정치권력도 반대세력이나 언론의 비판을 받게되지만 그 성과에 대한 평가는 여론으로 나타난다. 또한 정치권력이나 언론은 국민을 동원하거나 정보를 전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 공익을 표방하지만 '은근슬쩍' 자신들의 이익을 포함시키곤 한다. 그러나 국민은 정치권력이나 언론의 활동이 사익보다는 공익을 위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그런데 2001년 봄과 여름으로 이어지는 일부 언론의 보도활동이 진정 공익의 이름 하에 수행된 활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된다. 과연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일부 언론들이 보여주는 정치권력에 대한 치열한 비판이 언제 있었던가?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지금처럼 언론을 좌지우지하는 언론사주의 의지였을까? 대부분의 한국 언론역사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평가한다. 심지어 1970년대 후반 이후 언론사주의 권력은 기차나 조직구성원의 정신과 활동을 압도할 정도로 강화되었으며, 언론인들 역시 애국투사가 아니라 전문직업인으로 변했다. 당연히 언론도 자사의 이익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사회환경변화를 겪었다고 하겠다. 물론 자유자본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시장성을 바탕으로 한다. 언론이 표방하는 논조가 무엇이든 어느 정도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심분 인정하더라도 작금의 언론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 과거 권력의 힘이 강할 때는 적당히 빌붙었던 언론들이 지금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강경한 논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언론학자들은 언론에 대한 적절한 규제 필요성을 주장할 때 딜레마에 빠진다. 그것은 규제가 갖는 위축효과(chilling effect) 때문에 언론활동이 위축될 경우 여론의 형성과 다양한 의견의 표출이 어려워져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도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라는 두 축을 여하히 적절히 조화시키느냐 하는 것은 매우 풀기

언론시장의 공정경쟁 문제 못지 않게
언론의 무소불위적 힘에 대한
견제가 중요

어려운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나라의 경우 정치권력에 의한 강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론권력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진 경험이 없었다. 이 때문에 적어도 언론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확립을 위한 타율적인 제도인 신문고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하지만 신문고시에서 다루고자 했던 중요한 사항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극히 피상적인 일부만이 부각되었다는 점에서 언론의 막강한 힘을 느끼게 하였다.

그러나 언론시장의 공정경쟁문제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언론의 무소불위적 힘에 대한 견제이다. 이러한 힘은 비단 중앙 일간지만이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발행부수가 적은 지방신문일지라도 자신들의 힘(?)에 도전하는 개인이나 조직에 대한 보복적 보도태도는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언론이 아니라 사이비언론에 가깝다고 하겠다. 심지어는 일부 언론들은 자신들의 입장이나 이익이 관철될 때까지 집요하게 추적보도하기도 한다. 물론 심층취재보도가 올바른 사회여론의 형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일 경우에는 바람직한 보도행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존재함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다.

언론사의 확대와 경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보도관행을 더욱 쉽게 접하는 국민들은 언론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다. 더욱이 개인은 자신의 권익을 침해당할 경우 이에 대항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경험을 하게되므로, 언론의 횡포(?)에 대해 분개하며, 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쉽게 공감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언론중재나 손해배상제도 등을 시행되고 있지만, 언론피해로 인한 피해보상이나 배상의 경우 좀더 적극적으로 개인의 권익보호를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 나라의 경우 대단히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고, 언론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언론사의 잘못에 대하여 비교적 관대한 손해배상판결이 내려져 왔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익과 관련해서는 징벌적 배상제도를 좀더 재판부가 과감히 채택하고,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제조물책임법의 정신을 정신적 제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활동의 결과물에 확대 적용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러다가 초가삼간 정도가 아니라 온 땅을 다 태워버리는 우를 범할까 두렵기도 하지만... □

미국, 언론관련 명예훼손소송은 감소 추세이나 손해배상액은 급증하고 있어

LDRC(Libel Defense Ressource Center)가 2001년 2월 2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을 기점으로 언론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관련 소송의 감소추세가 2000년에도 지속되고 있고, 언론사 승소율도 전년도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평균 손해배상액은 지난 20년 동안 가장 높은 해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2000년도 한 해 동안의 모든 언론소송 판결을 집약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집계된 데이터를 법원 기록, 관련 해설과 함께 담고 있다.

2000년 한 해 동안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관련 소송은 단지 11건으로 1980년대 한 해 평균 26.1건, 1990년대의 한 해 평균 17.9건의 판결에 비하면 감소 추세를 확연히 보여준다.

2000년 한 해 동안의 11건 판결 가운데 5건이 언론사 승소로 나타나 46%의 승소율을 보였다. 이는 1999년도 12건의 판결 가운데 1/3이 승소한 것이나 1990년대 38%, 1980년대 35%의 언론사 승소율을 보인 것에 비하면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지난 해 원고가 승소한 6건의 평균 손해배상액은 560만 달러로 LDRC가 조사한 21년 동안 가장 높은 액수를 기록했으며 손해배상액의 중앙치(median award) 역시 가장 높은 한 해로 나타났다.

이렇게 높은 손해배상액을 기록하게 된 것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무려 2,450만 달러의 손해배상 지급 판결이 내려진 Doe v. TCI Cablevision 사건이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2000년도에 언론사는 원고가 단순 사인인 경우 소송에서 패소했으나 공적 인물이 제기한 10건의 소송판결에서 5건 승소하여 1990년대 들어 가장 높은 승소율 기록했다. '현실적 악의' 기준이 적용되었을 때 피고측에 유리한 경향이 최근 지속되고 있다.

2000년도에는 언론사측이 승소한 5건의 판결 가운데 단 1건만이 원고가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는 배심원의 평결을 파기하거나 손해배상액의 감액 또는 기각 혹은 새로운 판결을 받기 위해 제기된다. 피고측 항소는 원고측 항소보다 상당히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증명되었다. 적은 판결 수를 감안할 때 2000년도의 보상적 배상액은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LDRC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1996년 이래 경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0년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감소하여 전체 손해배상 가운데 4% 이하인 것으로 기록됐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손해배상의 60% 이상이 징벌적 손해배상이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감소를 보인 2000년도의 경향이 앞으로의 10년 동안 추세를 암시하거나 단지 이례적인 것일지라도 최소한 향후 몇 년간은 이러한 결과가 지속되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LDRC 보고서는 피고측인 언론사의 항소가 성공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LDRC가 보고서를 작성한 21년 동안 언론사측이 항소

한 사건의 2/3 이상이 손해배상액이 경감되었다. 이러한 성공적인 항소에 힘입어 최종적인 손해배상액 총액은 초기 배상액 총액의 95%이하로 나타났다.

LDRC의 Sandra S. Baron 사무국장은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 접어들어서도 언론매체는 명예훼손 및 프라이버시 침해, 수정헌법 제1조와 관련된 소송에 연루될 것이나 1980년대의 소송건수보다는 적을 것이며, 보다 많은 소송에서 언론매체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http://www.ldrc.com/damages01.html> ; *Media Law Reporter*, Vol.29, No.12.) □

일본 사법부,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소송의 손해배상금 증액 검토

일본 법무부 장관은 5월 16일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 부적절한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의 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를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명당 간부는 “언론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적다. 최고재판소는 사회통념에 따른 손해배상액에 관해 그 방향성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행정부와 사법부의 대응을 추궁했다.

최고재판소의 千葉勝美 민사국장은 “명예훼손의 손해배상액이 적어 이러한 점이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를 유발하고 있다는 일부 견해는 잘 알고 있다. 하급재판소에 대해서는 이러한 견해를 제공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법무부 장관은 “언론보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지나치게 상궤(常軌)를 이탈한 언론의 과당경쟁보도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액이 전체적으로 너무 낮다는 인상이 강하며 피해의 구제수단으로서는 불충분하다”고 답변하고 “올해 예산에 명예훼손·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방법의 연구비용을 계상했다”고 밝혔다.

(『新聞協會報』, 2001. 5. 22) □

기사 내용과 다른 인상을 준 제목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으므로 정정보도하라

-일본 동경고등재판소 판결-

毎日新聞의 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이유로 종교단체인 구 음진리교가 1천만엔의 손해배상과 사죄광고의 게재를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동경고등재판소 제15민사부는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변경하여 “기사의 제목은 본문내용과 다른 인상을 독자에게 주어 원고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毎日新聞에 정정기사의 게재를 명했다.

毎日新聞은 2000년 5월 26일자 조간에서 “사린 연구 계속”이라는 제목과 함께 교단 차량에서 사린 화학식 등을 기록한 여성신도의 메모가 압수되어 공안부가 교단의 위험체질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심인 동경지방법재판소는 제목의 표현은 부적절하더라도 기사를 읽어보면 교단이 사린 연구를 하고 있었다고 보도하지 않은 것만은

명백하다고 판단, 교단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기사본문은 교단이 사린 연구에 관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목만을 읽는 독자도 적지 않으며 제목은 교단이 여전히 제3목적으로 사린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고 밝히며, “제목은 어느 정도의 생략, 과장이 있게 마련이며 독자도 이러한 제목의 속성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교단측의 사회적 평가의 저하는 심각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교단측이 청구한 사죄광고 게재와 손해배상의 지급에 대해서는 기각하면서도 毎日新聞 지상에 정정기사는 게재하라고 명했다.

(『新聞協會報』, 2001. 4. 17.) □

일본의 주요 일간신문들, 외부 인사들로 구성되는 ‘보도심의기구’ 잇달아 도입

일본 3대 신문 중의 하나인 毎日신문사가 지난해 10월 일본의 신문사로서는 최초로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 ‘제3자기관’(열린 신문 위원회)에 의한 보도심의를 개시한데 이어 11월에 下野신문사가 “독자 간담회”를, 2001년 1월 1일에는 朝日신문사가 “보도와 인권위원회”를 발족시키자 일본 신문들이 뒤를 이어 유사한 심의기구들을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山形신문사는 4월 1일, 제3자의 관점에서 보도내용을 검증하기 위한 “보도심사회”를 설치했다. 과잉보도에 대한 비판 등 인권의식

의 고양을 수용, 사외 저명인사들의 의견이나 관점을 보도활동에 반영하려는데 목적이 있으며 기사뿐 아니라 광고에 관한 불만도 취급한다.

심사회는 회사로부터 독립한 기구로 ①광고포함하여 기사나 표현에 인권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 ②취재의 방법이나 과정이 좋지 않은 것, ③보도나 표현을 둘러싼 문제 등에 대해 검증한다. 심사회는 저명인사 3명으로 구성하며 회의는 격월로 개최한다. 동사는 또한 2일 ‘독자센터’를 설립, 독자로부터 보내오는 지면에 대한 불만을 집약하여 심사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京都신문사는 4월 15일, 지면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사외 저명인사로 구성되는 “보도심의위원회”를 발족하면서 미디어가 다양화하고 정보가 범람하고 있는 가운데 독자의 신뢰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5월 1일에는 西日本신문사가 취재·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심의, 해결할 제3자기관으로 “인권과 보도·西日本위원회”를 설치하여 독자실에 접수된 항의나 불만 중에서 인권 침해에 관한 것에 국한하여 처리하도록 했다.

北海道신문사가 5월 14일 설치한 위원회는 독자센터 등에 접수된 독자들의 의견, 불만 등을 보고받아 심의하며, 위원회의 견해를 심의내용과 함께 지면에 공표하기로 했다. 정치인 등 공인과 기업·단체로부터의 불만신청은 취급하지 않는다.

(『新聞協會報』, 2001. 4. 10, 4. 24, 5. 15, 5. 22) □

창립 10주년 맞은 영국 PCC 자율규제의 성과 인정받아

켈커타위원회 보고서 이후 18개월이 지나 자율규제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 프라이버시법과 법적 규제 논리에 의해 억제되어 왔다. PCC(Press Complaints Commission)는 지금까지 두 차례 존립의 위기를 겪었다. 한번은 신문업계의 항의 때문이었고 다른 한번은 국민의 불만 때문이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자 법제화의 두려움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후퇴했다. PCC의 10년 동안의 활동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법제화를 심각하게 고려하는 정당은 사라진 것이 분명해졌다.

PCC는 지난 해 처리한 2,300건의 불만신청 건수 가운데 단지 60건만 평결하였다. 지난 10년간 25,000건 이상의 불만신청을 접수 처리하였다. 전국지를 대상으로 한 불만신청사건 비중이 가장 낮으며, 대부분은 정정 내지 해명기사 보도에 동의하는 수준에서 해결되는 단순한 문제들이다. 또한 PCC 위원이 다수의 시민 대표와 소수의 언론인으로 구성된다는 사실은 상당히 중요성을 갖는다.

언론이 없다면 대중들은 순진한 판단의 함정에 쉽게 빠져들고 말 것이며 언론은 일반인들이 진실을 파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점차 PCC와 유사한 성격의 기구가 다른 국가에 생겨나고 있다. 보스니아 PCC가 대표적이다. PCC 위원장 Wakeham 경은 “세계각국에서 자율규제가 만족할만한 정도로 지속된다면 언론의 자유는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보도실천강령이 비록 완전한 것은 아닐지라도 이는 결코 부정

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 않으며 상당히 긍정적으로 적용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Press Gazette, 2001. 2. 2, pp.14-15.) □

의견이 상충되는 상대측에 대한 취재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증거가 없다

-일본 동경지방법재판소 판결-

일본 讀賣신문사가 “巨人軍·長嶋감독의 지위를 둘러싼 의견대립과 관련하여 讀賣신문사의 부사장이 폭언을 했다”고 보도한 ‘週刊現代’의 기사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발행사인 講談社와 편집인을 상대로 1천만엔의 손해배상과 사죄광고의 게재를 청구한 소송에서 東京지방법재판소 민사제38부는 2001년 3월 30일 “讀賣신문사와 부사장에 대해 취재를 하지 않는 등 기사의 기재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講談社측에 3백만엔의 지불을 명했다.

판결에 의하면 ‘週刊現代’는 1999년 10월 2일호에서 “무엇을 새삼스럽게 讀賣 최고간부가 ‘長嶋派 비판’ 大暴言!”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長嶋감독을 ‘자를’ 수 있을까를 필사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長嶋續投를 바라는 전국의 ‘長嶋派’에 대해 (부사장은) ‘당했다’고 내뱉었다”는 등의 기사를 게재했다.

재판부는 “취재거부의 자세로 일관했기 때문에 취재를 하지 않았다”는 講談社의 주장에 대해 讀賣신문사가 98년 11월 ‘週刊現代’의 취재에 응한 사실을 들어 “취재를 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新聞協會報』, 2001. 4. 10.) □

허위사실을 방영한 일본방송국 정정·사과와 함께 프로듀서 등 관련자 4명 징계

니혼(日本)텔레비전은 2001년 4월 10일 와이드쇼 프로에서 사실오인에 근거한 보도를 한데 대해 정정과 사과를 하는 한편 편성국장, 프로듀서 등 관련자 4명을 징계했다.

문제가 된 것은 4월 3일에 방영한 한 프로그램으로, 모리 요시로(森喜朗)수상이 사퇴하지 않는 것은 “1년간 수상직에 있으면 퇴직금이 나오기 때문”이라는 평론가의 인터뷰를 방영했다.

모리수상측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조사한 결과 퇴직금은 6개월이 지나면 지급되는 것으로 밝혀지자 니혼텔레비전은 2일간 같은 프로그램에서 정정과 사과를 하고 프로그램 담당 임원에게는 엄중 주의, 프로듀서에게는 3일간의 출근정지, 편성국장과 수석 프로듀서에게는 감봉처분을 각각 내렸다.

(『新聞協會報』, 2001. 4. 17.) □

영국, 언론인의 주식보유를 공개토록 한 법 제정을 둘러싼 논쟁 가열

영국 재무부 장관은 언론인을 범죄자로 낙

인찍고 법정으로 몰고 가는 “실행 불가능한” 법을 언론인에게 짊어지게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의회에 제출된 이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언론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기소될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The Mirror지의 주식비밀정보 스캔들에서 촉발되었으며, 이 사건은 언론의 자율규제를 저해하는 첫 번째 걸림돌처럼 보였다. 그 기준은 평소 정부가 언론을 법적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 법은 기사를 작성한 일선 기자는 물론 부편집인, 사진 편집인, 편집자, 발행인까지 기소의 위협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 언론인의 반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PCC의 보도실천강령위원회(the Code of Practice Committee)의 의장인 Les Hinton씨는 “정부는 지키기 불가능한 법으로 언론인들에게 형벌을 부과하기 전에 이를 다시 재고해야 할 것”이라며 재무부 장관에게 항변했다.

영국 언론계는 PCC(Press Complaints Commission)의 활동에 힘입어, 자율규제로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의 재발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영국 재무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언론계의 주장을 일축하고 시민단체, FSA(투자정보서비스기관 :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사법 당국 등이 제시한 두 번째 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FSA는 무제한적인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판에 회부하여 범죄자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Hinton씨는 Tony Blair 총리를 비롯한 정부 주요 각료에게 자신의 견해를 담은 항의 서

한을 보내 언론계의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PCC의 보도실천강령은 기자가 자신이 취재한 기업 주식이나 앞으로 취재 예정인 기업의 주식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활동규제법 (Regulated Activities Order)이나 재무촉진법 (the Financial Promotion Order)하에서 언론인은 만약 주식이나 자신이 관여한 재정 투자로 이익을 얻었다면 이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법은 방송인은 물론 인터넷 신문·방송에 근무하는 자도 포함하고 있다.

News International의 대표이사는 “재무부장관이 제안한 법의 적용 영역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다. 한 기사가 게재되기까지 단지 기사를 작성한 사람은 물론 편집인, 데스크, 사진 편집자, 변호사 등 수많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 기사 내용과 연관이 된다. 물론 궁극적인 책임은 발행인에게 있겠지만 기사 원고가 나중에 변경되었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이득을 취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분명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법에 대해 신랄히 비난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법은 의회 승인을 거쳐 올 여름 제정될 전망이다.

(Press Gazette, 2001. 3. 2, p.1.) □

미국 대법원, 제3자가 불법 도청한 내용일지라도 합법적으로 입수하여 보도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

미국 대법원은 제3자가 불법도청한 통화내용을 방송한 펜실베이니아주 방송인을 도청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수정헌법 제1조가 프라이버시권에 대해 승리한

이 판결로 인해 미국 언론은 한동안 불법적으로 획득한 정부 메모나 회사 기밀서류와 같은 비밀정보의 보도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이 사건은 펜실베이니아주 교원노조 간부인 원고 Bartnicki 씨가 교원노조 위원장과 나눈 전화통화내용을 불법 도청한 제3자가 그 자료를 펜실베이니아주의 한 라디오 방송국에 전달함으로써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녹음내용을 방송한 펜실베이니아주 라디오 방송국의 토크쇼 진행자를 도청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도청금지법(wiretap law)은 불법적으로 정보를 도청하여 유포하는 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등법원에 회부되기 전까지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합법적으로 획득한 뉴스가치가 있는 정보를 보도한 언론사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지나치게 광범위한 법령의 적용이 가능하겠는지에 대한 의문이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현대 기술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두려움보다 공중의 알 권리가 우선한다며, 취재원이 설혹 정보를 불법적으로 얻어도 발행인이 이를 합법적으로 입수했다면 이에 따른 공표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제3자의 불법적인 행위가 공공의 관심사를 밝힌 언론에 대한 수정 헌법 제1조의 보호막을 거둘 수는 없다고 밝혔다.

William H. Rehnquist 대법원장을 비롯한 2명의 대법관은 전자통신기술을 이용해 의사소통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이 판결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냈다.

(Editor & Publisher, 2001. 5. 28, p.8, p.10.) □

언론중재신청사례

편집자 주

본 사례는 연구자료이므로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위해
공표치 마시기 바라며,
만약 인용할 때는
가주소가명 등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조합이 분식결산, 부당대출 등
방만한 경영을 일삼고, 대출금을
갚지 못한 조합원의 재산을 서면
통보도 없이 경매로 처분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1대구중재5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낙동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이 정 수)
피신청인 : 영남투데이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01. 3. 26.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영남투데이 : 『“농민위에 군림하는 농협”』 제하
의 기사(2001년 2월 7일자 15면)
내 용 : 농산물 수입개방 파고가 거세지
면서 농촌경제가 위기로 치달고 있는 가운데
농민들의 권익에 앞장서야 할 농협이 무리한
채권관리에다가 부실과 방만한 경영을 일삼고
있어 조합원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상주시 낙동농협의 경우 지난해 7월 조합 직
원인 조모 씨(35)가 조합원 및 부인, 처남 등

의 명의로 14건에 무려 2억1천여 만원을 부당
대출한 후 이를 횡령해 사법처리 중에 있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조합불신
사태를 빚고 있다.

특히 지난 연말 결산때는 수익원의 적자가
났음에도 사실상 분식결산을 해 1천200만원의
흑자로 정산, 직원들에게 350%에 달하는 제
수당을 지급하고도 조합원들에게는 출자배당
조차 주지않았다는 것이다.

조합원 J모 씨(48)에 따르면 영농자금 등으
로 대출받은 4천500여 만원을 못 갚자 조합이
연대보증인 4명과 자신의 논 1천여 평까지 가
압류를 했는데 조속한 시일안에 정상적으로
토지를 팔아 부채를 갚겠다고 간청했지만 사
전 서면통보도 없이 경매를 진행시켜 헐값에
재산을 날렸고 보증인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됐다고 분개했다.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낙동농업협동조합으로서
영남투데이 신문 2001년 2월 7일자 15면 상단
“농민 위에 군림하는 농협” 제목의 기사에 대
해 중재를 신청한다.

피신청인의 위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실은 2000년도 회원조합 결산지도 기준에

의거 각종 충당금 등을 정당하게 적립하였으며, 2001년 2월 5일 2000년도 낙동농협 결산총회시 11,640천원을 출자 배당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 또한 2000년 12월 16일 내용증명 우편으로 경매착수 예고장을 발송하였으며 채무자에게 토지를 현 시가로 정상 매매토록하여 대출금상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관내 윤모 씨의 중개로 김모 씨와 매매 체결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채무자 J모 씨가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여 토지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후 수차례 전화통화로써 상환독촉과 법적 조치에 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인지시켜 주었으나 상환능력부족과 상환의사가 없어 경매개시 결정은 되었으나 현재 1차 경매기일 조차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을 헐값에 날렸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 보도로 낙동농협 조합원들이 혼란에 빠져 낙동농협의 경영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불신의 골이 증폭되고, 조합원들의 문의전화로 직원들의 업무공백이 발생되고 있으며 2001년도 전반적인 사업에 대하여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본지가 지난 2001년 2월 7일자 15면에 『“농민 위에 군림하는 농협”』 제하의 기사에서 “상주 낙동농협 부실경영 일삼아 원성, 적자내고도 직원 수당 챙겨 배당은 외면”과 함께 2000년도 결산 때 수익원의 적자가 났음에도 사실상 분식결산을 하였다. 또한 조합원에게 출자배당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합원 J모 씨에 대하여 대출받은 4천500여 만원을 못 갚자 본인과 보증인들의 재산을 사전 서면통보 없이 경매를 진행시켜 헐값에 재산을 날렸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낙동농협은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사실은 분식결산하지 않았고 농협 결산지도 기준에 의거 정상적으로 흑자결산 하였으며 조합원들 출자배당은 2001년 2월 5일 낙동농협 2000년도 결산총회 때 손익부분에 대하여 출자배당하기로 하였고 J모 씨의 토지에 대하여 경매착수 예고장을 내용증명우편으로 사전 서면통보하였으며 수 차례 전화를 통하여 상담하였으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정상매매를 통한 상환기회를 주었으나 터무니 없는 가격을 제시하므로 매매결정 단계에서 무산되었으며 지난 2월 7일 현재 경매개시 결정은 되었으나 1차 경매기일조차 잡혀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낙동농협 관련 정정보도
- 본 문 : 본지 2001. 2. 7.자 15면 『“농민 위에 군림하는 농협”』 기사에서 “상주낙동농협이 연말결산을 하면서 수익원의 적자를 분식결산을 통해 흑자로 정산한 후, 직원들에게 350%의 수당을 지급하면서 조합원에게는 출자배당조차 않았다”는 내용과 함께 “조합원 J모 씨가 대출 받은 4천5백여 만원을 상환하지 못하자 본인과 보증인의 재산에 대해 사전 서면 통보 없이 경매를 진행시켜 헐값에 재산을 날리게 했다.” 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확인결과, 조합원에 대한 출자배당은 2000년 결산총회 때 손익부분에 대하여 출자배당하기로 결의한 것을 이행한 것이며, J모 씨에 대하여는 토지경매 착수예고장을 사전 서면 통보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상환요구를 하였고, 정상매매의 기회까지 주었으나 가격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매매가 무산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분식결산 보도와 관련해 낙동농협은 분식결산은 사실무근이며 농협결산기준에 의거한 정상적인 결산 결과, 1천2백여 만원의 흑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을 영남투데이 2001. 4. 9.자 17면에 보도하되, 제목은 중재대상기사의 부제목 '상주낙동농협~외면' 활자와 같은 크기로 2단에 걸쳐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영남투데이 : 『낙동농협 관련 정정보도』제하의 기사(2001년 4월 9일자 17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의 아버지인 고 김창룡 씨가 백범 김구 선생 암살의 배후이며, 무고한 사람들을 용공 부역자로 몬 인물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1서울중재65

청 구 명 : 반론보도청구

신 청 인 : 김 미 원

피신청인 : 한 거 래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1. 3. 26.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한겨레 : (1) 『김창룡(백범 암살배후 혐의자) 국립묘지 이장 논란』 제하의 기사(2001

년 1월 20일자 1~2면)

내 용 : 백범 김구 선생 암살 배후로 지목돼 온 전 육군 특무부대장 김창룡(1956년 사망) 씨 유해가 1998년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김씨는 한국전쟁 당시 무고한 시민들을 용공, 부역자로 몬 인물에다, 묘지 이전이 백범 기념사업을 장려 지원하던 시기에 추진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김씨 묘지는 대전 국립현충원 장군 묘역 제2열 오른쪽 69호에 자리잡고 있다. 김씨 비석에는 '육군중장 김창룡의 묘'와 '1920년 11월 22일 함남 영흥에서 출생 1956년 1월30일 서울에서 순직' 이라고 적혀있다. (중략)

그러나 김씨는 95년 국회의 '백범 김구 선생 암살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강신옥) 조사에서 백범 암살 직후 안두희에게 편의제공과 함께 그의 강형과 군복귀를 주선하는 등 암살 배후 혐의를 받는 한편, 이승만 정권시절 군 통수권자를 업고 군부의 정치 개입에 앞장서온 인물로 꼽혀 이장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상임연구원은 "백범 암살의 배후로 지목된 것은 물론, 제1공화국 시절 무고한 사람들을 용공, 부역자로 몰아 탄압하고 군의 정치화에 앞장선 인물을 국립묘지에 안장한 것은 민족정기와 군의 명예를 해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씨 비석에는 '피흘려 도로 찾은 자유와 평화를 골고루 심어주자'라는 특무부대 노랫말도 새겨져 있다.

(2) 『김창룡 누구인가 일본군 헌병출신 ... 안두희 씨 비호』 제하의 기사(2001년 1월 20일자 2면)

김창룡은 1940년 만주에서 중국공산당을 토벌해 일본 관동군 헌병대 오장(하사급 분대

장)에 오른 뒤 해방 2년 뒤 조선경비대 사관 학교 3기생으로 소위로 임관됐다.

그는 '용공분자 색출'을 이유로 당시 5만명이던 군 병력 중 5천명을 잘라내는 숙군작업에 참여했다. 56년 1월 30일 출근길에 부하에게 살해당했다.

그는 백범이 저격당한 49년 6월 29일 저녁 암살범 안두희를 특무대 영창으로 이감시켜 쉬게 하고 종신형을 선고받은 그를 15년으로 감형시키는 데 영향을 끼쳤다. 안두희도 1992년 "조선호텔 앞 대륙상사로 위장된 특무대 사무실에서 김창룡을 만나 백범 암살을 지시받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한겨레신문은 2001년 1월 20일자에 "김창룡 국립묘지 이장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일이 있는데, 이 기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과 다르고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중재를 신청한다.

보도내용과 달리 김창룡은 6·25 이전에는 국가를 전복할 목적으로 군에 침투한 공산당을 숙군하고, 6.25 전쟁시에는 국가의 중요 시설의 파괴 및 방화, 정부요인 암살등의 목적으로 남파된 간첩, 오열 등의 색출로 조국을 지켜 준 대한민국 육군 중장이다.

그렇듯 김창룡은 대한민국에 유공하였고, 49년 6월 26일 저녁에는 안두희와 접한 사실이 없었고, 1992년 안두희의 증언이라는 것은 권중희 등의 테러에 의한 허위 증언이었고 사실과 다르다.

나아가, 김창룡의 국립묘지 안장은 6.25 전후에 그가 대한민국을 위하여 새로운 공로가 인정되어 국가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일이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보도는 김창룡

국립묘지 안장에 논란의 소지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의 행위를 부인하는 처사이다. 언론이 국민의 사고에 미치는 영향으로 비추어보아,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한겨레신문은 2001년 1월 20일자에 "김창룡 국립묘지 이장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김창룡을 백범 암살 배후 혐의자라고 했고, 그를 한국전쟁 당시 무고한 시민들을 용공 부역자로 몬 인물이라고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은 또한 같은 날 "김창룡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기사에 "... 안두희도 1992년 조선 호텔 앞 대륙상사로 위장된 특무대 사무실에서 김창룡을 만나 백범 암살을 지시받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김창룡은 백범 암살의 배후가 될 수 없으며, 한국 전쟁 당시에는 남파된 간첩, 오열 등의 색출 등으로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 준 인물이다. 그리고 안두희의 1992년 증언이라는 것은 권중희 등의 테러에 의한 허위 증언이었고 안두희 자신도 반복한 증언이다.

반론보도 신청인 김 미 원

합의사항

· 제 목 : 김창룡은 백범 암살사건의 배후가 아니다.

· 내 용 : 김창룡의 백범 암살사건에 대한 혐의는 잘못된 근거에 의한 것이어서 몇 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안두희는 '조선호텔 앞 대륙상사로 위장된 특무대 사무실에서 김창룡을 만나 백범 암살을 지시받았다'고 증언했다고 보도했으나 암살사건이 있는 1949년 6월에는 특무대

라는 부대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안두희의 증언은 허위라고 볼 수 있다.

둘째, 1949년 6월 김창룡은 태능에 소재한 제1연대 정보과에 소속된 육군 소령이었다. 포병 소위였던 안두희가 정보과 소속 소령의 지시를 따르는 데 대한 합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안두희는 김창룡의 당시 지위와 세도를 운운하는데, 김창룡이 이승만 대통령의 총애를 받게 된 것은 6·25 직후 군검경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 공적에 기인하는 것으로, 49년 6월에 김창룡의 세도는 형성될 수 없었다.

셋째, 김창룡이 종신형을 선고받은 안두희를 15년으로 감형시키는 데 크게 영향을 끼쳤다고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안두희의 감형은 군사재판 일반절차에 따라 사령관 확인 과정에서 감형된 것으로, 방첩활동이 주임무였던 김창룡이 개입할 성질의 사안이 아니다. 또한 안두희가 군에 복귀한 것도 당시 헌병 사령관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넷째, 김창룡이 한국전쟁 당시 무고한 시민들을 용공 부역자로 몰았다는 내용 역시 사실과 다르다. 특무대는 간첩을 수사하는 기관이고, 무고한 시민이 간첩으로 몰렸는지에 대한 판단은 군 검찰부와 재판부의 업무영역이다.

끝으로, 일전에 일부 시민들이 고인의 묘소를 훼손하려 한 적이 있는데, 이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로 앞으로 유족의 마음을 헤아려 이러한 행동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한겨레 2001. 4. 12.~4. 19.자 중 11면(‘편집자에게’란)에 1회 게재하되, 제목(김창룡은...) 활자 크기는 중재대상 기사의 부제목(유족·기무사 요청...) 활자 크기와 같게 하고, 본문활자 크기는 동기사의 본문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겨레 : 『김창룡은 백범 암살 사건의 배후가 아니다』제하의 기사 (2001년 4월 14일자 6면)

내 용 : <한겨레> 1월 20일치 1면 ‘김창룡 국군묘지 이장 논란’ 기사와 관련해 김씨 딸 미원씨가 유족 견해를 보내왔다.

<이하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화염병 투척으로 인한 화재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대학생으로 하여금 다른 학생을 고소하도록 강압수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1서울중재79

청 구 명 : 반론보도청구

신 청 인 : 고 상 동

피신청인 : 내일신문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1. 4. 13.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내일신문 : 『경기경찰청 강압수사 ‘말뼉’』 제하의 기사(2001년 4월 9일자 23면)

내 용 :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달 8일 새벽 화염병투척으로 발생한 수원노동사무소 화재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원지역 대학생 및 사회단체 종사자들을 용의자로 보고 무리한 수사를 벌여 물의를 빚고 있다.

수원지역 사회단체들에 따르면 화재사건 이

후 경찰은 이들 대학생 및 사회종사자들의 집과 강의실 직장을 찾아다니며 사건 당일의 행적을 묻는 등 무리한 조사를 벌였다.

대학생 K씨는 화재사건 며칠 후 사이버 수사대와 수원중부서 경찰로부터 '협조해야 할 일이 있으니 일단 만나자'는 전화를 받았다. K씨는 경찰에서 사건당일의 행적을 밝혔지만 경찰은 '이 모'라는 사람이 K씨의 인터넷 ID로 화재관련 기사를 올렸다고 이씨와의 관계를 밝히라고 강요했다.

경찰은 K씨의 강의실과 자취방, 조교실 등으로 찾아와 사건당일의 행적을 진술서로 쓰라고 요구했으며, 이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쓰라고 협박, K씨는 이에 못이겨 결국 고소장을 썼다. 이 과정에서 K씨는 경찰이 핸드폰 통화내역을 조사해 자신과 통화한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 관계를 확인했으며, 알리바이가 분명한데도 강압수사를 벌이는 바람에 공포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K씨는 이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경찰이 "알아서 하겠다"며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수원다산인권센터 등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찰은 직장인 이씨의 집에도 찾아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사회단체 종사자나 과거 학생운동을 했던 10여 명에게도 전화를 걸어 사건당일의 행적을 다그쳤다.

이씨는 결국 화재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경기지방경찰청은 2일 이 사건과 관련 다른 대학생 2명을 현주건조물 방화화화염병사용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2001. 4. 9.자 내일신문 23면에 "경

기 경찰청 강압수사 '말썽'이라는 제하의 보도는 경기경찰과 15만 전경찰에 대한 명예를 크게 훼손하였으며 사실과 다르게 허위 보도하였으므로 이에 중재신청한다.

대학생 K씨는 수원대학교 재학 중인 윤모씨를 특정지은 것으로서 윤씨가 이씨로 인해 직접적 간접적 피해를 너무 많이 입었다고 하며 자신의 ID를 도용한 이씨를 처벌해달라고 자필로 고소장을 작성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고소장 작성 당시 경찰이 윤씨를 협박하거나 강압수사를 한 사실 없으며 고소장을 제출받고 익일 윤씨가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혀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고 수사기록에 참고 편철하였을 뿐 이를 묵살한 사실이 없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2001. 4. 9.자 23면 기사인 "경기경찰청 강압수사 말썽 대학생 등에 고소장쓰라 협박 시민단체 반발"이라는 제하의 기사로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정정보도합니다

경기경찰청에 사실 확인한 결과 경찰이 수원노동사무소 화염병 투척방화사건 수사과정에서 대학생 K씨에게 이씨와의 관계를 밝히라고 강요하는 등 K씨에게 이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쓰라고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경찰이 K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쓰라고 협박한 것처럼 잘못된 보도를 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경찰이 K씨에게 고소장을 쓰라고 협박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 경기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본 문 : 내일신문이 지난 4월 9일자 23면 『경기경찰청 강압수사 말썽』 제목의 기사에서

수원노동사무소 화재사건의 화염병 투척방화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대학생 K씨에게 이씨와의 관계를 밝히라고 강요하고 K씨에게 이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쓰라고 협박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를 담당했던 수원중부경찰은 “K씨가 아이디어를 도용한 이씨를 처벌해 달라고 자필로 고소장을 작성, 제출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경찰이 K씨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내일신문 2001년 4월 27일 이전까지 23면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 크기는 중재대상 기사의 중간제목(대학생 등에…)과 같은 크기로 하고, 본문은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내일신문 : 『반론보도문』제하의 기사(2001년 4월 23일자 23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들이 재건축조합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조합에 가입토록 협박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1경기중재 10
청 구 명 : 반론보도청구
신 청 인 : 한호근외 6인
피신청인 : 중부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1. 4. 14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중부일보 : 『반대 주민에 폭행 등 일삼아』제하의 기사(2001년 4월 9일자 16면)

내 용 : 재건축을 위한 조합결성 과정에서 조합결성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괴롭힘을 당하는가 하면 노약자가 폭행까지 당하는 사태가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

통상 재건축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 사업을 추진하는 순수 민간사업이다.

8일 시흥시 신천동 83(속칭 보금자리)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이 지역 일부 주민들이 재건축을 위한 조합을 결성, 조합원 가입을 원치 않는 주민들에게 폭력과 욕설을 일삼고 있다.

특히 이들 조합원들은 주부나 노약자들을 주 대상으로 조합원 결성에 찬성하라며 강제로 도장을 뺏는 등 행패를 일삼고 있다는 것.

이 일대는 30여 년 전부터 무허가 판자촌을 형성, 현재 450여 세대의 주민들이 살고 있으나 주민들은 이주대책비뿐 아니라 조합기금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형편으로 조합의 신병성에 의문이 간다며 조합원 가입을 원치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 현재 결성 중인 조합이 영세주민들을 위해서가 아닌 일부 조합원들의 영리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지난 달에는 행상을 하는 이정래 씨(75·여)가 조합을 추진 중인 유모 씨(49·신천동·83)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치료 중이다. 폭행을 당한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2시 30분께 노인정에서 점심식사를 준비하던 중 조합원 유씨가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고 말했다.

주민 김모 씨는 “조합결성을 추진 중인 일

부 주민들이 욕설과 폭력을 일삼고 있다”며 “이에 대해 신고를 하거나 조합원 가입을 원치 않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어 이 곳 주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 한호근 외 6인은 신천동 83번지 32통 보금자리 마을 주민으로서 우리 마을은 30여 년 전부터 모 장학재단 소유의 부지 위에 무허가 판자촌으로 형성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함은 물론 거주자 파악조차 곤란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주민들 모두가 이익이 될 수 있는 길을 찾던 중 부지에 지역조합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중부일보 2001년 4월 9일자 지방면에 『시흥 신천동 보금자리 재건축 조합결성 물의 반대 주민에 폭행 등 일삼아』 제목의 기사에 대해 중재신청을 한다.

현재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은 무허가 건물인 관계로 재건축 조합을 결성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동 위치에 아파트를 건립하여 주민들이 입주하도록 하는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함에 있어 1군 건설회사에서 이주비 지원 등 구체적으로 사업추진에 대하여 협의가 완료된 상태에 있으며 전체주민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업설명회는 물론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85% 이상의 주민들이 조합결성에 찬성하였다.

조합결성을 위하여 협박하거나 강제로 도장을 뺏거나 하는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강제로 조합원에 가입시킬 필요성도 없음에도 기사내용은 마치 일부 조합원들이 영리 목적을 위하여 폭력을 휘두르고 협박하며 조

합을 강제로 결성하는 것처럼 보도하여 우리 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 조합결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어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본지가 지난 4월 9일자 지방면에 “시흥 신천동 보금자리 재건축 조합 결성 물의. 반대 주민에 폭행 등 일삼아” 제하의 기사에서 “조합결성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강제로 도장을 뺏는 등 조합에 가입토록 협박하는 등 재건축 조합결성에 물의를 빚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그러한 사실은 불량한 주거환경 개선과 전체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1군 건설회사와 이주비 지원 등 구체적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상태로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중부일보 2001년 4월 9일자 16면에 『시흥 신천동 보금자리 재건축 조합결성 물의』 제하의 보도에 대해서 시흥시 신천동 83번지의 통장인 한호근은 다른 신청인 6인과 함께 무허가 주택지역에 아파트 건립을 위한 지역주택조합의 결성을 추진한 사실은 있으나 주민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반론보도 신청인 한 호 근 외 6인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중부일보 2001년 4월 21일자 16면에 상사

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 크기는 14포인트로 하고, 본문활자 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중부일보 : 『반론보도문』제하의 기사(2001년 4월 21일자 16면)

내 용 : 중부일보 2001년 4월 9일자 16면 “시흥 신천동 보금자리 재건축 조합결성 물의”제하의 보도에 대해 시흥시 신천동 83번지 통장인 한호근은 다른 신청인 6인과 함께 무허가 주택 지역에 아파트 건립을 위한 지역주택조합의 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합니다.

한 호 근 의 6인 □

통학버스 사고차량이 노선버스임에도 전세버스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청정보도)

사건번호 : 2001서울중재80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1. 4. 16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MBC-TV : 「뉴스데스크」프로그램(2001년 4월 10일 21:00)

내 용 : ▷앵커 : 통학버스는 어린이들에게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수도권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통학버스도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김재용 기자입니다.

▷기자 : 어젯밤 중부고속도로에서 경기도 이천의 대학생들을 태운 통학버스가 5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학생 1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아직 사고의 원인이 타이어 펑크인지 운전자의 졸음 때문이었던지가 가려지지 않았지만 학생들은 통학버스를 탈 때마다 불안감을 지울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 배차시간도 안 지켜지고 그리고 자기들 나갈때 편하면 사람 더 태우는 일도 종종 있고...

▷기자 : 10여 대의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다른 지방대학. 차를 운전하는 기사가 바로 이 통학버스의 소유주입니다.

폐차처분이 됐어야 하는 10년이 다 된 노후 차량도 섞여 있지만 학교측은 일일이 따져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대부분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규정속도를 지키지 않을 때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통학버스의 일부는 수입을 올리기 위해 낮 시간대나 주말에는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전세버스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졸음운전 등의 안전사고가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0조에 의하여 전국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운송사업의 지위 향상을 위한 공동목적 달성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

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 전국 16개 시·도 전 세버스 업체를 대표하여 조합을 관리 및 총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피신청인이 2001. 4. 10 21:00경 중 부고속도로 경기도 이천 지점에서 발생한 시 외(노선)버스사고를 “공포의 전세버스”라는 제목으로 마치 사고차량이 전세버스로 방송 된 보도에 대해 사과 방송의 중재를 신청한다.

사고 차량은 노선허가를 받은 시외버스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인가된 구간만 운행하는 차량으로 그동안 학교 안까지 진입 해 학생들을 불법 수송하여온 노선버스 차량 이다.

그러나 보도에는 마치 사고 차량이 전세버 스처럼 방송이 되어 전국의 수많은 전세버스 통근·통학 이용자에게 불신과 불안감을 가중 시켰으며 2만여 전세버스 종사자의 위상저하 로 업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무형의 재 산상 피해 및 운행제한 우려를 초래하였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본 방송이 지난 4월 11일 MBC뉴스데스크 에서 방송한 청강산업대 교통사고를 『공포의 전세버스』 제하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사고 차량은 시외버 스 업종인 노선버스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 니다.

전국전세버스연합회 및 단체 관계자 여러분 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이 지난 4월 11일자에 보도 한 청강산업대 교통사고 버스는 전세버스가 아니라 시외 정규노선버스인 것으로 밝혀졌습

니다.

·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MBC-TV 4월 23일자 마감뉴스 프 로그램 말미에 뉴스 진행자 육성으로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되, 화면 하단에는 동 정 정보도문의 제목을 자막으로 표시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MBC-TV : 「마감뉴스」 프로그램(2001년 4월 24 일 00:2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대수차 노사분규 현장에서 경찰병력을 지휘한 신청인이 “정권은 법에 우선한다”고 발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1서울중재81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김 종 원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1. 4. 16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동아일보 : 『정권은 법에 우선한다?』 제하의 사실 (2001년 4월 13일자 5면)

내 용 : 검찰이 온갖 폭력적인 방법으로 변 호사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부정한 명백한 불법행위다. 더군다나

사건이 벌어진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현장에서 경찰병력을 지휘한 인천 부평경찰서장은 “정권은 법에 우선한다”는 망언도 서슴지 않았더니 도대체 이들은 어느 나라 경찰인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우리가 특히 이 사건에 관심을 갖는 것은 검찰이 법원의 결정까지 무시했다는 점 때문이다. 대우자동차 노조원들과 노조측 대리인인 박훈(朴勳)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노조사무실에 들어가려 했으나 경찰이 무자비한 폭력으로 이를 막다가 일이 커진 것이다.

대우자동차 노조는 회사측과 경찰이 부평공장 노조사무실을 봉쇄하자 회사를 상대로 출입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노조원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막아선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박변호사는 9일과 10일 노조사무실을 막고 있던 경찰에 법원의 결정문을 설명하고 경찰이 계속 출입을 방해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경찰은 막무가내로 출입을 봉쇄했고 급기야 10일 오후에는 노조원과 박변호사 등 40여 명이 경찰의 곤봉과 발길질에 부상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한마디로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의 모습이 아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불법 폭력이 아무런 문제도 아니라는 듯이 막말도 서슴지 않은 일선 경찰간부의 의식과 행패다. 경찰이 스스로 법질서를 부정하고 나선 것은 과거 군사 독재정권 시절에도 없던 일이다. 정권이 법에 우선한다니 국민은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는지 암담하기 짝이 없다.

대우자동차 매각 문제가 아무리 시급한 국가적 현안이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노조를 억압해선 안된다. 노조가 매각협상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판단해 정부와 회사측이 노조존립 자

체를 부정한다면 일이 더욱 어려워질 뿐이다.

우리는 경찰의 이번 불법대응이 정부나 회사측의 노조에 대한 시각을 나타낸 것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우자동차의 회생 문제는 결국 노사협력에 달려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도 당국은 이번 불법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지휘책임자를 엄중문책해야 한다.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동아일보 4월 13일자 5면 사설란에 게재된 보도로 인해 수십년간 쌓아온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다.

대우자동차 관련 사태로 직위해제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피신청인이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킨, 있지도 있을 수도 없는 내용을 기사화하여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특히 피신청인은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현장에서 경찰병력을 지휘한 인천부평경찰서장은 ‘정권은 법에 우선한다’는 망언도 서슴지 않았더니 도대체 이들은 어느 나라 경찰인지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보도한 사실이 있는 바 신청인은 당시 “정권은 법에 우선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으며 이러한 보도가 어떻게 본인에게 사실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신문사설에 게재됐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신청인은 사내에 진입하려는 해고 근로자는 물론 노조원들과 어떠한 대화도 나눈 사실이 없으며 다만 4.9. 박훈 변호사가 찾아와 “노조사무실 출입 및 노조업무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으니 출입하게 해줄 것”을 요구했을 때 “회사출입은 노사간 해결할 사항으로 경찰은 다만 노사간 마찰로 폭력사

태 발생 등 불상사 방지를 위해 개입하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전달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동아일보사는 신청인에게 사실 확인도 없이 일방적인 보도를 하여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 심적 고통을 주었다.

이와 같이 신청인이 문제의 발언을 전혀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어떠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사실을 통해 허위 사실을 일방적으로 보도하여 신청인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켰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동아일보 4월 13일자 5면 사설 셋째줄에 게재된 대우자동차 부평현장에서 경찰병력을 지휘한 부평경찰서장이 “정권은 법에 우선한다”라는 망언도 서슴지 않았다” 보도는 사실과 다른 잘못된 보도로 부평경찰서장은 이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었음을 정정보도하며 이로 인해 심적 고통과 함께 명예훼손을 당한 당사자와 경찰에 대해 사과합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4월 13일자 5면 『정권은 법에 우선한다?』 제하의 사실 가운데 대우자동차 부평현장에서 경찰병력을 지휘한 부평경찰서장이 “정권은 법에 우선한다”라는 망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 부평경찰서장 김종원 씨는 그러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기에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동아일보 2001년 4월 24일자 A7면 하단 중앙에 박스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바로잡습니다) 크기는 중재대상기사가 게재된 동신문 A7면의 ‘바로잡습니다’와 같게 하고, 본

문은 동 기사의 본문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동아일보 : 『바로잡습니다』제하의 기사(2001년 4월 24일자 A7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홍성군여성단체협의회가 봉사활동은 하지 않고 영리활동만 하는 등 유명 무실한 단체로 전락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1대전중재 6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홍성군여성단체협의회 (회장 하 희 자)

피신청인 : 조양신문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1. 4. 18.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조양신문 : 『여성단체협의회 유명무실 단체 전락 위기』 제하의 기사(2001년 4월 13일자 1면)

내 용 : 홍성군 여성단체협의회가 유명무실한 단체로 방치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홍성군을 비롯, 각급기관 등 사회단체들에 의해 범군민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교통 사고줄이기 캠페인, 구제역 방역소독 활동, 산불예방 캠페인, 봄철 환경정화 활동 등 지

역의 각종 지도·계몽활동에 홍성군 여성단체연합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더욱이 여성단체협의회는 각종 사회단체들이 펼치고 있는 봉사활동에는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장사속이나 생색내기 등 자신의 이익내는 모임에만 참석하고 있어 다가온 눈총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한 여성단체관계자는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에 상근근무자 한 명도 없이 방치되고 있고 안내 전화번호(634-7155번)로 통화를 시도하면 받는 사람이 없는 등 여성단체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증지를 모으기 위해선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으나 강건너 불 구경하듯 수수방관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여성단체협의회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군발전을 위해 화합과 단결에 앞장서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활동은 보이지 않고 정치색을 나타내며 군정에 대하여 사사건건 비토만하고 있다”며 “일부에선 이를 부채질하며 즐기고 있어 하루속히 군민을 위해 노력하고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고 불만을 토론했다.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홍성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으로서, 조양신문 2001. 4. 13.자 1면 “유명무실 단체 전략 위기”제하의 기사에 대해 중재신청한다.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여성단체협의회가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잘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어느 한쪽의 말만을 듣고 기사를 작성한 것이 분명하다. 이 기사의 맥락을 보면 과거 행정기관에서 보여주기 위한 각종 행사나 캠페인활동 등에 관련 단체를 동

원했던 잘못된 관행을 마치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반드시 수행해야만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식의 전제가 깔려있어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되는 여성단체협의회 위상을 비하 추락시켰다.

또 위 기사에서 여성단체협의회가 봉사활동에는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장사속이나 생색내기 등 자신의 이익을 내는 모임에만 참석한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은 도대체 여성단체협의회 활동 중에 어떠한 일이 장사속이고 생색내기 사업이었던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고의적으로 여성단체협의회를 모함하기 위한 기사로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에 상근자가 없고 전화통화도 안된다고 쓰여있는데 홍성군 여성단체협의회는 임의단체로 상근자를 반드시 두어야 할 의무나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여성단체협의회 전화는 회장이 개인사업장 등에 항상 연결이 되도록 조치해 두었기 때문에 회장과 전화통화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현재 홍성군청 여성복지담당이 여성단체협의회 간사를 맡고 있어 이쪽으로도 얼마든지 연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화통화 안된다”라고 한 기사는 근거없는, 사실과 다른 비난으로 여겨진다.

더불어 기자는 여성단체협의회 명예를 실추, 훼손시킬 수 있는 민감한 기사를 취재하면서도 한 번도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등 책임있는 답변을 해줄 만한 여성단체협의회 관계자를 찾아와 취재 및 보도자료를 요청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여성단체협의회에 불리한 기사를 보도한 것은 언론의 윤리, 기사작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언론의 횡포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보도로 인하여 신청인은 그동안 홍성군 지역에서 쌓아온 여성단체협의회와 여

성단체협의회회장의 위상과 명예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본지 지난 4. 13.자 1면 “여성단체협의회 유명무실 단체 전략위기”제하의 기사와 관련, 잘못 보도된 부분이 있어 정정한다.

본지가 제기한 구제역방역활동, 산불예방캠페인 등은 공익에 필요한 사업이지만 여성단체협의회(이하 ‘여단협’)가 참여할 성격이 아닌 것임을 밝히며, 여단협은 소비절약운동, 장학금지급, 이웃돕기 등의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본지는 또 여단협 사무실이 상시 근무자 한 명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는데 여단협은 임의단체로 상근자가 있어야 할 의무나 규정도 없고 재정상의 이유로 상근자 없이 운영되고 있고, 간사인 군청 여성복지담당이 연락업무를 할 수도 있고, 또한 여성단체협의회회장의 개인사업장 등에 연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여단협이 장사속이나 생색내기 등 이익있는 행사에만 참석하고 정치에만 나타난다고 보도한 부분도 봉사활동에 전념한 여단협에 대한 지나친 표현이었음을 밝힌다.

아울러 여단협 회원들은 그동안 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으며,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왔음을 밝힌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4. 13.자 1면 “여성단체협의회 유명무실 단체 전략 위기” 제하의 기사와 관련, 홍성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하희

자)는 평소 소비절약캠페인, 에너지절약운동, 장학금지급, 이웃돕기 등의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또한 여성단체협의회(이하 여단협) 사무실은 재정상의 이유로 상근자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군청 여성복지담당이 연락업무를 맡고 있고 여단협 회장의 개인사업장 등에 상시 연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단협은 봉사활동에만 전념했을 뿐 결코 영리활동을 한 사실이 없음을 덧붙였다.

끝으로 여단협 회원들은 그동안 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으며,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왔음을 밝혀왔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1년 4월 27일자 1면 우측 하단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 크기는 중재대상기사 부제(지도·계몽활동...)와 본문활자크기는 중재대상기사 본문체와 동일하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조양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2001년 4월 27일자 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여상의 재단이사장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등 부정과
비리를 일삼은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1/서울중재93

청 구 명 : 반론보도청구

신청인 : 진 인 권
피신청인 : 문화일보
중재부 : 서울제2중재부
접수일 : 2001. 4. 25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문화일보 : 『사립 중·고 분규 몸살』 제하의 기사(2001년 4월 21일자 31면)

내 용 : 신학기 들어 재단비리와 부당 인사 등에 대해 반발하는 학생 및 교사들의 집회와 점거농성 등으로 학내분규에 휩싸이고 있는 사립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 화곡동 인권학원 소속 신정여상 교사 및 학생 800여 명은 20일 오후 학교 운동장에서 집회를 갖고 재단측 이사장의 비리와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한 부당인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재단 퇴진을 요구했다.

교사 30여 명은 지난 16일부터 교장실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학생들의 수업 거부상태로 학사운영이 마비 상태에 빠졌다.

이 학교 운동회(43) 교사는 “지난 해부터 교사들이 인사위원회를 구성, 학교장과 투명한 인사 보장을 합의했으나 이사장이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재단의 인사권 횡포와 일방적인 학사운영에 맞서 재단이 퇴진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비리에 대한 잘잘못을 떠나 학생들을 선동해 수업거부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교사들의 주장이 워낙 완강해 타협의 여지가 별로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 사립위원회 이영일 조직국장은 “학기초만 되면 부당인사와 학교운영위 문제 등으로 사립학교들이 홍역을 치르고 있다”며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통해 재단 전횡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신정여자상업고등학교 설립자로서 문화일보 4월 21일자 사회 1면 『사립 중·고 분규 몸살』 제하의 기사에 대해 중재 신청한다. 피신청인은 위 보도에서 “재단측이 이사장의 비리와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한 부당인사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재단 퇴진을 요구했다. 이 학교 운동회(43) 교사는 ‘지난해부터 교사들이 인사위원회를 구성, 학교장과 투명한 인사 보장을 합의했으나 이사장이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재단의 인사권 횡포와 일방적인 학사 운영에 맞서 재단이 퇴진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비리에 대한 잘잘못을 떠나 학생들을 선동해 수업거부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교사들의 주장이 워낙 완강해 타협의 여지가 별로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즉 사실은 “재단 이사장의 비리와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한 부당 인사”, “투명한 인사 보장을 합의”, “이사장이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 등의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

신청인은 이 보도로 36년간 쌓아온 교육자 생활의 명예를 실추당하는 한편 학교 운영에도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

따라서 문화일보 해당 기사의 반론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문화일보가 지난 4월 21일자 사회 1면에 “사립 중·고 분규 몸살” 제하의 기사에서 “인권학원 소속 신정여자상업고등학교 재단 이사장 비리”, “부당 인사”, “인사보장 합의”

등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재단 설립자 진인권 씨는 이와 관련, “비리, 부당 인사, 인사보장 합의”, “일방적 파기”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본 문 : 본지 4월 21일자 31면 “사립 중·고 분류 몰살” 기사에서 신정여상 교사들이 “재단 이사장의 비리와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한 부당인사 철회, 이미 보장한 인사권에 대한 일방적 파기”를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인권학원 설립자인 진인권 씨는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한 부당인사, 인사권 보장에 대한 일방적 파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문화일보 사회 2면에 5월 9일까지 상자 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 크기는 중재대상 기사의 부제목(학생·교사 재단비리-부당인사 반발...)과 같게 하고, 본문활자 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문화일보 : 『반론보도문』제하의 기사(2001년 5월 8일자 30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피해를 입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1서울중재111
 청구명 : 정정보도청구
 신청인 : 한국무역학회
 피신청인 : 스포츠투데이
 중재부 : 서울제1중재부
 접수일 : 2001. 5. 2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스포츠투데이 : 『부어라 마셔라 사도는 어디에...』
 제하의 기사(2001년 4월 24일자 25면)

내 용 : ‘무역현장의 실체를 체험한다’며 중국으로 향했던 ‘전국 대학생 장보고 무역현장 체험단’ 일행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교수들은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술을 마시는 사례가 잦아 학생 관리에 허점을 노출했다. 이 과정에서 참가 남녀 학생 중 일부는 과다 음주 및 혼숙을 한 것으로 밝혀져 행사 취지가 크게 퇴색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3일에도 자정을 넘긴 시간 베이징 시내 호화 나이트클럽 ‘바나나클럽’에서 일부 교수들이 학생들을 감시·관리하지 않고 술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술자리도 새벽까지 이어졌다. 그 자리에는 여행사 관계자도 포함돼 있었다.

[새벽까지 질펀한 술자리]

때마침 체험단 일원으로 베이징에 체류 중인 친구를 만나러 나이트클럽 인근 호텔로 온 유학생 P모 양(21)은 “D대 무역학과 조교라는 사람이 술에 취해 내게 다가와 ‘교수님이 젊은 여자를 찾는다’며 팔목을 잡고 술집으로

대학생 무역현장 체험단에 참가한 교수들이 호화나이트에서 술판을 벌이는 등 추태를 보였다고 보도해

갈 것을 요구했다. 주변의 남학생들이 말리지 않았다면 무슨 봉변을 당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고 말했다.

[학생커플 신혼부부 방불]

당시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것으로 확인된 L교수는 “조교들에게 수고의 표시로 맥주를 한 잔 사던 중 여조교가 빠져 그를 붙들던 것이 와전된 것 같다”고 말했다. P양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런 짓을 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체험단원 C모 양(21·A대)은 “일부 남녀 학생들은 밤새 술을 마시고 아무렇지도 않게 혼숙을 했다. 특히 이성친구와 함께 온 학생들은 신혼부부나 다름없다”고 털어놓았다.

이와 함께 행사를 진행한 여행사측 L씨는 “주최측에서 여행사측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말을 듣기는 했으나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해 경비 문제로 잡음이 있었다는 의혹을 질게 했다. 이에 대해 L교수는 “학생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안전 여행을 보장하기 위해 여행 경비를 깎고 여행 보험료를 늘려 달라고 요구하기는 했지만 다른 어떤 불미스러운 점은 없었다”고 말했다.

[여행 경비 잡음 시비도]

여행사의 S이사는 “외국까지 가서 교수들이 학생관리는 안하고 매일 밤 술자리를 벌인 것 자체가 잘못이다. 이러한 사실을 한국에 있는 학생 부모들이 알면 얼마나 불안하겠느냐고 교수들에게 충분한 항의 표시를 했다”고 밝혔다.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스포츠투데이 2001년 4월 24일자 표지와 25면 『부어라 마셔라 사도는 어디에』 제목의 기사에 대해 중재신청 한다.

피신청인의 “부어라 마셔라 사도는 어디에”, “교수들 술판 벌이기 급급”, “중국 호화나이트 클럽서 흥청망청, 나라망신”, “일부 학생 밤샘 술에 혼숙도” 등 보도일체가 사실무근이다.

신청인은 이 보도로 무역학회 및 참가교수, 학생 및 초청강사, 특히 해상왕 장보고 기념 사업회의 명예훼손, 정신적 피해는 물론 무역학회 전체 1000여 명의 교수까지 명예가 실추되어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제목 : 대학생 해외 체험단 관련기사 사실과 달라 정정보도

4월 24일자 “부어라 마셔라 사도는 어디에” 제하의 기사에서 ‘교수들 술판 벌이기 급급’, ‘중국 호화 나이트클럽서 흥청망청 나라망신’, ‘교수진 유흥투어 전락’ 등으로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술판, 호화나이트에 간 적은 없으며 단 한 사람의 교수가 대학원생 제자들의 행사 진행상의 수고 격려차원에서 가라오케에서 캔맥주 1개씩을 사 준 사실 밖에 없으며 나머지 교수는 술자리를 가진 적도 없었다. 그리고 교수님이 젊은 여자를 찾은 것이 아니라 위의 대학원생 모임에 여조교가 빠져서 부른 것일 뿐이었다. 본 행사관련 경비시비는 처음부터 행사에서 부담하기로 합의되어 있어 잡음 시비가 있을 수도 없었다.

일부 남녀학생들의 밤샘 술과 혼숙을 했다는 기사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으며, 여행사 이사가 교수들에게 충분한 항의표시를 했다는 부분은 교수님들이 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무슨 항의냐고 하면서 왜 이런 기사가 났는지 여이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무엇보다도, 참가학생들이 행사가 만족스러

운 수준에서 진행되었고 많은 것을 새로이 느낄 수 있었다며 이러한 행사를 주관하여 지도해 준 교수님들의 열정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었다.

따라서, 사실확인 없이 보도한 4월 24일자 기사를 바로잡으며 관계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정신적인 고통을 준 데 대하여 공개적으로 용서를 바라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이 사실을 근거로 한 기사로 건전한 언론의 역할을 다하겠다.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본 문 : 4월 24일자 긴급고발 관련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술판, 호화나이트에 간 적도 없으며 한 사람의 교수가 대학원생 제자들의 행사 진행상의 수고 격려차원에서 가라오케에서 캔맥주 1개씩을 사준 사실 밖에 없으며 나머지 교수는 술자리를 가진 적도 없었다. 그리고 교수님이 젊은 여자를 찾은 것이 아니라 위의 대학원생 모임에 여조교가 빠져서 부른 것일 뿐이었다. 본 행사 관련 경비시비는 처음부터 여행사에서 부담하기로 합의되어 있어 잠음시비가 있을수도 없었다. 일부 남녀학생들이 밤샘 술과 혼숙을 했다는 기사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으며, 여행사 이사가 교수들에게 충분한 항의표시를 했다는 부분은 교수님들이 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무슨 항의냐고 하면서 왜 이런 기사가 났는지 어이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 따라서, 사실확인 없이 보도한 4월 24일자 기사를 바로잡으며 관계자의 명예를 실추시키

고 정신적인 고통을 준 데 대하여 학회, 교수, 행사 참가학생, 장보고기념사업회 및 전국적으로 교직에 계신 교수님께 진심으로 유감을 표명합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스포츠투데이 뉴스면(27면) 2001년 5월 18일까지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 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중간제목(대학생 장보고 체험단...)과 같은 크기로 하고, 본문은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신청인은 본 건 중재대상 기사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스포츠투데이 : 『‘대학생 체험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2001년 5월 18일자 31면)

내 용 : 4월 24일자 본보 25면에 게재된 ‘긴급고발’관련 기사 중 사실 확인결과 일행이 술판을 벌이거나 호화 나이트클럽에 간 적이 없으며, 교수들이 술자리를 가진 적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교수가 여자를 찾은 것은 대학원생 모임에 여조교가 빠진 것을 확인하고 찾은 것이다. 이 행사 관련 경비는 여행사에서 부담한 것이어서 경비 시비가 있을 수 없었고, 일부 남녀 학생들의 밤샘 술과 혼숙 관련 내용, 여행사 간부가 교수들에게 항의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학회, 장보고기념사업회, 참가 교수 및 학생들에게 유감을 표하며 관련 기사를 바로잡는다. □

판결 1

사디즘적 병리현상의 증세가 있다는 의견 표명은
수사적 과장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없다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 2001. 5. 17.자 판결 (2000나18822)

사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부장판사 채영수)는 2001년 5월 17일 이동욱 월간조선 기자가 주식회사 '월간 말'과 소속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가 작성한 기사내용은 전체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디즘적 병리현상'이라는 의견의 표명은 수사적 과장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디즘적 병리현상이 감지된다고 한 표현은 일반의 독자의 관점에서 보아 원고가 의학적 의미에서 가학성 변태 성욕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로써 쓰여진 것이 아니라 원고가 작성한 월간조선 기사는 전체와 결론을 잘라내고 필요한 부분만 인용함으로써 이장희 교수의 글의 논지를 왜곡하여 공산주의 찬양자로 몰아 그를 곤경에 처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1심(서울지법 2000. 3. 22. 98가합14917)에서는 "원고의 사상적 견해를 비판하면서 사디즘적 병리현상의 증세가 있다고 표현한 것은 단순한 비유적 표현방법을 넘어 인신공격에 해당하므로 의견 내지 논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라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는 1997년 2월초부터 5월말까지 방송되었던 통일원의 통일캠페인 광고가 북한이 주장해 온 연방제 통일을 연상케 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는 기사를 작성하여 월간조선 9월호에 게재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 피고 정지환은 '월간 말' 1998년 12월호에 "'진보인사 죽이기' 뿌리는 친일 콤플렉스"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사디즘적 병리현상의 증세가 있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기사를 게재하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문

사 건 : 2000나18822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의인 겸 항소의인 : 이 동 옥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조선일보사 출판국 월간조선부 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승 환

피고, 항소의인 겸 피항소의인 :

1. 주식회사 월간말
대표이사 이 명 순
2. 정 지 환
피고 1, 2의 주소
서울 마포구 염리동 154의 10 4층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형 상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 갑 수

변 론 종 결 : 2001. 3. 29.

제1심 판결 :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0. 3. 22. 선고 98가합14917 판결

주 문 :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 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 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피고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4쪽 “나. 이 사건 제2기사에 대하여” 이하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나. 이 사건 제2기사에 대하여

(1) 구체적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

먼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여야 하고,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그 기사가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인지를 구별하여야 한다.

이 사건 제2기사 중 원고에게 사디즘적 병리현상이 감지된다고 한 부분이 과연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면, 위 부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인지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기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제2기사에서의 사디즘적 병리현상이 감지된다고 한 표현은 일반의 독자의 관점에서 보아 원고가 의학적인 의미

에서 가학적 변태성욕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로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피고 정지환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작성한 월간조선 기사는 전제와 결론을 잘라 내고 필요한 부분만 인용함으로써 이장희 교수의 글의 논지를 왜곡하여 공산주의 찬양자로 몰아 그를 곤경에 처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2)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뿐만 아니라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도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면 그에 의하여 민사상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기사에서의 사디즘적 병리현상이 감지된다고 한 표현은 원고가 작성한 월간조선 기사는 전제와 결론을 잘라내고 필요한 부분만을 인용하여 그 본래의 뜻을 왜곡함으로써 이장희 교수를 공산주의 찬양자로 몰았다는 것이 그 전제 사실이라 할 것이고, 기사가 비판하고자 하는 상대의 글의 의미를 왜곡하여 학자를 공산주의 찬양자로 몰았다면 이는 그 기자의 사회적 평가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고 정지환은 그와 같은 내용의 글을 언론 매체에 게재함으로써 위와 같은 전제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가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였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위법성에 관한 판단

어떤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와 같은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거가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가) 공익성

이 사건 제2기사는 원고가 통일원의 통일 캠페인 광고가 그 동안 북한에서 주장하여 온 연방제 통일을 연상케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하여 월간 조선 1997년 7월호에 “문제제기 통일원의 이상한 통일 캠페인: 통일되면 수도와 나라꽃이 바뀌나?”라는 제목의 글을, 월간 조선 1997년 9월호에 “어? 왜 빠졌지요? 그럼 공산주의가 좋은 나라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각 게재하면서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통일에 관하여 쓴 글에 대해 이장희 교수가 해설을 단 “나는야, 통일 1세대”라는 책의 이적성을 비판하였고, 이를 계기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여 이장희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등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에서 원고가 작성한 위 기사들이 매우 편협한 시각에서 작성된 것이고, 그것도 이장희 교수를 비판하기 위하여 그 글의 의미를 왜곡하여 이적성을 문제삼은 것임을 지적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진실성

이 사건 제2기사에서의 사디즘적 병리현상이 감지된다고 한 표현은 원고가 작성한 월간조선 기사는 전제와 결론을 잘라내고 필요한 부분만을 인용하여 그 본래의 뜻을 왜곡함으로써

이장희 교수를 공산주의 찬양자로 몰았다는 것이 그 전제 사실이고 피고 정지환은 “공산주의는 인간이 착하다는 생각에서 출발 … 공산주의의 소멸은 세계사의 추세”라는 이장희 교수의 글에서 앞부분만 이용해 놓고 “공산주의가 썩 괜찮은 제도처럼 보일 소지가 있다”고 비판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과연 피고 정지환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위와 같은 비판이 원래의 글의 의미를 왜곡한 것인가에 관하여 본다.

“나는야, 통일 1세대”에 나오는 이장희 교수의 위 부분에 해당하는 글은 통일이 되면 민주주의가 될까, 공산주의가 될까라는 의문에 대하여 공산주의는 싫다고 하는 내용과, 중립국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내용의 2편의 초등학생의 글을 읽고 북한과 남한을 사회주의(공산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로 구분하면서 다음과 같은 해석을 달았다.(위 책 22-23면)

“공산주의는 평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본주의는 자유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바꿔 말하면, 공산주의는 능력있는 사람이 열심히 벌어서 능력없는 사람까지 같이 먹여 살리자는 거예요. 다같이 잘 사는 뜻이 좋은 제도인데, 기본적으로 인간은 매우 착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하고 있지요.

자본주의는 누구든지 노력한 만큼 잘 살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회 체제는 지난 역사에서 보면 큰 단점이 드러났어요.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 졌거든요.

그러나 오랫동안 자본주의 나라들과 힘을 겨루던 사회주의 나라들은 지금 거의 무너졌습니다. 몇 년 전부터 소련과 동독을 비롯한 많은 사회주의 나라들이 자본주의로 바뀌었지요. 사회주의 나라에서는 직장과 집을 정부가 다 구해 주니까 사람들이 일을 대충대충 하고

노력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노력하면 그만큼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공산주의 체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의 소멸은 세계사의 추세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는 사회 보장 제도를 통해 골고루 잘 사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북한도 통일 이후에 자본주의 체제로 되는 것은 처음엔 어려움이 좀 있을지 몰라도 역사의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원고는 월간 조선 1997년 9월호에 게재한 “어? 왜 빠졌지요? 그럼 공산주의가 좋은 나라인가요?”라는 제목하의 글에서 위 부분의 글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 후 비판하고 있다.(위 책 95면)

“<공산주의는 평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본주의는 자유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바꿔 말하면, 공산주의는 능력있는 사람이 열심히 벌어서 능력없는 사람까지 같이 먹여 살리자는 거예요. 다같이 잘 사는 뜻이 좋은 제도인데, 기본적으로 인간은 매우 착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하고 있지요>(22쪽)…공산주의가 썩 괜찮은 제도처럼 어린이들에게 보일 소지가 있다.”

원고는 공산주의 사회가 이론적인 측면에서 좋은 제도라고 말한 부분만을 끊어서 인용함으로써 공산주의 체제가 매우 좋은 제도처럼 인식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술한 것이다. 또한 원고의 이러한 문제제기로 발간되었을 때 조선일보가 스스로 신간안내를 통해 좋은 책으로 소개하였고 그 때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판매되던 이장희 교수의 위 책이 그 이적성이 사회문제화되어 검찰에서 수사가 시작되었고 이장희 교수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으나 서울지방법원은 2001. 2. 23. 선고 97고단10828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위책이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 공산주의 체제의 소멸과 남한 자본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역사의 추세라고 규정하여 자본주의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여 이장희 교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정지환이 작성한 위 기사내용은 전체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 정지환의 위 사디즘적 병리현상이라는 의견의 표명은 수사적 과장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표현이 사상검증의 와중에서 나온 수사적 과장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따로 모욕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고도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정지환의 불법행위책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5. 17.

재판장 판사 채 영 수
판사 정 진 경
판사 권 기 훈 □

판결 2

경찰 조사단계에서의 혐의사실을 두고 대마초를 흡연한 것으로 단정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하라

서울지방법원 제25민사부 2001. 4. 25.자 판결(2000가합64132)

사실개요

서울지방법원 제25민사부(부장판사 안영률)는 2001년 4월 25일 가수 조덕배 씨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 사실을 확정 보도한 대한매일을 비롯한 4개 중앙일간지와 문화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 언론사들

에게 총 4천8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언론사들이 ‘가수 조덕배 또 대마초 적발’, ‘조덕배 씨 또 대마초 위반’ 등 원고의 범행을 단정하는 듯한 문구를 사용하여 원고가 단순히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인상을 받기보다는 이번에도 또 대마초를 피웠을 것이라는 인상을 주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

손하였다"고 판시했다. 또한 "일부 피고 소속 기자들이 원고에 대한 소변 검사결과가 양성 반응으로 나오는 등의 수사상황의 일부를 알게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경찰이 원고에 대한 소변검사 결과와 원고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방침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여 발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언론사간의 경쟁에 의하여 정밀감정 결과나 참고인에 대한 충분한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보도된 사실을 엿볼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원고가 대마초를 피웠다는 제보를 받고 원고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원고의 집을 수색하고 소변검사를 실시하여 양성반응으로 나타나자, 원고를 긴급체포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의 조사를 하자 피고들은 원고의 피의사실 관련 보도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개월 전부터 복용하여 오던 한약에 대마성분이 들어 있어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혐의를 부인하였고, 정밀검사결과 혐의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경찰은 원고를 석방하고 검찰은 무혐의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다.

판 결 문

사 건 : 2000가합64132 손해배상(기)
원 고 : 조 덕 배
소송대리인 : 변호사 이 경 현
피 고 : 1. 주식회사 대한매일신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1가 25
대표이사 차 일 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동 환
2.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서울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금 창 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경 수 근, 송 시 섭,
조 성 극, 김 두 식, 최 상 경
3.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6-25
대표이사 최 학 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 정 희
4.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서울 종로구 중학동 14
대표이사 장 재 국, 장 명 수,
문 현 석, 김 영 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한종합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 인 철
5. 주식회사 세계일보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63-1
대표이사 황 선 조, 송 병 준,
최 윤 기
지배인 이 정 재
6.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노 성 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최 정 환, 강 호 성,
조 면 식, 손 석 봉

변론종결 : 2001. 3. 21.

주 문 :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대한매일신보사, 한겨레신문 주식회사는 각 금 1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주식회사 세계일보,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각 금 7,000,00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00. 9. 9.부터 2001. 4.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5%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 갑 제14, 15호증, 을가 제1호증, 을다 제1호증, 을마 제1호증, 을바 제2호증, 을사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16호증의 2, 을사 제4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이 사건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1) 서울 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박상옥, 박유광 등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가 박영 등과 함께 대마초를 피웠다는 제보를 받고, 원고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000. 6. 5. 16:30경 원고의 집을 수색하고, 17:00경 원고를 위 경찰서로 임의동행하여 마약검출시약으로 두차례(19:00 및 19:30경) 소변검사를 실시하였다.

(2) 검사결과 대마초 양성반응으로 나타나자, 경찰은 원고를 위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의 조사를 하였다. 당시 원고는 2개월 전부터 복용하여 오던 한약에 대마성분이 들어있어 양성반응이 나온 것이므로 그 한약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청하면서 위 혐의를 부인하였다.

(3) 원고와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던 박영에 대하여는 두 차례(다음날 02:10 및 02:30경) 소변검사 실시결과 모두 음성반응이 나왔다.

(4) 피고들 신문 및 방송사 기자들은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관련 기사를 작성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대한매일신보사(이하 피고 대한매일신보사라 한다), 주식회사 중앙일보사(이하 피고 중앙일보사라 한다), 한겨레신문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겨레신문사라 한다), 주식회사 한국일보사(이하 피고 한국일보사라 한다), 주식회사 세계일보(이하 피고 세계일보사라 한다)는 같은 달 6.에 위 피고들 발행의 각 신문에 원고의 피의사실 관련 기사를 별지 기사목록 기재와 같이 보도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피고 문화방송사라 한다)은 같은 날 새벽 마감뉴스를 통하여 이 사건 관련 뉴스보도를 하고, 8:00경에도 뉴스를 통하여 위 기사목록의 내용으로 보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보도라 한다).

나. 이 사건 보도 이후의 경과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정밀감정결과 원고의 소변에서 대마성분이 검출되지 않자, 양천경찰서는 원고가 조사 요청한 한의사에 대한 조사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정밀감정결과, 함께 입건된 박영에 대한 소변검사결과 등으로 인하여 그 혐의 사실을 확신할 수 없어, 같은 달 7. 오후에 원고를 석방하였고, 검찰은 같은 해 7. 27. 무혐의 결정으로 그 사건을 종결하였다.

(2) 원고가 석방된 후 피고들의 보도태도를 문제삼자, 피고 문화방송사는 같은 달 8. 인터넷 뉴스에 경찰이 원고의 소변에 대한 정밀감정결과 대마 음성반응이 나와 그를 석방하였다는 기사를 게시하고, 같은 해 7. 4. 18:30 정규 뉴스시간에 별지 반론보도문을 방송하였으며, 피고 중앙일보사, 한국일보사, 세계일보사는 같은 달 7.에, 피고 대한매일신보사는 같은 달 8.에 별지 정정보도문을 각 게재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명예훼손의 판단기준

일반적으로 민사상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신문, 방송과 같은 매체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와 시청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적인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나. 명예훼손의 성립

피고 대한매일신보사, 중앙일보사, 한겨레신문사, 한국일보사, 세계일보사들이 게재한 기사들은 그 제목을 '가수 조덕배 또 대마초 적발'(피고 대한매일신보사), '가수 조덕배 씨 또 대마초'(피고 중앙일보사), '조덕배 씨 또 대마법 위반'(피고 한겨레신문사), '조덕배 또 대마초'(피고 한국일보사), '가수 조덕배 또 대마초'(피고 세계일보사), '가수 조덕배 대마 혐의로 5번째 적발'(피고 문화방송사)로 하여 원고의 범행을 단정하는 듯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다만 피고 문화방송사는 '혐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반론보도문에서는 '조덕배 또 대마초'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마감뉴스에서는 위와 같은 단정적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본문에서 원고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긴급체포 되어 조사받고 있는데, 실형 전력을 포함한 4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고 이번이 다섯 번째라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다만 피고 대한매일신보사는 이

번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우다 적발됐다고 하여 본문에서도 단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

살피건대, 일반 독자 및 시청자들은 먼저 위 기사 제목에 의하여 원고의 범행사실에 대한 강한 인상을 받은 다음 본문은 대충 읽거나 들어 넘어가기 쉽고, 더욱이 본문에 실형 전력을 포함한 동종 전력을 들추고 있어, 원고가 단순히 범죄혐의를 받고 있다는 인상을 받기보다는 이번에도 또 대마초를 피웠을 것이라는 인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피고 한국일보사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위 인상을 강화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보도를 통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익성

일반적으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범죄 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적 규범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가를 알리고, 나아가 범죄의 사회문화적 여건을 밝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는 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믿어지고, 따라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의 보도라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유명 연예인으로서(원고는 이를 다투지 않는다), 원고가 대마초를 흡연하고 있다는 사실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실명을 적시하여 한 위 각 범죄보

.....

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실성

피고들은 보도 당시까지의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한 것으로서, 보도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각 보도가 전체적으로는 원고가 이번에도 대마초를 피웠다는 인상을 주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가 대마초를 피운 것이 사실이라는 입증이 없는 이상 위 각 보도가 진실이라는 입증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한국일보사는 한약을 복용해 대마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원고의 항변 사실을 함께 보도하였으므로 그 보도는 객관적인 사실보도라고 주장하나, 항변사실을 포함하여 그 기사 전체를 살펴보아도 역시 원고가 대마초를 흡연한 것과 같은 전체적인 인상을 주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상당성

1) 피고 한국일보사, 문화방송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양천경찰서 수사 담당 경찰관이 2000. 6. 5. 원고에 대한 소변검사 결과 대마초 양성반응이 나온 사실과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원고의 항변사실을 취재할 수 있도록 해 주었고, 원고와 함께 입건된 박영에 대한 소변검사결과도 양성반응이 나오자 원고측도 더 이상 그 혐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더구나 원고가 동종 전력이 있었던 사실을 취재하여 한 피고들의 보도는 보도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마 제2호증, 을사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 소속 기자들이 유명 연예인인 원고와 그 가족 등에 대한 취재를 통하여 원고에 대한 소변검사결과가 양성반응으로 나오는 등의 수사상황의 일부를 알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경찰이 원고에 대한 소변검사결과와 원고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방침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여 발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16호증의 2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함, 수사기관인 경찰의 공식적인 발표로 보려면 법령에 의한 공보관으로서 임무를 부여 받은 자가 공식적인 내부 의사결정절차를 거쳐 기자회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형식으로 기자 기타 일반인에게 수사의 경과나 내용 등을 알리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또한 원고가 한약을 복용하여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것이라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었고 같은 혐의로 함께 입건된 박영에 대한 소변검사결과도 음성반응이 나오고 있었던 점, 원고의 항변사실은 다음날 한의사에 대한 사실확인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보도 당시는 구속영장도 신청되지 아니한 시점인 점, 원고의 동종 전력이 4차례나 된다는 사실은 일반 독자와 시청자들에게 원고가 또 대마초를 피웠을 것이라는 인상을 줄 것이므로 이를 들추어 보도하려면 더욱 더 객관적인 근거에 대한 취재가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그 보도를 함에 있어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 충분한 취재를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 문화방송사는 언론사는 신속한 보도가 필요한 경우 그 조사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

건대, 범죄보도가 공익성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의 경우는 앞서 본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를 신속하게 보도 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개개 언론사간의 경쟁에 의하여 정밀감정결과나 참고인에 대한 충분한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보도된 사실을 엿볼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위 피고들의 보도는 상당성을 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른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중앙일보사, 한겨레신문사는 양천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관과 전화통화를 통하여 그 보도기사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보도하였으므로 상당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담당 경찰관과의 전화통화만으로는 앞서 본 적절하고 충분한 취재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세계일보사는 서울시 경찰청 보도자료에 의거하고 양천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관에게 확인한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 대한매일신보사는 다른 피고들의 취재 경위 진술을 원용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그 보도에 상당성이 없다).

(라) 정당행위

피고 중앙일보사는 유명 연예인으로서 공인인 원고에 대한 범죄혐의 보도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는 그 보도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이나, 그 보도가 진실이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도를 통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였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가입은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의 나이 및 직업, 위 각 보도로 인하여 원고가 계획하고 있던 공연일정 등의 취소로 인하여 입었을 영업상의 손실과 피고들이 이 사건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보도문의 형식과 내용, 크기, 보도 횟수, 보도 이후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통하여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했는지 여부, 언론기관으로서의 피고들의 지위 및 영향력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피고 대한매일신보사, 한겨레신문사는 각 금 10,000,000원, 피고 중앙일보사, 한국일보사, 세계일보사, 문화방송사는 각 금 7,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송달된 다음날인 2000. 9. 9.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1. 4. 25.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한다.

2001. 4. 25.

재판장 판사 안 영 름
판사 김 경 환
판사 오 석 훈

1. 피고 대한매일신보사 기사내용

제목 : 가수 조덕배 또 대마초 적발

서울양천경찰서는 5일 상습적으로 대마초
를 피운 가수 조덕배 씨(41·경기 고양시 일
산구)를 대마관리법 위반혐의로 긴급체포했
다. 조씨는 지난 1일 부산시 동구 범일동 크
라운호텔 객실에서 동료 3명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꿈에' 등 많은 히트
곡을 발표했던 조씨는 지난해 7월 대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
는 등 지난 91년부터 이번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우다 적발됐다.

2. 피고 중앙일보사 기사내용

제목 : 가수 조덕배 씨 또 대마초

인기가수 조덕배(41)씨가 대마초를 피운 혐
의로 다섯 번째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5일 조씨가 지난 1일 부산 C호
텔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1991, 95, 97년에 이어
지난해 7월 대마초를 피우다 적발됐으며 올해
1월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했다.

3. 피고 한겨레신문사 기사내용

제목 : 조덕배 씨 또 대마법 위반

〈나의 옛날 이야기〉〈꿈에〉 등을 부른 가수

조덕배(41·사진)씨가 대마관리법 위반으로
다섯 번째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양천경찰서
는 5일 “조씨가 지난 1일 부산시 K호텔 객실
에서 친구 등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가
있어 이날 조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
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7월에도 같은 혐의로 구속
돼 실형을 선고받는 등 지금까지 모두 네 차
레에 걸쳐 대마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된 바
있다.

4. 피고 한국일보사 기사내용

제목 : 조덕배 또 대마초

서울양천경찰서는 5일 가수 조덕배(41, 경기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씨에 대해 대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
르면 조씨는 지난1일 공연차 묵었던 부산크라
운호텔 객실에서 박모 씨등 2명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다. 조씨는 그러나 “최근 한약을
복용해 대마양성반응이 나온 것”이라며 혐의
를 부인했다. 조씨는 대마관리법 위반으로 6
개월 복역 후 올해 1월 21일 출소하는 등 같
은 혐의로 5번째 적발됐다.

5. 피고 세계일보사 기사내용

제목 : 가수 조덕배 또 대마초

서울양천경찰서는 5일 가수 조덕배(41)씨를
대마관리법 위반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일 부산시 C호텔 객실
에서 선배 3명과 함께 대마초를 나눠 피운 혐
의를 받고 있다. '꿈에'를 불러 인기를 끌었던
조씨는 지난해 7월 대마관리법 위반혐의로 징
역 6월을 선고받는 등 1991년 이후 4차례 대
마초를 피우다 적발됐다.

6. 피고 문화방송사 방송내용



제목 : 가수 조덕배 대마초혐의로 5번째 적발
 '꿈에'라는 노래로 유명한 가수 조덕배 씨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양천경찰서는 조씨에 대해 지난 1일 부산 범일동 모호텔의 객실에서 남자동료 3명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조덕배 씨는 지난 91년 이후 대마초를 피웠다가 적발되긴 이번이 다섯 번째이고, 번번이 구속됐는데 작년 7월에도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혈액검사를 해보니 양성반응 즉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나왔는데, 이번만큼은 절대 아니라고 조씨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1. 피고 대한매일신보사

제목 : 가수 조덕배 씨 대마초 무혐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지난달 5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던 가수 조덕배 씨(41)가 이틀만에 무혐의로 석방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조씨의 혈액을 보내 정밀 분석한 결과 대마를 피우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음성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2. 피고 중앙일보사

제목 : 바로잡습니다

6월 6일자 23면의 '인기가수 조덕배 씨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긴급체포돼 경찰에서 조사받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경찰이 그 후 조씨를 무혐의로 석방했기에 바로잡습니다. 보도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조씨의 혈액을

정밀분석한 결과 대마초를 피우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음성반응이 나왔습니다.

3. 피고 한국일보사

제목 : 바로잡습니다

가수 조덕배(41)씨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서울양천경찰서에 긴급체포됐다는 보도(본보 6월 6일자)에 대해 대마초를 피운 적이 없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음성반응으로 판정돼 무혐의로 풀려났다고 7일 밝혔습니다.

4. 피고 세계일보사

제목 : 조덕배 씨 '대마초' 무혐의

가수 조덕배(41) 씨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서울 양천경찰서에 긴급체포됐다는 보도(본보 6월 6일자)에 대해 대마초를 피운 적이 없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음성반응으로 판정돼 경찰에서 무혐의로 풀려났다고 6일 밝혀왔습니다.

5. 피고 문화방송사

제목 : 가수 조덕배 씨 대마초기사에 대한 반론보도문

지난 달 6일 문화방송은 '조덕배 또 대마초'라는 제목으로 가수 조덕배 씨가 마치 대마초를 피운 혐의가 충분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확정적인 것처럼 보도를 했습니다. 피의사실에 대한 구체적 증거없이 이를 보도해 조덕배 씨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었습니다. 조덕배 씨는 국과수에 의한 정밀감정결과 대마초 음성반응으로 판정되었습니다. □

미국판결

사회적으로 중요한 관심사인 경우
형사재판 진행 중인 소년범의 사진이라 할지라도
그 취득 경로가 합법적이라면 보도를 제한할 수 없다

South Coast Newspapers Inc. v. Superior Court of San Diego County
(미국 캘리포니아 주 항소법원 2000년 12월 21일 선고)

판시요지

캘리포니아 주 항소법원은, 언론기관들로 하여금 소년범의 얼굴을 흐리게 가리지 아니한 사진의 보도를 금지한 하급심의 명령을 무효화하였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합법적으로 취득한 진실한 정보에 대한 보도는, 최고도의 국가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제한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사건 개요

신청인들(이하 '언론기관들'이라고만 한다.)¹⁾은 특정 지역 내에서 또는 전국적으로

뉴스를 보도하는 언론기관들이다. 2000년 8월 25일, 피신청인인 San Diego 카운티 상급 법원은,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피고인들의 얼굴의 특징이 가려지도록 처리되지 않은 어떠한 사진 또는 동영상 이미지에 대하여, 그 취득 경로를 불문하고 언론기관들이나 어느 누구도 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다. 언론기관들의 무효 신청(petition for a writ of mandate)은 그 금지 명령을 번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언론기관들은 위 금지 명령이 언론 자유에 대한 사전 제한조치로서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1조 및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1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실상의 이해 당사자인 피고인 중 한 명인 Michael은,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1) 신청인들은, North County Times를 발행하는 South Coast Newspapers사, San Diego Union-Tribune을 발행하는 Copley Press사, NBC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KNSD 7/39 텔레비전 방송사, McGraw-Hill 방송사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KGTV Channel 10 텔레비전 방송사이다.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원은 형사 피고인의 사진에 대한 공개를 금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Michael을 포함한 소년 몇명이 이민 노동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San Diego 카운티 법원에 기소되었다. 그 폭행 사건과 그에 대한 형사 처벌은 중요한 대중적 관심사가 되어 왔고, 신문과 방송의 심층 취재 대상이었다. 이름, 나이 그리고 신원 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다른 정보들은 사전에 이미 공개되었다.

2000년 7월 19일, 법정 촬영을 허가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카운티 법원은 복도에 카메라를 배치하지 않을 것, 그리고 법정에서 촬영된 사진 또는 동영상에서 피고인들의 얼굴을 흐리게 가리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 법정에서의 출입과 법정에서의 사진 또는 비디오 테이프 촬영을 허가하였다. 언론기관들은 이 7월 19일자 결정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다.

언론기관들은 졸업 앨범과 법원 건물 밖에서의 촬영 등의 합법적인 방법으로 몇몇 피고인들의 사진을 입수하였고, 이들 사진에서 피고인들의 얼굴을 흐리게 가리지 아니한 채 보도하였다. 2000년 8월 25일, 이 사진 보도에 대하여, 피고인 Michael은 위 7월 19일자 결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였다. Michael은, 피고인들의 동일성 여부가 재판의 쟁점 중 하나이기 때문에 향후 재판에서 사용될 증거의 완전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언론기관들로 하여금 그 취득 경위를 불문하고 피고인들의 얼굴 부분에 대한 사진이나 비디오 테이프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카운티 법원은 이 주장에 동의하였고, 2000년 8월 25일, 그 취득 경로를

불문하고 얼굴을 흐리게 가리지 아니한 피고인들의 이미지를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카운티 법원은 그러한 금지 명령을 수정하거나 재고해 달라는 언론기관들의 요청을 거부하였고, 언론기관들은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하였다.

판결 이유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피고인의 사진에 대하여 공개를 금지하는 명령은, 언론에 대한 전형적인 사전 제한조치이다. 사전 제한조치는 구제수단 중 가장 특별한 것이고, 헌법상 유효성과 관련하여 무거운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언론기관들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자료, 그리고 앞으로 공개가 금지될 자료가 합법적으로 취득된 것이고 또한 진실한 정보라는 점에는 다툼이 없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합법적으로 취득된 진실한 정보에 대한 보도는, 최고도의 국가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제한될 수 없다.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 관하여 합법적으로 취득한 정보의 공개를 금지하려는 유사한 시도들을, 법원은 지속적으로 무효화시켜 왔다. 예를 들자면, Nebraska Press Assn. v. Stuart 사건(427 U.S. 539)에서, 하급심은 공개로 인하여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배심재판을 받을 연방 수정 헌법 제6조상의 형사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에서 합법적으로 취득되었고 또한 일반적으로 입수가 가능하였던 피고인의 자백 또는 이를 강력히 암시하는 다른 정보의 공개를 금지하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비록 극히 예외적인 사안에서 사전 제한조치가 허용될 수 있는 심사 기준을 제시하기

는 하였으나,²⁾ “사전 제한조치를 가로막는 장벽은 높고, 사전 제한조치에 대한 위헌성 추정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다. 그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가 사전 제한조치를 정당화하지 못하였다. 우리는 아직까지 연방법원에서 혹은 주 법원에서 위 Nebraska Press 사건에서 제시된 심사기준을 적용한 결과 사전 제한조치를 허용한 사례를 알지 못한다.

캘리포니아 주 법원 역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 관하여 합법적으로 취득된 정보의 공개를 금지하는 명령들을 계속적으로 무효화시켜 왔다. 예를 들자면, 1991년의 San Bernardino County Dept. of Public Social Services v. Superior Court 사건(232 Cal.App.3d 188)에서, 하급심은 언론사로 하여금 부속 절차(dependency proceeding)의 방청은 허용하면서 미성년자에 대한 사진의 공개 금지를 비롯하여 그 절차에 대한 보도를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언론사가 그 사건의 부속 절차에 참석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언론사에 대하여 방청을 허용하면서 붙인 조건들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고 또한 합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공개할 언론사의 권리를, 소년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제한할 권한이 없음이 분명하다(Oklahoma Publishing Co. v. District Court 430 U.S. 308 : 언론사가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법원은 미성년자의 이름과 사진의 공개를 금지할 수 없다;

Smith v. Daily Mail Publishing Co. 443 U.S. 97 도 참조). 이 사건에서, 하급심은 그 조건들을 통하여 과연 언론사가 그 정보를 어떻게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정보의 공개를 금지하려 하였다. 만약 그 정보가 합법적으로 취득된 것이라면, 언론사로 하여금 그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소년 사건 담당 법원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KGTv Channel 10 v. Superior Court 사건(26 Cal.App.4th 1673)에서, 소년 사건 재판부는 살인죄로 기소된 17세 미성년자에 대한 구금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기일을 열었다. 언론사들은 사전에 그 미성년자의 체포와 관련된 기사를 보도하면서, 그 미성년자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한 바 있었다. 그 재판부는 언론사에 그 기일에의 참석을 허용하였으나 그 재판 기일에 대한 보도를 함에 있어 그녀의 초상에 대한 공개를 금지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사회로 복귀시키는 역할에 관한 주 정부의 법률상 보호 이익이 언론사의 연방 수정헌법 제1조에 기한 권리를 물리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합법적으로 공개적인 출처로부터 취득한 정보의 공개를 금지하는 명령은 헌법에 위배되는 사전 제한조치라고 결론을 내렸다.

Michael은 법원의 금지 명령이 자신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예방적 조치이기 때문

2) Nebraska Press 사건에서 연방 대법원은 그러한 금지 명령이 항상 무효라는 원칙을 선언하는 것은 거절하였다. 그러나, Nebraska Press 사건에서 탁월한 증거들이 법원에 제출되었음에도 대법원이 제시한 사전 제한조치의 요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면, 사실상 Nebraska Press 사건의 판결은 형사 절차의 보도에 대한 사전 제한 조치를 완전히 금지한 것에 가깝다는 것이 논평가들의 의견이었다. (Portman, Defense of Fair Trial From Sheppard to Nebraska Press Association: Benign Neglect to Affirmative Action and Beyond (1976) 29 Stan.L.Rev.393, 409, fn. 72; Prettyman, Nebraska Press Association v. Stuart: Have We Seen the Last of Prior Restraints on the Reporting of Judicial Proceedings? (1975) 20 St. Louis U.L.J. 654.)

에 유효하다고 다룬다.³⁾ 많은 범죄에 있어서 범인과 피고인이 동일한 인물인지의 여부가 재판에서 주요한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얼굴 모습을 담은 사진의 공개를 금지하는 명령은 범인과 피고인이 동일한 인물인지 여부에 대한 법정 증언의 완전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그러나, 인적 동일성에 관한 법정 증언의 완전성을 보존하기 위함이라는 논리로써 사전 제한조치를 받아들인 판례는 명백히 존재하지 않는다.⁴⁾

따라서, 우리는 앞서 본 Nebraska Press Assn. v. Stuart 사건에서 명시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이 된 금지 명령의 유효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비록 Nebraska Press 사건이 형사재판 절차의 보도에 대한 사전 제한조치가 언제나 무효라고 선언한 것은 아니지만, 형사재판 절차에 관한 보도에 대한 사전 제한조치가 허용되려면 법원은 반드시 재판 전 언론 보도내

용의 성격과 정도, 재판 전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받게 될 다른 보호 이익의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으면서도 사전 제한조치에 비하여 부담의 정도가 가벼운 다른 가능한 방법은 없는지, 사전 제한조치가 보도로 인하여 야기되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NBC Subsidiary (KNBC-TV), Inc. v. Superior Court (20 Cal.4th 1178) 사건에서, 법원은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언론 보도에 대하여 내려진 제한조치의 유효성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었는데, 1217면과 1218면에서 사전 제한조치가 허용되기 위하여는, “사실심 법원은 반드시 변론을 열어야 하고, 1) 보도의 제한을 정당화하는 우월한 보호 이익이 존재하며, 2) 보도 제한이 없을 경우 그 보호 이익이 침해받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고, 3) 제시된 보도 제한이 우월한 보호 이익을 위하여 엄밀하게 고안된 것이며, 4)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한의 정도가 더 가벼운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3) 이 사건에서 Michael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사회로 복귀시키는 주 정부의 이익, 또는 재판 전 정보 공개로 인하여 왜곡되지 아니한 배심원을 가질 형사 피고인의 이익이 위 금지 명령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주 정부의 이익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4) Michael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인용한 판례들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예를 들면, Michael은 Cheyenne K. v. Superior Court (208 Cal.App.3d 331) 사건을 인용하였는데, 그 사건에서 사실심은 미성년자가 재판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재판 기일을 비공개로 해달라는 미성년자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항소심은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602조에 따라 개시된 절차에서 미성년자가 특정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는 비공개 재판을 요구할 절대적인 권리가 없고, 그 미성년자가 공개로 진행할 경우에 자신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가능성을 입증하지 않는 한 일반인은 그 재판 절차에 참석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Michael이 인용한 또 다른 사건인 Tribune Newspapers West, Inc. v. Superior Court 사건 (172 Cal.App.3d 443)에서도, 미성년자가 일반인의 방청 및 그로 인한 결과의 공개로 인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가능성을 입증하지 않는 한 일반인은 그 재판 절차에 참석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비록 이들 사건에서 법원이 특정한 절차에 대하여 비공개로 진행하였지만, 범죄행위로 기소된 미성년자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취득한 진실한 정보의 공개에 대한 전면적인 사전 제한 조치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 법원이 KGTV Channel 10 v. Superior Court 사건 (26 Cal.App.4th pp. 1684-1685)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미성년자의 이름과 생김새에 대한 진실한 보도의 전면적인 금지 이외의 방법에 관한 한, 우리가 살인 사건에 있어서 소년범을 담당하는 법원이 언론을 다루는 손을 완전히 묶어두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만약 미성년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가능성’을 입증한다면, 법원은 일반인 및 언론사의 방청 모두를 금지할 정당한 이유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언론사로 하여금 공개된 법정에서의 방청과 그 곳에서 일어난 일의 보도를 금지할 수는 없다.”

분명히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기준에 의거하여 기록을 검토함으로써 위 금지 명령의 위헌 여부를 처음부터 독립적으로 심사하기로 한다.⁵⁾

우리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Michael의 권리가 언론 기관들의 언론 자유에 대립하는 중대하고 우월적인 보호이익이고, 또한 그 금지 명령이 엄밀하게 고안된 것이라는 Michael의 주장에 동의한다.⁶⁾ 그러나 다른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였는지가 의문이다. 첫째로, 연방 수정 헌법 제1조가 적정한 절차(due process)를 보장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 제한조치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사전 제한조치가 없을 경우 그 보호 이익이 침해받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기록상 인정되지 않는다. 기록을 검토해 볼 때, 사전 제한 조치가 없을 경우에, 증인이 범죄 현장에서 목격한 범인의 모습을 기초로 하지 않고 그 대신에 신문에서 본 사진을 기초로 하여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인과 동일인인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는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범인이 누구인지 판별할 수 있는 유일한 목격자인 피해 이민 근로자들 중에서 수사 당시 용의자들 혹은 그들의 사진을 한 줄로 세워 놓고 범인을 식별하는 과정에서 확신이 없음을 내보인 사람이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 인정이 기록상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 피해 이민 노동자들이 사진을 공개하려

는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신문을 읽었다는 증거도 없다. 기록상, 이들 사진을 공개함으로써 인하여 피해 이민 노동자들의 범인 특징이 불확실해진다면, 이들 사진을 공개함으로써 인하여 범인 특징이 달라질 위험이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둘째로, 다른 이익의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한의 정도가 더 가벼운 방법이 존재한다. 범인을 특정하는 내용의 증언을 하기로 예정된 증인의 법정 증언이 신문 속의 사진을 보는 등 연상 작용을 일으키는 재판 이전의 사건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믿는 피고인이 있다면, 그는 사전 증거 배제 신청(limine motion) 또는 재판 중 이의신청을 통하여 그 증언을 증거 조사에서 제외시킬 수 있고, 배심원이 없는 자리에서 과연 범인의 특징을 위한 예정된 법정 증언이 증인의 독립된 회상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연상 작용을 일으키는 재판 이전의 사건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왜곡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지를 판단하도록 재판부에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들은, 미국 연방 수정 헌법 제1조 및 캘리포니아 헌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중요한 보호이익을 침해함이 없이 범인을 특정하는 내용의 증언이 왜곡될 위험을 회피해야 한다는 다른 보호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제한의 정도가 더 가벼운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5) 이 사건에서 원심 법원은 재판 기일을 열었으나, 제시된 네 가지 요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NBC Subsidiary(KNBC-TV), Inc. v. Superior Court 사건(20 Cal.4th 1178)에 의할 때, 이러한 사실 인정이 결여된 경우 금지 명령은 무효화되어야 한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그러한 요건들이 충족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다시 재판을 하도록 사건을 되돌려 보내지는 않는다.

6) 특히 Michael은, 자신의 형사 재판에서 범인을 특정하는 문제가 쟁점의 하나이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얼굴을 보여 주는 사진을 공개할 경우 검찰측 증인들에게 보여질 수 있고, 그 결과 이들 증인에 의한 법정에서의 범인 지목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금지 명령은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엄밀하게 고안된 것이었다. 유사한 상황에서, 범인을 특정하는 증인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가 불필요하게 연상작용을 일으키고 돌이킬 수 없는 오류에 이바지하는 것일 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을 수 있다고 관례상 인정되어 왔다. (People v. Caruso 68 Cal.2d 183, 187-190 참조.)

수 있다.

에서 즉시 최종적인 효력을 갖는다.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

결론

그러므로, 위 2000년 8월 25일자 금지 명령을 무효화시키기로 한다. 이 결정은 이 법원

출처 : *Media Law Reporter* 29권 pp. 1119~1123.

번역 : 장상균 판사 (수원지방법원)

일본 판결

재무부 고위 관료인 원고에게 주식정보 누설과 인사청탁 혐의가 있는 듯 수사기관의 진술조서 가운데 일부의 주장만을 인용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하라

원고 甲野太郎

피고 주식회사 講談社(대표이사 野間 佐和子), 乙山春男 외 2명

도쿄지법 1996(7) 7649호, 사죄광고 등 청구사건

1998. 9. 25 민사37부 판결, 일부 인용, (항소)

주문

한다.

5. 이 판결은 제1항에 한해 가집행할 수 있다.

1. 피고 등은 원고에 대해 각자 100만엔 및 이에 대한 1998년 5월 1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불하라.

사안의 개요

2. 피고 講談社는 원고에 대해 피고가 발행하는 주간지 '프라이데이'지상에 별지(4) 기재의 사죄광고를 별지(5) 기재의 형식으로 1회 게재하라.

본건은 대장성 고위 관료인 원고가 피고 講談社 발행의 사진주간지 '프라이데이'에 게재된 기사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피고 講談社, 당해 주간지의 발행인(乙山春男), 편집인(丙川夏男), 집필기자(丁田秋男)를 상대로 사죄광고의 게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3. 원고의 그 밖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2분하여 부담

이다.

피고 講談社는 '프라이데이' 1996년 5월 8일 호에 富士은행 부정용자사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다음과 같이 명예훼손 부분이라고 지적한. (1)본건 제목, (2)본문 1, (3)본문 2 및 (4)본문 3을 포함한 본건 기사를 게재하여 발행했다.

(1) 본건제목

'인사청탁'과 '주식 정보누설' 直撃!, 甲野太郎 대장성 심의관의 '두 가지 새로운 의혹'

(2) 본문 1

"1990년 9월 상순경 나는 매일같이 드나들던 常陽산업 사무실에서 B사장으로부터 '틀림없이 값이 오를 주식이 있으니 과장도 같이 하지 않을래요?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반반으로 하기로 합시다'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중략) B사장에게 '예, 좋습니다. 부탁드립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B사장은 '1부 상장의 阪和興업의 주식이 오른다는 정보가 있어 과장에게도 권한 거요'라고 말했는데 나는 '전부 B씨에게 맡길테니 알아서 해주시오'라고 가볍게 대답하고 끝냈습니다.

B사장은 정보의 출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으나 나는 B사장의 확신에 찬 태도를 보고 1988년 4월 하순경 常陽산업 사무실에서 우연히 만나 B사장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당시 대장성 간부 甲野太郎 씨의 정보에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A전 과장은 그렇게 확신을 했는가. 조서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 '이 소개를 받은 후 B사장과 함께 나는 甲野씨와 회식을 하기도 하고 몇차례 술을 마시기도 했기 때문에 곧 직감으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요컨대 그러한 정보의 교환이 지금까지도

있어 왔다는 것일까? 그렇다면 이것은 정보누설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그 주식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인용중략) 얼마나 많은 이익이나, 6천만이나 된다. 이 시기에 阪和興업 주식은 투기매매의 움직임이 보이면서 정보대로 급등했다.

물론 A전 과장은 그 정보를 甲野심의관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는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믿었다는 증언은 간단하게 일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조서에 나타난 일련의 행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국가공무원으로서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

(3) 본문2

"그런데 그 이상으로 문제인 것은 부정의 발각을 두려워한 A전 과장의 인사에 대한 청탁의혹이다. (인용중략) 이번에는 은행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현직 대장성 관료의 청탁의혹인 것이다.

1992년 3월 27일자로 도쿄지방검찰청에서 작성된 조서는 이렇게 고발하고 있다. "부정발각을 막기 위해서는 전근을 저지해야 한다(중략), 전근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A가 없으면 赤坂지점의 실적이 달성될 수 없으므로 전근시킬 수 없다'고 지점장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부정자금을 돌린 곳에 유동성의 예금협력을 시키기도 하고(중략), 丸昌의 D사장(징역10년 구형, 항소 중)으로 하여금 지점장에게 A를 전근시키지 않도록 부탁하게 한다든가, 대장성의 甲野 간부로 하여금 은행의 인사담당 상층부에 전근을 시키지 않도록 부탁하게 하기도 했다." A전 과장은 여기에서 분명하게 '청탁의 혜택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현직 대장성 관료가 부정용자의 주범으로부터 부정의 발각을 은폐하기 위한 인사청탁을 부탁받고 이를 실행했다니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것이 사

실이라면 중대한 문제이다. 말할 것도 없이 A진술조서의 신빙성은 사건관계자 등의 공판에 있어서도 증거로 채용되어 인정받고 있다.

당재판소의 판단 (본건 제목 및 각 본문의 명예훼손 여부)

1) 기사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는 일반독자가 판단하는 기준으로 기사에서 취급된 자의 사회적 평가가 그 기사에 의해서 저하되었느냐의 여부로 판단되어야 한다.

2) 본건 제목에 대하여 피고는 '인사청탁', '주식 정보누설'이라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을 한 데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본건 제목에는 "甲野太郎 대장성 심의관의 두 가지 새로운 의혹"이라는 기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읽은 일반독자로서는 원고가 인사청탁과 주식 정보누설이라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본건 제목은 그 한도에 있어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다만 본건 제목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본문과 합쳐하여 평가하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것들을 일괄해서 판단하기로 한다.

3) 본문에 대해서 피고는 富士은행 부정용자사건에서의 A의 검찰 및 경찰에 대한 진술조서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고 비판적 논평을 가한 것이며, 진실이라고 적극적으로 단정한 것도 아니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독자를 기준으로 기사내용을 전체적으로 고찰할 경우 당해 사실이 진실이라는 인상을 주도록 기재되어있으며 그 사실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통상적으로 일반독자는 형사피고인의 수사기관에 대한 진술의 보도와 그 진술내용에 관련한 사실의 보도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사실의 진부를 판단한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우므로 진술조서를 인용했다고 해서 사실의 적시를 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한편 A의 조서 내용에 대한 원고의 반론 바로 뒤에는 "그러나 인사청탁의혹에 대해서는 조서뿐 아니라 A전 과장 스스로가 1992년 9월 7일 자신의 제10회 공판 법정에서 분명히 증언하고 있다. '대장성의 비교적 힘이 있는 사람에게, 전근을 시키지 않도록 은행임원에게 구체적으로 부탁해 달라고 했다.' 이것이 甲野심의관을 지목하고 있음은 앞의 진술조서에서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다."는 기술이 있어 일반독자가 본건 기사를 읽을 경우 피고들로서는, 원고의 반론은 신용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할 것은 분명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위의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할 때 본문은 본건 제목과 더불어 일반독자에 대해, 원고가 阪和興業 주식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고 A의 전근을 저지하기 위해 富士은행 상층부에 대해 작용을 했다는 인상을 준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국가공무원인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다.

4) 위에서와 같은 본건 기사의 내용, 원고의 사회적 지위 등 일체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등은 위의 불법행위에 의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서 원고에 대해 각 100만엔을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또한 본건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훼손된 명예는 위의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되지 않았다고 인정됨으로 피고가 받

행하는 주간지 '프라이데이'에 게재하는 것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 원고는 4개 일간지에도 사죄광고를 게재하도록 요구하나, 본건 기사를 게재한 '프라이데이'의 신문광고가 4개 일간지에 게재되는 등 '프라이데이' 독자 이외의 자에게 기사내용의 일부가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은 간접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일간지

에까지 사죄광고의 게재를 명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으며 사죄광고는 본건 기사가 게재된 '프라이데이'에 게재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

출처 : 『判例타임즈』 1004호
번역 : 한동원 (전 언론연구원장)

독일 판결

상업적 부정경쟁을 유발하는 것이 아닌 한 사회 비판적 주제를 다룬 상업 광고의 게재를 언론사에게 금지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독일기본법 제5조

2000년 12월 12일자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결 - BvR 1762/95; 1 BvR 1787/95

사실관계

언론사인 헌법소원자는 베네통사 광고의 공표를 미풍 양속의 위반(독일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을 이유로 금지한 두 개의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헌법소원자가 발행하는 삽화잡지 '스테른'에 세계 곳곳에서 섬유사업을 하고 있는 베네통사의 광고 3개가 실렸다. 광고 하나는 기름이 묻은 양탄자 위에서 헤엄을 치고 있는 기름으로 뒤범벅이된 오리를 보여 준다. 다른 광고에는 제3세계에서 중노동을 하는 상이한 연령층의 어린이들이 그려져 있다. 세 번째 광고는 사람의 벗은 엉덩이에 "에이즈에 감염된"이라는

단어가 새겨진 사진으로 되어 있다. 사진의 가장 자리는 푸른 틀판에 "베네통의 일치된 컬러"라는 글자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에 언급된 두 개의 광고는 1 BvR 1787/95 헌법소원의 대상이고, 1 BvR 1762/95 헌법소원에는 세 번째 광고가 해당된다.

부정경쟁방지중앙회는 헌법소원자에게 이 광고의 공표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고, 이 요구가 거절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부정경쟁방지중앙회는 지방법원에서 승소했다. 헌법소원자의 항소는 연방대법원에서도 성공하지 못했다. 베네통사는 경고에 대하여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BGHZ 130, 196과 비교)했으나, 헌법소원은 신청하지 않았다.

헌법소원으로써 헌법소원자는 항소법원의 판결이 독일기본법 제5조 1항 1 및 2를 침해하였다고 비난한다.

판시이유

헌법소원은 이유 있다. 헌법소원자가 비판하고 있는 연방대법원의 두 개의 판결은 독일기본법 제5조 1항 2에서 수여하고 있는 헌법소원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

1. 언론의 자유의 보호 범위는 광고를 포함하여 신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BVerfGE 21, 271/278 f.: 64, 108/114 = AfP 1983, 385과 비교하시오). 독일기본법 제5조 1항 1의 보호를 받는 제3자의 의견발표가 신문에 공표되는 한, 언론의 자유에는 이와 같은 보호가 포함된다. 의견 발표자에게 신문사 스스로 발표자의 진술과 그 전파를 허용한 경우에, 신문사에게 타인이 진술한 의견의 공표를 금지해서는 안된다. 이와 같은 범위에서 신문사는 법원과의 논쟁에서 제3자의 의견발표의 자유가 침해되었음을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이는 부정 경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금지청구권에 관한 민사법상의 분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독일기본법 제5조 1항 1이 보장하는 보호는 상업적인 의견의 발표 및 가치 평가적, 여론형성적인 내용을 가진 순수한 경제 광고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를 확대한다(BVerfGE 71, 162, 175과 비교하시오). 가치평가 또는 일정한 견해가 담긴 그림으로 표현된 것도 독일기본법 제5조 1항 1의 보호 범위 내에 있다(BVerfGE 30, 336, 352; 71, 162, 175과 비교하시오).

다툼이 있는 세 개의 광고 사진 모두 이와

같은 전제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이 사진은 일반적인 폐해(환경 오염, 어린이 노동, 에이즈 감염)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사회적 및 정치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한 가치평가를 담고 있다. 이는 여론을 형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림들이다. 비판받고 있는 판결들도, 광고들이 전 세계의 비극에 대해 신랄히 비판하고 있다는 점은 받아들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것을 목표로 하고 그리하여 시민들의 주의를 일반적인 비판으로 유도하는 의견의 발표는 특별히 독일기본법 제5조 1항 1의 보호를 향유한다(BVerfGE 28, 191/202과 비교하시오).

베네통 회사가 위에서 언급한 주제를 순수한 이미지 광고의 범위 내에서 다루었고 어떤 주석도 거부했으며 회사 로고를 통해서만 인식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으로 인해 달라지는 것은 없다. 따라서 이 광고는 여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인구에 회자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줄 수는 있다. 표현 내용에 대한 표현 행위자의 주관이 문제로 제기되는 이와 같은 의미는, 물론 밝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상세하게 표현될 수도 없다. 통상적으로 인식할 때에 광고에서 전달되는 메시지는 베네통 회사의 독자적인 것으로 철저하게 그 회사에 귀속되고, 법원들도 이 점을 의심하지는 않는다. 또한 이 광고를 만든 사진 작가 올리비어로 토스카니의 견해에 의하면, 베네통은 이 광고들을 반인종적 코스모폴리탄적, 타부가 없는 사상을 전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한다(Oliviero Toscani, Die Werbung ist ein laechelndes Aas, 3. Auf. 2000, S. 44).

2. 다툼이 있는 베네통 회사의 광고가 주간지 "스테른"에서 새로이 인쇄되는 것을 금지한 비판받고 있는 판결들은, 헌법소원자의 언

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왜냐하면 공표금지 위반한 경우에 500,000DM의 징계금 또는 6개월 간의 징계구금이라는 위협적인 금지이기 때문에, 잡지사는 실제로 이 광고를 새로이 내 보내는 것을 저지 당하는 상황에 있다.

3. 이와 같은 금지는 헌법상 정당치 않다.

1) 연방대법원이 공표 금지를 근거로 한 독일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는 독일기본법 제5조 2항의 의미에 있는 일반법률이다(BVerfGE 62, 230 (245) = AfP 1983, 267; BVerfGE 85, 248, 263 = AfP 1991, 128과 비교하시오). 이 법률은 경쟁자, 소비자와 그 밖의 시장 참여자 및 일반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Baumbach/Hefermehl, Wettbewerbsrecht 21. Aufl, 1999, UWG Einl. 5. Aufl, 1998, S. 13). 학문 활동의 자유는, 개인이 허용되지 않는 실행 방법으로 경쟁에서 이익을 추구하도록 할 수 없도록 한다. 이와 같은 목표는 기본법의 가치 질서와 일치한다(BVerfGE 32 S. 311 (316)과 비교하시오).

2) 헌법소원자가, 독일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가 앞에서 언급한 종류의 사례에 대해 충분치 못하다거나 또는 해석이 가능치 않다고 비판하는 점에는 동조할 수 없다.

경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적 거래에서 미풍 양속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를 포함하고 있는 독일부정경쟁방지법 제1조는, 입법자가 사업적 경쟁에서 간과할 수 없는 가능한 행위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허용되지 않는 경쟁 행위에 대해 헌법상 우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윤곽을 정해 놓고 있는 일반조항에 관한 것이다(BVerfGE 32, 311 (317)과 비교하시오). 더 상세한 규정은 정리해야 할 사안의 특성에 따라 또한 규범 목적을 고려할 때 가능하지 않

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전제조건 하에서 확실치 않은 법개념 및 일반조항은 원래 우려할 만한 것이 아니다. 또한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 이에 포섭시킬 수 있다는 것은 그 기능과 본질에 있어서 설득력이 있다. 이와 같은 점을 도외시한다면, 규범 목적이 파악하고자 한 사안의 다양성에 불확실한 법률개념 및 일반조항은 적합치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독일 기본법 제20조 2항 및 3항을 통하여 확립된 한계(BVerfGE 96, 375, 394 f.와 비교하시오)를 연방대법원은 독일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를 확대 해석함을 전제로 유지하였다.

3) 광고가 공표되는 것을 헌법소원자에게 금지한 것에 대해 소송 1 BvR 1787/95에서 그가 제기한 우려는 대응할 만한 것이 못된다. 왜냐하면 그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우려를 주장했고 광고를 앞으로도 내 보낼 것을 분명히 하였기 때문이다. 헌법소원자는, 의심스런 사례임에도 원고 내지 하급심의 법적 견해로 인한 비난을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바로 그 점에서 언론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생각한다.

신문사의 소송 중의 행위에서 “제1차 시도 위험”을 도출해 냈다 하여 이것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는 않는다. 독일민법 제1004조에서 발전시킨 이러한 이론이 적용될 때에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사례에서 신문사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중대하게 위반되는 경우에만 광고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검토 의무를 이와 같이 한정함으로써 판례는 광고 공표의 경우에 신문에 특유한 조건 및 그리하여 언론의 자유의 기본권에 대해서도 적절히 배려하고 있다. 광고 사업의 범위에서 신문사는 제출된 광고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의 타당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모든 개별사항에 있어서 어렵게

내릴 수 있다. 물론 이에 대하여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면, 부당하지만 신문사에게 말할 것도 없이 책임 있는 검토가 요구될 수 있다. 이곳에서 요구되는 설명으로써 신문사는 맨처음의 좀 더 적은 주의의무에 대한 원용을, 광고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법적 관점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따로 분리해 다룰 수는 없다. 신문사가 광고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우려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제한 없이 확실한 한 경우에, 연방대법원이 금지청구권의 근거로 제1차 시도 위협을 수용하였다는 것은 분명하고 그리고 이를 가지고 헌법상 비난할 수는 없다.

4) 헌법소원자는, 연방대법원이 광고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상 평가를 할 때에 의견발표의 자유의 의미와 범위에 대해 오해하였다는 것을 성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1) 한 민사판결이 의견발표의 자유와 충돌하고 있다면, 독일기본법 제5조 1항 1은 법원이 사법(私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 이 기본권의 의미를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BVerfGE 7, 198 (206 ff.); 86, 122 (128 f.); 그 이외의 여러 가지 판례와 비교하시오). 비판받고 있는 판결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와 민법의 규정을 근거로 들고 있다. 개별적 사례에서 이들 법률의 해석 및 적용은 법원이 할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의미, 특히 그 보호 영역의 범위에 있어 부정확한 견해에 근거하여 구체적 법률사례에서의 기본권의 실질적 의미에서도 어느 정도 중대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만 하자라고 말할 수 있다(BVerfGE 18, 85 992 f. 그 이외의 여러 가지 판례와 비교하시오). 지금의 사례가 바로 그 것이다.

(2) 연방대법원은, 광고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및 문화적 문제를 대상으로 하고 그리하여 독일기본법 제5조 1항 1의 보호를 특별

히 향유하는 의견의 발표에 관한 것임을 잘 인식하였다. 그러나 비판받고 있는 판결들은 독일부정경쟁방지법 제1조를 해석하고 그리고 세 번째 광고의 경우(에이즈 감염)에서 이 규범을 적용할 때에 독일기본법 제5조 1항 1의 기본권의 의미 및 범위에 있어서는 타당치 않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질서에서 자유로운 의견발표의 헌법상의 권리에 대한 제한(BVerfGE 20, 56 (97); 그 이외의 여러 가지 판례와 비교하시오)은 원칙적으로 매우 중대한 공동체 복지이익 또는 제3자의 보호할 만한 권리 및 이익으로 인하여 정당화될 것이 요구된다. 이는 특히 사회적 또는 정치적 문제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이 진술된 경우에도 해당된다. 이에 관하여 비판받고 있는 판결들은 언급이 없다. 그것 외에도 이에 관하여 분명한 것이 없다.

가. 연방대법원의 견해에 따르면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는, 하나의 광고 행위란 인간 및 동물의 심각한 고통을 묘사함으로써 연민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이러한 감정이 객관적 이유 없이 경쟁 목적에 이용되고, 그러면서 광고자가 동시에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으로 표현되고 소비자는 이로써 광고자의 이름 및 사업 활동과 연계되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부정한다.

연방대법원이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를 해석할 때에 언급한 미풍 양속에 반한다는 이러한 판결은 미풍 양속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허용할만하고 국민들 대다수가 수용하여도 될 것이다. 이 근거에는 사람은 사회에서 삶을 영위하고, 사회에서는 고통에 대하여 무감각한 이윤 추구로써가 아니라 정서 및 원조 조처에 입각하여, 특히 고통과 관련시킴으로써 반응을 일으킨다는 바람이 숨어 있다. 따라서 동시

에 중요한 공적 또는 사적 이익이 충분히 보호받고 있는지 여부는 두 말할 필요 없이 명확하지 않다.

나. 소송에서 원고가 생각한 것처럼 독자들이 언급할 만한 부담을 광고로부터 받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연방대법원 스스로는 수용하지 않는다. 좋은 취향을 침해한다거나 광고를 충격적으로 만드는 것이 독일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의 의미에서 미풍 양속에 반하는 것이라고 연방대법원은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이 헌법적으로 비판될 수는 없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정당화할 수 있는 부담을 주는 효과는, 독자들이 언론 매체의 편집부 외에서도 그림들을 통해 불쾌하거나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현실과 맞부딪쳐야 한다는 데에서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독일이 통일되고 산업상의 권리 보호 및 지적재산권에서 모범을 따른 반복 효과로 인해 그와 같은 종류의 광고가 일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세상의 비극으로부터 부담을 받지 않았던 시민의 편안함은 그 보호에 대하여 국가가 기본권의 위치를 제한해도 되는 그런 중요한 것이 아니다.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공포심을 조장하는 또는 청소년을 위협에 빠뜨리는 그림들을 보여줄 경우에 이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

당해 광고들이 암시력으로써 소비자의 감정에 호소하고, 그 감정은 광고하는 기업의 제품 또는 영업 활동과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의 원고가 그 광고들이 부담스러운 것으로 분류하는 한, 이에 동조할 수 없다. 작금의 광고의 대부분은 노력에 의한 것으로 특징지워지는데, 감정을 강조하는 동기으로써 주의를 불러모을 수 있고 그리하여 연민을 획득할 수 있다. 암시력으로써 성적 욕구를 유발하고, 자유 및 비구속을 향한 갈망을 선언하거나 사회

유명 인사의 반짝거림을 의미하는 그림으로 장식된 상업적 광고는 오늘날 일반적이다. 소송에서 원고가 말했듯이, 소비자는 이와 같은 동기에 대해 강력해진다는 것은 맞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적응 효과는 물론 이제까지는 더 적게 요구됐던 연민을 향한 감정으로의 호소에 부담이 되는 효과들을 첨가시키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다. 경쟁자의 이익 또는 경쟁의 원칙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연방대법원은 이를 분명히 밝혔고 있다. 이것에 관하여 명확한 것은 없다. 생산품과 무관한 이미지 경쟁은, 경쟁이 그 이미지 경쟁 하에서 분명히 침해를 받지 않는 것으로 일반화되었다. 비교할 만한 어떤 광고가 거대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쟁자는 베네통 회사처럼 그 광고를 사용할 수 있다.

라. '어린이 노동'에 대한 광고에서는 초상자의 보호에 관한 것이 쟁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권리 해당성은 분명치 않다. 그러므로 연방대법원도 이것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사진에 나온 어린이들은 개별적으로 식별되지 않는다. 그 어린이들은 동정심을 유발시키나 결코 모멸적이거나 부정적인 관점에서의 그 밖의 어떤 것으로도 그려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광고 문맥은 인간의 존엄을 위한 청구권을 침해하기에 충분치 않다.

마. 공동체 복지이익은 해당되지 않는다. 독일기본법 제20조 a로 인해 국가 목표의 순위에서 부상한 환경 보호는 이러한 주제에 해당되는 광고(기름 범벅이 된 오리) 때문에 명백히 침해되지 않는다. 비인간적 상황을 신랄하게 비판(어린이 노동, 에이즈 감염에 대한 낙인)하는 상업적 광고가, 폭력 및 무감각 성향을 촉진하고 고통스러운 이웃과 함께 하는 삶의 문화를 수용치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다툼이 있는 이 광고와 관련시켜 확정할 수 없다.

(3) 총괄하여 말하자면 심각한 고통에 대한 연민을 광고 목적으로 유발시키거나 이용해서는 않된다는 연방대법원이 선량한 상인 관습의 구성요소로서 표시한 원칙은 독일기본법 제5조 1항 1에 비추어 보건대 정당화될 수 없다. 공동체 복지이익 또는 사인의 보호할 만한 이해와는 앞서 보았던 바와 같이 충돌되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에서 의견발표의 자유는 중대하다고 할 정도로 침해되었다. 광고들은 사회적 및 정치적으로 중요한 주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고 또한 이 주제들에 대해 공적 시선을 모으게 하는 데 적합한 것이다. 독일기본법 제5조가 바로 그러한 표현에 대해 정해 놓고 있는 특별한 보호는, 연방대법원이 생각한 것처럼, 광고들이 보여 준 비극에 대한 논쟁이 의미 있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인해 감소되지 않는다. 해악에 대한 비판도 자유로운 정신상의 토론에 있어서 중요한 기여로 작용할 수 있다. 어떤 진술이 계속되는지 여부 또는 그것이 어떤 해결을 위한 제안을 담고 있는지 여부는 독일기본법 제5조 1항 1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기본권 보호에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것은, 어떤 진술이 이성적이거나 감정적인 것인지의 여부, 근거가 있는 것인지 또는 없는 것인지의 여부 및 타인에게 유용한 것인지 또는 피해가 되는 것인지의 여부,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지 또는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하다(BVerfGE 30, 336 (347); 93, 266 (289) m.w.N과 비교하십시오).

광고의 신랄한, 사회 비판적인 작용은 광고 문맥으로 인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광고에서 사회 문제를 주제화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은

아니고 베네통 회사의 기업 목표와 관련하여 실제에 있어서는 낯설게 작용할 수는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편견이 없는 고찰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메시지가 전하는 진지함에는 문제가 없다. 이와 같은 것들이 달리 보여졌다면, 그 진지함은 관찰자에게 연민을 불러일으킬 수 없었을 것이다.

(4) 이 모든 것에 따라 연방대법원은 대법원 판결에 기초가 된 독일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를 의견발표의 자유에 비추어 검토를 하지 않은 채 해석하였다. 따라서 이미 이와 같이 해석되었던 위의 규정은 헌법소원자가 가지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기초로서 고려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위의 규정의 의미로서 독일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의 해석에 기초하고 있는 1 BvR 1787/95의 판결(기름으로 뒤범벅이 된 오리, 어린이 노동)은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사안은 연방대법원에서 거절될 수 있다.

(5) 1 BvR 1762/95 사안에서의 비판받고 있는 판결은 이미 상술된 독일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만을 근거로 삼지 않는다. 연방대법원은 이 소송의 기초가 된 광고(에이즈 감염)를 오히려 경쟁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광고가 중대하게 인간의 존엄성 유지라는 원칙을 위반하며 에이즈 감염자를 “낙인찍고” 있는 것으로서 인간 사회에서 특이한 것으로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가. 이와 같은 근거에 대하여는 동의할 수 있다. 초상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사진 광고는 관습에 반하는 것으로 독일부정경쟁방지법 제1조를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의심할 여지없이 타당하다. 그 해석은 사회적 및 정치적 비판이라는 특별히 민감한 영역에서도 의견발표의 자유의 제한을 정당화하는 법익을 고려한다. 독일기본법 제1조 1항은 무시, 낙인

찍기, 추방, 멸시 등과 같은 인간의 존엄성을 공격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인간을 보호할 의무를 국가에 지운다(BVerfGE 1, 97 (104)과 비교하시오).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개인이나 집단의 사람들을 두드러지게 하고, 무시하게끔 하고, 조소의 대상으로 만들거나 그 밖의 가치를 떨어지게 하는 광고는, 그 광고가 독일기본법 제5조의 의사소통의 기본권의 보호 또는 다른 기본권 보호를 향유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될 수 있다.

나. 에이즈 감염 관련 광고에 이러한 원칙들이 적용될 때에는 물론 독일기본법 제5조 1항의 척도에 따른 검사가 확고히 행해지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독일기본법 제5조 1항 1에 의하여 보호를 받아 온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그 규정이 헌법상의 요구 조건이 존중되도록 수여해야만 했던 범위 내에서만 연방 헌법재판소가 사후 검사하도록 되어 있다. 다툼이 있는 표현의 의미를 결정적으로 정한다거나 기본법상의 요구 조건을 준수하면서 행해진 의미를 연방대법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연방대법원의 임무는 아니다. 그러나 기본법상의 조건에는, 의미의 원문을 포함시켜 표현을 해석하고 의미가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의미를 원래의 의미에 첨가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 표현에 있어서는 법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상이한 해석의 가능성에 대해 토론해야만 하고 발견한 해결책에 대하여는 납득할 수 있는 이유들을 기술하여야만 한다(BVerfGE 94, 1 (10 f.과 비교하시오).

연방대법원은 “에이즈 감염” 광고가 에이즈 감염자를 사회로부터 “낙인찍는” 것으로서 그리하여 인간 사회에서 특이하게 묘사했다고

해석한다. 광고는 고통받고 있는 에이즈 감염자에게 오명을 씌우고 그를 사회적으로 격리시키고 있음을 뜻한다고 한다. 사회의 일정한 구성원을 “낙인찍는” 것은 싹트고 있는 인간성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적어도 에이즈 감염자가 스스로 그 광고가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만 한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고찰자도 이러한 효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광고가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 그 광고는 “에이즈 감염”으로 낙인 찍은 것으로 보이는 한 인간을 자세한 설명 없이 보여 주고 있다. 그리하여 에이즈 감염자를 사회적으로 차별하고 부각시켜 분노를 발생시키고는 있으나, 현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 결과를 심화, 강화시켰고 단지 해악이 없는 것으로도 확립시켰다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는 않는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책임이 있다고 말해지는 경향에서 비판을 할 만한 상황 -에이즈 감염자를 두드러지게 하는 것-이 언급되어야 한다는 해석은 쉽게 이해될 수 있다. 헌법소원자가 타당하게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사진을 가지고 에이즈관련 회의를 위해서도 광고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으로 된 표현물은 사실 인기가 있고 사회적 동의에 근거한 의미로 볼 때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 광고물에서는 벗은 엉덩이의 반쪽의 윗부분 이상은 볼 수가 없고, 그곳에 검은 글씨로 ‘에이즈’의 약자가 쓰여 있고 그 아래에는 옆으로 비껴서서 “감염”이라는 글자도 장점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단지 이 점으로부터 멸시도 긍정적인 경향도 읽을 수 없게 한다. 선전 광고의 매체에 따라 묘사는 고찰자의 주의를 포착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비판적인 시각을 불러일으키는 의미를 가진

광고에 대한 해석은 광고 문맥을 통해서도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 섬유 업계의 한 기업이 사회 정책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미지 광고를 한다는 것은 특이한 일이고 경쟁자들이 하는 업계의 통상적인 자기 묘사와는 눈에 띄는 대조를 보였다. 이는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보면 그 진실성에 대해 의심을 품을 수 있고 연방대법원이 규정한 진실성의 명령에 위반한 것으로 느껴진다. 해당 광고가 에이즈 감염자를 구별하고자 한다는 인상을 광고 문맥을 통해서 찾아 낼 수 없다. 광고의 비판적 경향, 흔들어 깨우는 효과는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그 광고를 가지고 구체적인 생산품에 대해 선전을 했을 경우에는 이는 아마도 다를 것이다. 정해진 사용 목적물 및 직무 수행과 연결되었을 시에는 웃음을 자아내게 하거나 무해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베네통의 일치된 컬러”라는 글자는 그러한 효과를 만들지 못한다. 이 광고가 에이즈 감염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연방대법원의 광고에 대한 해석은 매우 어렵게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물론 그 해석만이 유일하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 광고에 대한 사진 작가 올리비로 토스카니의 진술도 이를 보여 준다. “이 플래카드로써 베네통은 반인종주의와 동일하게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구별에 대항한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였다”(전계서, 78면).

(6) 그리하여 1 BvR 1762/95 헌법소원으로써 비판받고 있는 에이즈 관련 광고에 대한 금지 판결은 의견 발표의 자유의 보호를 위해 의견에 대한 표현을 해석하는 데에 있어 내세울 수 있는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해당 광고가 에이즈 감염자의 차별 및 구별에 대한 비판적 의도를 가지고 주의를 끌고자 하였다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잘못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해석할 때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의 침해라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안을 새로이 다룰 때에는 연방대법원은 보여진 해석의 대안을 따라야 할 것이다.

4. 비판받고 있는 판결들이 이미 독일기본법 제5조 1항 2의 첫 번째를 침해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선언되었기 때문에, 헌법소원자가 비판한 일반 평등원칙의 위반 및 독일기본법 제5조 3항의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는 논할 필요가 없다. □

출 처 : *APF* (Zeitschrift fuer Medien- und Kommunikationsrecht), 32. Jahrgang, Heft 1-2001, SS. 44-48

번 역 : 손 원 선 (법학박사)

영국사례 1

사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는 해변에서 휴가를 보내는
모습의 사진이 신청인들을 비난하는 모습을
담지 않는 한 그 공표는 정당하다

불만내용

Anna Ford 양과 David Scott 씨는 2000년 8월 31일자 Daily Mail지와 2000년 9월 15일에 발행된 OK! Magazine지에 게재된 자신들의 커플사진이 보도실천강령 제3조(프라이버시) 조항을 어겨 신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라며 불만을 신청했다.

불만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은 신청인들이 마조르카에서 휴가를 보내는 동안 촬영된 것이며, 수영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신청인들은 호텔은 사적으로 예약한 것이며, 사진을 촬영한 호텔 앞의 해변 역시 사적 공간으로 간주된

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문제의 사진을 촬영한 공간은 프라이버시의 보장을 기대할 수 있는 정당한 공간이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OK! Magazine지는 호텔이 해변에 인접해 있다할지라도 해변 그 자체는 사적 소유지가 아니며, 호텔 투숙객만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고 항변한다. 아울러 해변은 공공의 장소이며 호텔 투숙객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고 답변한 호텔 관계자의 성명을 제시하고 있다. 호텔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졌거나 수많은 아파트에서 바라볼 수 있는 해변가 역시 사적 공간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덧붙여 Daily Mail지는 문제의 사진은

성수기의 휴가철에 촬영한 것이며 수많은 신문기사 자료로써 제시되었다고 밝혔다.

평결

PCC는 문제의 사진을 촬영한 방법과 보도실천강령 제3조의 사생활 및 가정 생활의 존중을 해치고 있는지에 대해 주목했다. 보도실천강령 제3조 2항은 “망원렌즈를 사용하여 동의 없이 사적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의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망원렌즈 사용 여부와 피촬영자의 동의 여부 두 가지 모두 PCC의 판단에 있어 중요성을 가진다. 첫 번째의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 PCC의 쟁점은 신청인들이 사생활의 보호를 기대해도 될만한 장소에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신청인들이 머물렀던 호텔이 호텔 밖의 공간까지 직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해변가가 사적인 공간이라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되지 못하였다. 대

중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마조르 카해변은 정당한 사생활의 보장이 기대되는 공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보도실천강령 제3조를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

사진의 공표에 관하여 본다. 신청인들이 있었던 장소는 사생활이 정당하게 보장되는 공간이 아니었다는 점에 대해 이미 판단했으므로 수영복을 입은 신청인들의 사진 공표가 사생활의 존중을 해치는 부분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았다. PCC는 신청인들이 원치 않았던 공표가 행해진 점에 대해서는 동정을 표한다. 그러나 공공 장소에서의 유명인의 이와 같은 무해한 사진은 정기적으로 촬영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문제의 사진은 부정관계나 신청인들을 조소받게끔 하는 것이 아니며 사적인 생활의 존중을 해치는 것이라 고려하기 어렵다. □

에게 접근하여 결국, 가족들은 기자를 집안 응접실로 들어오게 할 수밖에 없었다. 신청인들은 자신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지 않았으며, 아직 슬픔에 빠져있고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싶다고 강조하였다. 인용된 가족의 진술이 언론에 이야기할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확실하게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기사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진 사실이 기사 내용에서 드러나고 있었다.

신문사는 기자가 가족에게 사망자에 대한 언급을 듣기 위해 가족들에게 접근했고, 처음에는 가족들이 기자를 집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기자는 가족에게 인종적 차별이 이들의 죽음과 연관되었는지에 대해 물어보았으나, 가족은 답변하기를 거절했고 그래서 잠시 후에 기자는 떠났다고 항변했다.

평 결

PCC는 유가족들에 대해 동정적이고 차별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의도로 만들어진 보도실천강령 제5조(슬픔과 충격에 대한 침해)에 대해 강조했다.

이번 사건에서 가족에 대한 기자의 집요한 접근은 적절한 배려 없이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이었음은 분명하다. PCC는

영국사례 2

유가족에 대한 집요한 추적과 접근은 보도실천강령 위배에 해당

불만내용

신청인은 New Nations지 2월 28일자에 게재된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을 다룬 기사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신청인은 아들의 죽음을 맞이한 가족의 슬픔에 대해 아무런 동정이나 차별 없이 신문기자가 가족에 접근하여 보도실천강령 제5조(슬픔과 충격에의 침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신청인의 불만신청은 받아들여졌다.

문제의 기사는 두 시간 간격

으로 고층빌딩 주변에서 발견된 두 젊은이의 사망에 대한 신문사의 자체조사 결과를 게재한 내용이었다. 그들의 죽음이 약물남용이나 동성매매춘과 연관된 자살이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역 주민들이 언급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신청인은 신문기자가 사건이 발생한 후 약 20일 동안 집요하게 가족들에게 접근했지만, 신청인의 가족은 처음부터 언론의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자는 끈질기게 가족들

특히 기자가 신청인들에게 접근했을 때의 반응을 묘사한 기사를 주목하고 이 기사 내용이 부적절하여 분명히 보도실천강령 제5조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기사내용의 부정확함과 프라이버시 침해를 주장한 신청인의 불만은 수용되지 않았다. 신청인은 신문기사가 부정확하고, 독자들을 오도하고 있으며, 주장은 실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사망한 젊은이들은 자살하지 않았으며,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사망한 젊은이에 대한 부정확한 비난은 주로 지역 사람들의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이들은 기사에서 실명보도되지 않았다. 신청인들은 문제의 신문기사가 가족들에게 잊지 못할 상처를 주었음이 증명되었다고 주장했다.

신문사는 지역 주민들의 이러한 언급들이 매우 중요했으며 또한 특히 사건 초기 두 젊은이들의 사망이 인종주의자들의 공격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조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았다고 답했다. 기사로 인한 신청인의 분노에 대해서는 사과하지만, 기사의 보도는 정당하다고 생각된다.

기자는 수많은 지역 사람들을 인터뷰했으며, 그들 중 몇명은 사망자들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이들의 주장이 신문기사의 근본이 되었다. 신청인은 그 후 PCC에 자살이라는 검시결과를 알려왔다.

PCC는 신문기사의 내용이 분명히 유가족들에게는 고통이겠지만, 그 주장들은 신문기사가 인터뷰한 사람들의 의견과 진술에 의해 제시되어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보도실천강령 제1조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다소 괴리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PCC는 이 사건이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사건으로 사건에 대한 상세한 보도와 관련된 사람들의 실명보도가 보도실천강령 제3조(프라이버시 침해)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신청을 수용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7월 22일자 Cottesloe 지방의회의 개발위원회 공청회에 관한 보도가 불공정한 것이라고 불만을 신청했다. 공청회는 Cottesloe의 John Street에 신청인의 건물 신축 계획을 추천하는데 동의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건물 신축을 위해서 오래된 건물들은 철거해야만 했다. 계획서는 문제의 기사가 보도된 다음 주에 개최예정인 전체 회의에 제출될 예정이었다.

공청회는 신청인과 그 건물 건축설계사가 제출한 계획서에 대해 발언하고, 이에 반대하는 몇명의 사람들과의 토론이 이루어지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개발위원회 공청회에 대한 문제의 신문기사에는 철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견해만 보도됐다. 신청인의 발언은 차치하더라도 자신의 제안을 지지하는 세 통의 편지를 공청회에서 읽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다. 왜냐하면 철거에 반대하는 캠페인의 주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John Street에 사는 Brett Christian 씨가 문제의 보도를 한 신문의 편집자였기 때문이다. 그는 어느 정도 해당 기사의 편집에 관여한 사람이었다. 이 사건은 신문사 편집인이 개발반대운동에 참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욱 커졌다.

호주시례 1

이해가 상충되는 사안에 대해 어느 일방의 주장만을 비중 있게 다룬 것은 잘못

호주신문평의회는 두 번의 심사 끝에 Perth의 주간 신문인

Mosman Park-Cottesloe Post지에 대한 Peter Jeanes 씨의 불만

해당 신문사는 문제의 보도 전에는 양측의 주장을 보다 광범위하게 다루었다. 그러나 그 문제의 파장이 커지고, 제안된 개발계획서에 대한 공식적인 취

중 결정이 조만간에 있을 예정이라면 신문은 공청회 관련 보도에 있어 공정함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

아니라며 화를 냈다. 또한 신청인은 이 편지가 자신과는 다른 사람처럼 묘사되었으며, 부정확하며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불만을 신청했다. 신청인은 상금을 거절했으며, New Idea사에 시정을 요구했다.

New Idea사는 신청인과 신문평의회에 다소 특이한 방식으로 대응했다. 잡지사는 신청인이 자신에 대한 내용이 기사스타일로 묘사된 것 때문에 감정을 상했다는 점에 당황을 금치 못했으며, Big Issue사에 대한 칭찬을 담고 있고 기사내용에서 주요한 오류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신청인이 언급했음에도 이에 대해 불만을 신청한 것에 대해 항변했다.

신문평의회는 기자는 매우 이성적이고 적절한 태도를 취했고, 실제적으로 신청인과 그의 딸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인터뷰 중 논란이 된 부분을 삭제하였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신청인의 동의 없이 독자편지로 조작한 부분에 관하여 New Idea지가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삶의 실제적인 모습을 얻는다.”고 답한 부분에 있어, 신문평의회는 신청인에 대한 잡지사의 태도가 수용될 수 있는 저널리즘의 기준에 상당히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

호주사례 2

인터뷰한 내용을 독자편지 형식으로 변경하여 게재한 것은 잘못

호주신문평의회는 Margaret Maddock 씨가 New Idea 잡지사를 상대로 한 불만신청을 받아들였다. 신청인은 Big Issue 잡지사 직원의 추천으로 New Idea 기자와 인터뷰를 했다.

미혼모인 신청인은 Big Issue 잡지를 거리에서 판매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신청인은 자신의 일과 관련한 기사가 판매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반갑게 받아들여 New Idea지와 인터뷰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New Idea지는 인터뷰를 기사화하지 않았다. 그 대신 “대화방”이라는 이름의 난이 배치된 지면에 Maddock양으로부

터의 편지라는 형식으로 게재하였다. New Idea지는 신청인에게 이 편지로 인해 500달러의 상금을 받게 되었다고 통지하였다. 그 편지는 500달러의 성금을 지급하는 “인생을 바꾼 경험”이라는 것을 주제로 독자들이 보낸 편지로서 게재된다고 통지하였다.

신청인은 잡지사가 자신을 기만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신청인이 상금을 타기 위해 독자편지를 썼다고 대중들에게 보여지게 되기 때문이다.

신청인은 잡지사의 이 같은 거짓 설명에 분개했으며, “편지”라는 형식이 자신을 인터뷰한 형식의 게재보다 긍정적인 것이

일본의 신문기자 행동규범

일본신문협회는 지난 2000년 6월 개정된 새로운 “신문윤리강령”의 효율적인 실천을 위해 윤리강령을 구체화한 ‘신문기자 행동규범’을 마련하였다. 비록 각 신문사가 자체 규범을 제정할 시 참조하도록 한 내용이지만 세계 각국 언론사의 윤리강령을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세부적인 실천 방안까지 소개하고 있어 이를 소개한다.……………편집자 주

일본신문협회 가맹사들은 지난 2000년 6월에 개정된 새 신문윤리강령의 효율적인 실천을 위해 올해 들어 ‘신문기자 행동규범’을 마련하여 이를 행동으로 옮길 것을 확인했다. 신문협회 이사회로부터 이 규범의 제정을 위임받은 윤리강령검토소위원회는 中馬清福 소위원장의 사안(私案)을 협회기관지인 <新聞研究>에 게재하며 규범안은 가맹사를 구속하지 않고 각사가 규범을 작성할 때 참고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讀賣신문사가 처음으로 “讀賣新聞 기자행동규범”을 제정, 5월 10일자 지면과 웹사이트로 일반에 공개했다. 협회가 제정한 행동규범은 다음과 같이 ①전문, ②8개항의 주문, ③각 조항별 해설로 구성되어 있다.

<신문기자 행동 규범>

신문협회 가맹사는 신문윤리강령을 한층 더

효율화하기 위해 “신문기자행동규범”을 제정, 신문기자가 준수해야 할 직업윤리를 새로이 재확인한다.

진실의 추구를 임무로 하는 신문기자의 행동은 공정하고 성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립성을 손상하는, 혹은 손상할 우려가 있는 행위, 스스로의 존엄성을 폄하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신문의 생명인 신뢰성을 확실하게 잃게 할 것이다. 그러한 사태를 맞지않도록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

1) 기자는 정당한 수단으로 정보를 입수한다. 자신의 신원을 속이거나, 취재 의도를 불투명하게 제시하거나,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여 압력을 가하는 상황에서의 취재는 정당하다고 말할 수 없다.

<해설> 기자의 활동은, 취재해야 할 사항의 확정, 취재원에의 접근, 당사자로부터의 취재, 주위로부터의

입증취재, 자료의 점검, 보충취재 등을 거쳐 집필을 하게 된다. 따라서 기자행동규범안의 제1항은 기자활동의 첫 걸음인 취재를 거론, 부정한 취재의 금지를 명확히 했다. 정당하지 않은 수단에 의한 정보입수란 어떤 것인가? 오스트리아의 '언론명예강령'은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부정한 방법이란 예를 들면 속이는 것, 압력의 행사, 협박, 정신적압박이 가해지는 상황의 폭력적 이용, 도청기의 사용 등이다".

흥미로운 것은 뉴욕타임즈의 "우리들의 존엄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한 구절이다. "본사 기자는 취재할 때 자신의 신원을 적극적으로는 속이지는 않는다. 때로는 자신의 신원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상대방이 추리하도록 맡겨두어도 좋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속일 경우에는 (중략) 부서의 장과 편집장이 협의한 후에만 이용될 수 있다"

2) 기자는 정확하고 공정한 기사와 사진을 쓴다. 입증할 수 없는 정보는 신중을 기해 취급하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편향 기사를 써서는 안 된다.

〈해설〉 날조를 '자동적인 해고를 포함한 처벌'로 명기하고 있는 곳은 뉴욕타임즈인데 이것은 어디든지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성에 대해서 워싱턴포스트의 〈기준과 윤리〉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어떤 중요한 사실이나 의미가 내포된 사실을 누락시킨 기사는 절대로 공정하지 않다. 공정성은 완전성을 포함하는 것이다"

미국 가넷사의 신문부문 〈윤리행동원칙〉은 "정확성 그 자체가 윤리적 문제이다", "가정이나 전제가 되는 사고를 의심하라", "중요기사에 대해서는 사내의 시의(猜疑)적 인물을 관여시키는 것을 생각하라"고 적고 있다. 스웨덴의 〈보도윤리강령〉은 "뉴스원에 대해 우선 비판적으로 대응할 것, 사정이 허용하는 한 그것이 이미 보도된 사실이라도 가급적 신중하게 정보를 검토, 확인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에 대해서는 전미(全美)신문사진기자협회

(NPPA)의 〈윤리규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사진보도가 언제든 진정, 성실하고 객관적일 수 있게 노력하는 일은 모든 포토저널리스트의 개인적 책무이다", "저널리스트로서의 신뢰성이 사진기자의 최대의 자산이라고 믿는다"

이와 같이 여러 나라의 규범의 특색은, 단순히 "정확·공정"을 부르짖는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정확하고 공정한 지면을 만들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예시해 놓고 있다는 데 있다.

3) 기자는 인권을 배려한 기사를 쓴다. 출신이나 소속에 따라 차별하는 표현은 피해야만 한다. 또 유죄판결 전까지의 피의자는 법률상 무죄라는 사실에 유의하라.

〈해설〉 인권을 배려하는 관련 규정은 유럽제국쪽이 일반적으로 엄격하다. 프랑스의 〈저널리스트의 직업상의 의무에 관한 헌장〉에는 "스스로의 역할을 경찰의 그것과 혼동하지 않는다"고 정면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탈리아의 〈기자의 의무헌장〉은 "기자는 언젠가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기자는 언제나 무죄추정의 권리를 존중한다"고 직설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영국 PCC의 〈보도실천강령〉의 프라이버시 항목은 보다 구체적이다.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동의 없는 침입 및 조사는, 사적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을 동의 없이 망원렌즈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것까지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 공표가 정당화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이 존재할 경우뿐이다"

여기서 사적인 장소란 뜰이나 부속의 건물을 포함한 사적인 주거를 말하며 인접한 공원이나 광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호텔의 침실(호텔의 다른 장소는 포함되지 않는다) 및 병원이나 요양시설 가운데 환자가 치료를 받거나 혹은 휴식을 취하는 장소로 정의한다.

4) 기자는 정보원의 비밀을 지킨다. 정보제공

자와 비닉(秘匿)을 약속한 이상은 그것을 관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만큼 안이하게 자신만의 판단으로 비닉을 해서는 안 된다.

〈해설〉 정보의 출처를 밝히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고 정보를 입수한 경우 그 약속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비록 그로 인해 기자가 체포되어 유죄의 판결을 받더라도) 존중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용감하고 양심적인 정보제공자를 뺀히 보면서 구하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독일언론평의회(〈언론기본강령〉)은 “언론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미디어의 신용과 신빙성, 직무상의 비밀을 옹호하고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정보제공자의 명확한 합의가 없는 한 그들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명쾌하게 선언하고 있다.

정보원 비닉의 약속은 쌍방에게 그만큼 중요하다. 따라서 비닉의 합의는 기자가 아닌 신문사와 정보원 간에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원공개에 소리도 높다. AP통신사 편집국장회의(APME)의 〈윤리강령〉은 “뉴스정보원은 명확한 이유가 없는 한 공개되지 않으면 안 된다. 뉴스정보원의 비닉을 지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지방지 오랜드센티넬지는 “의명 정보원의 사용은 신문의 신뢰성을 손상시키므로 기피해야만 한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이른바 “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의 취급도 같다. 일본신문협회의 편집위원회는 1996년 2월 오프 더 레코드는 취재원의 비닉, 기자의 증언거부권과 같은 차원의 것이라고 하는 〈오프 더 레코드 문제에 관한 견해〉를 밝히면서 그 약속에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으며 안이한 오프 더 레코드 취재는 삼가야 한다고 언명했다.

5) 기자는 저작권을 지킨다. 도작(盜作)은 부끄러이 여겨야 할 최저의 행위이다. 발언이든,

자료이든, 다른데서 인용하는 경우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하며, 아전인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해설〉 저작권에 관한 일본 기자들의 관심은 낮으며 지식도 얕다. 표절에 대해서도 “용납될 수 없다”는 인식은 강하나 이것을 저작권법 위반의 각도에서 추궁하는 자세는 희박하다. 표절은 금지되며 해고의 사유가 된다.

엄격하게 대응하는 이상 표절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오랜드센티넬 신문은 “복사·복제(duplication)”라는 표현을 쓴다. “①다른 사람의 기사의, ②확실한 개인적인 사고를 포함한 문장의, ③독특한 형태의 표현의, ④스쿠프 정보의, 각각의 ‘duplication’, 즉 베껴쓰기나 모작이 표절에 해당한다”고 되어있다.

뉴욕타임즈의 입장은 아주 상세하다. “〈요약적 인용〉은 본지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킨다”, “그 이상의 생각이 필요하다면 인용부(引用符)를 달고 발언원(發言元)을 표시하는 새로운 기술(記述)을 넣어 새로 인용을 시작하라”

6) 기자는 보도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한다. 직무상 입수한 정보를, 그것이 공개되기 전에는 개인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하물며 그것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는 일은 용서될 수 없다.

〈해설〉 이 항부터는 “이해의 충돌(Conflict of Interest)”의 문제에 해당한다. 기자행동규범에는 반드시 시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등장한다. “기자로서의 직업적 이익”과 “개인으로서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딜레마를 묻는 것이다.

LA타임즈는 “어떤 기업에 투자하거나 해당 주식을 갖고 있는 언론인은 그 기업과 관련 된 뉴스 판단을 하지 말라”고 했고 오랜드센티넬지는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나 산업에 대해서는 기사를 작성하지 말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보도·논평하고 있는 기업이나 산업에 투자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기자는 독립과 존엄을 중시한다. 관민(官民)을 불문하고 보도에 영향을 줄려고 하는 세력과의 사이에는 긴장감이 필요하며 독립과 존엄에 의문을 갖게끔 할만한 행동을 취해서는 안된다.

〈해설〉 미국신문편집인협회(ASNE)의 〈원칙성명〉 제 3조 독립의 항에 있는 ‘integrity’는 존엄 외에 고결(高潔), 엄직(廉直)으로 해석해도 좋으나 “압력에 굴하지 않는 견고한 도의심”이라는 뜻이 보다 적절하다. 어느 것이든 기자로서의 존엄성, 엄직성을 존중하고, 압력에 굴하지 말고 도의심을 관철하라는 뜻이다.

워싱턴포스트의 〈기준과 윤리〉에는 “많은 외부활동이나 일은 독립한 신문의 본래의 일과는 양립하지 않는다”, “정부와의 관련성은 가장 반대해야 할 일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시카고트리뷴의 〈편집윤리강령〉도 “언론인은 정부기관에 봉사해서는 안 되며 당파적인 정치조직에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미국의 신문은 정부와의 연관성에 대해 매우 엄격하며, 일본의 신문도 전통적으로 경계적이다. 그러나 정부의 심의회에 신문사 간부나 유명기자가 참여해도 되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말을 짓지 못하고 있다. 참여를 전적으로 거부하는 신문사가 있는가 하면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신문사도 있다.

다만 규범에 적극적인 관여를 주장할 경우 신문과 기자의 ‘독립과 존엄’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기자는 청렴과 결백을 으뜸으로 한다. 정보원으로부터 어떠한 편의나 선물도 받아서는 안 된다. 허락 없이 자신이 속한 조직 이외의 것을 위해 일을 한다든지, 보수를 받는다는

해서는 안 된다.

〈해설〉 청렴과 결백에 관한 미국이나 유럽의 기술은 구체적이다. AP통신사 편집국장회의(APME)의 〈윤리강령〉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①신문은 뉴스정보원 혹은 언론계 외부의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품도 받아서는 안 된다. ②선물, 무료 혹은 할인요금의 여행, 모임, 제품, 및 숙박 등의 접대를 받아서는 안 된다. ③취재에 소요되는 경비는 신문사가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④취재에 대한 특별한 혜택이나 대우를 받는 일은 피해야 한다.”

이탈리아의 〈기자의 의무헌장〉은 직업윤리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묻고 있다. “기자는 자신의 일에 영향을 준다든지, 신뢰성이나 직업상의 존엄을 손상케 하는 특정의 이익(금전, 비용의 환불, 기부, 접대여행, 무료여행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기자는 직업의 자립성에 반하는 조직의 일을 청부 받아서는 안되며 이를 등을 광고를 위해 빌려주어서는 안된다”

정부기관으로부터의 이익제공에 특히 민감한 뉴욕타임즈의 〈사내규약〉은 “취재선으로부터 사례, 경비, 교통비, 선물, 접대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해 놓고 이와는 별도로 “정부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사례, 경비, 교통의 편의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보다 구체적인 주의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때로는 곤란한 경우에 직면할 때도 있다. 콘서트, 정치자금집회, 자선행행 등에는 무료로 들어가도 괜찮다는 것인가? 무료우대권은 받아도 괜찮은가? 이에 대해 시카고트리뷴은 “관련 기자는 개인적인 즐거움 때문에 행사의 무료권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뉴욕타임즈는 “예능, 스포츠행사에서의 무료입장은 취재의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新聞研究』, 2001년 5월호)

□

언론과 법

언론소송과 판결

한겨레, 조선일보 등 상대로 50억 손해소 제기

한겨레는 지난 5일 <언론권력 시리즈> 연재기사에 대해 조선일보가 악의적 왜곡보도를 했다며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한겨레는 “정부서 일부 언론에 특정 신문 공격자료 제공” 등의 제하 기사를 비롯한 일련의 조선일보 보도가 한겨레의 공신력을 훼손시키기 위한 악의적

왜곡보도라고 규정하고 조선일보사 방우영 회장·방상훈 사장·안병훈 편집인·강천석 전 편집국장과 취재기자 4명, 만평가 신경무 씨, 그리고 “처집간 사랑싸움” 발언 당사자인 한나라당 심규철 의원 등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한겨레는 또 “한겨레신문은 노동신문

서울지국이란 평” 제하의 <월간조선> 4월호 기사와 관련해 조갑제 발행인, 조남준 편집위원과 권영해 전 안기부장, 박일룡 전 안기부 제1차장 등을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다.

미디어오늘, 2001. 6. 7. (2면)

백지연 씨, 명예훼손 항소심서 승소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채영수 부장판사)는 31일 방송인 백지연 씨가 스포츠투데이와 소속 기자 최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으로 “피고들은 연대해서 백지연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이 공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내용을 보도

할 경우 취재기자의 진화에 응대한 것만으로 원고가 보도를 승낙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언론이 PC통신이나 인터넷에 게재된 명예훼손 책임이 있는 진술과 소문을 전파할 경우 원진술자와는 별도로 배상책임이 성립될 수 있으며 원진술자의 신원을 밝혔다”고 해서 책임을 면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99년 7월 스포츠투데이측이 ‘백지연 모함, 이혼배경 관련 사이버 테러’라는 기사에서 자신의 이혼 배경에 대해 PC통신에서 떠도는 소문과 관련된 인터뷰 기사를 게재,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연합뉴스, 2001. 5. 31.

“의협신문 기사, 장기기증본부 비방” 손해배상 판결

서울지법 민사25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5월 24일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탈법적인 무료 혈액투석 센터를 운영 중인 듯한 기사를 게재했다며 의협신문 발행기관인 대한의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의협신문에 ‘탈법적인 무료혈액투석센터가 급속히 번지고 있는 가운데 놀랍게도 원고도 이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이들 무료혈액투석센터는 심지어 술집에서 고객행위를 하듯 환자를 유치한다’ 등 기사를 게재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장기기증운동본부는 지난해 의협신문에서 본부측이 펼친 무료 혈액투석 사업이 탈·불법적인 듯한 인상을 주는 기사를 게재했다며 의협측에 반론보도를 요청하여 반론보도문이 게재되었으나 소송을 냈다.

'월간조선' 기자, 회장집 교수 관편 기사를 비판한 '월간 말지' 상대로 한 소송 패소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부장판사 채영수)는 2001년 5월 17일 이동욱 월간조선 기자가 주식회사 '월간 말'과 소속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가 작성한 기사내용은 전체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디즘적 병리현상'이라는 의견의 표명은 수사적 과장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디즘적 병리현상이 감지된다고 한 표현은 일반의 독자의 관점에서 보아 원고가 의학적인 의미에서 가학성 변태 성욕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로써 쓰여진 것이 아니라 원고가 작성한 월간조선 기사는 전제와 결론을 잘라내고 필요한 부분만 인용함으로써 이장희 교수의 글의 논지를 왜곡하여 공산주의 찬양자로 몰아 그를 근경에 처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1심(서울지법 2000. 3. 22. 98가합14917)에서는 "원고의 사상적 견해를 비판하면서 사디즘적 병리현상의 증세가 있다고 표현한 것은 단순한 비유적 표현방법을 넘어 인신공격에 해당하므로 의견 내지 논평의 범위를 이탈한 것

이다"라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는 1997년 2월초부터 5월말까지 방송되었던 통일원의 통일캠페인 광고가 북한이 주장해 온 연방제 통일을 연상케 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는 기사를 작성하여 월간조선 9월호에 게재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 피고 정지환은 '월간 말' 1998년 12월호에 "진보인사 죽이기" 뿌리는 친일 콤플렉스"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사디즘적 병리현상의 증세가 있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기사를 게재하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용근 전 금융감독원장, 동아일보 상대 3억 손해소 제기

이용근 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지난해 진승현 씨의 불법대출사건은 본인과 무관한데도 미국 체류와 귀국이 늦어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씨와의 관련 의혹을 보도,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동아일보사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8월 퇴임 뒤 미국 컬럼비아대학에서 초빙연구원으로 있을 때 진승현게이트 수사와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아 충분한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일보사는 의혹·추측보도로 일

관했다"면서 "부풀려진 보도로 한순간에 부도덕한 공직자로 매도당한 만큼 동아일보사는 정당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매일, 2001. 5. 15

역사적 사실과 이에 대한 평가보도, 명예훼손 책임 없어

역사적 사건에 대해 나름대로 진실 확인 작업을 거치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언론 보도라면 명예훼손 정보보도 및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4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이들 인수 씨가 지난 48년 제주 4·3 사건을 보도한 제민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

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3사건 당시 정부의 계엄령 등이 불법적인 조치인지 여부는 단정하기 어려우나 역사적 사건을 합리적인 자료에 근거해 나름대로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사 내용은 역사적 사실과 이에 대한 평가를 보도하기 위한 것일 뿐 이승만 전 대통령이나 원고를 직

접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기사로 인해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등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제민일보가 4·3사건을 다루면서 이 전 대통령이 법적 근거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에 의한 대량 양민 학살이 자행됐다는 등 허위 보도를 했으며 지난 99년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2001. 5. 4.

광림교회 관건 일부 반론 보도해사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 1부(재판장 손윤하 부장판사)는 5월 4일 PD수첩의 보도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며 광림교회측이 MBC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청구 소송에서 MBC는 평신도연합 관련부분에 대해 반론보도문을 방송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담임목사 세습과 재정 의혹 부분에 대한 교회측의 반론보도청구에 대해서는 방영 당시 프로그램 내에서 충분한 반론보도가 이뤄졌기 때

문에 반론보도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D수첩은 광림교회를 매도한 평신도연합이라는 단체가 평신도 전체를 대표하는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단체명을 자막으로 내보냄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이 단체가 평신도 대표단체라고 믿게 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로 인해 교회측이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MBC는 반론보

도문을 방송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림교회측은 MBC 시사프로그램인 PD수첩이 지난 해 12월 19일 '2000년 한국의 대형교회'를 통해 방송한 담임목사 세습과 재정의혹 관련 부분 그리고 평신도연합소속 신도의 발언 등의 보도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 2월초 법원에 반론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2001. 5. 4.

명예훼손 글 방치 인터넷사업자 손해배상 판결

자신이 운영중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등장한 명예훼손성 글을 삭제하지 않은 인터넷 사업자가 이 글로 인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한 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에 이은 법원의 이번 판결은 손해배상 책임을 크게 확대한 것이어서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인정과 명예훼손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소4부(재판장 민일영 부장판사)는 30일 함모 씨(29)가 자신을 비방하는 글이 게시판에 올려졌는데도 이를 방치했다며 정보통신망 사업자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뒤집고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게시판에 게재된 글은 '다른 이용자나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한 글'에 해당한다"며 "피고는 원고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 요구에 따라 이 글의 게재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무려 5~6개월 가량 삭제 등의 조치 없이 방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했음이 명백하므로 전자게시판 관리의무 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자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타인

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판에 올려진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함씨는 H사의 전자게시판에서 모 연예인을 혐담한 A씨를 상대로 지난 99년 1월 "더이상 이런 글을 올리면 고소하겠다"는 글을 게시한데 대해 A씨가 '자기 영웅적 심리에 도취, 병적 열광 상태' 등 글을 올려 H사측에 삭제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자 A씨와 회사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해 함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A씨는 200만원의 위자료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된 바 있다.

연합뉴스, 2001. 4. 30.

민선견, '언론피해구제법' 환영 성명 발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사장 성유보)은 지난 5월 9일 성명을 내어 민주당 내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결정을 언론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하는

'언론피해구제법'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현 언론중재위원회가 많은 한계가 있어 일반 시민 누구나 접근이 용이하고, 현실성을 갖춘 제도적 보완

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히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언론피해구제법"은 거대 언론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가수 조덕배 씨 대마초 보도, 6개 언론사 손해배상 판결

서울지방법원 제25민사부(부장판사 안영률)는 2001년 4월 25일 가수 조덕배 씨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 사실을 확정보도한 대한매일을 비롯한 5개 중앙일간지와 문화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언론사들에게 총 4천8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언론사들이 ‘가수 조덕배 또 대마초 적발’, ‘조덕배 씨

또 대마법 위반’ 등 원고의 범행을 단정하는 듯한 문구를 사용하여 원고가 단순히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인상을 받기보다는 이번에도 또 대마초를 피웠을 것이라는 인상을 주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시했다.

경찰이 원고가 대마초를 피웠다는 제보를 받고 원고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원고의 집을 수색하고 소변검사를 실시하여 양성반응

으로 나타나자, 피고들은 원고를 긴급 체포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의 조사를 하자 원고의 피의사실 관련 보도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개월 전부터 복용하여 오던 한약에 대마성분이 들어 있어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혐의를 부인하였고, 정밀검사결과 혐의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경찰은 원고를 석방하고 검찰은 무혐의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다.

MBC, 박관용 의원·월간조선 상대 소송

MBC가 한나라당 박관용 의원이 월간조선 4월호에 게재한 김종배 신임 MBC 사장에게 보내는 공개편지와 관련 “MBC와 김종배 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관용 의원과 월간조선, 조갑제 편집장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MBC는 “법적인 대응에 앞서 박의원 앞으로 김사장 명의의 서한을 보내 사실을 왜곡한 부분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으나 박의원이 지난 4일 보내온 답변에서 사과 없이 논쟁만 확대 재생산해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MBC는 또 “박의원의 답변을 통해 월간조선이 호남출신 인사 통계 등 원고 일부를 자의적으로 수정한 사실

이 드러났다”며 “이와 관련 월간조선 측에 정정보도를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5월호에 게재하기로 했던 반론문을 취소하고 월간조선측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MBC는 박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언발위 구성은 한나라당 박종용 의원이 발의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연개연의 ‘언발위 구성’ 주장을 김 대통령이 받아들여 연두기자회견에서 ‘언론개혁’으로 화답했을 때부터 대통령의 마음이 정해졌다”며 사장 선임이 대통령의 마음인 것처럼 왜곡한 점 ▷타당한 근거도 없이 MBC가 정부의 직접 통제하에 있다고 주장한 점 ▷MBC

의 경우 임원 9명 가운데 6명이 비호남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호남출신 3명을 포함한 임원 5명만 표로 그려 5대 공영 언론사 간부의 66.7%가 특정지역 출신이라고 주장한 점 등 사실을 왜곡한 부분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박의원은 이 가운데 호남 출신 인사와 관련 “원고를 넘긴 후 MBC에 임원 인사가 있었다”며 “월간조선이 신임 인사로 바꿔 표를 만들었다”고 해명했을 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월간조선은 “임원 변경이 있어서 바꿔 넣었을 뿐”이라며 정정보도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협회보 2001. 4. 14. (2면)

동아일보, 독자인권위원회 설치

동아일보는 지난 4월 20일 자사 보도로 인해 피해를 본 독자의 구제신청내용을 심의, 손상된 권리를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독자인권위원회(POC·Press Oversight Committee)를 설치했다.

위원장을 맡은 이용훈 전 대법관을 비롯 변호사, 언론학 교수 등 5인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기사가 게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독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독자서비스센터가 먼저 해당 독자와 관련 취재부서간의 접촉을

주선하여 해소방안을 모색하고 이것이 좁혀지지 않으면 위원회 공식안건으로 상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관계 부서에 통보하고 독자에게도 알려주게 된다.

자산관리공사, 파이낸셜뉴스 상대로 10억 손해소 제기

자산관리공사가 파이낸셜뉴스의 비판 기사와 관련, 언론중재위 제소와 함께 형사고발과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동시에 제기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파이낸셜뉴스는 지난 3월 15일자 1면과 2면을 통해 <자산관리공 수억대 수뢰 적발>에서 “부실채권 처리 전담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일부 전·현직 임직원들이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천만~수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며 “14일 사정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사정당국의 공사 내사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밝혀져 곧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또 3면의 <자산관리공 집중해부 상·극심한 부실경

영>에서 “특히 공사는 공기업으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 팔기 힘든 부실채권을 금융기관으로 사들이는가 하면 국내기업을 해외에 할당으로 매각하는 등 방만한 공기업 경영의 표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보도가 나가자 자산관리공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곧바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고 남부지청에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을, 서울지법에 10억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자산관리공사 박현숙 대변인은 “뇌물수수와 검찰조사 부분 등 제대로 확인도 되지 않은 부분을 보도해 명예가 실추됐다”며 “법정에서 모든 진실을 가려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사는 파이낸셜뉴스 관계자가 지난 2월 자산관리공

사 사장과 대변인 등을 만나 공매공고 수주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사가 나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자산관리공사 박대변인은 “수차례 광고담당 이사 및 직원이 찾아와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공매공고운영 기준에 따라 최근 창간된 신문에 공고를 내줄 수 없는 사정을 설명하며 임의로 신문공고를 결정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파이낸셜뉴스 박성태 부동산부장은 “이달 초부터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공격자금 운영에 포커스를 맞춰 기획 취재한 것”이라며 “분명히 사실에 근거해서 보도한 것일 뿐 광고와의 관련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미디어오늘, 2001. 3. 22. (2면)

만민교회, MBC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패소

지난 22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만민교회와 이재록 목사가 99년 10월 방송된 'MBC뉴스데스크' 반론보도와 관련해 MBC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만민교회 패소 판결을 했다.

당시 '뉴스데스크'의 반론보도가 제대로 된 반론보도가 아니었다고 만민교회측이 제기한 이 소송에서 남부지

원은 “신도들의 난입장면을 배경 화면으로 방송한 것은 난입자체가 사실이 기 때문에 교회측이 주장한 것처럼 반론보도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2,000여 명의 만민교회 신도들은 99년 5월 이재록 목사의 비리의혹을 다룬 MBC에 반발해 MBC사옥에

난입해 주조정실까지 들어가 방송을 중단했었다.

당시 방송을 중단시킨 혐의로 만민교회 부목사 주현권, 사무국장 정권화 등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을 위반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PD연합회보, 2001. 3. 23. (1면)

명예훼손소송 '흑금성', 한겨레신문사에 승소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기동 부장판사)는 2001년 3월 15일 '흑금성'이라는 암호명으로 안기부 소속 대북 공작원으로 활동했던 박채서 씨가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그 본문에서 뿐 아니라 제목 등에 '이중첩자', '남북 모두 허가받은 이중간첩' 등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일반의 독자로서는 기사들을

통하여 원고가 안기부에 소속된 대북 공작원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는 무시한 채 복한을 위한 간첩 활동을 하였으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시 집권세력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정치공작 활동을 일선에서 수행하였다는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그 동안 안기부 소속 공작원으로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활동해 온 원고의 명예가 현저하게 훼손되었음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한겨레신문사는 제15대 대통령선거 직전에 일어난 안기부의 이른바 '북풍공작 사건'과 관련하여 1998년 3월 18일부터 3월 24일까지 일간지 한겨레에, 1998년 10월 29일자 주간지 한겨레21에 안기부 소속의 흑금성이라는 공작원은 남북 양쪽에서 허가받은 이중간첩으로서 최고위층 사이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였으며, 당시 아당쪽에 침투하여 공작활동을 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자, 원고는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선일보, 검사들에 1억2천만원 배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채영수 부장판사)는 2001년 4월 19일 조폐공사 파업유도 관련 수사를 위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이훈규 본부장 및 수사본부 소속 검사 11인이 조선일보사와 정중헌 논설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사회적 지위 및 검사로서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남긴 점, 일반독자들에게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그릇된 의혹을 안겨주어 검찰구성원 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점, 원고 이훈규로부터 항의를 받고 기사를 고쳐 배포한 점 등을 고려해 원고들에게 각

1천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실은 원고들이 불법감청을 한 다음 그 감청내용을 일부 공개하면서 그 감청사실의 존재를 은폐하려는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간접적, 묵시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사실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그 사실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의미, 전체적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보면, 비록 '의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고 사실상 타인의 명예를 해치는 허위의 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조선일보 논설위원인 피고 정중헌이 1999년 7월 31일자 서울지역 가판에 『검찰의 감청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원고들이 불법감청을 한 후 그 내용을 공개하면서 감청사실의 존재를 은폐하려는 여러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을 게재하자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MBC, '100분 토론' 프로그램 관련 비판보도한 조선일보 상대 소송

MBC와 이 방송의 시사토론 프로그램 '100분 토론' 진행자인 유시민 씨는 23일 "조선일보가 100분 토론이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사실을 게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사와 유근일 논설주간, 정중헌 논설위원을 상대로 9억원의 손해배상금과 정정보도문 게재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지

법에 냈다.

MBC 등은 소장에서 "12일 '신문고시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라는 내용으로 방영된 100분 토론이 원만하고 공정하게 진행됐음에도 조선일보가 사회자의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등 허위사실을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14일 '토론의 기본 안

지키는 TV사회자' 라는 제목의 사실을 통해 "사회자인 유씨가 신문고시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편파 진행"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유씨는 이 소송과는 별도로 유근일과 정중헌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동아일보 2001. 4. 24. (2면)

중앙일보, 대한매일 상대 명예훼손 소송 승소

서울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안영를 부장판사)는 2001년 4월 11일 중앙일보사가 대한매일신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3천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처분으로 정정보도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언론사 사이에 있어, 상대방의 태도나 입장이 자신과 다를 때 올바른 여론형성의 틀을 깨뜨리지 않는 한 이를 비판하여 견제할 자유가 있어야 하며, 또 이러한 비판은 폭넓게 수인되어야 하는 것이며, 국민들은 자신들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개개의 언론사

가 공급하는 다양한 의견을 타 언론사에 의한 비판과 함께 접할 권리가 있는 것이므로 언론사 상호간의 법적 책임은 이러한 언론사 고유의 속성을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런 관점에서 재판부는 홍석현 사장에게 충성하는 기자들이 정부 고위인사들을 '5적', '7적'으로 지목하고 '죽이겠다'는 극언도 서슴지 않았다는 기사와 원고가 홍석현 사장의 탈세사체를 부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탈세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그 혐의를 바꾼 것처럼 보도한 기사에 대해서만

명예훼손을 인정하였고, 나머지 기사들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한매일신문이 1999년 10월 2일자에 『언론의 자유와 횡포』라는 칼럼을 게재한 이후 총 7차례에 걸쳐 중앙일보사 사장인 홍석현 씨의 탈세사건과 관련하여 중앙일보와 소속 기자들이 사주의 옹호세력으로 나서고 있으며, 사장 개인의 탈세혐의 구속을 '언론탄압'으로 호도하고 있다는 취지의 중앙일보 사태 관련 보도를 연이어 게재하자 원고는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위원회소식

박영식 위원장,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박영식 위원장은 지난 4월 27일 언론문화 창달을 통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하였다.

또한 이병훈 사무총장은 국민포장을, 김용주 기획실장은 대통령 표창을, 임병국 중재심의실장은 국무총리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대구·강원지방토론회 개최

언론중재제도의 홍보와 효율적 운용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5월 11일과 6월 15일 대구와 춘천에서 가진 토론회가 각 지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대구지방토론회에서 “한국언론관과 윤리규제제도의 운용”이라는 주제논문을 발표한 박기성 위원(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대중매체 현상을 중심으로 언론을 설정하려는 시각은 지나치게 언론 언론을 등한시 해버린 경향이 있고, 이러한 발상은 한국 언론 규제제도의 정립에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고 “한국의 언론이 21세기에 맞는 언론으로 정착하기 위한 규제제도의 마련을 위해서는 공중의 자유언론을 기반으로 하는 언론관을 설정하고 디지털과 지식정보화의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규제제도로서 특정기관이 중심이 되는 기존의 행정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다각적으로 분산되어 견제와 균형을 갖춘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 창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강원지방토론회에서는 이현섭 위원(춘천지법 부장판사)이 “언론에 의한 피해와 구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부장판사는 “언론의 자유도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무제한의 권리가 아니고 국가적 법의, 사회적 법의 관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개인의 권리와도 관계에서도 그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오늘날 언론의 자유와 대립되는 의미로서의 개인의 권리는 명예, 프라이버시권 외에도 인격권이라는 포괄적 개념이라 설명권, 초상권, 음성권 등 다양한 권리가 주장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 권리의 외연이 확장되어 갈 추세라고 전망했다.

중복중재부 전화번호 변경

중복중재부 전화번호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Tel. 043)286-8083 FAX. 043)286-8084

중재위원 해군 제1함대 및 독도 시찰

위원장을 비롯한 중재위원 일행 28명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해군본부 지원으로 지난 6월 4일부터 1박 2일의 일정으로 해군 제1함대 사령부와 독도를 다녀왔다.

첫날 동해에 도착한 시찰단은 사령부를 방문하여 함대 사령관(소장 송영무)의 영접을 받고 부대현황 청취, 기념촬영 등 행사를 가졌다. 이후 일행은 한국 해군이 자랑하는 최정예 1급 구축함인 광개토태왕함에 승선하여 함장 및 관계자로부터 함내 각종 무기체계 및 전력 상황을 듣고 주요 시설들을 둘러보았다.

박영식 위원장은 기념품과 격려금을 전달해 해군 관계자들과 장병들을 격려했다. 참석 한 시찰단 일행은 “군, 특히 해군을 이해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좀더 문호를 개방하여 국민과 가까이 다가서는 군으로 거듭나줄 것을 당부했다.



경인·부산지역 언론사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

박영식 위원장은 지난 5월 3일과 6월 20일 수원과 부산에서 해당 지역 중재부 중재위원과 지역 언론사 대표 등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 언론피해구제에 대해 논의했다.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8집 발간

최근 국내 언론관련 판결 내용을 담은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8집이 6월 30일 발행되었다. 이번 제8집에는 2000년도부터 올해 초까지 있었던 상하급심 판결 가운데 반론보도청구 사례를 비롯, 정정보도청구 사례, 손해배상청구 사례 등 총 33건의 판결을 수록하였다.

이 책은 언론보도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언론법제 연구에도 폭넓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곽기성, 『호주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 김문환, 『TV고발 뉴스 제작의 실제』,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 김창룡, 『현대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 박상수, 『포토저널리즘의 이해』, 나눔, 2001.
- 안상운 외, 『신문개혁 이렇게 합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2001.
- 안병찬, 『뉴스 저널리즘 실무 특강』, 양지, 2001.
- 리차드 스파벌로, 『사이버 윤리』, 인간사랑, 2001.
- 강성현, “한국 언론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 뉴미디어와 정보사회”, 2001 한국언론학대회 『뉴밀레니엄 시대의 언론학 연구와 교육』, 2001. 5. 18.
- 김동욱, “방송통신의 통합적 규제 필요성”, 『방송 21』, 2001년 5월호.
- 김서중, “언론개혁과 사회개혁”,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개최 학술회의, 2001. 3. 16.
- 김유경, “미디어랩과 KOBACO(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외대 정책과학대학원 개최 『21세기 광고산업의 새 지평』포럼 발표논문, 2001. 3. 16.
- 김재협, “언론의 국회의원 활동 감시”, 『신문과 방송』, 2001년 5월호.
- 김재협, “‘언론과 인권권’에 관한 최근 판결의 동향”, 『언론중재』, 2001년 봄호.
- 김창룡, “언론에 비친 언론중재제도 20년”, 『언론중재』, 2001년 봄호.
- 김창룡, “한국 언론의 전문성 제고 방안”,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 개최
- 최 토론회 『언론인의 전문성』, 2001. 4. 12.
- 김평호, “쌍방향 TV와 인터넷 : 정보통신기술 발전의 폭넓은 이해를 위하여”, 한국언론학회 방송과 뉴미디어 분과연구회 2001년 1차 월례발표회, 2001. 4. 14.
- 김학수, “언론개혁, 패러다임의 전환”,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제37회 편집-보도국장 세미나, 2001. 3. 23.
- 남시욱, “언론자유와 언론개혁”,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제37회 편집-보도국장 세미나, 2001. 3. 23.
- 박근서, “인터넷 윤리 및 규제”, 대구·경북 언론학회 및 방송학회 주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윤리』발표 논문, 2001. 4. 27.
- 박기성, “한국언론관과 윤리규제제도의 운용”, 언론중재위원회 대구지방토론회 주제논문, 2001. 5. 11.
- 박기성, “텔레비전 생태와 윤리규제”, 대구·경북 언론학회 및 방송학회 주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윤리』발표 논문, 2001. 4. 27.
- 박영상, “전문직으로서의 언론인”,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 개최 토론회 『언론인의 전문성』, 2001. 4. 12.
- 박형상, “반론보도청구 주요 판결”, 『언론중재』, 2001년 봄호.
- 박형상, “정기간행물법 개정에 관련한 법률적 쟁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주최 『신문개혁-죽발신문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 2001. 2. 28.
- 방정배, “자유언론과 민주주의”,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개최 학술회의, 2001. 3. 16.
- 방정배, “미디어 개혁과 언론정책”, 개혁과 대안을 위한

- 전문지식인회의 개최 『언론개혁 문제와 대안』 세미나, 2001. 2. 26.
- 성낙인, “반론보도청구의 예외사유에 관한 고찰”, 『언론중재』, 2001년 봄호.
- 신 평, “명예훼손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간의 가치 조화-의견과 사실 이분론에 기초한 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4757판결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2001년 3월.
- 안상운, “신문사 소유지분 한도-제한의 필요성과 합헌성”, 『관훈저널』, 2001년 봄호.
- 양경승, “언론중재제도의 법제사적 의미”, 『언론중재』, 2001년 봄호.
- 양창수, “언론 기타 대중매체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판단”, 『고시연구』, 2001년 3월호.
- 유재천, “신문사 소유지분 한도-법제화는 위헌소지 있다”, 『관훈저널』, 2001년 봄호.
- 윤영철, “가상공간과 저널리즘”, 『관훈저널』, 2001년 봄호.
- 이강수, “한국 언론학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2001 한국 언론학대회 『뉴밀레니엄 시대의 언론학 연구와 교육』, 2001. 5. 18.
- 이민규, “전자출판 윤리 및 규제”, 대구·경북 언론학회 및 방송학회 주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윤리』 발표 논문, 2001. 4. 27.
- 이상식, “방송통신 융합과 규제기구”, 방송위원회 창립 1주년 기념세미나, 2001. 3. 29.
- 이시훈, “광고 영상 윤리 및 규제”, 대구·경북 언론학회 및 방송학회 주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윤리』 발표 논문, 2001. 4. 27.
- 이재진, “범죄보도의 사생활 및 초상권 침해”, 『신문과 방송』, 2001년 4월호.
- 이현섭, “언론에 의한 피해와 구제”, 언론중재위원회 강원지방토론회 주제논문, 2001. 6. 15.
- 임영호, “저널리즘과 시장경제, 그 묘한 함수관계”, 『관훈저널』, 2001년 봄호.
- 임상원, “한국언론의 현주소”, 『관훈저널』, 2001년 봄호.
- 장호순, “바람직한 기자실 운영방안”, 기자실 개혁을 위한 시민토론회, 2001. 4. 13.
- 조정하, “시청자 주권시대의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과 제도”, 『방송 21』, 2001년 5월호.
- 조준원, “판결에 나타난 반론문에 관한 연구”, 『언론중재』, 2001년 봄호.
- 최선열, “한국 언론학의 정체성 위기”, 2001 한국언론학대회 『뉴밀레니엄 시대의 언론학 연구와 교육』, 2001. 5. 18.
- 최양수, “디지털방송과 수용자복지”, 방송위원회 창립 1주년 기념세미나, 2001. 3. 29.
- 최양호, “방송 프로그램의 선정성과 시청률”, 여의도저널, 2001.
- 최정환, “공기와 흥기”, 『언론중재』, 2001년 봄호.
- 한동원, “중재신청사건으로 본 언론중재 20년”, 『언론중재』, 2001년 봄호. □

On-Line 중재상당실

과장 보도

4월 2일자 ○○일보에 보도된 급식학교 비리의혹에 관한 기사는 99년 사건화 되어 교육청 감사를 통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는데도 확인도 하지 않고 사실인 양 제보한 사람의 말만 듣고 다시 기사화 하였습니다.

기자는 공정한 입장에서 상대방의 말을 듣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고 또 사실확인을 한 후 기사화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자기 주관대로 기사를 낼 수 있는 건지요? 공무원이라는 이유하나로 일방적으로 당해도 되는 건지, 이런 일을 당했을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R 말씀하신 4월 2일자 기사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학교 급식비 비리의혹을 제기한 해당 보도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기사에 언급된 영천 모 초등학교의 명의로 언론중재위원회 대구중재부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사 후반부에 게재된 영천시 교육청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이 실제 말한 것과 다르게 보도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영천시 교육청의 명의로 중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 이 건 기사에 대해 개인 명의로 중재신청을 하시는 것은 곤란합니다.

중재신청이 가능한 기간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저희 홈페이지 <중재신청 관련안내> 메뉴를 참조하셔서 중재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저희 위원회 대구중재부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신청하는 것 외에 법원에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소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시 명예훼손

저는 의정부시청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4월 8일 오후 9시 모 방송 뉴스에서 <옆집 안방 흰하 보이는 아파트, 경기도 의정부에 있다>라는 보도가 방영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전혀 뜻밖에 양주군에 소재한 아파트였습니다.

위와 같은 방송은 의정부에 사는 것을 자랑으로 여겨온 저로서는 여간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뿐 아니라 의정부시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방송이라 생각됩니다. 시청자의 인지도가 높다는 이유로 검증 없이 남의 도시 명예에 해를 끼친 공공방송에 대한 대처방법은 무엇입니까?

R 말씀하신 보도 전반부에는 그런 아파트가 의정부에 있다고 보도하였으며, 후반부에는 양주군청이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이 보도로 인해 시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시청 명의로 정정보도 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재신청 이전에 해당 방송사에 직접 정정보도 요구를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만일 단순한 착오였다면 정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귀하 혹은 기타 시민 개인의 명의로는 당사자 적격에 문제가 있으므로 중재신청을 하시기에 곤란하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 언론중재위에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결정이 되었을 경우에, 별도로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발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는지요?

한편 지방신문의 독자투고란에 실린 글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투고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신문사로 부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요?



저희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쳐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가 게재된 경우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법원에 형사고발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의 내용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청구라면 이미 중재를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이므로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자투고를 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신문사가 공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독자투고의 내용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신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송의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거쳐 알 수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소송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적이나 마찬가지로인 영문이니셜표기

지방에서 개업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한 지역일간지 사회면의 사이트톱에 “경찰 부당 의뢰청구 수사착수”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 내용에는 ‘x×군 내 K외과 의원’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는 관계자라면 누구나 우리 병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x×군내 외과 의원은 우리병원 하나밖에 없는 데다 K는 우리병원 상호 첫 글자의 영문이니셜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실사 영문이니셜 등으로 구체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관계자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뻔히 알 정도라면 이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사건번호와 판결문을 어디가면 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사 내용 자체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기사에도 나와있듯이 부당 청구혐의가 있는 병원으로 지목된 4개 병원의 부당청구액은 각각 10만원 안팎이라고 하더군요. 이는 우리병원 매출액의 0.1%도 안되는 수치입니다. 그걸 가지고 사회면 사이트톱으로 올리다니 이해가 안됩니다.

둘째, 문제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곳은 도 경찰청이라고 합니다. 이는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요? 셋째, 이 경우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민·형사상으로 문제제기를 할 방법은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언론중재위는 서울에만 있는 가요? 중재신청시 서울로 가야 됩니까?



문의해 주신 4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체적인 실명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보도에 언급된 사람이 보도와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즉, 성명 중 성씨만 보도해도 독자가 식별 가능하다면 피해자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야 한다고 인정한 판례(서울민사지법 1982. 9. 3. 82카18633 판결), 가명으로 보도해도 주소, 연령, 가족관계 등으로 본인임을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경우(서울지법 1995. 1. 26. 94카기5463판결), 취재내용과 보도내용이 동일인인 경우거나 해당 언론기관이 본인임을 인정한 경우(대법원 1996. 12. 23. 95다37278 판결) 등입니다. 이 밖에 저희 중재위원회에 신청된 내용 중 신청인이 영문이니셜 등으로 표현된 경우라도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한 예가 있습니다. 자세한 판결문 내용은 법원에 문의하시거나 저희 중재위원회가 발간하고 있는 언론관계판결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형법 제126조는 검찰이나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극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전에 공표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피의사실공표죄). 이 때 참고해야 할 것은 공표된 사실이 의

심의 여지없이 확실한 진실이라 믿을만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이번 경우에 있어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가 정확히 판단할 사안은 아니므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셋째, 기사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에 대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중재신청과는 별개로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반론보도청구는 반드시 중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송에 대한 자세한 사항 역시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저희 언론중재위원회는 서울 외에도 각 지방에 10개의 지역 중재부를 두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신문이 서울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발행되고 있다면 해당 지역 중재부로 중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저희 홈페이지 메뉴 <언론중재위원회 소개>-<사무처 및 지역 중재부>로 가시면 해당 지역 중재부의 주소가 있습니다.



송낙 없이 방영한 것은 불법인지요?

얼마전 지방의 모방송사(케이블 TV)의 기자가 전화를 하여 이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제 이름과 함께 여과 없이(음성변조) 뉴스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 기자에게 속은 느낌도 들고 매우 기분이 불쾌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방송사 및 기자에게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방송된 내용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 저희 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단지 허락 없이 보도된 것에 의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법원에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언론중재신청을 하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권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언론사에서 이의신청이 있으면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언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신청인은 어떤 절차에 의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여야 하나요?



중재부의 직권결정에 대해 피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여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신청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정정보도나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은 언론중재절차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반론보도 청구는 반드시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쳐야 합니다.



정정보도청구 기간 문의

저는 일본역사교과서왜곡대책반에서 대책반 실무반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가 됨에 따라 우리 나라 역사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우리 나라 국가교육에 대해 사실과 다른 기사를 게재하여 이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하였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대책반까지 구성하여 일본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는 차에 자칫 잘못하여 우리 나라 역사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오도될 경우 향후 엄청난 문제가 야기될 것이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실무반은 사실관계와 다른 기사에 대하여 정정보도하여 줄 것을 담당부서에 요청하였고 내용증명으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귀 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정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해당 언론사에서 정정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정식재판 절차를 밟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기간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우선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할 법률적 근거는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로서 이 조항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정정보도란 이 조항에서 말하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정보도청구가 가능한 기간은 손해배상청구의 기간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데 조항을 살펴보면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 불법행위를 안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되어 있는 바 정정보도의 청구기간은 보도가 안 날로부터 3년, 보도일로부터 10년까지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법에서 다루고 있는 정정보도청구는 "단순히 보도가 잘못되어있다는 것에 대해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누구나가 정정을 구하는 권리를 갖는다고 보다는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된 자에 한해 해당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회복의 갈음하는 조치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권리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므로 질의하신 우리 역사교과서 관련 보도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청구하실 때에는 기간의 문제보다는 당사자(즉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예가 훼손된 것인지를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소를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부 기고문의 기사가 왜곡된 경우

한 시사주간지의 외부인 기고문 중 제가 속한 회사의 대표이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근거없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고려했을 때, 만약 상기 기사를 근거로 중재신청을 할 경우 그 대상을 해당 신문사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외부 기고자 개인을 상대로 해야 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반론 내지 정정보도 요청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외부 기고자의 기고문 내용이 문제가 된 경우에도 언론중재신청은 기고자 개인이 아닌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기고문 내용이 주관적인 견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견해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의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나 반론보도의 대상이 됩니다. 신청인의 의지에 따라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만, 외부 기고문의 경우 반론보도청구를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중재신청에 대하여

언론중재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궁금한 것은 중재위의 결정이 된 뒤에도 이를 시행치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문제의 언론사는 주간으로 등록된 지역지인데 부정기적으로 나오다가 얼마전 갑자기 많은 양(1만부 추정)을 발행하였습니다. 중재위에서 정정보도문이나 반박보도문을 명령할 때 당시 발행부수와 같은 부수를 요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중재위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때는 어떤 법적 제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중재위에 중재를 요청할 때 발행인과 편집인이 지금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명의를 빌려서 한다면 중재신청을 할 때는 정기간행물에 등록된 사람으로 하여야 하나요?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쳐 당사자간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에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합의된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만일 언론사가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합의이행을 관철할 수 있습니다.

쌍방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중재부가 불성립 결정을 내리지 않고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내렸을 경우,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모두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쌍방 중 누구라도 이의신청을 한다면 결정의 효력은 상실되나, 만일 기한 내에 누구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서 결정이 확정된다면 이 역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발행부수의 문제는 중재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며, 당사자간의 합의과정에서 거론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중재신청을 하실 때 신청인은 신청서 양식에 대상이 되는 언론매체의 이름만 쓰시면 되며, 발행인과 편집인 성명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

언론중재 신청과 처리 절차

언론중재위원회의 주요업무

*중재업무

• 언론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자와 해당 언론기관간의 반론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회복시켜 주고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정권고업무

• 정기간행물에 의한 침해사실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언론기관의 발행인에게 시정을 권고하여 건전한 언론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재신청서의 제출요령

- 중재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문제가 된 보도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보도문 및 중재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중재신청을 할 때는 반론보도

청구, 정정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를 구분하여 명기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의 대리인(또는 미성년자의 친권자)이 중재를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재신청서양식은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나 지방사무소에서 무료로 배부하며, FAX나 인터넷 홈페이지(www.pac.or.kr)를 이용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재신청 및 처리절차

*중재신청의 종류

• 반론보도청구

언론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는 해당매체에 자신의 반론을 게재 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정보도청구

허위보도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는 해당매체에 정정기사를 게재 또는 방송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추후보도청구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

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는, 형사절차가 무죄 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자신의 결백을 추후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신청기간

- 반론보도청구 및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는,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보도가 있는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중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추후보도청구의 경우에는,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재사건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다만 중재부의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할 경우에는 21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중재심리

- 중재심리는 중재대상이 되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

는 중재부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관할 중재부가 법령상 또는 사실상 중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중재부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출석 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중재기일에 해당 중재부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중재대리인에 대한 중재부의 허가**

- 변호사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이외의 자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중재기일에 중재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 및 합의간주된 경우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합의간주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 취지에 따라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직권에 의한 중재결정 및 중재불성립결정**

- 중재부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중재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중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재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또한 중재부는 중재에 적합치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합니다.

***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중재결정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중재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취하 및 취하간주**

- 중재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재기일에는 구술로도 할 수 있습니다.

- 중재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중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신청

-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는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않아도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의 신청은 중재불성립결정 또는 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성

***전국 15개의 중재부, 중재부의 장은 현직법관**

- 언론중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75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에는 사무처가 있습니다.

- 75명의 중재위원들은 각 시도별로 설치된 중재부에 소속되어 중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5인 이내로 구성된 중재부는 서울에 5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춘천, 청주, 전주, 창원, 제주에 각 1개씩 모두 15개의 중재부가 있습니다. 중재부의 장은 현직법관이 맡고 있습니다.

***중재부의 관할구역**

- 중재관할권은 중재대상이 되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합니다.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방송법, 선거법 중 언론중재위원회에 관한 조항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이하 “언론사”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실보도가 있는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반론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과 주소를 기재하고, 의의대상인 기사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반론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언론사가 반론보도게재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 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일간신문과 주 1회 이상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및 통신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일 이내에 같은 정기간행물에, 그

밖의 정기간행물은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다음 발행호에 이를 무료로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상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⑤ 반론보도의 내용은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게재할 수 없으며, 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⑥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기사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

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언론중재위원회) ①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중재하고 정기간행물의 게재내용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재위원회는 40인 이상 8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 및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위원의 5분의 2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로 하고 위원 중 5분의 1 이상은 언론계 인사 중에서 위촉한다.

③ 중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두되,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중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⑤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

한 자를 포함한다)와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및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은 중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중재위원회의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아니한다.

⑦ 중재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18조(중재절차등) ① 피해자 또는 언론사는 언론보도로 인한 반론보도청구권 또는 민법 제764조에 의해 정정보도 등을 구하는 권리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제16조 제1항이 정하는 기간(제16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피해자와 언론사간 협의 불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신청에 관하여는 제16조 제2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중재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하되, 중재부의 장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위원이어야 한다.

③ 중재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중재사건의 대상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언론사에 중재대상 표현물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명하거나 중재에 필요한 증

거소사를 할 수 있다.

④ 중재는 신청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지체없이 중재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출석을 요구받는 자는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출석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중재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언론사인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 취지에 따라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를 이행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 이외에는, 중재부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중재결정을 할 수 있고, 중재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재불성립 결정을 한다. 다만,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재신청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⑦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⑧ 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발행인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⑨ 중재의 절차와 중재부의 구성방법, 그 관할, 사무처의 조직, 시정권고의 방법과 절차, 중재위원회 위원의 수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

①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론보도청구의 소는 제18조 제6항의 중재불성립 결정 또는 제7항의 이의신청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반론보도청구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소송법 제693조에 의한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8조 제1항의 규정은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가처분 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6조 제3항 내지 제5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반론보도의 게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697조 및 제705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의 2(불복절차) ①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하는 이외에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불복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반론보도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언론사가 이미 반론보도청구를 이행한 때에는 그의 신청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고, 신청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언론사가 이미 이행한 반

론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지면 게재 사용료로서 적정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20조(추후보도청구권) ① 정기간행물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서면으로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후보도의 내용은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범위에 국한된다.

③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언론중재위원의 위촉등)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부 장관은 중재위원회의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30

일 이내에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23조(위원의 대우) 중재위원회는 그 위원에 대하여 중재위원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의 지급과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24조(중재신청)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중재신청서를 중재위원회 사무처 또는 당해 사건을 관할하는 중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중재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26조(중재관할권등) ① 중재관할권은 중재대상이 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한다. 다만, 동일한 관할구역 안에 수개의 중재부가 설치된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재사건을 담당할 관할중재부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해외지사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대한 중재관할권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중재부에 속한다.

③ 위원장은 관할중재부가 법령상 또는 사실상 중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

중재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제27조(중재절차) ① 중재부의 결정은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5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② 중재부의 장은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대상 표 현물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조사 를 위하여 중재위원회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대상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피신청인이 1차 중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중재부는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계재를 요하는 반론보도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계재방법 등을 정하여 2차 중재기일출석요구서와 함께 피신청인에게 송부한다.

⑤ 당사자가 법 제18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중재부에 새로운 중재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⑥ 당해 중재부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의 신청이 이유가 없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시 중재기일을 지정한다.

⑦ 중재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⑧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중재에 관한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28조(중재화해조서 및 중재결정문 등) ①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결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당해 중재부는 중재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가 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중재부는 중재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합의성립통지서 및 그 중재조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중재부는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결정 또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하는 때에는 중재결정문 또는 중재불성립결정문을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중재부는 법 제18조 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의신청서등본을 그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제29조(시정권고) ① 법 제1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를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소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중재위원회에서 선출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월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다.

④ 시정권고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한 시정권고는 중재위원회 명의로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에게 서면으로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통보받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은 시정권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의 청구는 1회에 한한다.

⑥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를 받은 시정권고소위원회는 당해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권고를 철회한다.

⑦ 시정권고소위원회의 운영, 시정권고의 세부절차 기타 필요

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30조(사무처) ① 중재위원회의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이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중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각 중재부에 사무처 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④ 사무처 직원의 정원·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31조(관계서류의 보존) ① 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중재절차에 관한 조서와 관계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을 위하여 법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관계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예산등) ① 중재위원회는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중재위원회는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추후보도청구사건의 중

재) 추후보도청구사건의 중재신청·관할·중재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4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방 송 법

제91조(반론보도청구권) ①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방송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반론보도청구권은 당해 방송이 행하여진 날부터 6월이 경과함으로써 소멸된다.

② 반론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주소를 기재하며, 이의 대상인 보도내용과 반론보도를 요청하는 반론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방송사업자는 반론보도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요구받은 날부터 9일 이내에 무료로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와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

④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한정되며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⑤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반론보도는 그 공표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및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야 하며 반론보도문은 자막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어야 한다.

⑥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 재판절차에 관한 사실방송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⑧ 방송에 의한 분쟁의 중재 및 심의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가 이를 행하며, 그 절차에 관한 사항과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항 및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법 제18조·제19조·제19조의2·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① 방송법 제20조(방송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원회”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사[제70조(방송광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에서 같다]·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④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

표하여야 한다.

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등)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⑦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3 (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7조(언론중재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원회”라 한다)는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에서 “정기간행물”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 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그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④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 보도청구)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방송 또는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방송 또는 기사 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방송을 한 방송사에 반론보도의 방송을, 당해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각각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방송 또는 기사 게재가 있는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후보자나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크기·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방송에 있어서는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무료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하여야 하며, 정기간행물에 있어서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정기간행물의 다음 발행호에 무료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간행물에 있어서 다음 발행호가 선거일 후에 발행·배부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이 배부된 지역에 배부되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당해 언론사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후보자가 반론보도 청구권의 행사에 상당한 이익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후보자나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이를 당해 후보자와 방송사 또는 언론

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론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내용·크기·횟수 기타 반론보도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④ 방송법 제91조(반론보도청구권) 제2항·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선거방송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제2항·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정기간행물의 선거기사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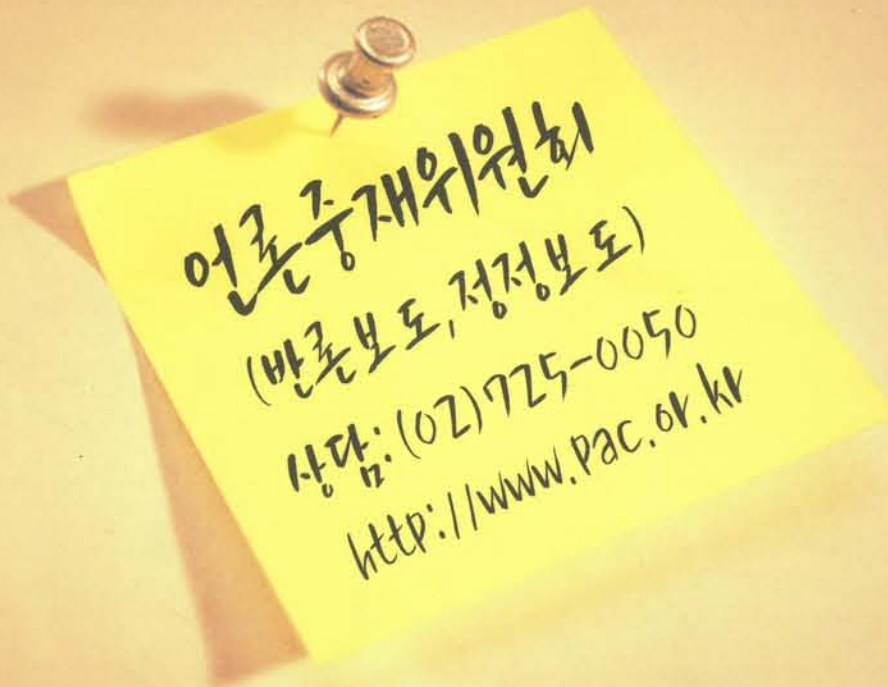
가.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5항 및 제6항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
나. 제8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

다.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의 결정 □



찾아가기:

언론중재위원회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신문, 방송, 잡지 등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입으셨습니까?
언론중재위원회로 연락해 주십시오. 비용없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를 통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 드립니다.
- 언론중재 신청기간은 보도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신청시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 중재신청이 접수되면 14일(직권 중재결정의 경우 21일) 이내에 중재를 해 드립니다.
- 합의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중재부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가까운 언론중재위원회로 연락해 주십시오. (전국 15개 중재부)



언론중재위원회

상담: (02)725-0050, (02)732-6031

<http://www.pac.or.kr>